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 연구책임자 : 이동연 |

문화사회연구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11.

연구책임자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연구자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효관 (시민네트워크 '티팻' 대표)

이병량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권경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상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최승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천기원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문화사회연구소

차 례

표·그림 차례	v
요약	vi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3
1-3. 연구의 기본방향	4
1-4. 연구의 기본계획	6
1-5.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현장조사 계획	7
1-6. 연구의 기대효과	12
2. 문화권의 정의와 범주설계	13
2-1. 문화의 정의	13
2-1-1. 문화와 문화권	13
2-1-2. 문화의 네 가지 개념	15
2-2.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26
2-2-1. 문화권의 본질과 대상	30
2-2-2. 문화권의 법적 성격과 특성	32
2-2-3. 문화권의 체계	35
2-2-4. 문화권 기본권의 규정형태	37
2-3. 문화권 수립의 배경	38
2-3-1. 문화권의 문화정세	38
2-3-2.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변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증대	48
2-4. 문화권의 위치와 추세	55
2-4-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55
2-4-2. 국가의 적극적 문화보호·육성·진흥·전수	57

2-5. 문화권의 범주설정	60
2-5-1. 문화적 자유권	60
2-5-2. 문화적 평등권	62
2-5-3. 문화적 참여권	63
2-5-4. 문화적 환경권	64
2-6. 문화권의 주요 범주	65
3. 문화권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68
3-1. 문화권의 법률현황	68
3-1-1. 문화자유권의 법률현황	68
3-1-2. 문화평등권의 법률현황	74
3-1-3. 문화참여권의 법률현황	79
3-1-4. 문화환경권의 법률현황	81
3-2. 문화권의 정부정책현황	85
3-2-1. 문화자유권의 정부정책현황	85
3-2-2. 문화평등권의 정부정책현황	92
3-2-3. 문화참여권의 정부정책현황	97
3-2-4. 문화환경권의 정부정책현황	102
3-3. 문화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106
3-3-1. 문화자유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106
3-3-2. 문화평등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125
3-3-3. 문화참여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141
3-3-4. 문화환경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152
4. 문화권의 국제기구 권고안 및 각국 사례	158
4-1. 국제기구권고안	158
4-1-1. 유엔 ‘세계인권선언’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항	158
4-1-2. 유네스코 문화권	160
4-1-3.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	177
4-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181
4-1-5. 세계문화장관회의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187
4-1-6. 국제적 관계에서 문화권을 이해하기	189

4-1-7. 국제적 관계에서 문화 권리의 이행을 위한 토대 구축	208
4.2. 문화권 각국 사례	219
4-2-1. 문화권 각국 사례 - 아프리카	219
4-2-2. 문화권 각국 사례 - 미국	228
4-2-3. 문화권 각국 사례 - 인도	240
4-2-4. 문화권 각국 사례 - 중국	252
4-2-5. 문화권 각국 사례 - 호주	269
5.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277
5-1. 문화자유권	277
5-1-1. 표현의 자유	277
5-1-2. 학술사상의 자유	285
5-1-3. 종교활동의 자유	291
5-1-4. 언론 표현의 자유	296
5-2. 문화평등권	300
5-2-1. 양성문화평등	300
5-2-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306
5-2-3.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312
5-2-4. 탈북자 문화평등	317
5-2-5. 장애인 문화평등	321
5-2-6. 청소년 문화평등	326
5-3. 문화참여권	332
5-3-1. 퍼블릭엑세스	332
5-3-2. 문화교육권	336
5-3-3. 문화공공서비스권	341
5-3-4. 문화행정시민참여	345
5-3-5. 내셔널트러스트	349
5-4. 문화환경권	353
5-4-1. 주거환경권	353
5-4-2. 보행권	359
5-4-3. 문화영향평가제도	362
5-4-4. 문화재향유권	366

6. 결론	371
6-1. 문화권 수립의 목적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만들기	371
6-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375
6-3. 문화권 NAP 수립의 활용방안	376
참고문헌	377
부록 1 문화권 관련 주요 선언 및 조약	386
부록 2 문화권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	631
부록 3 표현의 자유 관련 문화예술가 설문조사 결과	715
부록 4 국가문화권정책기본계획(안)	727

표·그림 차례

<표 1> 문화자유권 인터뷰 개요	7
<표 2> 문화평등권 인터뷰 개요	8
<표 3> 문화참여권 인터뷰 개요	9
<표 4> 문화환경권 인터뷰 개요	10
<표 5> GATT와 WTO 비교	39
<표 6>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의 구분	40
<표 7> 커뮤니케이션 분야 개방 약속	41
<표 8> 주 40시간 근무제 후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용법	44
<표 9> 지역의 문화도시 클러스터 현황	46
<표 10>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화정책 주요 방향 비교	51
<표 11>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53
<표 12> 문화 자유권 분야와 세부영역	65
<표 13> 문화 평등권 분야와 세부영역	65
<표 14> 문화 참여권 분야와 세부영역	66
<표 15> 문화 환경권 분야와 세부영역	66
<표 16>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주요 법	69
<표 17> 표현의 자유 주요 심의기관	87
<표 18>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문화관련 주요 정책방향	93
<표 19>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구축 방안	331
<표 20> 2004년도 강사풀제 실시현황	339
<표 21> 문화관광부 문화의제별 TF팀 현황	346
[그림 1] 연구의 기본계획	6

요 약 문

1. 문화권(Right to Cultur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의 의의

- 문화권 연구는 인간의 삶의 가치 중에서 문화적 권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데 필요.
- 문화권은 인간의 감수성과 창조성의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인권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
- 문화권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있어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다지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기여.

2. 문화권의 정의

- 문화권이란 용어는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시도한 학술적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문화 전체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의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화영역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사례들을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1970년대 말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CR)로 구분되면서 문화권의 범주가 논의되기 시작함.
- 문화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인권정책이 발전하면서 영역별 인권정책의 개발과 연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주로 각 국민-국가의 문화정책 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논의되었음.
- 문화권이란 개념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이미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27조)부터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음. 이후 197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러한 권리는 1992년 「소수 국가 종족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에서도 재확인.
- 국가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유네스코의 다양한 문화선언문과 헌장에 내포되어 있다.
-1950년에 유네스코의 첫 출판물 『자유와 문화』는 「세계인권선언」의 6가지 문화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수렴. 「교육의 차별에 대항하는 약정」(1960)은 유네

스코의 가장 초기 표준협약 중의 하나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했음.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에 대한 공헌에 대한 권고」(1976),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1982), 「세계 언어 권리선언」(1996),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1970),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1995),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1989),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1997),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국제회의」(199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3)과 같은 선언문과 권고안의 역사 속에서 문화권의 이념과 내용들이 수렴되었음.

- 문화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속에서도 문화적 권리가 오랜 역사적 토대와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권리이면서 인권의 구체적인 실천영역(Halina Niec)

- 문화권은 문화유산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들의 권리로 간주된다(Lyndel Prott).

- 문화권은 문화적 발전을 요구할 권리. 집단성의 권리(Rodolfo Stavenhagen).

- 문화권은 집단성의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리(Elizabeth Evatt) .

- 문화권은 보편성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욕망(Alice Tay) .

- 문화권의 주요 항목(Birgitta Leander)

- ① 신체적 문화적 생존 권리, ②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하는 권리, ③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④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⑤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⑥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⑧ 문화 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⑨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⑩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⑪ 사람들 스스로의 신체적 문화적인 환경에 관한 권리.

- 문화권은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삶의 감성적인 발전을 위해 추구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자 특수한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권은 인간 활동의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한다.

- 문화권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문화다양성으로서의 문화권은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양식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

3. 문화권의 범주설정의 타당성

- 본 보고서에는 문화권의 범주를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으로 구분하였음.
- 이상과 같은 문화권의 4가지 범주가 학술적으로 공식 논의된 적은 없으나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문화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나 유네스코에서의 문화권 정의, 이후 문화권에 대한 선언문이나 권고안을 검토하였을 때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의 범주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문화자유권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 문화평등권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와 동일시를 하든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와 동시에 동일시를 하든, 장애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유네스코 문화적 권리 선언 초안」).”
- 문화참여권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있든 모든 사람은 장애 없이, 그 또는 그녀의 선택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문화적 삶에 접속하고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 초안」).”,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문화환경권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4. 문화자유권의 쟁점사안

1)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 현황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윤리적 검열로부터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요청됨.

-정치적 이념적 검열은 국가보안법이, 윤리적 검열은 청소년보호법(형법)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기 어려움.

-인쇄출판, 영상물과 음반·게임 등에 대한 규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기준이 다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사회적 논쟁이 있으나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는 기존의 심의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 대안

-표현의 자유에 있어 사상과 이념을 검열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함.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의 심의 기관에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면 되므로,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 교육권을 진흥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

-영상물 및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은 기존보다 완화되어야 함.

-영화진흥법 상 ‘제한상영가 등급’을 현실화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성인영화전용관의 실질적인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2) 정보통신 이용과 표현의 자유 신장

○ 현황

-현재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온라인 표시방식(pics)로 인하여 사전에 정보접근이 차단될 여지가 있어 정보접근권을 침해
-전자식 표시 의무화로 인해 음란물의 성격이 아닌 내용을 담은 사이트도 임의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음.

-현재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사이트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임.

-사회범죄 행위의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 감정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

-선거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패러디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여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대안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전자식 표시 의무화조항의 삭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의 삭제나 무분별한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의 마련

-현행 ‘공직선거법’ 제 82조 제6항(인터넷 실명제) 폐지

- '공직선거법'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에서 인터넷 페러디에 대한 상대방 비방에 대한 포괄적 적용을 최소화

3) 학술사상출판의 보장

○ 현황

- 탈냉전, 탈이념의 시대에 학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임
- 냉전적인 사고관으로 인해 아직도 진보적인 학술사상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안문제연구소'의 좌익이념서적 분류행위 및 역사교과서에 대한 냉전적인 사고관 등 학술사상 출판에 대한 자유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학술사상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음

○ 대안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학술사상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

- 공교육과 대학교육에서 학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공론화 필요.

5. 문화평등권 쟁점사안

1) 양성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양성문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여성문화의 창작과 여성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

- 양성문화의 권리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창작여건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매체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줄어들어야 함.

- 문학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양성문화를 평등하게 표현할 권리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대안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을 위한 문화비전 정책에 '양성문화평등'을 위한 지원정책안이 마련되어 있음(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 인력 확대, 여성의 문화 참여와 활동여건 강화 등)

- 여성문화센터나 지역 별 여성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여성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강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양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

- 학교 예체능 수업에서 양성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

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 결정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다.

- 성적소수자들을 다룬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다.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무지개축제', '퀴어영화제' 등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안

- 문학예술, 영화, 비디오, 만화 등의 창작 분야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 성적소수자들의 주제의식을 담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

-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창작센터나 예술가 아틀리에 등 조성 등에 대한 지원

3) 외국인 노동자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차별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속 문화적 특성들에 대한 문화적 예외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각국의 언어, 관습, 풍습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함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발굴을 통한 다문화주의적 사회 구성의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은 주로 한시적이고 복지지원 차원의 수준에서 그침

○ 대안

- 이주노동자들의 자녀 교육권을 위한 특별학교의 설립 추진
-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지원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노동자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통한 문화다원주의의 실현

4) 탈북자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남한사회의 부적응에 기인한 탈북자 범죄들의 발생과 가정불화·직업부적응·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
- 탈북자들의 정착프로그램들에 있어 직업훈련이나 소양교육은 있지만, 언어소통이나 일상문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
-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탈북자 자녀 총 416명 대부분 무학력자이거나 학교중퇴자임.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있지만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교육권을 확대하는 지원 안은 현저하게 부족.

○ 대안

- 탈북자들의 적응 훈련 기간인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남한의 문화예술의 역사와 특성, 남한의 대중문화의 형성과 특성, 건축, 도시 공간, 라이프스타일, 음식 등등에 대한 일상문화와 관련된 적응 프로그램들을 상설화.
-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험과 탐방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5) 장애인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영화관·공연장·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
-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취미활동 등을 지원할만한 전문적인 시설이나 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

○ 대안

- 영화관, 극장을 포함한 공연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석 배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용 지원기구 설치.
- 다양한 문화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보 매뉴얼을 제작.
- 장애인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건립 및 프로그램 지원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 일정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립추진

6) 청소년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청소년보호법' 등 제정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권이 규제를 받고 있음.
- 영화, 비디오, 게임등급제 등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접근권이 제한받고 있음.
- '청소년보호 논리'와 '청소년문화 권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불 권리가 위축되는 상황임.
-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대부분 대중소비 문화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문화 안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권리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
- 청소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청소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계층별로 문화격차가 심화
- 도시청소년과 농촌청소년들의 문화소비와 문화 활동 및 감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안

- 출판물·영상물 등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차별을 해소
- 청소년 문화공연관람 시에 모든 분야에 할인제도 도입
- 청소년들의 문화가 공공문화 공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지원
- 청소년의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지원
- 다음세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같은 민간사업을 지원
- 청소년 문화향수의 격차만이 아니라 문화생산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6. 문화참여권 쟁점사안

1) 문화교육을 위한 시민문화 참여권 실현

○ 현황

-각 대학별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비용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남.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연령, 계층,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교육적 권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대학입시 위주의 암기 입시교육으로 인해 공교육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은 불가능한 실정.

-수능 중심의 입시교육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육투자에 비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대안교육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육 그룹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

-영화, 미디어, 교육연극, 미술치료, 문학치료, 공연예술, 정보 분야 등에서 대안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제도들을 활성화할 필요.

○ 대안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확대'

-평생교육 담당 공공기관과 시민자치 기관에 교육인력 강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문화예술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협약체결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수립과 행정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위원회와 지방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마련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지원체계마련

-대안적인 문화교육의 학력인정 및 제도 개선

2) 문화행정 평가를 통한 시민문화 참여권 실현

○ 현황

-문화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공공문화행정을 감시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음.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의 문화행정 감시 네트워크가 상설화되고 있는 상황.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는 100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대부분의 지역문화축제가 공공재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관주도형 축제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

-공공성을 가진 지역축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예산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한 참여 권리를 확대할 필요.

○ 대안

- 시민들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심의위원회처럼, 지역의 문화행정이나 중요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들을 발전시킴
-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시민들의 문화행정 참여와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
- 지역문화축제 모니터링의 상설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의무화

7. 문화환경권 쟁점사안

1) 주거생태환경 확보를 통한 문화환경권 실현

○ 현황

-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상에는 주거환경 침해요인을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지구단위법’과 같은 하위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고 있지만, 주거문화와 공공성의 차원을 상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녹지는 주로 산의 형태를 이루며 산의 정상을 향해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 ‘도시공원법’에 1인당 공원면적을 늘이고 근린 녹지비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가 골목길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어 보행이 위협에 노출
- 보행통로가 끊임없이 상업공간으로 전용되어 보행을 차단
- 도로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전략이 필요함.
- 가로시설의 디자인 비용(design fee)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디자인이 제작으로 대치되고 있는 병폐가 있음.

○ 대안

- 도시 개발 및 개량에 문화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함.
-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 근린공원의 설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제도가 필요함.
- 건축법상의 개별 건축의 성능에 관한 규제를 명시하도록 법률의 개정 추진
- 공공시설들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보행환경의 고려와 배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개선안 마련
- 보행과 관련된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입법 활동

2)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환경권 실현

○ 현황

- 청계천복구사업, 고구려유적지(아차산) 훼손, 근대건축물파괴(한옥마을) 등 개발 위주의 정책에 따른 난개발로 문화 환경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
-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실정
-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 지역의 문화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연구가 필요
- 문화 인프라, 문화자원, 문화정체성, 문화인력, 문화행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지표 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현재적 수준과 개선과제들이 도출.

○ 대안

- 공해, 교통, 건설, 주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미술, 축제, 문화유산, 문화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
- 문화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 광역시, 시군별로 단계적으로 문화지표 조사 실시의 의무화
- 지역의 문화지표 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8. 결론

- 문화권 NAP 수립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를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권 NAP 수립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인권정책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권의 실현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가 점차로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참여)정치권에 대한 운동들은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활발하게 운동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영역에서의 권리들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권은 노동권과 같은 기초권리들이 보장되고 나서야 획득될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일상적 권리로 인식하기 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복지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권을 문화예술 창작자들이나 생산자들의 권리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고, 일상 자체가 문화적으로 재편되면서 문화권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산업 분야의 증대, 문화자본의 독점화, 문화적 종다양성의 위협,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소외를 극복해야 하는 문화정세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며 이론적, 실천적으로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개념이다.

국가가 시민사회 영역과 시민들의 자율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권리들을 보호하고, 개인들이 침해받는 문화적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21세기 국가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이다. 문화권의 정립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책 사안이며, 그런 점에서 문화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문화적 권리를 수립하는 국가정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 동안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검열이나 규제를 받았을 때,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대응하였을 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의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이다. 문화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영역에 해당되면서도 인간의 의사와 활동, 표현, 일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권리의

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문화권은 이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 되었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권은 인간의 감수성을 활성화하고, 인간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문화권 연구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대단히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문화권 연구는 문화예술가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의사표시, 일상에서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권의 의미를 비중있게 다루고 필요한 정책개발을 권고함으로써 문화정책과 인권정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문화권은 인권 분야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사회의 인권발전의 선진성, 국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문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정책의 선진화, 국제화, 구체화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인권정책에서 문화적 권리의 논리개발과 정책개발을 통해 선진화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권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대단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그런 점에서 문화의 권리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 영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문화권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있어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만드는 데 있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는 대체로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화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적극 요구하는 사례들은 많지 않았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문화권의 개념을 폭넓고 다양하게 정의하여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권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필요성

문화권 연구는 그동안 문화정책 연구나 인권정책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본적이 없다. 기존의 문화정책 연구는 주로 문화환경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인권정책 역시 폭력과 차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문화권은 문화정책 일반에 있어 문화예술 전문 창작자들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인권정책 일반에 있어서는 문화 각 영역에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발전과 인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권의 연구의 필요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권 연구는 문화와 인권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문화정책과 인권정책을 상호연계하는 지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권리 못지않게 문화적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

둘째, 문화권 연구는 인권정책에서 환경권, 사회권, 소수인권 등 서로 개별 인권 정책 분야에서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을 문화적 관점으로 도출해 내고, 다른 인권의 영역의 실천과제들을 보완하며, 인권정책이 문화정책 수립 시에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권고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문화권 연구는 세계 인권 정책의 동향에서 필요한 과제이며, 국내의 문화권의 현황과 문제, 개선과제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세계인권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권과 한국의 상황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1-3. 연구의 기본방향

본 연구 보고서는 크게 4가지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문화권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 셋째 문화권의 한국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넷째, 문화권의 정책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첫째, 문화권의 정의는 그 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논의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나 문화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 문화권을 정의할 때 기존의 선행 연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권의 정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설정하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권의 정의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문화를 특정한 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게 될 경우 문화권은 특정한 문화적 생산활동이나 수용활동의 권리로 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문화를 영국의 문화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¹⁾가 말한대로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정의할 경우 문화권은 일상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시켜 정의할 수 있다. 문화권에 대한 적절한 개념정의는 문화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문화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문화권을 영역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문화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화권의 범주화는 인권정책이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권의 범주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문화향수의 평등을 실현하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권의 범주설정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상호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문화권의 확장을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 현재 한국적 상황이 어떠한고, 외국의 기준과 비교할 때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비교 검토하는 것도 문화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다. 문화권의 정의와 실현은 각국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발전 단계가 다르다. 또한 UN이나 UNESCO

1) Raymond Williams(1921-1988). 영국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문화이론가 및 문학비평가. 저서로는 『맑스주의와 문학』, 『문화와 사회』, 『장구한 혁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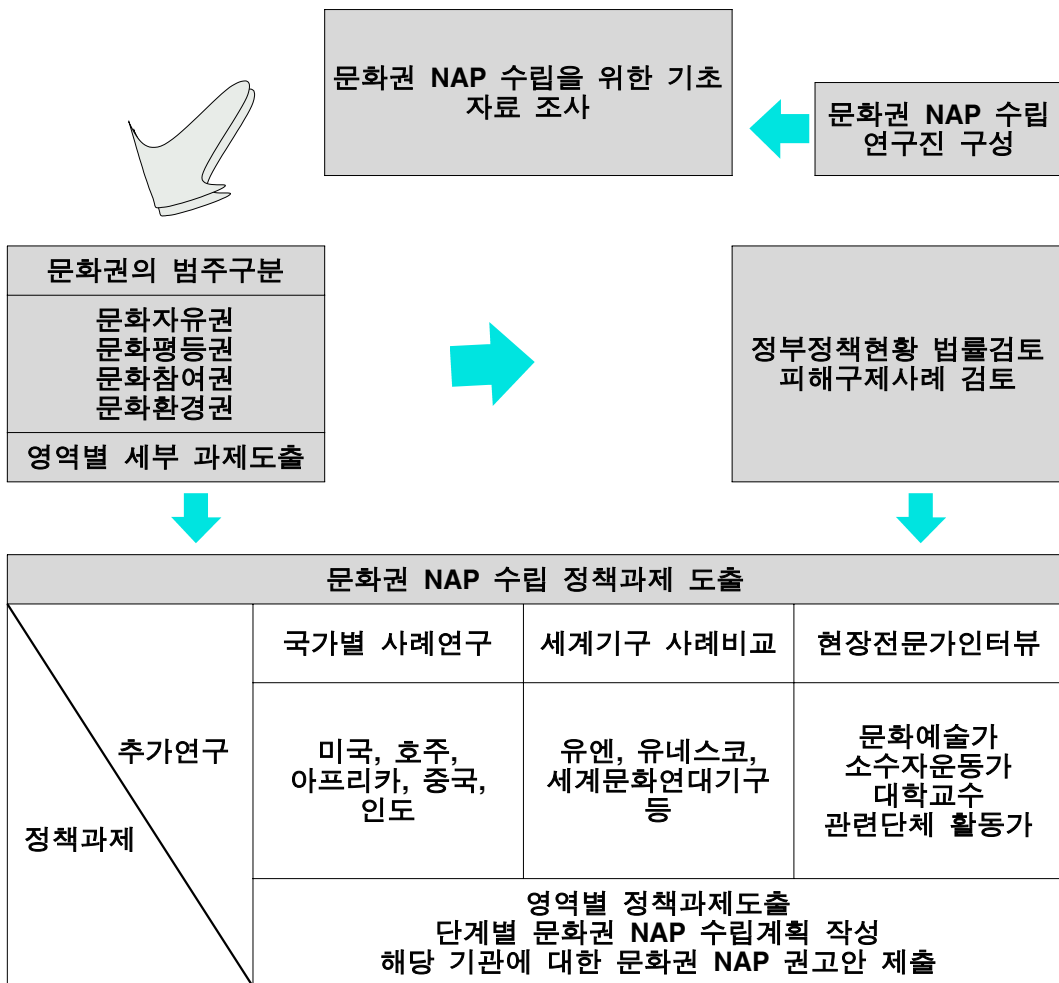
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안이나 각 국의 문화권에 대한 행동계획도 차이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각국의 문화권의 현황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안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문화권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넷째, 문화권의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권의 각 영역별로 핵심과제들이 무엇이고, 이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1-4. 연구의 기본계획

본 연구보고서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권에 대한 기존의 자료 검색 및 연구를 통한 문화권의 정의를 도출하고, 둘째 문화권의 정의에 따른 범주설정과 개별 쟁점들을 정리하여, 셋째 해당 법률안들과 기존의 피해 및 구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넷째 현장인터뷰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권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섯 번째 관련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권 수립을 위한 개선실천 과제들을 도출하여 여섯 번째, 전제 정리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완성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기본계획



1-5. 문화권 분야별 세부 영역 현장조사 계획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기 이전에 해당영역에 전문가들과 현장활동가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서에서는 문화권의 4가지 영역과 세부 정책과제들을 구분하여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현장 조사는 문화권 수립의 의의, 문화권의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실태와 현황, 정부의 정책현황, 국제사례, 개선되어야 할 개선과제들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래 도표는 영역별 분야와 인터뷰 관련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문화자유권 인터뷰 개요

분야	세부영역	단체	전문가	직책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	중앙대학교	강내희	영문과 교수
	성표현의 자유	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전 사무국장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예술창작의 자유	문화우리	임옥상	대표
학술사상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	동국대학교	강정구	사회학과 교수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학술사상 단체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사무국장
	종교적 문화활동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서강대학교	원용진	신방과 교수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 2> 문화평등권 인터뷰 개요

분야	세부영역	단체	전문가	직책
양성 문화평등	양성표현의 자유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양성문화 차별의 제한			
	양성문화평등의 사회적 실현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성적소수자 표현의 자유	한국성적소수 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소장
	성적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성적소수자 문화활동의 자유			
	성적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성적소수자 문화평등의 사회적 실현			
	이주노동자 문화적 차별 제한	동북아평화연대	김종현	부장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이주노동자 문화적 적응			
이주노동자 문화다양성 확대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 문화적 차별 제한	탈북청소년대안 학교<셋넷>	박상영	대표 교사
	탈북자 자녀교육권 확대			
	탈북자 문화권 적응지원			
	탈북 노동자 사회문화 학습권의 확대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의 문화차별 제한	장애인 이동권쟁취	김도현	사무국장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연대회의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청소년 문화평등	청소년의 문화차별의 제한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심한기	대표
	청소년의 문화격차 해소			

<표 3> 문화참여권 인터뷰 개요

분야	세부영역	단체	전문가	직책
퍼블릭 액세스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확대	미디어트	김명준	대표
	시민의 문화생산참여 기회확대			
	시민의 영상제작 참여의 기회확대			
문화교육권	시민의 평등교육권의 확대	문화연대	김정현	상임공동대표
	학생들의 문화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연대	류제홍	부위원장
	대안적 문화교육권 확대	공간환경위원회		
문화공공서비스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권리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오아시스프로젝트	김윤환	미술가
	공공문화행사 참여권			
정보접근권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사무처장
	정보격차의 해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팀 팀장
	정보공유권의 확대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공공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행정개혁 시민연대	서영복	사무처장

	공공문화 축제의 시민참여권	시민자치센터	류문수	기획실장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확대	한국문화 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문화재 정책의 시민 참여확대			

<표 4> 문화환경권 인터뷰 개요

분야	세부영역	단체	전문가	직책
주거문화권	주거환경의 쾌적한 권리	기용건축 한국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정기용 김인수	대표 소장
	주거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녹지보존의 권리			
	주거 근린공원 향유의 권리			
보행권	보행권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국장
	보행의 권리확대			
문화환경영향평가	난개발로 인한 문화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김재운 의원실	류승준	정책보좌관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의 의무화			
문화재향유권	문화재 보호의 권리	문화유산연대회의	김성한	사무국장
	문화재 향유의 권리			
	문화재 교육의 권리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계방향’에 관한 질문지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계방향’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문화권의 개념정립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를 단계별로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영역에서의 권리들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권은 노동권과 인권과 같은 기초 권리들이 보장되고 나서야 획득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중들이 적극 요청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권을 문화예술창작자나 생산자들의 권리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연구소에서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화권의 개념과 사례, 그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통질의]

- 귀하께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로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야별 질의]

- (관련 영역 권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 영역권리)과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 귀하께서 (관련 영역권리)에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침해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향이나 정부 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문화권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의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정부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문화적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함으로써 문화정책 안에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선된 문제점들과 개선사안들을 통해 앞으로 문화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법률적 개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권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인권정책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문화권의 주장들을 공론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문화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문화권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기본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앞으로 더 풍부한 문화권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권의 정의와 범주설계

2-1. 문화의 정의

2-1-1. 문화와 문화권

문화권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문화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문화권은 그 동안 인권에 대한 많은 연구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영역으로 취급받아 왔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수민족, 소수언어, 문화유산,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유 등과 같은 권리들에 대한 권고안과 선언문들이 제출되면서, 문화권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와 인권 사이의 관계는 이제 광범위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린델 프로트(Lyndel Prott(1998)²⁾의 지적대로 문화권은 “문화유산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들 모두의 권리”(같은 책, 163)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문화권이 대중의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프로트에 따르면 문화권은 문화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권고안이나 선언문, 법률적인 조항에서도 다루어지는 만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각국의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제적 영역에서 문화권은 주로 특정한 국가의 민족문화나 특정한 종족문화의 언어, 관습, 삶의 양식을 보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권리는 유네스코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며 「알제리 인민 권리를 위한 선언」³⁾ 뿐 아니라 「인간과 인민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⁴⁾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1982년 세계 문화정책 회의에서 문화 정체성 권리를 표명했고, 더 나아가

2) Lyndel Prott, "Understanding one another on cultural right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 eds by Halina Niec et al., Unesco Publishing, 1998.

Lyndel Prott: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 중의 한 사람. 시드니대학에서 문화유산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역임했다. 그녀는 지금 유네스코의 '국제 표준화 분과'(International Standards Section at Unesco)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3) 「알제리 인민 권리를 위한 선언」 Algiers Declarations on the Rights of Peoples: 1976년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채택한 선언문.

4) 「인간과 인민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Rights: 1981년 '아프리카 동맹회의'에서 채택한 헌장.

알제리 선언은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사람들이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종교에 따른 고백을 하고 그룹에 속해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 권리 및 정치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이 협약문의 내용들은 1992년 채택된 「국가, 종족, 언어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유엔 선언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에 재확인되었다. 이 선언은 국가가 소수민족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알제리 선언」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유산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적 권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냐가 중요하다.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문화적 권리의 정의나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문화를 인간의 창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 문화권은 창작자들의 권리로 제한될 여지가 많다. 반면 문화를 인간의 생활양식 전체로 정의할 경우 문화권도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대중들의 문화적 권리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문화의 정의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5)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년 유엔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서 문화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2-1-2. 문화의 네 가지 개념

1) 자원으로로서 문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문화는 인류의 축적된 물질적 유산과 동일시된다. 문화는 문화유산과 인공적인 문화생산물을 포함해서 특히 특정한 인간 그룹들의 만들어 낸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문화권은 개인이 이렇게 축적된 문화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로서 확장된다. 유엔, 유네스코 등 세계 국제기구 뿐 아니라 각 국의 많은 정부들이 문화 변화의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문화적 발전을 설정해왔고, 몇몇 사람들은 문화의 발전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발전들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 경제적 발전이라는 것이 재화를 상승시키고 서비스를 높이며,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사람들 간의 더 좋은 분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적 발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더 많은 문화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이러한 해석은 순전히 양적인 과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더 많은 출판물, 도서관의 설립, 신문, 잡지의 판매가 더 넓어지는 것, 박물관의 건립, TV 수상기를 소유하고 접근하는 것 등등의 문화의 발전을 양적인 발전으로 보는 것이다. 문화서비스의 양적인 성장은 종종 문화적 발전의 개념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TV 채널의 수가 증가한다고 문화발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문화적 자원으로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문화의 물질적 토대를 분배하고 그것에 차별 없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화의 양적인 발전은 사실상 문화가 자본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대중들의 문화적 권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문화자본의 확대 재생산은 문화개방을 통해서 각국의 문화 다양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문화적 자원들은 공공적인 자원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자본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텔레비전시청, 문화유산관람, 영화감상, 공연감상, 여가·레저활동 등 문화적 향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로서의 향유권은 이러한 사적인 자본으로서의 문화를 공적인 자원으로로서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노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2) 창조로서의 문화

두 번째 포괄적인 견해는 문화를 반드시 축적되고 현존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예술적 과학적 창조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창조로서의 문화는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전통적인 정의방식이며, 현대에 이르게 되면 고전적인 인문주의자들이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한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조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비평가인 메슈 아놀드(Matthew Arnold)⁶⁾는 문학예술을 “지금까지 말해지고 생각되어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는 특정작가의 위대한 창조정신을 통해서 발전해왔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심 없는 감상을 통해서 문화의 자원이 풍부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아놀드는 문학생산자임과 동시에 당대의 문학생산의 문제점들을 통렬하게 지적한 비평가이며 그 비평적 활동을 사회비평으로 연결시키면서 문학의 대중교육을 역설한 교육자이다. 그의 역할은 예술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비평가로서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교육장치를 건설하려는 제도가로서 확대된다. 아놀드는 문학, 비평,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문학의 현실개입성을 강조한다. 문학은 빅토리아 시대의 신흥부르주아의 속물주의와 그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들의 급진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문학은 문화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에서 자신의 문학성을 이념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를 떠맡게 되는 것이다. 비평 역시 문학의 그러한 이성비판적인 능력을 옹호하는 담론으로 기능한다. 요컨대 「현 시기 비평의 기능」⁷⁾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쓰여 졌다. 아놀드는 이 글에서 시의 창조적 생산을 저해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비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는 ‘문학의 창조적 힘의 활력’이 현 시기의 혼란을 치유하는 대안이며, 비평은 그러한 활력을 사회적 힘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연결된다. 학회와 같은 중심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천재성과 강력한 사상이 있다 해도 최상의 문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지적은 문학의 제도적 안정화의 필요를 역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놀드와 유사하게 20세기 초 영국의 문학비평가인 리비스(F. R. Leavis)⁸⁾ 역시 문학

6) Matthew Arnold(1822-1888). 영국 빅토리아조 시기의 대표적인 문화비평가이자 시인, 교육관료. 당시 대중들에게 문학과 문화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인문주의자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비평선집』(1865) 『문화와 무질서』(1869) 등이 있다.

7) M. Arnold,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Present Time", Essays in Criticism, 1965.

8) F. R. Leavis(1895-1978).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비평가. 1930년대 ‘실제비평’의 이론을 주도했고, 비평잡지 『검토』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위대한 전통』(1948) 등이 있다.

의 위대함을 논의하면서 작가의 창조적인 정신을 강조했다. 리비스는 창조정신이 가장 잘 담겨진 문학이야말로 기술문명의 인간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서 문화를 창조하거나 문화작품을 해석하고 공연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 안에는 문화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작업을 제약받지 않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가거나 모든 사람들이 박물관, 콘서트, 극장, 도서관 등등에 있는 문화적 창조물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사회에서 개인문화 창조자들의 위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창조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권리는 동시대에 가장 소중한 인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문화 창조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왔는데, 이러한 창조적인 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을 위한 투쟁을 촉발시키는 여러 힘 중의 하나였다. 예술가들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구금당하고 망명하고 감옥에 갇을 때 국제기구에서는 각국의 정부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예술가들은 인권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워왔고, 그 싸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문화예술가들의 창작한 작품들은 당대의 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다. 소수민족의 고난한 삶과 생활을 담은 소설들이나 노동자, 흑인, 여성, 장애인들의 고통을 표현한 예술작품들은 '창조로서의 문화'가 인권, 특히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물론 문화생산이나 창작품을 인간의 고유한 창조적 정신의 산물로만 제한할 수는 없다. 문화생산도 어떤 점에서는 창조적 노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문화전문가들의 노동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고급과 저급 문화 사이의 구별 속에서 야기된 것이다. 서구 국가들에서 적어도 문화적 논쟁들은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 중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논의 속에서 발전해왔다. 대중문화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공식적인 정책에서는 엘리트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로서의 문화도 단지 엘리트문화, 고급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의이다. 문화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특히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적인 논의에서는 문화는 경제적 토대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중요한 형태로 간주되었다. 먼저 영국의 문학이론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⁹⁾)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¹⁰⁾

- ① 사회생활에 있어 의미, 기호, 가치의 생산과정
- ② 특정한 사회집단, 혹은 계급에 특징적인 일련의 생각
- ③ 지배적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돕는 사고
- ④ 지배적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돕는 잘못된 사고
- ⑤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 ⑥ 개인 주체에 특정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
- ⑦ 사회적 이익과 해에 의해 동기화되는 사고형태
- ⑧ 정체성 사상
- ⑨ 사회적으로 필요한 환영
- ⑩ 담론과 권력의 결합
- ⑪ 의식적인 사회행위자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
- ⑫ 행동-지향적인 신념체계
- ⑬ 언어적 및 현상적 현실의 혼동
- ⑭ 기호적 단침
- ⑮ 개인이 사회구조에 대한 관계를 체험하는 필수적 매체

이글턴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정의를 다시 6가지로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생활에 있어 사상, 신념, 가치의 일반적인 물질적인 생산과정
- ②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이나 계급의 조건과 삶의 체험을 상징하는 사상과 신념
- ③ 상반된 이익과 해악에 직면한 그와 같은 사회집단의 이해를 증진하고, 정당화하는 논리
- ④ 이러한 파당적인 이익의 증진과 정당화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지만, 그것을 지배

9) Terry Eagleton. 영국의 문학비평가. 맨체스터대학 교수로 문학비평과 문학이론에 대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학이론입문』, 『비평과 이데올로기』, 『셰익스피어 다시 읽기』 등이 있다.

10) 아래의 이데올로기 정의는 테리 이글턴, 『이데올로기 개론』, 여흥상 역, 한신문화사, 1994 참고.

적 사회권력의 활동에 국한

- ⑤ 지배적 권력의 활동에 대한 집단의 공범성
- ⑥ 허위적이거나 기만적인 신념에 대한 강조를 지니지만, 그러한 신념이 지배계급의 이해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물질적 구조로부터 유래(맑스의 상품물신화이론)

이러한 정의를 감안했을 때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배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믿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공급하는 당사자들이 문화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개인들은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문화를 형성해 온 산물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문화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문화를 경험 속에서 이해하는 문화주의적인 방식과 문화를 구조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구조주의적 방식이 있다. 문화주의는 영국의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연구에서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화를 주체의 경험을 통해 말하는가 아니면 그 주체의 경험을 구성하는 구조적 맥락을 통해 말하는가이다. 문화주의는 개인의 문화적인 경험과 삶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구조주의는 개인의 경험 이전의 사회의 구조와 경험의 형성과정과 맥락을 중시한다. 이 차이는 적어도 영국문화의 이론적 전통을 놓고 볼 때는 영국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신철학의 대립으로, 이데올로기적 층위로 볼 때는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문화를 경험주의적인 방식으로 논의한 이론가 중의 하나가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이다. 그는 리비스의 인문주의와 톰슨의 경험주의를 문화의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다. 문화가 일상적이고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라는 규정 자체가 일종의 문학주의와 구별되는 '문화주의'¹¹⁾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윌리엄즈의 문화주의는 문화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이자 목표로 보았다기 보다는 '경험된 문화'(lived experience)를 어떻게 하면 일상 대중의 생활의 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강조한다. 요컨대 『장구한 혁명』(The Long Revolution)에서 말한 '감정의 구조'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경험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11) 문화주의Culturalism : 문화주의는 두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문학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문학주의로부터 벗어나 문학텍스트 이외의 다른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논쟁에서 야기되는 개념인데, 구조적인 틀 보다는 문화가 직접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즉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가 그 속에 거주하는 세계에 대한 인간적 해석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해석의 주된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진화되어 온 바의 인간두뇌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문화에 담겨있는 해석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특정한 방식에 의한 것이며--즉 우리는 특정한 규칙들에 따라 감각적 정보를 해석하며-- 이것이 곧 삶의 방식이다

윌리엄즈는 문화란 하나의 가치 체계이며 그러한 이해가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체험된 전통과 실천으로도 정의된다. 윌리엄즈는 “경험의 정의”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흡수시켜버리고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실천 일반에 흡수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 아닌 것의 구분을 없애 버렸다. 이러한 것은 분석에서 문화, 의식 및 경험에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면서 생겨나는 결과이다. 문화주의는 경험을 중시하고 개인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주의와는 다르게 구조주의적인 접근은 문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 형태, 혹은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문화를 구조주의적으로 접근한 이론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이다. 홀은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경험만이 아닌 한 사회의 조건이 중요하게 개입한다고 말한다. 문화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그 경험을 규정하거나 특별하게 만드는 사회적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개입은 대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표현되어왔다.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철학자인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¹²⁾의 이데올로기론이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물질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12) Louis Althusser(1918-1990).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 맑스주의 철학자. 이데올로기론과 이론과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를 해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본론 읽기』, 『맑스를 위하여』 등이 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의 정의

- 지배계급의 재생산/생산관계의 재생산 : 지배계급은 자신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억압적 국가장치(RSA)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ISAs)
-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사회적 실재와 맺는 상상적인 관계이다.
- 이데올로기는 역사가 없다.
-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과정이다.
-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한다.
- 이데올로기는 주체없는 과정이다.

알튀세르가 정의한 이데올로기들은 문화가 지배계급의 일상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국가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따라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왜곡하는 집단 혹은 국가의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사실 문화적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억압받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문화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활용하려는 지배계급, 혹은 지배집단(국가)의 머커니즘으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이다. 가령 소수자들의 문화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하려는 국가나 집단들은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나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

문화의 세 번째 견해는 인류학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인류학에서 문화는 어떤 주어진 사회그룹의 물질적, 정신적 활동들과 생산물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문화는 특정한 문화그룹들이 오랜 시대를 걸쳐 재생산하고, 개인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공급해주는 일련의 실천뿐 아니라 가치와 상징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세계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수많은 다른 문화들을 담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중들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하나의 국가는 서로 다양한 문화들로 구성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000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종족그룹들이 있다.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모든 명시적인 문화들은 역사적인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문화변화와 문화를 재창조하려는 지속적인 역동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마치 구체적인 개인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는 변화하면서도 그것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화는 특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근거한 문화권은 결국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권리는 많이 박탈당해왔다. 다음은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된 국제 사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북부 지역의 아랍 이슬람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수단은 수단 남부의 다양한 종족을 가진 국민들에게 회교율법을 강제하고 그 방식대로 국가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오랜 내전을 야기 시켰다. 1977년에 평화협약이 체결되었지만,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지배적인 신탈라(Sinhala) 다수층이 스리랑카의 국가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려고 시도하여 1983년에 타밀 폭동(Tamil insurgency)의 출현을 야기 시켰다.
- 터키 국가는 터키 소수민족의 문화 권리를 체계적으로 거부했다. 쿠르드족을 단순히 '고산족 터키족'이라고 명명
- 1990년 피지 헌법은 인도계 이주자들의 후손들을 피지 원주민이 갖는 시민권을 거부했다가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다시 돌려놓았다.
- 말레이 국가성은 중화 공동체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말레이인에 의해 헌법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말레이는 '말라얀' 말레이시아어를 말하는 반면에 화교나 다른 소수민족들은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시민들의 평등한 혼입체로서 '말레이시안'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한다.
- 프랑스 연합 국가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소수민족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프레통, 코르시카인, 옥시탄)¹³⁾

인간의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추구하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과 충돌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문화를 말할 때, 보통 개인들과 그룹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들을 고려한다. 문화에 대

13) Rondolfo Stavenhagen, "Cultural Rights: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in Cultural Rights and Wrong, 11쪽 참고.

한 권리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개인이나 그룹들이 그 특정한 개인들과 그룹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는 서로 다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권에 대한 이러한 시각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들이 반드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마도 많은 인간 가치들은 공통점이 많을지 몰라도 동일한 가치들과 관련된 문화들은 다른 역사와 사회적 조직의 결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날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주요한 방향과 반대될 수 있다. 국제인권 규약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과 반대될 수 있다. 개인의 인권은 보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저변의 가치들이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있을 지라도 그들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문화권의 개념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한 존중을 말할 때, 바로 그러한 구별이 서로 다른 사회그룹들의 구체성을 인지하기 위한 보편성에의 거부를 암시하지 않는가?

그러나 문화다양성과 보편적인 인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인권은 인간의 총체적 삶으로서의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리이다. 다양성이라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를 이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문화라는 말은 학문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의 논의는 그 대상으로서의 문화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를 광의로 “자연에 대립하는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를 논의 한다면, 문화국가는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면으로 구분되는 모든 국가작용을 다루게 되어 문화국가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확장된 문화개념에 입각한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의 추구는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작용의 하나로서의 문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문화국가를 논의한다면, 그 대상으로서의 문화는 범위의 한정 필요하다.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논의되는 문화의 개념이 이와 같은 실천적인 문화국가논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행정이 행정활동의 대상으로서 문화를 다룬다고 하는 한정된 상황에 주목하면서 법률의 대상으로서의 문화, 다시 한정한다면 현행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여러 작용중의 하나로서의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행정과 그에 관한 법체계인 문화행정법(공법)은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의 영역에 대한 합의 및 집합개념”¹⁴⁾을 문화로서 취급해 왔다. 즉 국가가 사회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으로, 4가지의 중요한 영역인 교육, 학문, 예술, 종교등과¹⁵⁾ 이러한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지닌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화를 의미하는 ‘문화재’의 보호 및 방송, 신문, 지적 소유권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 된다. 그러나 문화의 발전적 성격과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문화영역에 속했던 위 영역 이외에도 ‘사회의 관념적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들을 그때그때의 국민(헌법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헌법제정자)들에게 그가 ‘문화적인’ 것으로서 중요하게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형성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나눌 때 비물질문화에는 학문·예술·종교 등 정신적 창조물인 정신문화와 법률, 민속, 관습 등 행동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문화인 행동문화(규범문화)가 포함되는데,¹⁶⁾ 후자의 경우는 문화적 생활영역으로서의 정신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 법문화 등의 행동문화(규범문화)에 관한 문제이지만, 문화국가의 대상으로서 다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협의의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의 개념은 정립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를 광의 또는 협의로 파악할 수 있지만, 문화를 광의로 보나 협의로 보나 문화는 인간에게 특징적인 하나의 징표로서 동물과 구별되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조건’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문화국가의 궁극적인 달성목표인가 현실에 있어서의 실천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의 범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문화국가논의에 있어서는 광·협의의 문화개념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

14) Udo Steiner,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in : VVDStRL(독일국법학회지) 42, 1984, S.42(Leitsätze).

15) Thomas Oppermann, Kulturverwaltungsrecht: Bildung-Wissenschaft-Kunst, Tübingen : J.C.B.Mohr(Paul Siebeck), 1969, S.6ff은 교육, 학문 예술의 3가지를 공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로 파악하고 있고, U.Steiner는 교육, 학문, 예술 외에 종교를 公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영역으로 보고 있다. U.Steiner, a.a.O(Anm.7), S.42(Leitsätze).

16) 배용광,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5쪽 참조.

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권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영역이라는 점에 입각해서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주로 고찰의 대상이 되지만, 문화의 발전적 성격, 생활양식의 총체성, 생활문화성, 이데올로기성을 고려할 때, 문화권 내지 문화국가의 대상으로서의 문화는 광의의 개념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2.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이상에서 정립한 문화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문화권의 개념은 정립되어야 한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문화적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문화를 창작할 권리와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인권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문화권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문화다양성으로서의 문화권은 구체적인 다수의 삶의 양식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문화가 축적된 문화자원이나 소수 창조자들의 창작산물이 아니라 이러한 인류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된다면, 집단적인 인식 하에서의 문화권은 문화구체성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화구체성으로서 문화권은 모든 문화그룹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로 언급될 수 있다.

물론 문화권은 몇몇 문화예술생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창작의 권리만이 아니라 수용의 권리가기도 하다. 즉 문화권은 생산자의 권리와 수용자의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

문화권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감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물질적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권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요구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문화적 향수기회와 조건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문화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문화복지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없는 감성의 자유를 함께 주장하는 권리이다. 물론 문화권은 문화복지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화권은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의 활성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소수자를 위한 혜택이나 배려로 환원될 수 없다. 요컨대 문화복지가 결핍에 따른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화권은 생산에 따른 '욕망'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문화권이 욕망의 문제라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공공성 확보나 공적 서비스의 제도적 완성은 문화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문화권은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이나 공공성의 제도화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개별성, 다중성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점에서 문화의 공적 서비스는 그러한 문화권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점에서만 유의미하다. 사실 문화적 차이야말로 '보편적 공공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권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문화권리는 문화적 행복, 문화적 쾌락을 위한 권리이며 이는 하나의 권리로 말할 수 없다. 문화권은 '보편적인 시민'으로 단일화할 수 없는 서로 많은 차이를 가진 '다중'(multitude)의 문화를 의미한다. 노동자, 여성, 청소년의 문화권리들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권은 크게 보자면 '접근'과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때 접근과 참여는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로 접근하고, 소외된 주체들의 지배적 영역으로의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접근과 참여로서의 문화권은 경제적 평등 분배와는 다르게 자기 삶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문화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76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출되었던 선언문인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자. 참고로 본문의 내용은 별도의 설명 없이 요약 제시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이 사회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예술을 즐기고, 학문발전이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를 상기하고 다음을 고려하자.

(가) 문화는 사회생활의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일반적인 국가정책의 광범위한 분야에 나타날 수 있고, 문화는 그 진수로서 개인이 창조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나) 문화는 오늘날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류발전에 필수 요소의 하나이다.

(다) 문화는 단순한 엘리트가 아니라 그것을 모든 도달 가능한 곳에 두기 위한 생산, 수집, 보존하는 작업이나 지식의 축적물이 아니라 한 민족이 과거의 문화나 문화유산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했던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모델이다.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동일한 두 가지 보완적인 양상을 지니는데, 이것은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보면 명백해 진다. 즉 접근은 문화생활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참여는 문화의 참된 의미로서 그것에 부여된 문화에의 접근을 넓혀준다. 참여 없는 문화의 단순한 접근은 문화발전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지 못한다.

문화행위는 종종 전체 인구의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현존 조직이나 단체, 방법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교육, 낮은 생활수준, 열악한 주거조건, 경제사회적 의존도 때문에 특히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과 참여의 문제는 생활의 다양한 분야와 생활양식과 연결되는 총체적인 접근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접근은 각 사회특정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하고, 생활을 위한 진정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데 근본정책이 요구된다. 문화권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대중노동자, 노동단체, 여가시간, 가족생활, 교육훈련, 도시계획 환경 등의 조건을 다루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에 필수적 요소이다.

문화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사회진화 및 진보에 기여하는 청소년들, 자녀들의 문화교육과 그들의 창의성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들, 새로운 사회, 문화적 기능을 수여하는 노인들, 사회변화에 활동적인 기여로 인한 노동자들,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 내지는 보유자로서의 예술가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지도자로서 협력을 확산하며, 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문화발전 종사자들이 있어야 한다.

접근과 참여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즉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훈련의 각 분야에서 최대의 자유와 관용, 문화의 창조와 보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선언문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언문 채택사항(권고사항)

(가) 문화에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화생활에서의 참여라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그룹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들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2-2-1. 문화권의 본질과 대상

문화적 활동은 본래는 개인과 사적 조직의 사적 행위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공적 측면을 가진다. 즉, 예술 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감동을 주는 점에서 개인적인 문화 활동의 소산은 인류공통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 활동과 그 성과는 사적 행위라는 측면과 인류공통의 재산이라는 공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적 행위로서의 측면은 공권력을 위시한 외부적 개입이 불필요하며, 문화 활동의 본질로부터 외부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성과를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널리 보급하면서 그 전승을 시키는 데는 공적 개입이 없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 문화에 관한 책임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문화라는 특이성 때문에 다른 행정영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점에서 문화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의 특이한 측면이며 문화권을 법적 범주로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같은 존재구조로부터 문화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이해관계로서 우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권의 본질적 내용은 “국민이 문화적 활동을 자유롭게 행하고 타인의 문화 활동의 성과와 문화적 유산을 향유하고 승계하며 문화성 풍부한 환경아래에서 생활할 권리 내지 이해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권리의 대상으로서의 ‘문화’가 어떠한 것을 포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문화권 내지 문화적 권리의 의미와 대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정립한 문화개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개념의 다의성으로 그것을 완전히 목록화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협의의 전통적인 문화영역(학문, 예술, 교육, 종교)과 “공동체의 관념적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도 문화국가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방송(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저작권, 기념물 및 문화재보호, 스포츠, 청소년보호 등을 문화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및 그 성과의 향수와 계승 및 특별한 보호가 이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영역이 문화권의 일차적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개념 하에서 “모두를 위한 문화”(H. Hoffmann)와 “모두에 의한 문화”는 개방적인 문화관념이어야 한다고 볼 때, 이것은 문화개념의 확장과 동화를 전제로 한다. 광의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문화개념은 시민적 전통 및 교육문화와 마찬가지로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 하위문화 및 대항문화와 같은 ‘대중’ 및 이전문화(淺薄文化)를 포함한다.¹⁷⁾ 즉 모든 시민은 문화를 향유할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또

17) Peter Häberle, "Vom Kurturstaat zum Kurturverfassungsrecht", in: P.Häberle (hrsg.),

한 역시 문화를 창조할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특히 전통적이고 거의 '선협적으로' 언급되는 문화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일어나야만 한다.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문화적 권리'로 ①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권리, ②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③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들고,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하며, 가맹국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별이는 국제적 연락·협력의 장려 및 발전이 여러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15조).

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S.32. 그의 '文化科學으로서의 憲法理論'에 대해서는 基本法에 있어서 文化法的 內容의 의미와 自由主義的 憲法國家를 인상적으로 기술하여, 文化創造를 가능하게 하고 世界觀的 多元主義를 보장하는 基本的인 自由保障과 文化的 多樣性을 促進하는 聯邦國家原理에 큰 기여를 했다는 찬사와 함께 '限界없는 法學的 遊戲(Spiel)로서의 文化'라고 비판을 받기도 있지만(Bodo Pieroth, "Kultur als juristisches Spiel ohne Grenze. zu vier Kulturverfassungsrechtlichen Schriften Peter Häberle aus den Jahren 1979 bis 1982", in: Der Staat Bd.22(1983), S.401-405), 文化의 普遍的인 標識로서의 開放性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重要한 標識라 하겠다.

2-2-2. 문화권의 법적 성격과 특성

1) 문화권의 법적 성격

문화국가 내지 문화복지의 이념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적인 풍요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이념을 기본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국민의 문화권 내지 문화향유권(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화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적 관점과 사회권적 관점에서의 문화적 권리를 기본적인 권의 하나로 보장하는 시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권의 헌법적 성격은 소극적으로는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활동이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누구든지 문화적 생활을 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 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나 정부에 법적, 제도적 급부를 요구하는 생존권적(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등 소극적, 적극적 기본권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문화권의 특성

(1) 문화권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의 특징

문화의 특징으로 우선 자율성과 정신성을 들 수 있겠다.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재판소는 문화의 의미를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전개되고 그 스스로 가치를 지니는 사회 내부에서 작용하는 정신력의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후버(Huber)는 문화를 자율적 인격도야재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수단에 의해서 조종될 수 없고, 문화기업가, 문화기능인에 의한 조직적, 기술적 준비에 의해서도 조종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내재된 본질법칙성에 따라 스스로 발생하고 성장하며, 변창하는 교양세계로 이해하고 있다.¹⁹⁾ 오페르만(T. Oppermann)도 문화영역은 다른 분야의 국가 활동이나 작용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지 않는다면, 문화행정법의 대상을 논함에 있어서 충분한 척도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⁰⁾ 그

18) BVerfGE 10, 20(36f).

19) E. R. Huber, Zur Problematik des Kulturstaats, J.C.B.Mohr, 1958, jetzt in: P. Häberle(hrsg.), 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2, S.125.

20) Thomas Oppermann, "Eigenart und Umriss des Kulturverwaltungsrechts", in: P. Häberle(hrsg.),

림(D. Grimm)은 “문화는 물질적인 대상보다는 정신적인 대상에 관련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대상의 창조와 전수를 지향한다”고 하며 “문화에는 세계해석, 의미형성, 가치정당화, 가치전승, 가치비판과 그것들의 상징적인 표현 등이 속한다”고 하고 있다.²¹⁾

한편 헤벨레(P. Häberle)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개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표지들을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즉, 문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전승이라는 “전통”의 측면과 문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확대발전이라는 “혁신적이고 (또한) 사회적 변화에 지향”된 측면, 그리고 문화는 모두 다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측면이 그것인데, 헤벨레는 전통, 혁신, 다원주의 내지 개방성의 세 가지 표지에 문화헌법의 이론의 방향이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²²⁾ 물론 그는 (단지) ‘교양을 갖춘 시민의’ 문화이해로부터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론적 해석의 기초, 즉 “모두를 위한 문화”(호프만H. Hoffmann)와 “모두에 의한 문화”는 개방적인 문화개념이어야 한다고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화헌법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취지는 모든 시민은 문화를 향유할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역시 문화를 창조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의 특질로 전통성, 혁신성(창조성), 개방성(다원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성, 자율성, 개방성(다원성), 전통성, 혁신성 등의 문화의 특질 내지 표지는 문화권 내지 문화행정의 독자성을 밝혀주는 요소가 된다. 즉, 이러한 표지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문화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겠다.

(2) 문화권의 특성

문화권의 실현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신·문화적 가치에 연관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관한 행정적 판단 내지는 결정이 행해질 경우에 일반의 행정과제와 같이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일방적 판단·결정의 불허용). 어느 문화적 사항에 관한 정치적·행정적 결정은 자주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인류의 문화적 영위에 연관될 때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시점의 이해상황의 판단뿐만 아니라 시간 축을 가한 종합판단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존이나 개발이냐를 다루고 있던 시점에서 주민의 의사를 주민투표 등의 형태로 다루었다면 아

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S.249f.

21) Dieter Grimm,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in : VVDStRL 42, 1984, S.60.

22) Peter Häberle, "Vom Kurturstaat zum Kurturverfassungsrecht", in: P.Häberle (hrsg.), Kulturstaatlichkeit und Kurturverfassungsrecht, S.31.

마도 개발에 찬성한 시민이 다수를 점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몇 십 년 후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결정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고려해야만 한다(시간축을 가한 종합판단의 필요성). 문화적 권리(특히 문화재향유권)에 관한 향유는 단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자로서의 후세대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환경의 보호와 문화행정 일반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문화재와 문화적 활동의 성과 등의 문화유산이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관한 정치적·행정적 결정에는 국민·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되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국민·주민만을 성원으로 하는 형식민주주의적 결정절차 이외의 다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적 사항의 결정과정에는 국민·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그것에 관한 심의에 참여케 하는 등 문화전문가(학술연구가, 예술가, 저술가, 고고학자 등)나 문화전문가단체의 판단·의견이 중시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거나 또는 법해석에 있어서 조리원칙으로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문화전문가 판단·의견의 중요성).

2-2-3. 문화권의 체계

우리는 여기서 모든 기본권을 문화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는 헤벨레의 문화적 기본권 관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기존의 기본권의 분류체계 속에서 문화적 기본권이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옐리네크(G. Jellinek)의 '지위이론'에 바탕을 둔 자유권, 생활권(사회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 분류방식이 전통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연속관계가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과, 자유권중심의 사고방식이 생활권(사회권)중심으로 옮겨지고 있고 특히 '자유권의 생활권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옐리네크 식의 기본권 분류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새로운 분류방법의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부분 옐리네크적인 '지위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조금씩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슈미트(C. Schmitt)의 이론체계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자유권에서 생활권으로 옮겨지고,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생활권을 실효성 없는 장식적 기본권 유형으로 보는(생활권의 법적 성격을 프로그램 내지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분류방식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공범의 대상으로서의 협의의 문화개념에 포함되는 학문·예술·종교·교육 등은 종전의 기본권 분류에 따르면, 자유권 중에서 정신적 자유권으로 분류되고, 교육은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유권 및 생활권과 별도의 문화적 기본권이라는 분류는 논의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학문·예술의 자유의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기존의 기본권분류와 달리 별도의 문화적 기본권 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주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정신적 자유권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문화국가 실현의 기초인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인 문화적 권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학자들이 문화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분류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마이호퍼(Maihofer)는 문화적 기본권에는 1) 교육에 관련된 기본권, 2) 예술과 학문 또는 신문과 방송의 문화영역에 관련된 기본권, 3) 신앙과 고백의 문화영역에 관련된 기본권이 속한다고 하며, 마운츠(Maunz)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신문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연구와 교수의 자유, 친권의 자유 등을 문화적 기본권으로 들고 있다. 한편 헤벨레는 그의 문화과학적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기본권영역에서도 폭넓은 문화적 기본권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 기본권관은 문화과

학적 연구방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과학적 연구방법은 또한 문화사적, 문화정책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사적 및 도그마틱적 출발점은 단지 부분적인 측면에 불과하다. 기본권은 인간문화의 표현으로서 이를 가능하게 한다. 법적인 자유보장은 문화적 관련성의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문화적 관련성이 없다면 법적인 자유보장은 그 법적 실효성면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자유의 객관화, 예술과 학문분야에 있어서 창작품, 비법학적인 고전적인 문헌, 정당강령 및 소수자보호, 예를 들어 수공업에 있어서와 같은 직업적 전통의 유지 및 국가의 스포츠부문의 공적 장려들은 기본권의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의 일부분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넓은 의미의 문화적 기본권관을 주장하는 헤벨레도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 즉 ‘문화적 기본권’으로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과 연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한 직업적 결사의 자유 혹은 친권(과 같은 외관상으로는 제1차적으로 문화에 관련되지 않는 기본권)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문화적 기본권의 독자적 지위는 자유권과 생활권의 엄격한 대치 속에서는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권을 생활영역 또는 생활이익에 따라 분류할 때만 종전의 자유권, 생활권의 분류에 속해 있던 문화적 요소들을 문화적 기본권이라는 독자적인 유형·체계 속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문화로 이해되는 영역(학문, 예술, 교육)외에 오늘날 문화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송과 그밖에 확대되는 문화개념에 따라 확장되는 기본권영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2-2-4. 문화적 기본권의 규정 형태

문화권 유형에 어떠한 기본권이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지만, 문화권은 대체로 세 종류의 형태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²³⁾

1) 방어권적 및 주관적 공권형태로의 규정례(자유권 형태)

“어느 누구도 그의 학문적 및 문화적 창조와 그의 작품의 유포에 있어서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46년 독일 헤센(Hessen) 헌법 제10조가 그 예로 들어질 수 있다.

2) 주관적 공권 및 객관적 가치질서 형태로의 규정례

대개의 문화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 외에 객관적 가치질서²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나, 특히 제도적 기본권 이론을 정립한 헤벨레는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의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과 학문의 자유규정을 객관법적 제도적 기본권형태의 예로 들고 있다.

3) 급부국가적 및 급부권 형태로의 규정례(사회국가 내지 사회권 형태)

특정의 국가적 급부를 필요로 하는 문화적 참여권이 여기에 규율된다. 이것은 P. Häberle에 따르면, 일부는 특별한 문화국가위임으로서 나타나고, 일부는 그 효력이 개인적이고 공적인 기본권의 지위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문화적 창작은 국가에 의하여 장려된다”라고 규정한 1947년의 자-르(Saar)헌법 제34조는 하나의 예이다.

23) P.Häberle, "Vom Kurturstaat zum Kurturverfassungsrecht", in: P.Häberle (hrsg.), Kurturstaatllichkeit und Kurturverfassungsrecht, Darmstadt, 1982,S.10f

24) 여기서 객관적 법질서란 기본권은 모든 국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모든 국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 앞의 평등이나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 불평등처우의 금지나 민주국가적 법질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유지·발전시키는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301-302면).

2-3. 문화권 수립의 배경

2-3-1. 문화권의 문화정세

이상과 같이 문화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그것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언급해보았다. 이제는 문화권이 왜 중요해졌으며,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이 왜 필요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고, 일상에서 문화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문화권은 문화생산자들이나, 특정한 문화매니아들의 권리로 축소할 수 없는 대중들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 분야의 증대, 문화자본의 독점화, 문화적 종다양성의 위협,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소외를 극복해야하는 문화정세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며 이론적, 실천적으로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문화 종다양성의 파괴와, 노동환경의 유연화, 일상적 삶의 재편, 문화비용의 증대와 같은 일련의 문화환경의 변화에서 문화적 권리가 대단히 중요한 권리로 등장했다. 문화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운동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의제로 제기되어야 하는 문화정세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다.

1) 문화적 종다양성의 위기

문화적 종다양성의 위기는 이중적 위기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듯이 WTO, 한미일투자협정에 따른 문화 부문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자국의 문화인프라와 정체성이 위협의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적서비스업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 전체의 시장개방과 철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의 인프라 역시 문화 콘텐츠의 빈곤에 시달리고, 종다양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상황에 있다. 음반산업의 전체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소수음반제작사의 독점율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음악장르의 균형있는 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독립문화나 비주류문화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 한 때 주목받기에 이르렀지만, 독점문화 자본에 흡수당하거나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자기시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산업 역시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몇몇 흥행영화에만 관객이 몰리고 있어 영화적 콘텐츠의 종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유통 배급구조 역시 몇몇 매니저 배급사에 의해 독점화되고 있다.

문화 종다양성의 위기는 단지 문화산업의 독점화·획일화가 심화되는 문제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문화적 소비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는 곧 문화적 감수성의 위기를 낳을 수 있으며 소수문화 주체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과 소수문화적 취향들의 소멸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종다양성의 위기는 국제적인 영역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문화개방 압력은 제3세계 국가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삶의 양식들의 소멸을 가지고 올지 모른다.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출범 이후 문화 분야를 포함한 지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각국의 문화의 종다양성이 파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종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시대에는 문화는 교역의 대상으로 제외되어 문화적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WTO 체제에서는 문화와 지적재산권이 통상분야에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표 5> GATT와 WTO 비교²⁵⁾

항목	GATT	WTO
국제기구의 성격	국제협정 성격	법인격을 가진 분쟁해결기구 설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관세인하에만 주력 비관세 방벽은 선언적인 규정의 정립수준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철폐 및 하향평준화 달성 비관세 장벽 철폐 강화
국제무역규율 범위	상품(공산품)	공산품 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조치 포함
새로운 규범 설정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 없음	서비스 협정 제정 지적 재산권 국제규범 제정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제정
무역규범의 강화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기타 다자간 무역규범 미비	보조금의 정의 확립 및 규율 강화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원산지규정협정 선적전검사협정

25)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삼성출판사, 1997.

현재 WTO 서비스 협상 중 문화 분야의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공급 형태 분류

-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 국제전화)
- ② 해외소비(consumption)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 관광)
-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 외국은행 영업)
- ④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 패션모델, 컨설턴트)

○ WTO 서비스협상의 범위

- ① 사업서비스, ② 커뮤니케이션, ③ 건설, ④ 유통, ⑤ 교육, ⑥ 환경, ⑦ 금융, ⑧ 보건, ⑨ 관광, ⑩ 오락, 문화, 스포츠, ⑪ 운송서비스, ⑫ 기타서비스

○ 문화분야의 구분

<표 6>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의 구분²⁶⁾

구분1	구분2	구분3
① 사업서비스	F. 기타서비스	r. 인쇄출판
② 커뮤니케이션	D. 시청각서비스	a. 영화 및 미디어 제작 배급업
		b. 영화 상영
		c. 라디오·TV
		d. 라디오·TV 전송
		e. 음반 제작업
		f. 기타
⑩ 오락, 문화, 스포츠	A. 오락	
	B. 뉴스	
	C. 도서관·박물관 및 기타 문화	
	D. 스포츠	
	E. 기타 서비스	

26) 세계문화연대기구, 「문화구분의 비교표」, 2002 세계문화연대기구 회의 자료집.

○ 주요 국가의 문화분야 개방현황

WTO 138개 회원국 중 CCD가 분류한 10개 문화분야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방을 약속한 국가 중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한 국가의 수는 29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청각서비스 분야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거나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국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한국의 개방 분야

1994년 당시 한국은 GATT 사무국이 분류한 12개 분야 155개 업종 중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스포츠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78개의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커뮤니케이션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서비스, 라디오 및 TV전송서비스, 사운드 녹음, 기타 등 6개 하위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영화제작 및 배급 분야와 사운드 녹음(음반 제작업) 분야의 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개방 약속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커뮤니케이션 분야 개방 약속²⁷⁾

분야	업종	개방약속	비개방
커뮤니케이션 (24개 업종)	통신 서비스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7개 업종)	음성전화, 패킷교환 데이터 단순전송, 회선교환 데이터 단순전송, 텔렉스, 전신, 팩시밀리, 사설전용 회선 기타 서비스 (8개 업종)
	영상·음향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업, 음반 제작업 (2개 업종)	영화기획, 라디오, TV, 라디오, TV전송, 기타 서비스 (4개 업종)
	우편 서비스	전 업종 비개방	우편서비스(1개 업종)
	송달 서비스	전 업종 비개방	송달서비스(1개 업종)
	기타 서비스	전 업종 비개방	기타 서비스(1개 업종)

27)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4』, 삼성출판사, 1997.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문화개방이 문화의 종다양성을 파괴하고 문화분야 개방의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WTO 서비스협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문화개방은 문화를 상품으로 바라보고 무역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과 개인들의 가치의 총체이자 삶의 양식이며, 한 사회의 문화는 다양한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 WTO 체제 하에서 문화부문이 다루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47개국 문화부장관의 회의인 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에서는 모든 형태의 예술적, 문화적 표현과 전통지식, 풍습, 언어적 다양성, 대중문화까지를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세계문화협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2) 일상문화와 문화비용의 증대

일반 대중들의 일상에서 문화체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극장관람객의 증가, 스포츠경기관람, 멀티미디어 수용확대,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 지수는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문화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은 2000년 같은 달 보다 25.4% 신장했으며 이중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이하 작년 같은 달 대비)이 7월 31.3%, 8월 29.2%에 이어 9월에도 3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²⁸⁾ 그리고 올해 티켓예매 사이트 티켓링크가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9일간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 1280명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등 문화비 지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4.84%인 702명이 "지난해보다 문화생활비를 늘리겠다"고 답했다.²⁹⁾

이렇듯 해가 거듭될수록 대중들의 문화적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대중들의 문화적 비용의 증가를 사적 문화자본의 시장에 그대로 방임할 경우 대중들의 문화비용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비용의 증가는 문화적 소비에 있어 계층 간의 심각한 격차를 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문화적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대중의 문화 소비는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문화비

28) 통계청,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증가율」 2001년 11월 참고.

29) 『동아일보』, 2002년 1월 10일자 참고.

용의 적정 수준에 대한 요구와 문화적 공공영역의 증대로 인해 비용의 공적 부담을 늘려나가는 적극적 제안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정부는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해 문화의 집이나 주민문화센터 건립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의 빈곤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비용들을 부담하는 데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주 5일 근무제 시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우리나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8시간, 1일 8시간' 원칙을 고수해왔다. 법정근로시간이란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법률상의 상한을 의미하며, 모든 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44시간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융·보험업계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9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그 이외의 업체들은 1991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근로조건 개선' 공약들이 시발점이 되어 주40시간 근무제 논의가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IMF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자, 노동계는 기존 노동자의 해고 방지 및 신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자 구제와 여가시간 증대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도 휴일 및 휴가 제도 등의 개정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0년 5월 노사정은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32차에 걸친 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련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 2003년 9월에 법정근로시간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작되었다.³⁰⁾

국정홍보처가 주5일제의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74%가 주 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30) 김정운 외 『주 40시간 근무제 실행 후 노동자의 생활양식 변화와 학습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정책 개발과 여가정책 개발 중심으로』, 2004 정책기획위원회 자료집.

기대효과로는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53.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고용창출(25.5%), 관광·문화·교육산업의 활성화(18.5%)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³¹⁾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드러났듯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기대효과에서 문화여가 생활의 활성화 부분이 그리 높은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실제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대중들의 문화생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노동운동이나 문화운동계 내부에서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대중들의 문화생활의 변화에 대한 문화정책이 부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문화적 파급효과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2004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가생활에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욕구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8> 주 40시간 근무제 후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용법³²⁾ (단위: %)

구분	15세 이상 인구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컴퓨터 게임, PC통신	자기 계발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 일	휴식 수면	기타
2004	100.0	26.1	5.2	2.3	4.3	6.9	1.8	11.4	9.3	12.1	16.1	4.4
동 부	100.0	26.4	5.3	2.6	4.6	7.2	2.1	11.3	9.7	11.2	15.2	4.6
읍면부	100.0	24.7	4.7	1.0	3.2	5.4	0.8	12.2	7.6	16.0	20.6	3.8
남 자	100.0	26.5	7.0	1.7	7.1	9.9	2.0	11.0	8.7	3.9	18.2	4.1
여 자	100.0	25.7	3.4	3.0	1.7	4.0	1.7	11.9	9.9	19.8	14.2	4.9
15~19세	100.0	22.9	0.5	3.6	3.8	29.7	8.2	13.5	1.6	0.9	12.2	3.2
20~29세	100.0	21.4	4.0	7.4	3.8	14.2	3.0	19.2	4.9	5.0	13.2	3.9
30~39세	100.0	23.2	6.6	1.8	4.4	4.7	1.4	8.7	18.1	13.4	13.6	4.2
40~49세	100.0	26.6	7.3	0.8	6.0	2.4	0.9	7.3	11.1	15.8	16.3	5.5
50~59세	100.0	30.2	6.9	0.4	4.7	1.0	0.7	9.1	7.0	16.3	18.7	5.0
60세 이상	100.0	33.1	2.7	0.1	2.7	0.4	0.2	12.4	5.7	15.8	22.7	4.2

물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비노동시간의 증대가 대중들의 문화생활의 확대와는 직

31) 국정홍보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변화 조사」 2001년 8월. 참고

3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정보와 통신·문화와 여가·교육 부문』. 2004.

결되지 않는지만, 점차적으로 문화적 참여와 활동의 욕구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례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으로서 문화생활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4) 지역문화정책의 빈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방 정부는 지자체가 본격 실시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축제들을 개최하고, 문화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각종 예술단 설립 등의 문화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문화행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문화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역의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지역 시민들은 특히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분명한 지역 소외감을 체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산의 투여만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은 지역문화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며, 지방화 시대의 완성은 이러한 지역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의 증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문화환경과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각 지역마다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의 주요 도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의 전당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주는 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은 영상문화중심도시, 부천은 만화애니메이션도시, 광명은 음악문화도시, 전주는 소리문화중심도시, 청주는 공예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표 9> 지역의 문화도시 클러스터 현황

지역	핵심 개념	주요행사	추진기관
부산	부산 영상문화도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영상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 PPP 등
부천	부천만화영상문화도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부천 국제만화페스티벌	경기디지털 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부천문화재단 부천영상산업단지 등
광명	음악문화산업 벨리	광명 록페스티벌	광명시
대전	첨단과학 문화도시	과학 엑스포	충남대, 카이스트 등
청주	공예문화도시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전주	소리문화중심 도시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 세계 소리문화 축제	전주 정보영상진흥원 등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세계 문화 엑스포	경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광주	아시아문화 허브도시 하이테크 뉴미디어 도시	광주비엔날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광주 국제영화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도시추진기획단 전남대학교 문화예술도시추진기획단 등

문화도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가 바로 선 도시를 뜻한다. 여기에 삶의 질을 더 높이 고양시킬 수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표에 앞서 기초적인 생활의 측면을 충실히 고려하는 관점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컨대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란 특별한 것이기에 앞서, 삶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화도시를 말할 때 우리는 문화와 도시가 결합된 상태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문화의 복잡한 집적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의 복잡한 집적체로서의 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가 만들어낸 공간적 조직, 도시가 작동하는 구조,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체험하는 경관과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도시를 살고 이용하는 방식을 섬세하게 연관지워 바라 볼 것을 요청한다.³³⁾

5) 소수자들의 문화권리 확대

마지막으로 문화의 독점화 경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소수문화의 출현도 중요한 문화정세로 읽어야 한다. 물론 상업적인 주류 문화의 독점화 경향으로 인해 소수문화가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주류 문화공간의 형태에서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행동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공간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청년세대들의 문화적 커뮤니티의 확대, 여성문화운동의 다양화, 동성애자들의 문화적 참여의 확대, 섹슈얼리티의 진보에 대한 요구 등이 이른바 '소수자 문화'(minority culture)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소수문화의 활성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대적, 성적, 성애적, 지역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의 인정을 위해 지금 문화운동 진영에는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전선은 소수자와 국가권력과의 대립, 소수문화주체와 주류 문화주체와의 대립을 낳고 있다.

33)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지락, 2002, 16-17쪽. 참고로 이 책에서는 문화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이 바로 선 도시,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2-3-2.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변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증대

1)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서구 사회에서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진보적문화연구자들이 국가장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 이후 문화연구는 국가장치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 국가제도의 전환을 위한 개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연구자들은 대중들의 문화환경의 민주화와 국가의 문화제도들의 혁신을 위해 문화정책수립을 중요한 실천 아젠다로 설정했으며, 문화와 관련된 국가의 법, 제도, 예산, 시설 등을 새롭게 바꾸려는 일련의 기획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문화연구자들이 국가의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로 변모하기도 하고, 정부의 문화정책 중장기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문화연구자들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서구의 문화정책의 구체화, 이론화, 전문화는 대부분 좌파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문화공간기획', '문화도시건설', '박물관운영', '문화적 소수자 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제 2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을 넘어서려는 정책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문화정체성 수립을 우선 과제를 설정하였고, 이 정책과정에 문화연구자들의 참여가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국가장치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 문화정책의 생산적 개입을 시도한 문화연구자 중에서 토니 베넷(Tony Bennett)³⁴⁾의 이론과 작업은 국가의 문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토니 베넷은 기존의 문화연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의미화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연구가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을 담은 문화정책 연구로 방향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0년대 초까지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문화정책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베넷은 호주의 문화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베넷은 문화정책의 이론적 개입의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문화를 지배와 관리의 특정한 장으로 간주하면서, 문화를 정의할 때,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둘째, 이러한 총체적인 문화의 장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문화

34) 토니 베넷 Tony Bennett: 영국의 문화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정부의 문화정책에 참여하면서 박물관 정책에 많은 자문을 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호주의 그리피스대학 '현대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호주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호주가 아시아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맑스주의와 형식』 등이 있다.

영역들을 그 영역들과 특정하게 관련된 정치 체계의 목적들, 목표점들, 기술들에 따라 변별해야 한다는 점. 셋째, 서로 다른 문화영역들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치적 관계들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 정치적 관계들에 참여할 구체적인 방식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넷째, 지적작업이 그 실체나 스타일에 있어 그 작업과 관련된 문화영역 내부의 서로 동일한 담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는 문화가 형성되는 실제 공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서만, 말하자면 문화의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도 구체적인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제도적 비판과 개입에서 행위자의 실천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적인 실천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에 대한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하기 보다는 그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개입해서 말을 거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다. 결론적으로 베넷은 “구체적인 문화적 제도들의 작동하는 절차들과 정책적 전략들 안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구상하는 지적인 작업”이 앞으로 문화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베넷의 이러한 주장 안에는 문화를 상징적 의미의 장으로 보기보다는 개인들의 일상의 삶과 행동의 총체로 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읽을 수 있다. 문화연구자들이 생각했던 문화정책의 이념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일상적 삶의 총체를 재조직하는 실천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방향전환을 기획한다. 첫째, 문화정책의 이념은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에서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둘째,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문화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셋째, 소수의 문화예술가를 위한 정책에서 다수의 삶의 가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넷째, 다양한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의 개발과 분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목적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문화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좁은 의미로 문화를 정의할 경우 문화는 고급예술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바라볼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의식활동과 일상활동의 총체로 인식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정책이 주로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부여받은 모든 대중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감성의 해방을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차이들이 인정되고, 문화적 감수성이 차

별받지 않으며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는 현존하는 문화적 자원들을 분배하고, 문화적 삶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될 수록 문화정책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2) 문화정책의 단계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기초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먼저 올 3월에 나온 2003년도 문화정책 백서를 보면 작년 주요 문화관광정책 추진성으로 '일본대중문화4차개방',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 및 대체재원 마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추진', '세계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비전 제시', '관광정책 18대과제 수립, 새로운 방식의 홍보업무 추진' 등을 꼽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등의 각 분야에 자율과 참여, 분권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의 틀을 마련하는 등 문화관광부 조직문화와 업무추진 방식의 변화도 담고 있다.

이러한 기획과 성과를 종합해 볼 때, 먼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 갖는 기본 기초를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조직틀을 바꾸는 것과, 둘째 민간자율성을 강화하는 문화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셋째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민문화, 일상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주5일제' 시대를 대비하며, '고급 대 저급', '순수예술 대 문화산업'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체적인 문화행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요구된다. 이창동 장관이 취임 후에 곧바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문광부 내부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문화정책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한 것이 그 예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정부의 문화행정에 민간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여,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문예진흥원"을 민간합의제 행정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문화행정 TF팀에 민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문광부 내의 기존 업무영역의 폭을 넓히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도시 건설과 지역문화인프라 확대 등 지역문화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는 문화정책의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은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조는 지난 국민의 정부와 문화정책 기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면,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문화적 수요의 다양화와 지역문화의 분권화, 산업과 예술을 균형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걸맞는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고,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주요방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화정책 주요 방향 비교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방향	참여정부 문화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 도서관정보화, 저작권정보화 등 문화정보화 추진 · 예술창작기반 조성 및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 · 예술창작 기반조성 및 국민문화향수권 신장 · 문화산업 기반 구축 및 문화콘텐츠 진흥 ·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 건전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참여, 분권을 통한 문화예술지원방식개선 · 소액다건 중심 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 ·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중앙, 지방 간 격차해소 ·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의 진흥 · 문화중심도시 육성 및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 지방의 문화산업을 특화 육성 지역균형발전 도모 · 문화,예술,스포츠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 아시아관광 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 체육활동의 생활화 및 자발적 동참유도 ·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국제감각배양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지난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제도혁신”을 중점적인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권 수립의 가능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관광부가 가장 빠르게 달라진 것은 문화행정 시스템이다. 당초 이창동 장관이 공언했던 대로, 정부의 문화행정 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기 위한 시도로 작년 4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가 발족했다. 문화행정혁신위는 위계적이고 배태적인 직제를 개편하고, 수평적 업무구조의 안착과 함께 주요 문화정책 기획을 실무진 급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아젠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문화행정혁신위는 총 8개의 TF팀을 운영하여, 주요 현안 및 분권, 자율, 참여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다뤘다. 조직문화 TF를 통해 업무 전담제를 실시, 민간 자율 TF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계획마련, 조직 구조 TF를 통한 문화관광부 기능조정안 등을 마련하였다.

조직문화 TF팀은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요 문화정책을 부서별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담당하도록 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일방적 과업지시 체계에서 벗어나, 실무진들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업무 역할분담의 혼선과 내부 관료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 자율 TF팀은 주로 한국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현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방향정립과 법령정비를 맡았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의 시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발족에 따른 민간행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모델로 삼은 것인데, 문예진흥원장 중심의 행정조직에서 각 분과별 장르별 위원회들의 합의 제 행정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실제 정책집행에 유기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조직구조 TF팀은 문광부 내의 조직을 새로운 문화행정에 걸맞게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구조 TF팀을 통해 국별 과별 간의 명칭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산업국의 조정과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청소년과의 명칭변경 등의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행정혁신위는 이러한 기본 TF팀을 바탕으로 해서 2003년 9월에는 구체적인 문화의제들을 검토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TF팀을 15개로 확대하여 실제적인 추진단위로 확대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후 자율, 참여, 분권의 정책기조를 문화행정에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행정정보공개, 문화중심도시 구상 등 다양한 과제들을 기획하였다.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반한 정책영역의 확대, 문광부 정책분야와 과제 간 매트릭스 정책풀(pool)형성 계획의 기본 특성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① 창의적인 문화시민 양성, ② 다원적 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실현, ③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참여 제고, ②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정체성 확립, ③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④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 협력 증진 등 5대 기본방향과 24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기본방향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5대 기본방향	24대 세부추진과제
I.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참여 확대	1.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2.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문화의 질 제고
	3. 미래세대의 육성과 보호
	4. 양성평등 문화 확립
	5.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6.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확대
II. 문화창조 진흥과 문화정체성	7. 국어를 통한 문화정체성 제고
	8.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9. 문화예술 창조와 다양성 확대
	10. 스포츠의 전문성 제고
III.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11. 문화산업의 고도화
	1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13.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IV.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14. 지역의 문화 역량 제고
	15. 도시공간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16. 문화시설의 전국적 균형 배치
	17. 문화정보 지식관리체계 구축
	18.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19. 농산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0. 행정수도 문화기획
V.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21.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
	22. 국제문화교류 확대
	23.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4. 남북 문화교류 확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새예술정책>과 <문화비전100대과제-창의한국> 보고서를 2004년 상반기에 작성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달라진 문화행정시스템과 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들은 문화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이미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지방문화분권정책, 문화예술교육, 미래세대의 육성과 보호, 양성평등과 같은 핵심의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들 중 상당부분이 문화권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다만 각각의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설정하고 제안된 것이 아니라 문화영역별 주제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안에 문화권의 개념과 이념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권의 개념은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의 영역을 넘어서 교육과 환경 복지 분야에도 연결되어 있어 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4. 문화권의 실현구조

문화국가는 그 과제영역에 따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 형식과 소극적 형식을 통하여 문화의 자율성보장과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보호·육성·진흥·전수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권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자유와 평등, 기본권의 방어적 측면(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과 적극적 측면(국가를 통한 문화의 참여보장)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2-4-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1) 문화적 자유권과 국가활동의 한계

문화국가의 헌법적 보장은 우리가 입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기본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구속되는 다수지배 안에서는 모든 국가활동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문화국가인데, 자유주의적 문화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자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을 통하여 제한되고 한계지워진다. 문화국가에서의 이러한 국가활동의 한계는 사회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문화영역(예컨대, 학문, 예술)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엄격하게 나타난다. 자유주의적 문화국가에서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자유권과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문화적 기본권을 파악하는 이러한 한계설정적 의미로부터 동시에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문화정책적 관용”의 의무가 추론된다. 국가의 중립 및 관용의 두 의무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이해에 따라 전제된 “문화의 자율성”의 표현이다. 문화의 자율성은 (특히 예술활동에 있어서) 고유법칙성에 따른 창조적 발현이라는 모든 문화영역 전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2) 문화활동의 사회적 책임

문화활동의 자율성은 문화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보장은 문화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문화적 기본권분야에서 세분화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지만, 문화활동의 자유(특히, 학문, 예술, 종교, 방송)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가가 문화를 방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문화를 방기한다는 것은 문화를 사회에 떠맡긴다는 것인데, 이는 후버의 지적처럼 모든 시대에 최고의 문화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영역에서도 사회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문화

적 독점과 과점이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영역에서도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문화활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가운데서 그 적용의 한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헌법적 보호법익을 위해 제한 될 수 있음은 다른 기본권과 같다. 이로부터 우리는 문화활동의 공공성과 이로부터 나오는 자율성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국가는 이러한 문화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난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도 문화를 일정한 방향으로의 유도가 아닌,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풍토'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문화의 자율성보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으로 이해된다. 문화활동의 헌법적 보장의 한계 및 제한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고, 사후에 제한할 수 있다. 이점에서 사전검열이나 허가 등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사전억제금지원칙(헌법 제21조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 사후에 국가에 의한 제한은 최후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화영역도 그 자체 내재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한계의 이탈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은 문화영역에 맡겨야한다. 즉, 사회적 한계를 이탈한 문화활동에 대한 판단은 일반대중과 문화영역내의 자율적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로 해결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제한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형량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2-4-2. 국가의 적극적 문화보호 · 육성 · 진흥 · 전수

1) 문화적 참여권과 국가활동의 내용

자유주의적 문화국가가 자유주의 원리로 부터 나타나는 중립성과 관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문화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같은 문화국가에 대해 “연대성”(Solidarität)과 능동성(Aktivität)이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국가의 연대성과 능동성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문화국가가 시민의 문화적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개인의 방어권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권(訴權)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적 참여권에 상응하여 국가는 일정한 문화적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급부의무가 없이는 문화적 참여권은 비현실적인 것이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부의무를 법률에 의한 형식적 보장만으로 그친다면 시민의 문화적 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으며, 참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국가는 국가활동이 없이는 문화가 생겨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문화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된다.

문화적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적 급부의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현상유지를 뛰어 넘는’ 참여권으로서 ‘기존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 본래적 참여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입법에 의한 보충필요성,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능성의 한계성, 국가의 급부능력의 한계성, 고전적인 자유권의 위태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처럼 문화국가의 적극적 과제를 실현하는데는 “가능성의 유보”라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저히 경제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회적 기본권과는 달리 문화적 참여권은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생활자원의 급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경제적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는 곳에서만야말로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시설의 확충 등 국가의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 외에도 사회적 문화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건전한 문화풍토조성이 필요하다.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정책이 단순히 사회정책의 부분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2) 문화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식

문화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진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진흥은 자율성이라는 문화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섭이 아닌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한 지원에서부터 문화창작에 대한 보조 그리고 문화보급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문화적 발전을 돕기 위한 금전적 보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관점과 문화의 다원성 내지 개방성이라는 문화의 개념적 표지로부터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소위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민중문화, 서민문화), 전통문화 등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반인간적인 '문화'현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요청되지만, 소위 하위문화, 대항문화에 대해서는 배척과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반문화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문화진흥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한 조장·지원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유형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균등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차별적인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지원방식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가의 지원은 지원방식에 따라서는 국가의 간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신중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방식은 1) 사인이나 사적 단체를 관여시키지 않고 국가내부의 결정과정에 의해 지원의 대상과 정도를 확정짓는 방식, 2) 위촉된 전문가집단(위원회)의 일차적 평가에 따라 지원의 대상과 정도를 확정하는 방식, 3) 국가는 지원대상과 기준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문화단체에 대해서 지원만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첫째의 방식은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국가가 문화지배자로 될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일정한 문화의 방향을 지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의 방식은 문화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문화의 사회적 독점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국가가 반문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사회가 보통 자기힘 만으로는 문화를 모든 측면에서 발전시키기에 충분하게 활동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문화영역에서의 다양한 촉진적 조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때, 문화의 자율성과 문화의 사회적 의의와 기능에 대한 고려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의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식일 것이다. 즉 국가내부결정에 일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자율성의 침해우려와 지원대상

과 기준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사회적 의의와 기능의 경시우려를 고려할 때에, 문화에 대한 단순한 간섭의 배제와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정당화시키는데는 문화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활동 및 그 산물에 대한 지원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 평가를 위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국가적 지원여부의 정당성여부는 지원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독립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과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5. 문화권의 범주설정

본 연구는 문화권의 영역을 잠정적으로 문화적 자유권, 문화적 평등권, 문화적 참여권, 문화적 환경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문화권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유엔 인권선언에 명시된 조항들이나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문화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수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누구나 문화적 접근과 참여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자유권은 주로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면, 문화적 평등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찾아가는 의미로서의 문화참여권은 개인들이 그러한 문화를 인식하고 찾아갈 수 있는 기본 여건과 환경마련으로서의 문화환경권 역시 상호보완적이다. 이러한 네 가지 문화권은 앞서 말한 대로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넘어 넓은 의미의 문화적 실천을 위해 문화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5-1. 문화적 자유권

1) 자유주의적 문화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자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을 통하여 제한되고 한계 지워진다.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문화적 기본권을 파악하는 이러한 한계설정적 의미로부터 동시에 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문화정책적 관용”의 의무가 추론된다(“문화의 자율성”의 표현).

2) 이로부터 모든 문화정책적 명령(Diktat), 모든 문화정책적 획일화의 시도 및 예술과 학문을 내용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조종(Dirigismus)(‘예술에 대한 재단’과 ‘학문에 대한 재단’)은 국가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나아가 국가는 문화영역의 자율성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은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의 문화적 자유권의 보호를, 제3자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중립성과 관용을 가지고 즉 국가에 편하거나 또는 불편한 제문화활동에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거나 차별함이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3) 문화적 자유권(자율성)과 국가의 규제와의 갈등사례

- * '진보적' 학술운동에 대한 사법대응(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배포 혐의)
- * 예술 및 일반적 표현의 음란성문제(윤리적 측면)와 특정한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작품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문제(정치적 측면)—염재만, 마광수, 김지하
- *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사례(양심적 병역거부권)
- * 사전심의제도, 등급보류제도 등의 위헌판결
- * 취재원비닉권문제

4) 문화활동의 헌법적 보장의 한계 및 제한

문화영역도 그 자체 내재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한은 최후·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한계의 이탈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은 문화영역에 맡겨야한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로 해결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자율적 기구의 요청에 의해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에도 그 제한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형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정립된 여러 기준들, 즉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교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문화창조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간존엄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5-2. 문화적 평등권

1) 문화적 평등권을 누구든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기회를 국가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것,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문화 활동의 결과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적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방어권의 성격을 갖는 자유권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화적 평등권(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화적 참여권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유권과 문화적 참여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좀 확대해석하면 문화권의 근거는 평등권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계희열).

2) 문화적 평등권에서는 문화 활동에 있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사회적 신조 등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3) 문화적 평등권의 침해 사례

각 문화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예, 불합리한 학교배정, 수학권, 수업권 침해)

2-5-3. 문화적 참여권

1) 국가가 문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한 '문화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 한다'라는 명제는 하나의 기본원칙으로서 타당하다. 이로부터 자유주의적 문화국가가 자유주의 원리로 부터 나타나는 중립성과 관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문화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같은 문화국가에 대해 "연대성"(Solidarität)과 능동성(Aktivität)이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국가의 연대성과 능동성은 국민의 문화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2) 개인의 방어권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권(訴權)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적 참여권에 상응하여 국가는 일정한 문화적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급부의무가 없이는 문화적 참여권은 비현실적인 것이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문화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육성·진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진흥은 자율성이라는 문화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섭이 아닌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한 지원에서부터 문화창작에 대한 보조 그리고 문화보급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문화적 발전을 돕기 위한 금전적 보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의 문화육성·진흥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한 조장·지원기능이 중요하다.

2-5-4. 문화적 환경권

문화적 환경권은 좁게 파악하면 물리적 인공 환경 중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문화적 환경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환경에 포함된다. 문화적 환경권은 문명의 이기로서의 시설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는 쾌적한 자연유산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 속에서 쾌적한 지적 생활 즉, 인격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있다).

2-6. 문화권의 주요 범주

문화권의 주요 범주 네 가지를 설정하고 다시 이를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들을 세분화하였으며, 다시 각각의 분야별 쟁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영역을 설정했다. 범주-분야-세부영역별 문화권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문화 자유권의 분야와 세부영역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
		성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학술 사상의 자유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학술사상 단체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문화활동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 취재원의 보호

<표 13> 문화 평등권의 분야와 세부영역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평등권	양성문화평등	양성표현의 자유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양성문화 차별의 금지
		양성문화 평등의 사회적 실현
	성적소수자 문화 평등	성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성적 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성적 소수자의 문화활동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이주 노동자 문화적 차별 금지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이주 노동자 문화적 적응
		이주 노동자 문화 다양성 확대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 금지
		탈북자 자녀 교육권 확대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의 문화차별 금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청소년 문화평등	청소년 문화차별의 제한	
	청소년 문화격차의 해소	

<표 14> 문화 참여권의 분야와 세부영역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 참여권	퍼블릭 액세스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방송제작참여 기회 확대
	문화교육권	시민의 평생교육권의 확대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대안적 문화교육권의 확대
	문화공공서비스권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권리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문화정보 서비스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공공 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공공 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확대
		문화재 정책의 시민 참여확대

<표 15> 문화 환경권의 분야와 세부영역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 환경권	주거문화권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녹지보존의 권리
		주거 근린공원 향유의 권리
	보행권	보행권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의 확대
	문화영향평가제도	난개발로 인한 문화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문화재향유권	문화재 보호의 권리
		문화재 향유의 권리
		문화재 교육의 권리

3. 문화권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3-1. 문화권의 법률현황

3-1-1. 문화자유권의 법률현황

1) 개관

자유주의적 문화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자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을 통하여 제한되고 한계지워진다. 문화국가에서의 이러한 국가활동의 한계는 사회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문화영역(예컨대, 학문, 예술)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엄격하게 나타난다. 문화의 자율성은 (특히 예술활동에 있어서) 고유법칙성에 따른 창조적 발현이라는 모든 문화영역 전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문화활동의 자율성은 문화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보장은 문화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문화적 기본권분야에서 세분화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지만, 문화활동의 자유(특히, 학문, 예술, 종교, 방송)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 문화활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가운데서 그 적용의 한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헌법적 보호법익을 위해 제한 될 수 있음은 다른 기본권과 같다.

문화자유권의 헌법적 보장은 직접적으로는 각 문화영역에서의 기본권, 즉,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의 자유(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와 일반적 표현의 자유(제2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사상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헌법에서는 사상의 자유의 근거로 파악)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활동이 지향해야 할 원칙 내지 방향을 정해주는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문화국가조항(제9조)과 대통령의 선서조항에서의 문화창달의무(제69조)는 이러한 문화자유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문화적 자유권은 법률규정이 없는 것이 최대한의 문화적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유권에

대한 법률현황은 주로 제한적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그러나 문화활동의 헌법적 보장의 한계 및 제한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고, 사후에 제한할 수 있다. 이점에서 사전검열이나 허가 등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억제금지원칙(헌법 제21조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 사후에 국가에 의한 제한은 최후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화영역도 그 자체 내재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한계의 이탈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은 문화영역에 맡겨야한다. 즉, 사회적 한계를 이탈한 문화활동에 대한 판단은 일반대중과 문화영역내의 자율적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로 해결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제한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형량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표 16>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주요 법

법명	년도	규제매체	규제방식	침해쟁점	요구사안
국가보안법	1948	반국가단체결성, 고무, 찬양, 동조, 이적표현물을 취득, 제작, 반포 등의 모든 매체	표현물에 대한 압수, 작가에 대한 인신구속	국가보안법 7조기준의 모호성, 표현의자유 침해	국가보안법폐지, 혹은 7조 삭제
청소년보호법	1997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든매체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업주, 제작자처벌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모호함 2차 검열기능	청소년보호법폐지 및 대체입법화
영화진흥법	1995	영화매체	등급분류	제한상영가등급과 제한상영관 기준	제한상영가등급의 현실적 기준 마련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1999	음반, 비디오, 게임	등급분류	연소자이용불가 심의 기준, 수입추천제 사전검열, 음란물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수입추천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1995	PC통신, 인터넷, 전화	각종 불온통신 단속	불온 개념의 모호성, 위헌가능성	사상표현의 자유 검열 기준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인터넷망법)	2001	상동	인터넷의 내용등급제(전자적표시)	전자적 표시의 위헌성과 기준의 모호성	폐지

2) 문화적 자유권의 제한과 관련한 법령

(1) 문화적(예술적) 표현의 자유

①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서는 우선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작품의 실정법 위반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죄(특히, 이적표현물 등의 제작·반포죄 제7조 제5항)가 정치적, 이념적 소신을 가지고 창작하는 작가에게 제한을 가하고 것이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다. 그리고 음악분야에서는 종전의 '공연법'상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규제가 있었으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제도 및 등급보류제도(제20조)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이용불가음반의 결정(제22조)에서 그 심의 기준의 모호성이 여전히 문제되며 음반, 수입추천제(제35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부분에서도 영화진흥법상 상영등급분류제도(제21조)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는 '경범죄처벌법'(유언비어유포), '광고물 등 관리법'(미풍양속 및 도시미관 저해) 등도 규제법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경범죄 처벌법상의 유언비어날조유포죄는 남용의 여지가 있고 언론의 신장으로 실효성도 없으므로 1988년 삭제된 바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들로는 문학분야에서 김○○의 시 「오적」, 남○○의 소설 「분지」, 오○○의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등이 문제된 바 있으며, 음악분야에서는 월북 음악인 작품의 공연금지,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된 재독 음악인 윤○○씨의 작품의 공연금지, 박○○씨의 민중가요음반제작과 관련한 구속사태, 가수 김○○씨 음반에 대한 규제와 정○○씨의 노래 규제 등이 문제된 바 있다. 미술분야에서는 전○○, 이상○○의 그림 「白頭山 산자락 아래」, 신○○씨의 「모내기」 등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된 바 있다.

과거보다는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되고 있으나, 현행법제하에서도 과도한 제한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개폐논의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예술작품도 절대 무제한일수는 없지만 사후에 형법의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에 해당여부를 신중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규제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규제(예: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관리법' 등을 통한 규제)는 인정될 수 없다.

② 성표현의 자유

예술작품에서의 성표현도 자주 국가의 규제대상에 놓인바 있다. 즉, 작품에 나타나는 성의 묘사를 두고 벌어지는 예술이나 외설이냐의 시비가 바로 그것이다. 적용법률로는 ‘형법’상의 음란문서제작·반포등 죄(제243조, 제244조), 연극의 경우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규제(제26조, 제49의 2조 이하)등이 대표적이다. 종전의 공연법상의 사전심의 및 영화진흥법상의 등급보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특히 예술표현의 자유). 그러나 예술은 문화활동의 영역 중에서도 그 자율성이 특히 요청되는 영역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는 신중을 요한다. 예술개념에 대한 법적 평가가 그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예술성과 음란성의 충돌문제는 예술이나 외설이냐의 양자택일적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가치 있는 법익이 작품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후억제가 긍정되는 경우에도 예술은 인격적 영역에 깊이 관련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부득이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게 하며 예술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하나, 기준의 불명확성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다.

(2) 정보통신활동의 자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보통신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한 대표적인 적용법률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3조에서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은 제42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도를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2월 29일에 개정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신설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제도”는 검사장의 협조 하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기통신사업상 불온통신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불온개념의 모호성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명확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내용등급제도 전자적 표시의 위험성과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3) 학술사상의 자유

진보적 학술운동이 '국가보안법' 등의 실정법위반여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죄 등(제7조)이 적용법률로 들어질 수 있다. 진보적 학술운동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사법대응으로 1989년 충북대 000 교수, 000 (본명 000)씨 등에 대해 당국이 수사를 했으나 서교수의 경우는 조사차원에 그쳤고, 이씨는 다른 조직사건('로동계급')과 연관되어 구속된 바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경성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의 이해'와 000 교수의 '나는 야 통일 1세대' 등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설은 제37조 2항의 제한을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학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의 법률적 제한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이다. 특히 맑스·레닌주의의 학문이론이 문제되는데, 사실에 대한 언급-그것이 예언의 형태이건, 설명의 시도이건-은 이론적 작업의 영역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이 특정한 행동의 지침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정치적 활동의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도 그것이 순수히 학문이론인지, 정치적 활동인지는 개별적으로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가며 취급해야 한다.

(4)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의 경우도 신앙의 자유는 별도로 하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규제문제가 제기되며(종말론 문제), 종교적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등이 논의된다.

종교적 행사 및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은 사회적 전파성이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종래 종교지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가 적용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현재 일부 하급심이 전향적으로 판결을 한 예도 있지만, 대체로 병역법상 병역기피(제88조), 군형법상의 항명죄 (제44조)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특정 종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특정 종교의 학습을 강요하며, 타종교나 무신론 학생들이 반발할 경우 제적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재산범죄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고의여부 및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

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강하나, 현재 공익근무제도 대체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대체업무에 종사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대체역무에 관한 법률제정의 검토).

(5) 언론취재의 자유

오늘날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와 TV매체가 사회적으로 발휘하는 영향력은 비교대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물론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가치판단에서 바람직스럽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주화 시대 방송의 우선적 과제는 정치권력의 힘과 일정한 목적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 자율성의 일부가 기업의 손으로 들어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특히 상업방송의 향락, 퇴폐문화조장의 우려가 문제된다)도 방송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과 같은 자유로 우월적 지위가 '헌법'의 범리상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도 무제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을 받을 수 있다.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헌법 제21조 제4항)이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도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법' 등의 제한을 받으며, 언론이 형법의 규정에 위반하면(명예훼손, 음란성) 범죄가 성립한다. 한편 언론기관의 자유와 관련하여 취재원비닉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부인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법정모독죄(제138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1-2. 문화평등권의 법률현황

1) 개관

문화적 평등권을 누구든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기회를 국가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것,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문화 활동의 결과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적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방어권의 성격을 갖는 자유권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화적 평등권(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화적 참여권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

문화적 평등권에서는 문화 활동에 있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사회적 신조 등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적 평등권의 침해 사례는 각 문화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2) 문화적 평등권 관련 법률현황

(1) 양성문화평등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 중 성별에 의한 차별이 가장 오랜 동안 문제되어 왔다. 문화적 영역에서의 차별도 헌법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결과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열등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평등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대우하려는 생각에서 제안된 평등개념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나 할당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특별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등이 양성평등실현에 중요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의 이념은 문화영역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양성차별에 관련된 규정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호주제와 같이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는 규정도 존재한다.

문화적 영역에의 진입 및 활동, 평가에 있어서 제도적 관행상 차별철폐가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서 발생하는 남녀역할의 편견을 수정하고 성평등

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난 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적'이지 혹은 '남성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에서 시작하여 제도적 억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수로부터의 편견, 차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 이유로 자신의 성적지향 혹은 젠더정체성을 숨기고, 부정하고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소수의 섹슈얼리티/젠더 정체성을 말하고자 지지하고자 하는 이성애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은 별론으로 하고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한 예는 거의 없다. 동성애 사이트를 음란사이트로 보아 제재를 가한 경우나, 동성간의 사실혼관계불인정, 호적변경의 불인정판례, 주민등록증 문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각종 생활영역에 진입 및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나 기타 문화활동에 차별적 요소가 제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성애 조항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문화적 평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성적 소수자를 다룬 출판물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영화진흥법 등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생산과 소비에 규제 및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연수생)와 불법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권(생존권)보장이 절실하지만, 이들의 문화적 권리의 보호도 중요하다.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법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근거, 이주 노동자들

이 문화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근거 및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자원을 보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이 미약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차별제한,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확대,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지원, 이주노동자문화적 다양성 확대 등을 문화권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각종 노동법규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탈북자문화평등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탈북자 문제는 국내외적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과제이다. 2001년 '기획 망명'이 시작된 이래 2002년 1139명, 2003년에는 1281명의 탈북자가 남한 땅을 밟았고 올해부터 그 수는 연간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남한 내 전체 탈북자 수는 5000여명을 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철저한 단절의 흔적을 지워내고 새로운 남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제한, 탈북자의 문화적 적응지원, 탈북자의 사회문화 학습권의 확대, 탈북자 자녀의 교육권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탈북자들의 지원법령으로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있다. 이법은 기본원칙으로 인도주의에 의한 특별보호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제4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제10조), 학력 및 자격인정(제13조, 제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정착금 등지급(제21조),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생계보호(제26조) 등의 지원시책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보호규정이 있다.

반세기가 넘는 철저한 단절의 흔적을 지워내고 새로운 남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이 받는 교육은 불과 8주인데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서독은 통일전 동독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1년간 실시).

현재 탈북자의 수용시설인 하나원의 수용시설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에서 탈북자들 스스로 1등 시민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을,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이 한 마음 되는 포용 훈련을 하는 마을인 '하나마을'을 설립하자는 주장(서혜경, 경희대 교수) 긍정적 검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가 현재에 낸 의견서에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 거주자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당국과의 마찰 또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북한주민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가 원하는 한 우리 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탈북자 정책이 필요하다.

(5)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로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편의시설 설치("對象施設"은 1. 道路,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4. 共同住宅, 5. 交通手段, 6. 通信施設, 7. 기타 障礙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제7조), 접근권 보장(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을 담보할 규정들이 필요하다(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것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의 2). 장애인의 교육권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전반의 인식부족이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시운영, 특수교육진흥법 내 보조교사배치규정신설,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대안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청소년문화평등

한국 청소년 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먼저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고 그들의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압박요소는 성적향상이다.

학력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채용하는 사회를 개선하고 각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모두 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선진 사회와 그들의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청소년 문화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다.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탈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1-3. 문화참여권의 법률현황

1) 개관

국가가 문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한 '문화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 한다'라는 명제는 하나의 기본원칙으로서 타당하다. 이로부터 자유주의적 문화국가가 자유주의 원리로 부터 나타나는 중립성과 관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문화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같은 문화국가에 대해 "연대성"(Solidarität)과 능동성(Aktivität)이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국가의 연대성과 능동성은 국민의 문화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개인의 방어권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권(訴權)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적 참여권에 상응하여 국가는 일정한 문화적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급부의무가 없이는 문화적 참여권은 비현실적인 것이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육성·진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진흥은 자율성이라는 문화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섭이 아닌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한 지원에서부터 문화창작에 대한 보조 그리고 문화보급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문화적 발전을 돕기 위한 금전적 보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의 문화육성·진흥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한 조장·지원기능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이념하에 문화관계법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참여권실현과 관련하여 문화관계법의 개선과 더불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중요한 법률이다.

2) 문화참여권 관련 법률현황

(1) 퍼블릭 액세스

문화 퍼블릭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에도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적 근

거는 없는 실정이다. '방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방송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방송위원회' 시행규칙에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있다.

(2) 문화교육권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학생들의 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입법 예정이며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규정 대안교육교사들의 양성 및 연수과정 지원규정이 마련된다.

(3) 문화공공서비스권

'문예진흥법'에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공공문화 장소의 가격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문화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4) 문화행정시민참여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문화행정 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권의 법적근거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5)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활동일반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내셔널 트러스트는 현재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7조). 그리고 현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3-1-4. 문화환경권의 법률현황

1) 개관

문화적 환경권은 좁게 파악하면 물리적 인공 환경 중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문화적 환경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환경에 포함된다. 문화적 환경권은 문명의 이기로서의 시설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는 쾌적한 자연유산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 속에서 쾌적한 지적 생활 즉, 인격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5조). 환경법제를 개관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 중심을 이루지만, 문화적 환경권과 관련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도 중요한 법률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2) 문화환경권 관련 법률현황

(1) 주거생태권

주거생활권의 보장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다. 특히, 타인의 재산권과의 충돌이 그것이다. 주거환경보전은 헌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한 공익성이 요구되지만,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생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확보해주는 문제도 중요하다. 앞에서 본 헌법 제35조가 주거생태권에도 중요한 근거조항이다. 현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6조는 1. 토지이용계획, 2.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준치·수선·증축·개축·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5. 산사태·침수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화장실·탁아소·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이 시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정부정책에는 예산상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①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도시계획법' 상에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자연환경보존법', '도시공원법'에 주거생태권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쾌적한 주거권 확보와 자연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근린형 공원을 지어 주민들의 녹지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난개발로 인해 충분한 공원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보행권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보행환경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지칭한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과 같은 법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현재 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행권확보조례 등이 제정되고 있다. 특히 보행약자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을 배려한 보행권 확보정책이 중요하다.

(3) 문화영향평가제도

현재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일반적인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 두 가치는 양립되기 어려운 가치이면서도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양 가치의 대립은 문화재보호정책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고, 문화재보호정책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다. 사실 경제개발이 강조되던 개발시대에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귀중한 문화재가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성산대로 건설시 독립문의 현상변경이 있었고, 역사

문화도시인 경주도심의 고속철도통과문제 및 경마장 건설계획, 최근의 풍납토성의 보존문제가 개발논리와 맞물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양 가치를 다 존중하면서도 무리 없는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해법은 없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양 가치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화재는 그 특성상 개발논리에 우선권을 넘겨준다면 그 보존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보호의 정책방향은 '개발하면서 보존한다'가 아니라 '보존하면서 개발한다'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원형유지(현상불변)'의 원칙, '면(面)으로서의 문화적 환경'의 중시 원칙, '문화재관련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 원칙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³⁵⁾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문화재지표조사 의무 규정(제74조의 2),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의무 규정(제48조의 2), 문화재영향평가규정(제74조 제2항), 등을 두고 있다. 그밖에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발굴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문화재영향평가제도 외에 공해, 교통, 건설, 주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미술, 축제,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환경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문화환경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 문화재향유권

'문화재향유권'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며, 학술적으로 논의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문화재를 향유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법적 성격 내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이 존재한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제'의 핵심인 문화재향유권의 법리가 먼저 연구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김수갑, 충북대 법대). 즉,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공자부담원칙의 현실에서 문화재와 문화환경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관리재원의 대

35)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사회 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58-60.

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에서 문화재보호운동은 5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는데, 이 운동의 결과로 문화재를 향유할 국민의 이익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문화재보호행정에서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범규범적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문화재소송인 이장(伊場) 유적소송을 계기로 비단 유적에 한하지 않고 문화재에 대해서 일반국민(또는 연구자)이 당해 문화재에 관해 실제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화재향유권에 관한 법리가 전개되었다. 관할재판소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지만, 이로부터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른바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학술연구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환경의 보호를 통해 문화적 생활이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대표적 출소자격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점은 모두 '행정사건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문제이고, 그 뒤에는 국민의 실제적 권리의 향유가능성여부가 있었다 하겠으니 곧 이것이 국민이 가지는 문화재향유권 문제이다.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의 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권리의 규범적 근거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향유권의 관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권리가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위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곧바로 인용될 수는 없다. 즉, 문화재향유권의 실현은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문화재향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기본권 내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 법령의 규정 및 정립된 여러 해석원칙에 의해 문화재향유권도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문화재향유권을 인정하는데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못지 중요한 것이 시민의 문화재애호운동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향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2. 문화권 정부정책 현황

3-2-1. 문화자유권 정부 정책 현황

문화자유권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는 문화자유권의 세부영역인 표현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부문별로 정리하겠다.

1)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정치적·이념적 창작의 자유”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정치적·이념적 창작의 자유는 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제7조)이 사상 이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정치적·이념적 창작의 자유의 문제 보다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성표현의 자유”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성표현에 대한 정책적 기본 방향은 청소년보호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성표현물이나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 규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심의를 통한 등급제로서, 특히 해외 영상물과 음반은 수입추천제를 통해서 사전에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표현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 8월 영화 『둘 하나 섹스』 등급보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제한상영관 도입이나 외국영화수입 추천제, 외국음반수입 추천제의 폐지가 검토되는 등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감지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방향 전환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외화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외에 정부는 온라인 상의 성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2 6월부터 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1월1일부터 모든 멀티미디어게임장(PC방)에서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국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역시 중요한 쟁점 영역

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활동과 패러디활동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정토통신을 통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1995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거 출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초점을 맞추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1. 정보제공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추상적인 심의규정과 포괄성 때문에 국민들의 문화적 자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는 법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2002)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형성된 문화정세는 새로운 싸움과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당초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규제에관한법률안’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검열기관은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부담을 덜고, 좀 더 폭넓은 청소년보호정책을 이끌어내고자 현재의 법으로 변형시켰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제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상들을 규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기존에 문화관광부 안에 있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격상시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재편하면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장소 및 청소년 성범죄를 단속하는 강력한 청소년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청소년보호를 강화한다는 검열기관의 주장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문화매체들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반론은 많은 문화논쟁을 야기시켰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다가 1997년에 폐기된 ‘미성년자보호법’보다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신장시켜주는 법이며,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성인 제작유통업자들만을 처벌하는 합리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영상물과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행했던 공연윤리위원회가 1996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모델이 필요했는데, ‘청소년보호

법은 “검열의 시대”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시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법이라는 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론을 명분으로 표현의 수위가 높아진 성표현물을 통제하기 위한 허구적인 가설을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 장치이며, 창작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혐오감을 갖게하려는 더 강력한 정서적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다시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96년 청소년 폭력서클인 ‘일진회’ 사건과, 청소년들 스스로 제작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포르노비디오인 ‘빨간마후라’ 사건이 있다. 일진회 소속 학생들은 자신들의 살인 행위가 일본만화를 보고 모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이들의 진술로 인해 만화창작자들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 현상의 주범으로 매도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법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일탈 문제들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허구의식’을 심어주는 장치인 셈이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논리가 일반 학부모나 성인들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일부 창작자들만의 배타적 권리로 축소되거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곧바로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압도당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7> 표현의 자유 주요 심의기관

기관	발족연도	심의 매체	심의방식	쟁점 사안
영상물등급위원회	1999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전체관람가 12,15,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제한상영가등급의 분류기준과 실효성
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도서, 잡지, 문화, 전문신문, 전자출판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청소년보호위원회 에 설치근거 만화에 대한 검열
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	1997	공연물, 영화, 비디오, 영상, 음반 수입 매체	수입추천 여부	수입추천심의의 사전검열 가능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PC통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청소년 유 해, 불건전 매체 심의	전자적 부호 표시 에 의한 규제의 검열 가능성
청소년보호위원회	1997	청소년 유해매체	개별 심의기관 조 정 역할	심의 조정 역할 시의 2차적 검열 가능성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문화운동들이 대중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이후 국가의 검열 형태가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고, 이 법이 어떠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은 정작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지만,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모든 국가의 심의기관과 관련법의 심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데올로기적 '대부'를 자처하면서 관련 기관에 상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암묵적인 동의로 인해 관련 검열 기관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개별 심의기준에 있어 공통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대상도 문화예술 창작자들만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주지하듯이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특정한 문화적 표현물의 검열에 따른 문화논쟁들이 새로운 문화정세들을 낳았다.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함께 만화 1700종 510만권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사건을 시작으로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박진영의 「게임」, 김인규 교사의 부부나체사진,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폐쇄, 그리고 최근의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등급 논란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 논쟁은 시민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견들을 낳았고,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검열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문화운동은 순수문화예술 창작물 뿐아니라 대중문화 창작물에까지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 논쟁의 대중화를 주도했다. 97년에 결성된 '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01년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결성, 2002년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그리고 최근에 결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개혁포럼'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운동들은 가장 두드러진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이 글은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에 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당해왔고, 각각의 사건마다 어떤 문화적 논쟁들이 있어왔으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주도한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문화운동이 어떤 전개과정을 거쳐왔는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학술사상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이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교수의

자유는 1) 탐구와 연구의 자유, 2)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 3) 대학안에서 교수할 자유, 4) 교외에서의 활동과 발언의 자유로 구성되며, 학습의 자유는 1) 학습과 의사표현에 있어 제약의 부재, 2) 권위적 제약이나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견해와 신념을 표현하고 질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³⁶⁾

이같은 학술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발견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학술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침해는 교수(교사)를 포함한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사법적 수단을 통해 제재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상대학교의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검찰의 기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학의 교재를 비롯한 학문적 저작물이나 교수(교사) 및 학생들의 교수와 학습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한 제재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적 수단을 통한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이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해 설치된 공안문제연구소는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관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8만 여건에 이르는 출판물의 이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위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비롯한 학술적 연구의 성과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학문사상의 자유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3)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정부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인 입장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 판사는 2004년 5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

36) 박덕원, 「대학의 존재목적과 학문의 자유」, 『교육철학』 제11집, 1993: 87-90).

에 따라 병역 소집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무직) ○○○(22·노동)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2004년 7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최모씨(23세)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 11월 15일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는 “병역기피자 신고” 항목을 통해 “청소년층의 안보의식 저하에 따른 병역의무 경시 풍조 및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여론 확산에 편승하여 병역기피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건강한 병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여 병역의 의무라는 국가의 이익이 종교활동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http://www.mma.go.kr/www_mma3/shirker_5.jsp). 또한 병무청은 종교적인 이유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 대신 다른 형태로 병역을 수행하는 현역 대체복무제도이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민간역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사실상의 병역 면제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대체복무자들은 복무전에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전역 후에는 유사시를 대비해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45세까지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일체의 군사훈련을 면제해 주어야 하므로, 그것은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토분단이라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³⁷⁾

종교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현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종교계통 사립학교의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의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서울 대광고등학교의 강의석군 사건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로서 국가가 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보기에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종교를 포함한 건학이념 보다는 교육의 공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가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적 의식의 강요에 대한 정부의 무개입 역시 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종교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권위적 제약이나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견해와 신념을 표현하고 질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즉,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

37) 김중겸,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태를 보며」, 『병역』 통권 52호, 2002년 가을호.

한 침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재단 이사회에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이사선임 역시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에서의 종교활동 및 학문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언론표현의 자유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은 정부의 사전검열 제도를 통해 강한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는 현재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는 언론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양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언론취재의 자유와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공권력 보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언론이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기자들 사이에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제한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공권력 보도의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2-2. 문화평등권 정부의 정책 현황

문화평등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섯 가지의 세부적인 영역을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양성문화평등, 성적 소수자 문화평등,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탈북자 문화평등, 장애인 문화평등의 영역이다. 이같은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접근은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이라는 문화정책비전 보고서에서 스스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전담이나 조정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정도이다.³⁸⁾ 따라서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현황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제기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 양성문화평등

양성문화평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향은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차 계획이 진행 중인데, 양성문화평등과 관련한 계획은 1차 계획부터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차 계획은 크게 6대 기본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2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성문화평등에 관하여서는 기본전략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1차 계획의 주요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및 ‘문화예술인실태조사’시 남녀별 평가요소 도입(2000년)”이나, 전국 주부백일장이나 주부연극제 지원 등이 그나마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뿐, 문화시설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협의 상태에 멈추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현재 진행 상태에 있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문화평등은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양성문화평등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문화활동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닌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184쪽.

39) 여성부,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2002) 주요 추진성과」, 2003.

<표 18>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문화관련 주요 정책방향

- 각종 문화예술 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문화 현황파악 및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참여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여성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여성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참여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확대
-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경영직, 문화행정직에의 여성참여 기회 확대
-문화산업 및 콘텐츠관련 여성전문직종 개발 및 양성 지원
-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지역의 생활문화 복원 작업 지원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지원
-「여성사전시관」 운영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선정한 이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주관하는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새예술정책』을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문화비전정책과제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부 역시 이를 현실화할 추진체계를 보여주지는 못한 채, 문화비전정책과제를 통해 “1.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2. 양성평등 추진기반조성, 3. 양성평등 문화예술환경조성, 4.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확대, 5. 여성문화 창조지원, 6. 여성문화유산발굴, 아시아 여성문화교류 확대” 등 양성문화평등의 과제를 선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

를 전혀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성적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책적 지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성적소수자의 문화평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에서 기존에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결정한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서도 “동성애”는 변태적 성행위의 범주로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의 문화평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정부 정책의 혼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동 위원회의 영화 및 비디오의 심의기준(제8조) 가운데 비디오물의 분류기준에 제시된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변태적 성행위, 혼음, 매춘, 강간, 윤간, 근친상간, 시간, 수간” 등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 위원회의 게임물(PC, 온라인; 제9조), 게임물(아케이드; 제10조), 광고선전물(제5조) 등의 심의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정책과제이다. 『창의한국』이라는 제목 하에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정책비전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이라는 항목의 정책과제 속에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2.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3.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4.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5.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6. 아시아열린문화축제, 7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 제안” 등이다.⁴⁰⁾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정책적 지향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창의한국』은 앞으로 한국의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하고 있는 장기적 비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를 구체화할 세부 정책이 제안하고 있지는

40)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제2부 참고.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세 부사업을 “예시사업”의 형태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예시정책은 기본방향과 추진방안만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 이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재원의 조달이나 추진체계 등의 세부계획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 문화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실현 수단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 적응에 대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장 현지적응 훈련에만 치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재의 한국 정부에서 이주노동자 문화정책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체계들은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에서 수립·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 탈북자 문화평등

현재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화소비 생활에 대한 교육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탈북자의 자녀교육권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탈북자 자녀 총 416명 대부분 무학력자나 학교중퇴자들이다. 물론 이들 탈북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교육시설은 있다. 하지만 탈북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교육권을 확대하는 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계법은 주로 북한이나 그밖의 국가에서 받은 학력만을 인정하는 정도이며 특히 탈북자 자녀들은 체제변화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탈북자들의 문화적 적응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의 한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사회적응 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정착금 등지급(제21조),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생계보호(제26조) 등의 규정을 통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가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박약해 보인다. 이는 현재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비전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확대 분야에서도 탈북자의 문화권에 대

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또 그에 관한 구체적 정책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 단위사업의 한 부분으로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무관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장애인 문화평등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예안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문화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최근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상징적으로 우선 지하철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비전을 통해 사회적 취약자들의 문화권을 확장하는 정책을 제안(장애인 분야)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제반 법률적 근거들을 신설하고 있거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고안들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정책비전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교육권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부족하고 교육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부(1995)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1995년 현재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은 2.44%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보면 6~21세의 학령인구 11,535,899명 중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487,968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특수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997년 현재 48,098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9.8%(한국의 특수교육지표, 1998)만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적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2-3. 문화참여권 정부 정책 현황

문화참여권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은 퍼블릭 액세스, 문화교육권, 문화공공서비스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내셔널트러스트 등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이 다섯 영역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1) 퍼블릭 액세스

문화정책의 지향을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대라는 관점에서 문화참여권의 신장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6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신설된 문화부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확산의 차원에서 수용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게 되었다⁴¹⁾

정부의 이 같은 변화된 인식은 1997년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그를 뒷받침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문화비전 2000』에 그대로 반영되어 “21세기 한국 문화는 국민 모두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며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⁴²⁾ 이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창의한국』에서도 반복되어,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를 문화정책의 제1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적 지향 하에 현재 한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뚜렷히 감지되는 영역은 시민의 공공문화참여기회 확대 부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정부기관을 통한 시민의 공공문화참여기회 확대 노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액트)이다. “다양한 전문교육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안정화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는 2002년 5월 19일 개관되어 독립영화제작의 활성화, 미디어 교육의 강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⁴³⁾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1) 박광국·이종열·주효진, 「문화행정조직의 개편과정 분석: 비전-목표-하위목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4. 241-245쪽 참고.

42) 문화비전 2000위원회,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1997, 17쪽.

43) <영상미디어센터>는 구체적으로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1)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와 활용방안 홍보, 2)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3) 시민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이론 작업 등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정부 정책은 시민들에게 방송제작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 의거하여 한국방송공사(KBS)를 통해 한달에 100분 이상 시민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이들 단체들의 모니터링 과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의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⁴⁴⁾

2) 문화교육권

문화교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은 시민의 평생학습권의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다. 평생학습권은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기초적인 권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평생학습권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교육이념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로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해 4개 대학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권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위한 기초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문화교육권은 문화참여권의 저변을 형성하는 권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문화교육권은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와 문화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상호협력 하에 2003년 7월 23일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화기반 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기반하여 2004년 6월에 『새예술정책보고서』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교육은 전문가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향수할 대중들의 문화적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수요자가 형성되지 않는 불균형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문화예술부문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전문 강사풀제” 등의 문

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mediact.org/center/center05.htm>).

44) (http://www.kbc.go.kr/policy/policy_05_05.asp).

화교육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 왔다.⁴⁵⁾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보고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창의한국』 보고서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문화비전 27대 과제 중 제1순위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⁴⁶⁾

국민의 문화교육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향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인 ‘문화예술진흥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의 단계를 거친 상태이고, 또한 2004년 11월 2일자 문화관광부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서 문화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책과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과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이의 협력이 미비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문화교육권 확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정부는 공교육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실체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안교육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발전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진전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안학교에서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3) 문화공공서비스권

문화공공서비스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권리이다. 문화관광부는 시민들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을 위해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을 건립했으나, 소프트웨어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45) 문화관광부, 『21세기 새로운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2004. 6.: 2부 5장 참고.

46)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제2부 1장 참고.

로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시민이용 혹은 청년예술가들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사용 사례가 극히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공공서비스권 가 현실적인 권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공문화장소를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시민들의 공공문화공연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할인을 하고 있지만, 일부 공연장은 고가의 공연료가 책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생산성이나 기관의 운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양질의 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문화관광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공문화행정에 대한 감시권을 확대(문화행정감시, 예산감시, 문화정책 감시 등)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문화축제가 많이 개최되면서 공공문화축제에서의 시민참여권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공공문화축제를 실제로 주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축제에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민간에 각종 공공문화축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를 만들고 평가하는 사업에 대한 고려는 더욱 부족한 상태이다.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의 지역문화축제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축제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평가모니터링 사업에는 문화 NGO 단체인 문화연대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서 문화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문화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가 확대될 필요도 제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 시민영역에서 공공문화행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따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

부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의 자문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이 부분에서는 뚜렷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환경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미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발생한 자연 및 문화환경의 파괴에 대응한 시민운동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가 출발하고, 1907년에는 관련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진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그것을 환경 분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2003년 8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의 시민단체에 내셔널트러스트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셔널트러스트의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내셔널트러스트의 입법화 과정에서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법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문의 시민단체와 문화부문의 시민단체 간에도 이견이 제출되어 내셔널트러스트 법안의 주요 보존 대상을 환경으로 할 것인지, 문화유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가 지속되었다. 논의의 결과 한국에서 내셔널트러스트 관련법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0월 27일자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 그리고 각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범국가적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훼손 없이 물려주고 공공신탁의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 법안은 2006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다.⁴⁷⁾

47)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 2004. 10. 참고.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은 환경부와 문화관광부(문화재청)의 정부 편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이분하여 각각의 분야에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부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

3-2-4. 문화환경권 정부 정책현황

문화환경권은 주거생태권, 보행권, 문화환경영향평가, 문화재향유권 등의 세부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세부 문화환경권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생태권

한국은 헌법 제35조를 통해 주거생태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에서 주거생태권과 관련된 법률적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제1조)하도록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권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도시전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쾌적한 주거생태권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보완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가령 주거환경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녹지보존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쾌적한 주거권 확보와 자연보존을 위해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거지역 근린공원에 관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근린형 공원을 지어 주민들의 녹지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난개발로 인해 충분한 공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중앙일보』, 2004. 11. 17일자),

2) 보행권

보행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희박한 상황이다. 보행자들의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보행권의 확보가 절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도로교통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도로에서의 보행제한과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보행권을 제약하기만 할 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안이 마련되지 않다. 결국 한국에서 보행권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상에 준하는 규제와 의무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주거생활 전체에서 보행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3) 문화환경영향평가

문화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제도가 국토개발과 관련한 물적 인프라 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이를 포함한 비물질적·소프트웨어적 정책 및 제도의 도입이 낳을 수 있는 문화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1순위 문화부문 핵심전략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자율, 참여, 분권으로 문화정책방향 전환”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환경영향평가를 문화정책개혁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식화하였다. 2003년 8월 11일 문화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제도의 수립 시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즉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검증을 통해 확정·시행토록 하며, 문화적 타당성 검증 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참여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⁴⁸⁾

이같은 기본적 계획에 입각하여 문화영향평가제는 몇가지의 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문화영향평가제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법안의 성안이 이루어지면, 2004년에는 법령의 제정과 공포가 이루어지는 제도화 단계를 거치고, 2005년 시험 적용을 거쳐, 2006년에는 국정전반에 확산한다는 단계적 추진전략을 지니고 있었다(김규원, 2003: 3).

48) 김규원,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2003: 1-2장 참고.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의 도입은 예정했던 것 보다는 훨씬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관광부의 종합적 문화정책 전략비전 보고서인 『창의한국』에서는 여전히 문화영향평가제의 도입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이라는 전략과제의 세부추진과제인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단위 사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⁴⁹⁾

4) 문화재 향유권

문화재 관련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의 중핵을 이루어 왔다. 이 때문에 문화재의 발굴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청급기관(1급)으로 출범한 문화재청이 2004년 3월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것은 국가문화유산정책의 더욱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이어질 장기계획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국가문화유산정책의 전략체계를 구성하기도 하였다.⁵⁰⁾ 또한 한국 정부는 문화재보호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조 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보호를 체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재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발굴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의 문화재 관련 정책에서 이 보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정부가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재를 국민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높이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¹⁾.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문화재청이 문화서비스증대를 위한 관람객 서비스 현장을 발표하는 등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시민들과 외국 관람객을 위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49)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제2부 18쪽 참고. 문화영향평가제는 2003년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에서 “참여정부의 문화행정 혁신” 전략의 주요 세부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이의 추진 방안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까지 논의되었으나, 2004년의 문화관광부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http://www.mct.go.kr/korea/office/intro/intro_view.jsp?menu=552).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정보공개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상의 주요정책결정 항목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room.jsp?menu=251).

50)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제2부 11장 참고.

51) 『창의한국』도 한국의 문화유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일반 국민과 격리된 문화재 보호 정책”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호흡하는 문화재 보호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문화관광부, 『창의한국』, 제2부 11 장 참고).

다⁵²⁾. 마찬가지로 문화재에 대한 교육도 미미하게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재 관람과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산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와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사례도 주목할만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2) 이런 점은 『창의한국』에서도, 그리고 문화재청의 2004년 업무계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의한국』은 물론이고, 문화재청의 2004년 업무계획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나 전통문화 보호·전승을 위한 사회 인식 제고와 함께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문화재청의 주요 임무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계획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문화관광부, 『창의한국』, 제 2부 11 장; 문화재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 5월자 참고.

3-3. 문화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3-3-1. 문화자유권 침해 및 구제사례

문화 자유권의 침해는 국가나 정부, 언론 등의 기관들이 개인이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영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된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많은 영역에서의 침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과거 비민주적인 습속들에 의해 문화활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한 간섭과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즉 문화자유권의 실현은 아직까지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이다.

1) 표현의 자유

(1)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

이런 과도한 제한과 간섭의 사례 가운데 정치적 이념표현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가 신○○ 화가의 『모내기』 일 것이다. 1989년 신○○의 작품 『모내기』를 인천 재야청년단체가 기금사업을 위해 부채를 만들면서 신○○의 『모내기』 그림을 부채에 인쇄하면서 당시 인쇄소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의 모내기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이적 표현물에 해당된다고 기소한다. 또한, 검찰은 신○○의 모내기뿐 아니라 작품 4개와 부채, 달력을 압수했으며 신○○은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1992년 서울형사지법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차 심의까지 무죄 판결이 났으나(서울형사지법 1994. 11. 16. 선고 93노7620 판결) 1999년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로 『모내기』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판정을 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이와 함께 신○○의 모내기와 당시 함께 압류됐던 달력 또한 압수조치를 받는다. 이에 신○○은 유엔인권위원회에 『모내기』에 대한 판결을 항소했으며, 2004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작품에 대한 원상복구 및 반환, 보상권고를 법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 결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는 신○○이 작품의 훼손여부를 알기 위해 제기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 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신○○은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장했다. 신○○의 『모내기』의 갈등에서 나타난 것은 개인적인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미술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문학예술의 경우, 시인 김○○의 「오적」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고전적’인 사례일 것이다. 1970년대 군사독재가 한국사회를 억압하고 있을 때, 사회의 불평등을 자행하는 무리를 ‘오적’으로 빙자해 풍자했던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1970년 5월 『사상계』에 당시(譚詩) 「오적」을 발표했다. 1970년대는 3선 개헌 반대파동의 여파가 가시기 전이며, 이듬해로 다가온 양대 선거를 맞는 시점으로, 독재와 대항 세력간에 참여한 마찰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3선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걸림돌을 제거한 군사정권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과 금제에 치중했다. 특히 저항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에 삼엄하게 감시를 실시했다. 이런 시점에서 장○○가 주재하는 종합잡지 『사상계』는 김○○의 저항적 풍자시 “오적”을 실은 것이 화근이 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원래 김○○의 “오적”이 『사상계』에 발표되었을 때만하더라도 시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었다. 그런데 이 시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6월 1일자에 실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6월 2일 새벽 1시 50분쯤 중앙정보부와 종로경찰서 요원들에 의해 『민주전선』 10만부가 압수되고, 김○○를 비롯하여 『사상계』의 대표 부○○, 편집장 김○○,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이 구속됐다. 게다가 『사상계』는 판매금지를 당한다. 당시 “오적”이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반공법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음악의 경우, 세계적인 작곡가 윤○○을 예로 들 수 있다(대법원 1968.07.30 선고 68도754 판결). 그는 1967년 동베를린공작단 사건(일명 ‘동백림’ 사건)에 휘말려 한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세계 각국의 우수한 예술인들의 탄원에 따라 독일로 귀한한 후, 죽을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도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그의 음악까지 한국에서 연주될 수 없었다. 그의 음악은 1982년 제7회 대한민국음악제에서 이틀간 ‘윤○○ 작곡의 밤’이 열렸을 때 겨우 연주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까닭도 그해 8월 북한에서 윤○○의 ‘광주여 영원히!’가 초연되었기 때문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서 공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그의 고향 통영시가 주도해서 지난 1999년부터 윤○○을 기리는 음악제가 조용히 열리고 있다. 통영문화재단과 국제윤이상협회가 99년 5월 윤○○의 음악을 위주로 하는 제1회 통영현대음악제를 열면서, 그의 음악은 조용히 한국에서 복권되었다.

(2) 성표현의 자유

2001년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무삭제)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전시 자체를 막으려 하며 사건이 시작된다. 검찰과 경찰의 위협 때문에 전시를 준비한 작가 안○○의 작품 『아 한반도』 거리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작품의 전시를 거리가 아닌 전시실로 변경 설치하게 되어 작품의 변형 이뤄지게 되고, 박○○의 작품의 경우 사진으로 준비되었던 작품이 검찰과 경찰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죄로 협박을 받게 되자 개막 몇일을 앞두고 사진에서 유화로 변경 전시하게 된다. 최○○의 『여고생』이라는 작품은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종로경찰서의 지적에 의해 『여고생』이었던 작품의 이름이 변경되어 전시되게 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문화활동의 제한과 간섭은 그 시기에 따라 창작의욕의 상실이나 표현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분법적인 냉전논리나 편협한 정치논리에 의한 제한과 간섭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침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 교사 ‘홈페이지’ 사건과 선거 시기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선거법 논란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홈페이지’ 사건은 김○○(2001년 비인중학교 교사이자 미술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 부부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당시 학부모 및 작가는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에관한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홈페이지 회선 회사인 한국통신에 홈페이지 삭제요청을 했고, 한국통신은 이를 받아들여 김○○의 홈페이지를 자동폐쇄시켰으며 이후 김○○는 검찰에 구속된다. 이후 해당 작가의 작품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해당 검찰에 소송을 파기시킨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 구제되었지만, 김○○에게 가해졌던 유무형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탄압은 특히 대중문화에서 극렬하게 진행됐는데, 1997년 불량만화 판매금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논란에 중심 아닌 중심에 섰던 만화는 ‘음란한 내용’을 실는다는 이유로, 1700종 500만권이 판매금지 처분되는 사상초유의 ‘분서갱유’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사회의 편견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던 만화는 성인만화는 물론이요 청소년만화까지 일거에 뿌리 채 뽑히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화는 오늘날까지 제자리걸음은커녕 꾸준히 퇴보를 거듭해, 만화 시장이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은 만화가 14명이 공동으로 관련 법조항

을 헌법소원에 제소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만화가들은 음란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99헌가8). 하지만, 한번 꺾인 만화의 발전을 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이○○의 『천국의 신화』도 빼 수 없는 사례다. 『천국의 신화』는 한국의 고대사를 신화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평생 역작으로서 기획된 만화였으나, 인간과 동물의 성행위 장면이 문제가 되어, 만화가 제대로 제작되지 못할 정도로 파행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법적인 논란과 대법원에서의 무죄판결로 작품에 대한 음란성에 대한 논란이 끝났지만, 논란 과정이 진행되면서 가중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의 작품을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야 하는 부담감들은 작가들의 창작과 표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겠다.

대중음악도 만화만큼 탄압받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탄압받는 영역이다. 2001년 가수 싸○의 음반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가요 음반 소위원회로부터 ‘연소자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과거 국가보안법에 못지않은 힘을 행사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싸○○의 데뷔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대중가수가 연소자 이용 불가 판정을 받기는 1999년 조○○, 200년 DJ ○○에 이어 세 번째다. 싸○○의 경우, 첫째 앨범 재킷 속지에 있는 남성 성기, 콘돔 등을 문제 삼았으며, 둘째 「I Love Sex」, 「놀아보자」, 「2세의 처」, 「불륜」 등에는 음란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청소년 정서를 해치고 있으며, 셋째 ‘Bullshit(쇼킹 양가 집규수)’ ‘놀지도 못하고 좆밥이래(놀아보자)’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3)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선거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티즌의 정치 토론이나 패러디물이 선거법 저촉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데, 특히 ‘자동검색시스템’ 등을 동원한 선관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과도한 삭제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돕고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따라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토론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며, 국

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자퇴생들의 사이트가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반사회 사이트'로 명명해, 합리적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퇴생들의 자유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이루어진 후보자 패러디를 과도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역시 과도하게 정보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일 것이다. 2004년 총선은 가히 '패러디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풍자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이 홍수를 이루었는데, 그 만큼 수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브이즈닷컴 사이트상에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 만나라당」이라는 제목의 노래 및 노랫말, '최○○과 자이리톨깸', '○○이의 일기' 등의 패러디물을 불특정 접속자들이 듣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초기화면 상단에 게재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04. 4. 7. 위 라이브이즈닷컴 운영자인 김○○ 외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친일청산법, 대통령탄핵 등과 관련하여 패러디 작품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하얀쪽배', '마구너쓰'라는 아이디의 대학생 및 직장인 신○○, 권○○, 이○○ 역시 수사대상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신○○가 원심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문화의 영역은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흐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 국가기관들이 문화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경우 문화영역의 변화와 새로움들은 언제나 국가기관의 능동적이지 못한 태도에 의해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학술사상의 자유

문화영역에서 일어나는 침해의 경우 문화의 창작과 표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적인 시각에 의해 학술사상의 일상적인 교육과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데, 2004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밝혀진 ‘공안문제연구소’ 사건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는 5공화국까지 용산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설치돼 있던 내외정책연구소가 1988년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 설치된 것이다. 이후 1995년 서울경찰청 내에 있던 보안문제소와 통합된 공안문제연구소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임무는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개발과 국내좌익세력의 실상 및 전술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 9가지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주요업무는 각종 문서들에 대한 이적성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 5년간에만 35,000을 감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서 통일연대나 민중연대에 소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총 등등, 통일·노동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희망연대, 문화연대 등의 단체들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감정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활동은 감정결과가 검찰기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1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이번 2004년 국정감사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연구소장의 주도 하에 2002년 경찰청 보안국이 수사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을 소속 연구원들의 뜻과 달리 ‘좌익·용공’으로 몰아붙이는 등등,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내부제보가 잇달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사회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학술사상에 대한 감정활동과 검찰기소로 이어지는 감정평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학술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이며, 명확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1)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오랫동안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근대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학문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꾸준히 학문적 자유를 실천하다가, 본격적인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건 사건이 바로 1977년 해직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민주교육선언」과 1978년 성○○외 11인(전남대 교수)가 발표한 「우리의 교육지표」이다. 그 무렵 리○○(한양대 교수)가 쓴 □□우상과 이성□□과 □□8억인의 대화□□가 공안당국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생겼다. 1979년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사건 결과, 아카데미의 교육 간사 6인은 ‘불법 지하용공서클을 구성했다’는 혐의로 연행되어 불법 장기구금, 무자비한 고문을 겪고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 당했다.⁵³⁾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해직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잠시 학문의 자유가 만개한 듯 했다. 그러나 그 해 봄이

53) 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50년사발간위원회, 199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가기도 전에 1980년 5.17 한○○(서울대 교수)가 예비검속으로 구속되었고 7월 30일에는 김○○, 변○○, 이○○(서울대 교수)가 강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때 전무후무한 전국에 걸쳐 수십명의 교수가 대량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침체가 들어섰다가, 1988년 6월 3, 4일의 한양대학교, 3,000 여명의 연구자, 학생,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단체연합이 개최한 제1회 학술단체연합 심포지엄에서 김○○(서울대 교수)은 학문의 종속화를 반성하고, 우리의 역사현실에 뿌리박은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지향함으로써, 다시 한번 학문사상의 자유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화와 새로운 사회, 민족적 민중적 학문에 대한 열망을 실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3, 4일 이틀간 20시간에 달하는 토론의 백미는 서○○(충북대 교수)의 「중간 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발표논문과 한○○(당시 서울대 교수)의 토론이었다. 서○○의 연구는 1980년대 말 사회구조와 그 성격을 분석적으로 설명했고 1970년대 이래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혁의 흐름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론'으로 명명했다. 나아가 학술 연구에서도 사라졌던 노동자계급을 최초로 학문적 용어로서 복원 및 정식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세대 교수)이 조선일보 칼럼에 이 논문을 주제로 삼자,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에게 검찰출두를 요청하는 사태로 번져나갔다. 이에 10개 학술단체들과 민교협이 합동으로 벌린 서명작업에 300여명의 교수들이 동참하였다. 또한 토론자였던 ○○○마저 서○○의 논문은 한국사회가 후진국 중 특이한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 자본가 등 다양한 계급분화가 고도로 진척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는 박사학위논문의 논지를 발전시킨 것임을 주장했다. 진보학계의 빠른 대응과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입은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냉철하게 보도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여론이 드세어졌다.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은 결국 소환 대신서관모의 견해서를 우편으로 제출 받은 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

(2)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월간조선』은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가 이 책을 통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이적행위를 했으며 학자의 저서에 대해 공개 고발했다. 당시 국회의원 ○○○의 원도 ○○○의 책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현행법 위반사항을 조사 보고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를 했다. 계속 되는 극우 언론과 단체들의 여론 재판이 잇달았다. 책이 발간된 지 2년이 다 될 때였다. 1997년 8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월간조선』이 ○○○를 고발하여 서울지검에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12월 29일 ○○○는 3개월간 출국금지 및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1997년 12월 29일 서울지검은 ○○○를 '반국가단체

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것'이라 하여 '국가보안법 7조 5항과 1항'을 적용시켰다. 이 사건 역시 반공주의를 기치로 세운 극우들이 주도하는 구태의연한 여론몰이 재판사건이다. 극우세력들은 집단 히스테리를 보이면서 남북의 상호 적대감을 부추겼고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집착했다. ○○○ 사건의 특징은 국가기구가 하청·용역하여 우수도서로까지 선정된 저서가 극우세력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는 당시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03년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설명하는 등 북한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부 발췌 부분만을 내세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한국사회의 이해○○(대학교양교재) 사건은 1994년 7월 27일 여름에 시작되었다. 서점에 깔린 그 교양교재가 다른 책들과 함께 압수되고 '지이출판사' 대표에게 검찰 출두요구서가 날아왔다. 급기야 대검공안부장이 대학교양교재 내사를 발표하자 방송·언론사에서는 서강대 총장 박홍의 '빨갱이설'과 관련지어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들을 거론했다. 또한 검찰 측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교재 분석을 토대로 여론 재판을 전개했다. 그들은 그 교재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또는 '저자들은 주사파'라는 식의 억측을 했다. 이에 집필 교수 8명은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안당국에 의해 재단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밝혔다. 같은 무렵 전국 각지, 각 대학과 연구 단체들은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공안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서, 항의서한을 잇달아 발표했다. 8월 31일, 담당 판사(○○○)는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11월 30일 검찰은 ○○○과 ○○○을 국가보안법 7조 등의 위반혐의로 창원지법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1심과 2심에서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4) 학술사상 단체활동의 자유

1991년 6월 27일, 국군기무사령부 및 검찰 요원에 의해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연행, 구속으로 시작된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사태가 발생했다(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2). 1987년 이래로 고양된 학문의 르네상스와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

회주의 진보 이념 모색을 위해 공동 집필한 저작인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민맥, 1991)이 공안당국의 철퇴를 맞은 사건이었다. 서사연 연구원인 신○○(사건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경기대학교 강사), 권○○(사건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건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송○○(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사건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사건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홍○○(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사건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 중) 등이 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에 강제 연행되었다. 6명 중 4명이 구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세미나 자료 및 운영관계자료, 각종 장비 일체를 수색, 압수당하기까지 했다. 학문의 자유가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공안당국은 연구원들의 연구 및 저작활동내용이 ‘남한 현실을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 독점자본가계급에 의하여 노동자계급 등 민중이 착취당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계급동맹을 형성하여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파쇼정권을 타도’하는데 있다고 보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하○○)가 결정되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에 25개 학술관련연구단체들이 참여했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원들의 소속 대학과 학과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신○○은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집행유예 2년, 권○○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와 송○○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나 강○○의 예배자율권 요구 등은 한국사회가 보지 못 했던 개개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로 볼 수 있으며, 문화적 권리의 증가와 함께 과거와는 다른 인권 개념에 확장과 적극성에 의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졌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 종교적 표현의 자유

미션학교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다. 이러한 억압적 관행에 맞서, 강○○(대광고등학교 3학년)은, 대광고등학교가 기독교 계열의 다른 미션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재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강제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내 방송을 통해 2004년 6월 16일 종교의 자

유를 선언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학교는 6월 18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강○○에게 '종교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전학을 권고했지만, 강○○은 이를 거절하였고, 학교 측은 6월 25일까지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로 퇴학시키겠다고 통보하고, 결국 7월 5일 제적처리를 하고 만다. 이에 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서울북부지원에 퇴학무효소송을 내고, 46일간의 단식으로 학교는 마침내 강○○을 복적시키고 예배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자 강○○은 재차 단식에 들어가고 학교 측은 일주일 만에 합의사항을 이해하게 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4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여호와의 증인 쪽은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숫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살펴보면,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신자로 '좋은 벗들'에서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벌인 오○○(30)씨, 평화주의자이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인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한 나○○(28)씨, 평화주의자로 진보잡지 '아웃사이드'의 발행인이었던 임○○(29)씨, 평화주의자로 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대표로 활동한 임○○(30)씨, 평화주의자로 사회당 대전시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27)씨 등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각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어 있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단순한 병역기피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양심에 따른 결정을 처벌하여 범법자로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4) 언론취재의 자유

국가기관들에 의한 개개인과 집단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제한과 침해와 함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띠는 것이 바로 언론에 의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경우 그 구제와 해결이 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언론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구제와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의 경우 엠바고를 둘러싼 침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언론의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역시 오랫동안 억압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3공화국 시절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분단상황을 통해서 그들 정부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동원한 사례는 그 시절에 언론이 정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얼마나 독특히 해냈는가를 보여준다. 정부홍보는 정부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한다든지 정부정책의 성과 혹은 업적을 주지시키기 위해 고지, 해설, 설득, 선전, 광고, PR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은 실질적으로는 현 정치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상황,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여건은 우선적으로 방공을 강조하게 하였고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정책에 치중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단위의 전쟁을 경험한 나라의 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안보문제에 직면하여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즉,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의사와 동기로 사회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노출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보의 질과 양을 통제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은 3공 때의 담화문을 채취한 것이다. "그들은 분명 제 2의 6·25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도처에서 대규모의 무장간첩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군관민이 합동노력으로 발본색원하여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 담화문 문장에서 북괴의 호전성향을 암시하고 있거나 그 구체적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개념은 '제 2의 6·25'와 '무장간첩'이다. 특히 6·25는 북한의 전쟁도발성향을 잘 나타내는 역사적 사실로서 강조되는 전례인데, 그런 이유로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호전성과 위험성을 강조할 때 일정의 상징적 어휘로서 사용되었다.

1980년대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다. 신군부는 박정희 군부독재와 필적할 만큼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한국의 80년대는 이 군부독재의 폭압과 그 폭압에 맞서 싸운 민주세력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이 싸움에서 한국언론은 독재권력의 없어서는 안 되는 우군이 되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히 그들의 권력탈취와 유지를 도왔다. 유신정권 동안 권언유착으로 권력에 순치된 한국언론은 80년대 계엄령 아래서 실시되던 언론검열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사 안의 유신잔재들의 협조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사회혼란으로 조작해 냄으로써 정치군인들의 권력탈취를 방조하였다. 일선기자들 일부가 검열거부운동 등으로 언론의 자율을 추구했으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당하고 말았다. 한국언론들은 전체로서 단결되고 조직된 힘으로 자율을 추구하기는커녕 언론인들의 대량해직, 언론사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 언론의 목을 죄고 언론을 타올로 몰아넣는 조치들을 수수방관하거나 찬동하였다. 이후 한국언론은 보도에 관한 권력의 지시인 보도지침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따랐다. 말하자면

철저한 타율과 굴종의 언론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한국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타율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도착증을 보이기도 했다. 보도지침의 일부는 용기 있는 한 기자에 의해 월간 『말』 지에 넘겨져 1986년에야 겨우 폭로될 수 있었다.

(2) 언론의 취재원 보호의 자유

엠바고는 보도 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이다. 특정 기사가 그냥 보도되었을 경우 그 파장이 매우 클 경우 파장을 줄이기 위한 준비과정 동안 감시 보도를 하지 말고 유예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언론사들은 이제 보도해도 된다고 하기 전까지는 기사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 취재원에 대한 배려문제들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경우 과학적 발견에 대한 국제보도의 관행을 깬 한 국내 언론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황○○로부터 유전공학에 한 획을 그을 연구성과를 전해들은 『사이언스』 측은 전 세계에서 1,500명의 기자를 초청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 국내 일간지가 앞서 보도하는 바람에 기자회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문 저널은 일간지 등에 먼저 알려진 연구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일간지는 저널의 발간 시점까지 보도를 제한(엠바고)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를 어긴 경우 예정된 논문 게재를 취소하는 일도 있다. 이런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고, 국내 일간지의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는 논문의 발표와 기자회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2004년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이 범인검거를 이유로 신청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경찰은 주범을 검거할 때까지의 '무기한의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기자단은 '무기한 엠바고'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엠바고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선에서 엠바고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엠바고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언론사들이 엠바고를 이유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식품의 유통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일병 사건은 1984년 4월 2일 육군 ○○사단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두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은 입은 변사체로 ○○○일병이 발견되자 당시 사단 헌병대는 소속 중대장의 이상 성격에 의한 학대를 비관 중대장이 순찰을 나가자 자신의 M16을 휴대하고 폐유류고로 가 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을 발사하며 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위원회의 조사와 맞추어 ○○○일병과 함께 군대 생활을 한 동료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일병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준비되었으나, 국내 일간지의 ○○○기자가 이런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이들의 신원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위의 위협과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된 것을 이유로 ○○○일병의 군 동료들이 기자회견과 사실에 대한 공개를 꺼져 진실규명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게 된다.

엠바고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해 그 파급력이 크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2004년 안○○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텔런트·프로야구선수 병역비리 사건, 불량만두파동 사건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정신에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피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여, 사법기관의 최종 확정판결 전에 여론재판에 의해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죄자로서의 낙인찍히며 무죄로 추정된 후에도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양심적 내부고발은 합리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고발에 걸맞는 포상은커녕, 공공연히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일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자리를 잡을 여건을 빨리 마련하게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예산낭비를 폭로했던 박○○사건을 돌아보자. 국방부 무기구매 실무 담당자였던 박○○은 군 예산 낭비의 실재를 폭로하였다. 국방부 조달본부에 근무하면서 외자조달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제도나 관행적 모순이 군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의 제출 등의 필사적 노력을 백방으로 벌여 보지만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오히려 전혀 판판으로 치닫고 내부에서는 갈등만 생기면서 감정의 골만 뚫는다. 게다가, 내부 상황은 악화만 거듭하게 된다. 그는 조달본부 내에서 이 문제로 1996년 한 해 동안 많은 곤욕을 치르고, 또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민원을 낸 다음인 1997년 한 해 동안은 굴욕적인 모욕과 수모를 겪는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던 즈음 IMF가 터지고 그러자 그는 마침내 밖에까지 이 사실을 알릴 결심을 한다. 무기부품 조달관으로 그가 조달본부에서 그 동안 경험했던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그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폭로 형태로 마지막 교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끝에 내린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발은 헛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연

3억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을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국방부는 K1전차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면서 최고 6배까지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덧붙여, 이후 국방부 조달본부는 가격정보에 어두워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제법률 국제무역 외환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사건은 한겨레신문이 1990년 5월 11일 및 12일에 걸친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퍼센트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 감사관은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의 작성과 사표를 중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직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구속하였고, 감사원은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석연찮은 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 감사관은 구속적부심청구심에서 8대 의혹을 추가로 고발하였으며, 상당부분이 잇따라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경유착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구속과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6년간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이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감사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정년퇴직했다.

다음으로 윤○○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고발을 보자.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이병은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가 당시 김○○ 평화민주당 총재, 김○○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김○○ 추기경 등 약 1,300여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윤○○이병은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국방부는 윤○○이병이 제시한 민간인사찰의 명백한 증거들에 대

하여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일개 이등병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태를 개탄하면서 운동권세력과 연대한 행위로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였으며,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었다. 윤○○이병은 기자회견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년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이듬해 군 사법부에서 2년 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공주교소도에서 만기 복역 후 출소하였다.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사건은, 육군 9사단 소속 ○○○중위가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와 대리투표행위와 여당지지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으며, 해당부대의 500여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위의 증언이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소영웅주의자 등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언론사 등으로 200여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를 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위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되었으나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전역군인들이 ○○○중위의 고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줌으로써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취소확정판결을 받아 중위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531 판결).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사건은 1992년 8월 31일 ○○○ 전 충남 연기군수가 동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관권 및 금권 선거에 대한 비리를 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고발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야당에서의 고발을 문제시하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흑색폭로라면서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그 동기도 인사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총선관련동향과 도지사가 준 수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전면 부정할 수 없었고 결국 충남 연기군에 국한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축소하여 ○○○와 ○○○ 충남도지사, ○○○여당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대통령 선거를 석 달 남짓 남겨두고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는 1995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물품과 돈을 건네준 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국발달장애센터 해인원(현 동산원) 보육사로 근무하고 있던 ○○○는 1994년 3월 '해인원이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고, 보호자들로부터는 처음 해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횡령하였고,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 이를 해인원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걸음』 과 『장애인복지신문』이라는 장애인 관련 월간지와 신문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해인원에서는 ○○○가 중요한 법인 서류를 훔쳤다는 이유 등을 들어 8개월 뒤 보육사에서 해임을 시켰으며, ○○○는 1995년 11월 절도죄로 구속돼 1996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다음에야 1996년 8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장은 1994년 8월 당구장을 비롯하여 관내 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시간외영업과 미성년자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과 파출소가 경찰청 감찰계와 감사원에 운영경비를 불법 지출하고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은 파출소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6월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직원용화를 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경찰서 측은 제보이후 ○○○경장에 대해서 파출소 소장폭행,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와 고발내용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 이로 인해 직원들의 용화를 해쳤다는 이유로 파면조치를 하면서도 ○○○이 제기한 파출소 운영 경비 불법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뇌물 역시 그만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파출소 운영경비 유용문제가 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게 되나, 역시 이로 인해 인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이 끝이 났다.

웅진축협 백령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는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군부식을 납품하던 웅진축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 보급참고, 선임하사 등과 짜고 현품을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9천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속 상급자에게 전말을 보고하였으나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에 1993년 11월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게 되자, 1994년 10월 참여연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는 본래직급인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직원으로 강등 당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성인사를 당하고, 마침내 1995년 9월 부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면직되었다. 이러한 인사횡포에 맞서 소송 끝에 1996년 11월 '부당전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1996년 4월, 감사원의 ○○○주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효산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효산은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감사원은 ○○○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고발이후 효산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을 해준 사실 등이 밝혀져 ○○○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는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고발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순순한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2000년 3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지내고 퇴직한 ○○○ 지방교육행정주사는 19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비리를 포함해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고발하였다. ○○○는 이 책에서 일선학교의 인사 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 학교비자금 조성방법, 교육청 종합감사시 감사직원에게 학교공금으로 접대비 지불 등 교육현장의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는 10월에 ○○○가 책에서 고백했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법무부의 '내부고발자는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는 방침과 '횡령한 돈을 되갚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석방하였다. 한편 검찰은 책자에서 언급된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 3명과 서부교육청 서기관 등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인 황○○, 윤○○, 황○○, 조○○, 석○○는 '도시통근형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 축상발열(기차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심하면 바퀴축이 부러져 열차가 탈선하는 사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다 불가능하자 이를 1998년 10월, 12월, 99년 1월에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와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철도청은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보다는 제

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하여 결국 99년 4월 황○○에 대해서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사에게 폭언과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윤○○, 황○○는 업무태만과 상사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사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조○○, 석○○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중 황○○, 윤○○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받아 복직하였으며, 황○○ 역시 2001년 3월 서울고법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복직했던 황○○, 윤○○에 대해서 철도청은 다시 3개월 정직 2개월 정직의 재징계를 하였으며,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3년 간 감리원으로 일하던 ○○○가 2000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공사감리 과정에서 내화, 불연, 방수처리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사례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나 감리단이 이를 덮어왔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의 자재 샘플과 직접 채집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최우수감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따지는 감리원들을 시공사 직원이 폭행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00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실을 안 인천국제공항공사쪽과 시공사는 그를 '왕따'로 만들고, 공사 측에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교체를 당했던 상황이었다. 공사 측에서는 한 감리원의 제보만 믿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시정조치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객터미널 방수재 선정의 문제로 인한 방수 기능 결함 등 부실공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는 고발로 인해 평생 업으로 삼았던 건설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 7월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주둔 미8군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기지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단 방류 장면을 담은 사진과 약품, 문서 등을 공개했다. 이것은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미군은 한국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한 미군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에 앞서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혈관주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 왔으며, 이를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처리시설로 이송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8군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면서 미8군사령관이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자체조사를 통해서 '방류량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였고, 영

안소 부소장이 무단방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제보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문제삼아 재계약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측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을 공식 거부한 가운데 영안소 부소장을 소장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3-2. 문화평등권 침해 및 구제사례

문화평등권의 침해란, 문화평등권이 누구든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기회를 국가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것,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문화 활동의 결과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평등권의 침해는 사회의 약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성들과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침해사례들을 이야기 하겠다.

1) 양성 문화평등

(1) 양성표현의 자유

여성문화에 대한 침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방궁 프로젝트를 놓고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는 2000년 문화관광부가 정한 '새로운 예술의 해' 당선작 중 하나였다. 참여작가는 페미니스트 미술 그룹인 '입김'의 여성 미술가 8명으로, 2000년 9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훈정동 종묘 시민공원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의 구성은 「미술과 놀아봐!」라는 전체 제목아래 남녀 성기 모양의 뽕기를 제공하는 「뽕기 따먹기」, 자궁을 통과하는 듯한 흠을 만들어 생명 탄생의 신비를 체험케 하는 「자궁으로의 초대」를 비롯해 '자궁'을 키워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되었다. 그러나, 작품을 설치하던 오전 9시 전주 이씨 종친회에 소속됐다는 중장년 남성들 2백50여명이 나타나 설치된 작품들을 뜯어내며 행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땅따먹기 놀이를 위해 작가들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곳에 와서는 물감통을 발로 차고 잔디와 흠을 뿌렸으며 분홍색 치마를 공원에 걸려고 하자 “여기가 어딘데 감히 치마를 펼터이나”는 등 폭언을 했다. 묶어둔 줄을 끊고 팔,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을 쿠션으로 제작한 정○○씨의 작품을 들고는 “588에서 온 년들이지” “네년들이 벗어봐” 등등의 성적인 모욕을 가하였다. 수적 열세와 폭언, 작품을 뜯어내는 무력행사에 위협을 느낀 여성작가들은 작품을 한곳에 모아놓고 지키면서 대책을 논의했으나 확정기를 통해 이씨 종친회 등에서 성명서를 계속 발표하는 바람에 결국 철수하게 된다.

(2) 양성문화 평등의 사회적 실현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성들에 자기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분류

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 첫자리는 성별 구분을 나타낸다. 18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9, 여자는 0, 19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1, 여자는 2, 20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3, 여자는 4로 구분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분류는 남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여성을 나타내는 숫자보다 앞에 있다. 이런 분류는 따르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성부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여학생들에게 남학생 끝번호의 뒤부터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유한 적이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분류는 남성의 뒤에 여성이 있도록 강제하여 남녀의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녀의 성역할의 고정의 문제는 2003년 11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교복을 ‘치마’만 입게 한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되어 그 문제가 이미 지적되어왔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문제는 양성평등의 문제와 함께 성적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현행 주민등록제도 아래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특정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성을 구분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규정당하게 된다.

기존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통한 여성문화의 교류나 여성문화예술기획자 양성, ‘또하나의 문화’나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여성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론 작업들의 지속적인 출간들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계획되고 있는 양성평등문화지수 개발이나 문화예술위원회 여성분과의 신설, 여성문화센터 마련과 여성문화예술 복합센터 건립들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문화평등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그들의 성적취향의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 성적소수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사이트 엑스존은 2000년 8월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게 된다. 이에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공공기관이나 PC방에서 성적 소수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포털사이트에서 성적소수자 관련 용어들이 금칙어로 지정되고 성적소수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성적소수자들의 활동을 막고,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것으로 반발하여 2002년 1월경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

결론에서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령 규정에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행정처분 무효사유로 보긴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차단 기준과 목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마구 보급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외 불건전 사이트 목록’이라는 정체불명의 차단목록을 시중 차단용으로 보급하였다. 이 목록에는 다수의 해외성적소수자 인권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과도한 차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에 의한 차단은 언제나 의도한 것보다 광범위한 차단을 낳는다. 특히, 차단소프트웨어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사이트들까지 마구잡이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런 차단용 프로그램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도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소수자들은 일단 차단이 된 후에는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1) 성적 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성적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에 의해 혐오와 배타적인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적소수자의 경우 에이즈와 관련되어 에이즈가 분명 질병이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은 의학 분야에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인을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도덕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다. 에이즈의 경우 감염의 경로가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감염경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문제로 이해하고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 동성애자로서의 오해와 현행 현 ‘후천성면역결핍증병 예방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의 신고 및 보고, 제3장의 검진, 제4장의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등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며, 감염인의 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2) 성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남성동성애자 최대 사이트인 ‘이반시티닷컴(www.ivancity.com)’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폐쇄과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당정보 삭제요구’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7월 중순, 이반시티닷컴을 심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음란판정을

내리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당 정보 삭제요구’는 이반시티닷컴의 회선제공업체인 한국인터넷데이터시스템(KIDC)으로 내려졌다. KIDC로부터 시정조치를 전해 들은 서버호스팅 업체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쇄했다. 문제는 시정조치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삭제권이 전혀 없는 회선제공업체에 내려졌다는 것이다. ‘해당정보’ 삭제는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나 사이트 운영을 대행하는 웹호스팅 업체만이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회선제공업체나 서버호스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첫째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둘째 회선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셋째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반시티닷컴 폐쇄 사례에서 보듯, 회선제공업체에 내려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부 삭제 권고’가 ‘사이트 전체 폐쇄’로 이어지기 십상인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홍콩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1997)다. 이 영화는 대표적인 국제영화제인 칸느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지만 주연인 양조위와 장국영의 동성애 장면이 문제가 됐다. 수입될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장면을 삭제한 후 수입해 개봉됐다.

3)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침해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저임금이나 노사문제 등의 노동문제만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아 왔지만,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조명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외국인 노동자 문화적 차별 금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등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에 개인적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펜잘을 벤졸로 잘못 알아들은 약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위세척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보험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료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아까워 병이 커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영세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응답이 2.7퍼센트에 불과한 것을 본다면 이주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폭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의 상담 단체들에게 보호소 내에서의 폭력 문제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상말, 욕지거리 등의 폭언, 린치, 기합 등의 경우이다. 한 외국인 노동자의 여동생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우리에게 남긴 말이 있다. “지금은 여기가 한국이라서 참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월급도 못 받고 나가는 판에 뺨까지 맞았다는 서러움이 분노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폭행에 대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항의 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후 구치소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15개국 100여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치소 안에서 평균 1~2개월 수감되어 있었고, 회사나 구치소 내에서 맞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자가 90퍼센트에 이르며, 맞은 사람 가운데 70퍼센트가 본국에 돌아가 한국인을 해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60퍼센트가 외국인들의 눈물 때문에 한국에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소 내의 인권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 중 종교로 인한 문화적 관습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차별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슬람권 문화에 속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언어, 음식, 행동양식 등에 일정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의 실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경기도 안산역 앞 원곡동은 2001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나서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도 했다. 서울 혜화동 성당 주변에는 일요일 마다 필리핀노동자들의 장터가 열리고 있으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도 9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16개국에서 온 17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곳의 가구·도금·기계류 공장에서 일하며 나라별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외국인 노동자 중 방글라데시인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돈을 모아 이슬람 성원(모스크)을 세웠고,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 샤이브’까지 초청해 정식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슬람 금식기도일인 라마단 기간에는 동네가 조용해지고, 방글라데시 축제일에는 전국의 방글

라데시인들이 모여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다.

(2)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의 차별과 의료지원의 차별은 한국사회가 그들을 사회의 이방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침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고, 2003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까지 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의 취학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법적으로는 취학 허가가 났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의 입학 허가의 재량은 학교의 교장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아직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행정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행정지침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의 입학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 노동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대부분 탁아제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3) 이주 노동자 문화적 적응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과 그 가족의 권리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되면서,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인 이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단란하게 살아가는 데는 너무도 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어, 이주민들의 가족구성의 권리와 행복할 권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7년 49년 만에 국적법을 개정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하여 여성의 호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규정을 바꾸어, 지금까지 외국인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남편이 한국국적이 없는 까닭에 독립된 호적을 갖지 못했으며, 아이 역시 미혼모의 아이로 될 수밖에 없었던 폐해는 해결됐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과 동시에 국적이 주어지던 것을, 남녀 모두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향평준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체류와 국적 취득문제는 큰 장애 없이 해결되고 있는 반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체류와 국적취득문제는 대단히 까다롭다.

현재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이 경우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청에서는 혼

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이들의 자녀는 미혼모의 아동으로 호적이 기재된다. 또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가족들에게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는 2년간의 체류비자가 허용되지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3개월 혹은 길면 1년간의 단기체류비자 (F1)가 주어진다. 이는 비자가 끝나기 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던지 아니면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 연장을 받아야 하는 고생스러움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남성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의 유일한 방법은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의 길 이외에는 없지만, 외국인 여성의 경우 무시함 국적취득이 가능한 것과 달리 외국인 남성에게는 까다로운 귀화절차와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적취득이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체류비자도, 국적취득도 어렵다는 것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대부분이 F1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다. 그러나 이 비자는 말 그대로 '방문, 동거'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부양에 있어 남성, 여성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에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아직도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어 이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고사하고 가정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안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데, 국내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 아시아 열린 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확대 등은 바로 한국 사회가 지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노력들과 함께 이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과 다음세대재단이나 서울외국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할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는 1990년 이전까지는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은 600여 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성 사망, 그리고 소련과 동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탈북자의 발생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48명이 입국했으며, 2000년 312명, 그리고 2001년은 583명이 입국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2년 입국자는 10월말 현재 920명이며, 연말이면 1,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입국 방법은 제3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 한국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것과 여권위조와 밀항 등 비공식적인 입국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재외공관 진입을 통한 한국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비공식적 입국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단속과 송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국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의 입국 시 이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생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력 입국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 단신으로 입국하여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 후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면서 탈북자들은 남한의 일반 가정과 큰 차이 없는 가족단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입국자의 60퍼센트 정도는 가족단위로 입국하고 있으며, 단신 입국의 경우에도 기존 가족이 남한에 생활하고 있거나 단 기간 내에 잔여 가족을 입국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단신 생활자의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탈북자의 증가를 가져와 탈북자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지역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지역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입국한 탈북자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탈북자 자녀 교육권 확대

탈북 아동·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남한의 교육제도에 편입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새로운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초기부터 놓치지 않게 보호하고 키우는 일은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니다. 중요한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남한 교육제도 적응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남북 간의 학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남한의 학제는 (1)-6-3-3-4제 이지만, 북한은 1-4-6-4(3)제를 기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초등교육 기간이 남한은 6년인데 비해 북한은 4년으로 2년이나 짧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수학한 이력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그 교육내용의 차이가 현격하고 지난 10여년 간의 북한교육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교란된 상황에서 탈북아동·청소년들의 학력은 대단히 편차가 크고, 심각한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동, 청소년들이 있고 16세에 문맹인 청소년까지 입국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만큼 긴 학습공백으로 대부분이 나이와 학력간에 큰 격차가 있다.

2003년 10월 현재 400여명에 달하는 학령기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남한의 교육제도 속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의 크기에 비해 이들에 대한 현행 지원체제는 대단히 초라하다. 이들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느끼는 몇몇 민간단체의 자발적 지원이 거의 전부인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민간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 방과 후 생활보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합해서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묻는다면, 이들 민간의 긴급구호사업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서 희생과 봉사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여건에서 장기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긴급구호활동 차원의 일을 아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들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무연고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남한의 제도 교육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탈북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들에 대한 학력 및 적응능력 보장 기능, 보호기능, 진로 개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학교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학교는 법, 제도, 예산 면에서 공적인 틀을 갖추어 상당기간의 (준비)교육을 통해 학력과 학령을 맞추어 남한학교에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한 학력 인정 권한이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 졸업 자격도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특성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하나의 집단 교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긴급하게 정부가 나서서 중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들은 그렇게 해도 포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 학교에 편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홀몸으로 정착하거나 취업했을 때 지원망 형성을 돕는 일,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관계 상담, 지역 사회 연계사업 등 지금까지 긴급구호 차원에서 수행해온 사업들을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더욱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한 공적 교육기관을 통한 보편적 준비교육과 이를 보완하는 민간단체의 실천적 지원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남북 간의 교육제도의

차이를 접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더 많은 탈북자들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사업, 그리고 통일 후 교육통합을 위한 기본적 교육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탈북자들은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 등 많은 분야에서 남한주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은 남한 주민과 정부기관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만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인권차별을 주장하며 높은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이 여권 발급에서 인권 차별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탈북자 이○○씨는 자신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에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탈북자들의 경우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달리 외교부와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탈북자들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북한으로 재입북 후 다시금 탈출하여 혼란을 야기했던 유○○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와 규정 없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탈북자들의 여권 발급 여부나 종류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탈북자는 입국과 동시에 남한정부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신분보장과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과 수준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신분과 관련이 깊다. 탈북자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모든 단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남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기입국 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관계법규에 따라 각 단계별 정부 부처간 업무범위와 책임과 권한을 확정하였다. 먼저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통보(통일부)→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통일부, 국정원)→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설보호 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기간을 의미하며 대성공사에서는 탈북동기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대부분 1개월 이내로 소요된다. 그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2개월 과정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기초 직업훈련, 사회편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직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 지원금(정착금·보로금 등) 지급, 주택알선, 의료·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학력·자격인정의 기초 자료 제공 등이다. 탈북자들은 하나원 퇴소 후 일정 기간에 걸쳐 1인 단독 세대 기준 3,700만원 정도의 정착금과 가족 수에 따른 임대 아파트 우선 제공, 35세 이하의 경우 대학 특례입학과 학비 면제, 무료 직업훈련, 취업 시 2년간 급여의 50퍼센트 정부보조, 의료보호, 농촌 정착 및 자영업 희망 시 소요비용 대부분 국내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에서는 초기의 신변보호, 지방자치단체별 애로사항 해소, 편입학 지원 및 교육보호 실시, 정착실태 파악과 생계곤란 등 지원, 후원회 및 민간단체 결연 등을 통한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탈북자들은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 후 자신의 희망과 임대주택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배정 받게 된다. 정착지에서는 노동부의 취업보호담당자와 경찰의 신변보호 담당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 담당관이 거주지 편입과 각종 사후지원을 담당한다. 최근 정부는 탈북자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축하고 있다. 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향후 탈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1999년 7월 하나원의 개소로부터 시작된다. 하나원이 실시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하여 현재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탈북자를 민주사회의 생활에 적합한 기본소양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3개월 과정으로서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 훈련 등을 520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현행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2개월 336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32시간(9.5%), 정서함양 14시간(4.2%), 우리사회의 이해 24시간(7.1%), 사회적응능력 배양 36시간(10.7%), 정착의지 함양 14시간(4.2%), 기초소양교육 34시간(10.1%), 현장학습 등 55시간(16.4%), 진로 및 직업지도 22시간(6.5%), 기초직업훈련 50시간(14.9%), 일상생활 기능실습 28시간(8.3%), 기타 27시간(8.0%)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2년 9월 이후 여성 단독 입국자의 경우 별도의 분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여성들을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5) 장애인 문화평등

(1)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제는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1984년 '거리의 모든 턱을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물리적 환경개선이 어떤 의미인지 죽음으로 보여준 김○○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백○○ 사건을 계기로 법,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1997년 '편의증진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물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는 지난 1985년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1988년 건축법 시행규칙 25조, 55조의 신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33조에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많은 문화시설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고 접근하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시설 내의 편의시설의 경우 법 취지나 장애인들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아닌 설치에만 급급하고 공연이나 영화상영, 전시관람, 경기장 관람 등의 정보와 건축물의 이용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문화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시설에는 휠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팩스 전송기 등과 클러치나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소아마비 장애인의 경우 굉장히 넓은 공간을 관람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항상 휠체어를 자동차에 싣게 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시설 안에 휠체어 등은 꼭 구비해 두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대변기나 출입문, 손잡이, 조금 넓은 공간 등만 고려가 되어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영화 <오아시스> 시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관람석이 없어 영화 시사회에 참여하지 못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좌석의 일정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정좌석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재택근무, 전자도서관과 원격접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필품 구입 등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 하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와 격차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체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할 때, 장애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 부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전용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되어있는 공공장소까지 이동해야한다. 이때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어렵게 공공기관을 찾아가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컴퓨터와 전용선이 있고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해도 저작권 문제로 정보를 얻는데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요즘 보편적인 방식의 웹브라우저에 접근이 힘들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자도서관과 화면해설 서비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정보화의 혜택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기존의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와 방송에서의 자막 및 수화방송의 확대들은 장애인들의 방송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것처럼, 장애아동들에 대한 입학거부 또한,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들에 대한 입학거부 사건은 2004년 10월 대전에 있는 삼육대전초등학교에 입학할 상담하였던, 이○○군의 어머니가 학교장으로부터 “지체장애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지능과 행동이 떨어진다,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 우리 학교는 바이올린과 태권도를 필수로 해야 하고, 수업중 이동도 많은데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부모들도 장애아가 들어오면 싫어한다, 우리학교는 건강한 아이를 받는”다며 이군의 입학을 거부하게 된다. 이에 ○○○군의 부친은 교장실에 전화를 걸어 입학거부를 항의하고, ○○○군의 부친은 바로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과정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재차 “지체장애아는 지능이 떨어져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삼육이 예전에 장애인학교라는 말을 들어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이 장애아동들이 입학하는 것을 싫어한다” 등의 말로 입학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삼육대전초등학교는 장애아동의 입학거부가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 제 15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 28조의 2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육대전초등학교는 ‘사립학교’임을 강조하며 마치 사립학교는 장애차별을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며 교육부도 자신들을 강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난 2004년 10월 20일 차별행위를 확인한 후에도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 장애인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부는 사립학교 전반에서 일어나는 입학거부 등 장애차별 행위들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교육권 문제는 장애인 아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심각하게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들고 나왔다. 초졸 이하 학력의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였다. 200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 학

력 이하 재가장애인은 51.6퍼센트, 무학인 경우도 무려 21.5퍼센트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장애인 출현률을 3퍼센트대로 잡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방법상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실제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학령기를 놓쳐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약 320만명의 비장애인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숫자다. 장애인교육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은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혹은 학력 증진을 위해 현재 유일하게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을 찾고 있다. 최근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 보급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야학은 증가추세에 있다. 사실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들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령기 장애학생과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은 장애성인들이 긴 교육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비용은 물론이고 물리적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은 문자해독 능력에 대한 욕구 뿐 아니라 학교라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생활 등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야학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나름대로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 산수 등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해 초·중·고 검정고시 교육을 통해 성인장애인들에게 학력 증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장애인야학협의회가 파악한 성인장애인 야학은 전국적으로 15곳이다. 이 곳들 중에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20년이 넘도록 운영이 되어온 곳도 있다. 이들은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설립주체와 운영과정, 학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학급교재, 문구류, 냉난방비 용도로 한정이 돼 있는 이 돈은 일년에 겨우 600만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50~100만원 가량의 지원비 격차는 존재한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자체 조례에 따라 타 시도와 달리 자체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은 장애인야학, 일반야학 구분 없이 지원되는 것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장애인들이 대부분인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 확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차량 운행, 장애인의 몸에 맞는 책걸상 구비 등 장애인야학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풀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인 야학이 민간교육 기관으로서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했다.

현재 저학력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만 일부 나열돼 있을 뿐이다.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학령기 장애인들과 성인비장애인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정안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를 15대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 향후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야학운영비(학생수 기준),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청소년 문화평등

(1) 청소년 문화차별의 금지

청소년들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미성숙 상태라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서 침해들이 일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보게 되면, 아동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금지집회)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2호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40조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아동의 의사를 범위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의사형성능력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아동 및 보호자의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고, 보호자의 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아동의 불이익에 대해 고려가 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할 경우에도 아동들의 선택권이나 부모들의 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행동이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없다면, 이런 침해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청소년 문화수용의 평등기회 제공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사회가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은 비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할인혜택의 차별에서 볼 수 있는데, 2003년

○○○은 청소년이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비학생 청소년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시킨 일이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청소년(9세~24세) 중 비학생은 300만명 정도인데, 이들이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3-3-3. 문화참여권 침해 및 구제사례

자유주의적 문화국가가 자유주의 원리로부터 나타나는 중립성과 관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문화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문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같은 문화국가에 대해 국민의 문화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참여권의 보장은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형태로 정부의 시혜적인 방법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였다.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문화참여권에 대한 보장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적 욕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에 대한 참여를 축소시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1)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획 확대

지자체와의 이런 갈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공공미디어센터로 출발한 활력연구소의 폐쇄를 말 할 수 있다. 활력연구소는 2001년 5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활력연구소의 운영이 시작된 것은 서울시 문화과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최적의 위탁운영 단위라고 평가하고 제안하였기 때문이었다. 활력연구소는 15개월간의 노력에 서울시민의 세금 9억 7천만원이 소요되어 설치된 공간이다. 그러나, 활력연구소는 지난 2002년 11월 30일 파행적으로 운영으로 문을 연지 13개월만인 2003년 12월 31일에 문을 닫게 된다. 처음 활력연구소는 현재 진행형의 공공문화시설의 모델로서 상업매체를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상·시각미디어의 접근을 높여주고, 관련 교육을 누구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창작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이자, 신나는 미디어놀이터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15개월에 걸친 기획과정에서 서울시와 활력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서울시의 계획과 사업의 방향이 맞지 않은 이유를 들어 행정적 지원노력이 끊어지고, 충무로 활력연구소는 그러한 파행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게 된다. 활력연구소는 지하철문화공간으로 뭉뚱그려진 서울시의 최초 기안의 수정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미디어센터라는 공간 목적에 맞는 행정적 틀을 찾아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예산 지원 속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결국 활력연구소는 2003년 12월 31일에 문을 닫게 된다. 활력연구소는 2002년 11월 30일에 개관하여, 1년 동안 13,000명의 오프라인 회원이 가입하였고, 12번의 자체 영상전에 6,622명의 관객이 왔으며, 434명이 영상미디어교육

을 받고, 3,256명이 3,746편의 작품을 영상라이브러리에서 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나, 활력연구소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서울시의 지원 미비로 활력연구소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논란이 된 사건은 2004년 5월에 열릴 예정이던 제 3회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가 현 대책위와 남양주시가 대립하여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건을 말 할 수 있다.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의 경우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남양주시가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모여 성공적으로 키워온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행사의 성격 등 구체적 계획도 없이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와 다른 형태의 행사를 펼치려 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5월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를 위해 예산집행 등 적극적인 후원을 해야 하며, 또 "경기도 등으로부터 행사 지원금으로 3억8천6백만이 수립됐음에도 시는 남양주시의회 2002년 회기에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2003' 예산을 상정하지도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지금껏 침묵하던 시가 행사를 두 달여 앞두고 시기와 장소, 행사 주체 등을 바꿔 새 행사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이에 남양주시는 2번 행사를 치렀지만 시민이 배제된, 연극인 중심 축제라는 비판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축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축제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이달 안에 이 축제 집행위원회와 시의회 의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시민 등이 두루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남양주시와의 합의를 통해 축제는 열리게 되지만 보편성과 독창성을 갖춘 지방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남양주 세계야외축제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 채, 파행적으로 열리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높아진 참여의식과 운영능력에 대해 지자체나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나 간섭, 무리한 평가기준들의 제시 등은 결국 문화참여권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시민의 방송제작참여 기회 확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KBS의 열린채널이 방송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최근 KBS 열린채널 불방 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그램 심의 문제를 놓고 제작주체와 KBS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경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고, 위성방송 액세스 채널의 경우 난항 끝에 지난 9월 16일

새로운 시민채널(RTV)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방송(라디오, TV)의 액세스 프로그램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으로 볼 때,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란 KBS 열린채널이나 위성방송 시민채널(RTV),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시청자들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지니며, 표현의 자유 확대와 미디어 교육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세스 방송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기초로 제도적, 법적 문제 및 이후의 정책적 과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심의 관련 조항, 시민대표성, 책임의 소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은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센터 및 기타 개별적인 제작 및 교육 지원구조 등 제작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이 마련되어 입안 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액세스 방송을 이렇듯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그런 정도의 액세스 방송을 제도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언론운동 단체의 집요한 요구, 우호적인 정치권력의 집권 등과 무관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운동 단체나 영상 주체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면, 향후 정권의 향배에 따라 새로운 시민영역으로서 퍼블릭 액세스 방송은 주변화 되어 유명무실한 계토(ghetto)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이를 모델 삼아 부천, 전주 등 각지에서 액세스 방송과 영상운동의 인큐베이터로서 미디어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퍼블릭 액세스 방송의 기본 정신이 시민이 자신 삶의 현장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려주는 데 있다는 점을 환기할 때, 각 지역의 기반확충과 강화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시민사회 영역과 노동운동 진영, 영상운동 역량의 적극적 싸움으로 시민 미디어 영역을 확대해 온 미주나 유럽 지역의 국가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00년 방송법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 즉 퍼블릭 액세스 방송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미디어교육·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을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포함한 점, KBS에 월 100분 이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한 점, 케이블 TV지역채널에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 한 점, 시청자평가원에 의한 평가프로그램 편성 의무화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시청자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당 60분 이상 공영방송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시청자 액세스 채널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여부는 방송위원회의 주도로 시청자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7일 방송위원회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관련된 '방송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규칙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편성 등에 관련된 책임의 많은 부분을 KBS 시청자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주지하듯 현행과 같이 사장의 선호에 따라 시청자위원이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심각하게 현실로 드러나 열린채널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2000년 5월 방송위원회규칙에서 관련 조항이 마련된 이후 7월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리부를 신설하였고, 11월1일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시청자참여프로운영협의회를 KBS시청자위원회 산하에 구성하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단체협의회는 3개월 동안 운영지침에 대한 축조 및 성안을 거쳐 2001년 4월에야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후 명칭이 열린채널로 확정되어 난항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화참여권의 중요한 구체사례로 말할 수 있는 결정이 2004년 11월 방송위원회에서 내려졌다. 지역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자를 선정 발표한 것이다. 지역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자로 마포공동체 라디오 등이 선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지역을 대상으로 FM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6년에는 전국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해 각 시군구에 공동체 라디오가 하나씩 생길 예정인 데, 1w 정도의 출력으로 반경 약 2Km에 송신할 지역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의 라디오 방송이다. 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주목하는 것은 이제 미디어를 주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역 소출력 라디오의 가능성은 라디오의 방송에 한정되지 않고, 라디오 방송이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갖추게 될 것이고, 그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이용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베대지진에서 지역 소출력 라디오가 발휘한 기동력과 문제대처능력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나 지역행사들에 지역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참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늘어나게 되는 데, 미디어의 활동과 지역 미디어 센터들의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과 각 방송사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개설과 방송위원

회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무편성제도들과 오랜 기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방송과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들은 시민들의 문화 참여권을 지켜나가고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문화교육권

공교육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의 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의 평가기준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그 괴리감이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이상 학교 교육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원체육은 이런 현재의 문제점들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선 학교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원체육의 경우 엘리트 위주의 학생선수 운영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의해 일반 학생들은 체육활동에서 배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학원체육은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종목별 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의 경기로 성적지상주의적 방식으로 그동안 학원체육이 운영되어왔다. 전국적으로 12만여명에 이르는 학생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원체육의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경우 신분만 학생일 뿐 학업을 도외시 한채 운동에만 전념함으로써 학업능력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어린 청소년들이 즐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운동을 함으로서 학부모의 재정부담과 특기자부정입학 등의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시험의 경우에도 평일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므로 지금의 운영체계에서는 학업과 운동이 절대 병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대학입시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한국사회의 교육은 성적지상주의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올바른 과정이나 정당성에 대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장의 가능성이나 가치의 추구에 대한 가능성으로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 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현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문화관광부 2004년 3월 5일자 보도자료, “전국 4,224개 초·중·고에 문화예술 전문강사 파견”) 중인 강사풀제는 올해부터 연극, 국악, 영화 분야로 확대되면서 학교 문화교육 활성화에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04년에 실시되는 강사풀제는 총 89억을 투입하여 국악(3,855개교)·연

극(269개교)·영화(100개교) 등 총 4,224학교에 1,101명의 강사를 파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핵심 지원사업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4년 3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풀제는 “국악, 연극, 영화 등 각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기회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적인 목적’과 학교교육을 통한 예술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예술적인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사실 강사풀제의 사업이 갖는 층차대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공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계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면이 많은 만큼, 교육적 고려와 교육적 정착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입시교육 체계가 여전히 공공한 틀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사풀제가 얼마나 학교교육을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할지도 의문이고, 7차교육과정 이후 학교에서의 예능교육이 선택교과목으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풀제의 도입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도 궁극하다. 강사풀제가 본격화되면 학교 예능교사와 강사풀제 교사와의 관계, 강사풀제 교사들의 신분문제, 교육커리큘럼의 안정화 문제, 교육공간과 기자재의 문제와 같은 산적한 현안들이 제기되었을 때, 이 문제들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강사풀제가 장르별 예술전공자들의 생계마련의 차원이 아닌 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이 대안적인 교육이념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장르 중심의 배타적인 교육의 시각에서 벗어나야하며, 장르별 교육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마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사풀제 교사들의 충분한 재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눈높이고 감성높이에 맞는 교육교재들을 재개발하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강사풀제의 모니터링의 근본 취지도 일부 강사들의 교육적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교육적 이념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문화관광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풀제 사업의 추진방향 중에서 “연구기획 및 평가와의 유기적인 연계로 향후 사업 확대방향 설정”, “파견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평가로 수요자 중심 교육 실시”와 같은 평가제도의 마련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강사풀제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평가와 현장 평가는 강사풀제의 본격 실시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2) 대안적 문화교육권의 확대

최근 문화교육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이 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

관, 도서관 등 각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의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도 박물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도 하고, 매개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다각화하려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강사풀제의 본격 실시로 인해 학교에서 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인력을 재교육해야 하는 과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생학습교육의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민사회 학습의 장에서 활동할 매개자들에게 대한 수요도 증가추세에 있다. 문화교육이 장기적으로 공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영역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조건과 위치에 걸맞는 사회교육의 역할로 확대되는 데 있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인력지원 정책은 문화교육 정책에 있어 관건이 된다. 또한 문화교육 매개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문화 인력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기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방향의 기본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전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개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전수 조사는 매개자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연수프로그램의 문화교육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현재 매개자 교육을 하고 있는 각종 법적 근거들을 분석하여 문화교육에 바람직한 매개자교육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도 표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설별로 학예사, 사서,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도슨트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들과 구체적인 교육과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관련 제도와 교육과정들을 분석하여 각 단체가 운영하는 매개자 교육에 권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특화해서 실시해야 할 매개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매개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과 컨퍼런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영역과 지위와 공적·사적 영역을 떠나서 교육콘텐츠와 교육과정들이 서로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는 것이 정기연수 교육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매개자들 스스로 교육경험들을 교환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교육의 매개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매개자들을 위한 교육자원, 교육 공간, 교육인력들을 시민사회 영역에서 찾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문화교육의 공공성을 시민사회 내 문화교육의 자원의 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의 재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문화 인력을 창출하는 교육을 위한 전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매개자교육은 가급적이면 공교육과 사회

문화교육, 전문문화예술기관교육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 매개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매개자교육은 매개자인 역량개발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문화교육을 사회교육을 확산 가능한 정부 부서 기관의 진출과 이들의 재정 출연에 대한 안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 매개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분명한 신분보장은 필요하겠지만, 자격의 대상이나 제한을 가급적 포괄적으로 정해서 문화교육 매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자격증 제도는 형식적인 제한점들을 많이 두어 교육프로그램도 제한되고 이후에 진출하는 영역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활용도 높은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사풀제의 실행이나 전국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교육연대모임'의 결성과 이들의 한겨레문화센터와의 연계되어 진행되는 정기강좌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교육그룹을 결성하여 대한적인 문화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디자인 교육그룹 '새야'나 여주 밀머리학교, 평창 감자꽃프로젝트 등도 참고할 만한 실험들이라고 생각된다.

3) 문화공공서비스권

다른 문화참여권의 훼손은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스콧으로 알려진 목동 예술인회관의 문제이다. 1999년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이 결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예술인회관의 경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결정한 시공사 부도와 원해 목표한 건립성금 모금의 실패 및 예술가들에게 제공되기로 한 공간들의 무리한 임대공간으로의 전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에도 건립이 불확실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예술인회관의 경우 각종 비리의혹들이 시민들과 언론기관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행정기관들의 무관심과 대처의 미비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예술인회관에 입주 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의 박탈들로 이어졌다. 결국 감사원의 지원금 반환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당하게 되어 예술인회관의 건립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4)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1) 공공 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공공 문화행정을 감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독상'을 들 수 있다. 2004년 영광스럽게 27번째 상을 받은 사업은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6년 10월 1일 원주시와 (주)대우가 '일산동복합건물(원일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협약내용은 대우가 자기비용으로 지상 9층, 지하 6층의 복합건물 신축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대우는 1997년 7월 14일 위 협약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협약 내용에 따르면 대우는 전액 자기비용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 총 76억 9천만원의 개발기여금(토지사용료 격)을 원주시에 납입하고, 28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인 1998년 11월에 중단되고 말았다. 대우가 착공과 더불어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IMF 여파 등으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당초 협약대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기여금 삭감과 건물규모 조정 등 협약내용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관한 원주시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하4층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채 원주시의 공사재개 요청을 거부했다. 공사중단 상태에서 대우와 원주시간 토지매매 협상이 벌어졌다. 대우는 토지를 자기소유로 하지 않고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토지매입을 시도하였는데, 협상은 1년여를 끌다가 원주시가 대우와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타결 기미를 보이다가, 결국 가격문제로 1999년 11월 최종 결렬되었다. 이후 원주시는 대우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대우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7개월여가 지난 2000년 6월 원주시가 대우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우는 공사현장 인도를 거부한 채 원주시와 대치하였고, 2000년 10월 원주시가 공사현장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4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위 소송에서 원주시는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대우가 당초 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의회 승인이 없었음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한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우는 공사중단의 책임을 질 필요 없이 공사현장만 인도해 주면 되게 되었고, 반면 원주시는 공사현장을 인도받는 대신 대우가 납부한 개발기여금과 그간의 공사비 전액을 돌려주게 되었다. 결국 원주시는 관련법규가 정한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대우의 일방적 공사중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몇 년간 방치된 공사현장을 인도받는 대신 52억여 원(개발기여금 8억여원+공사비 4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주시는 기본절차도 지키

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52억여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를 민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시 중심지의 땅이 수년간 방치된 데 따른 재정적 손실과 지방채 이자 등 계속 누적될 예산낭비를 저질렀다. 더불어 인근주민들의 고통과 주변상권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공공 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축제와 행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국국제영화제, 과천마당극제, 춘천인형극제, 경주문화엑스포, 고양 세계꽃박람회,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규모의 축제에서부터, 단오제, 춘향제, 대구약령시축제와 같은 전통문화축제, 그리고 진도영등제, 하동야생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풍기인삼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중소규모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토착지역축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축제의 나라, 축제의 낙원처럼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축제(지역축제)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축제가 범람하는 시대에 축제가 없다는 역설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지역의 문화축제들은 지방자치 행정이 축제사업을 상업적인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캠페인성 치적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4~5년 전부터 일종의 붐을 형성했던 각종 국제문화축제들도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선택된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의 축제들은 문화적 내용과 정체성의 빈곤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는 역효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축제의 참여가 세대별로 명확하게 구별지워진다는지, 아예 지역의 문화축제를 지역시민들이 외면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크게 네 가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의 부재. 둘째 관 주도형 문화축제. 셋째 축제의 사전·사후 평가작업의 부재. 넷째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방안 부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문화축제들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후 지역문화축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문화행사나 문화사업들이 대체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문화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문화행사가 건축공사와는 다른 문화적 예외조항이 있지만, 문화예술이 점차적으로 공공성을 담는 내용들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평가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문화 행사·축제는 평가와

감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들은 문화를 전적으로 개인창조행위로 제한하려는 좁고 낮은 의미의 문화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행사에 대한 감리는 행사를 주최하는 당사자들에게 문화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행사가 향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공공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문화감리사업은 문화축제와 행사와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부분이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대는 바로 문화참여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의 '천년의 문' 사업에 대한 고발은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행정의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문화연대를 포함한 10개의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행정감시기수연대회의'의 결성도 문화행정의 시혜적이고 이벤트식으로 한정되는 것에 반발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문화행정의 모니터링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의 노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참여형 문화축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부안해폐기장의 투쟁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부안영화제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등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문화의 변화의 바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이런 변화의 바람은 덕수궁터 미대사관 이전반대나 청계천 역사 문화복원운동 등에서 문화재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3-4. 문화환경권 침해 및 구제사례

문화적 환경권의 침해를 좁게 파악한다며, 물리적 인공 환경 중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의 파손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문화환경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환경에 포함된다. 문명의 혜택이나 시설에 대한 관점에서보다는 쾌적한 자연유산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문화환경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개발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무분별한 개발 논리로 많은 훼손과 파괴들을 일어났으며, 지금도 이런 훼손과 파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훼손과 파괴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며, 후대의 세대들의 문화환경권의 훼손과 파괴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 주거생태권

(1)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오염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오염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위험성이 공공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데, 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인 경우 70년대에 급속히 악화되어 서울은 1977년부터, 부산·인천·대구는 각각 1979년, 1984년 및 1985년 이래 1990년까지 환경기준인 0.05ppm을 웃돌았으며, 1993년부터는 환경기준이 0.03ppm으로 강화되었는데 대구·울산 등의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가까스로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도 겨울철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s:TSP)도 서울·부산(주거지역 제외)·인천·울산 등 주요 산업도시는 1990년까지 환경기준(150 μ g/m³)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대부분의 대도시가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강우 중의 산도를 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공단 주변에서 pH 5.6 이하의 약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외에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옥시던트·탄화수소도 일부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시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며,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적절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도시의 주거환경의 문제는 도시의 소음문제에서도 나타나는 데, 1993년 전반기 한국

의 도로변 환경소음실태 조사결과는 주요 산업도시(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하루 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 마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작업방해, 공부방해, 잠을 설치거나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요 원인은 교통소음이고, 그 외에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국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조권 침해의 경우, 현행 건축법 기준이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제정 되었으며, 또한 일조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졌다. 건축물을 정남향으로만 짓고, 법에 의한 인동간격 등 이격거리를 준수할 경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입면, 건축레벨, 방위 등은 복잡한 그림자의 생성을 가져오고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지게 되어 건축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조항이 일조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개관적이고도 합리적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건축설계에 있어서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미리 그 문제를 예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다.

2) 보행권

30여 년간 한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조성사업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80년대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양적보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인 보행환경 등에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결과 도시, 단지 내의 안전 등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1996년 기준, 10.31명/10만)이 일본의 4배, 스웨덴의 12배, 독일의 10배, 미국의 5배나 되며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84퍼센트로 프랑스 12.2퍼센트, 미국 12.9퍼센트, 독일 13.4퍼센트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토지이용단계의 거시계획에서부터 주거단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차량대중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경우는 신도시계획에서 보행자전용도로의 도입이 철저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60, 7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신도시를 조성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와 녹도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80년대 후반까지 보행자전용도로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90년대 초반 새로이 개발된 사업지구에서는 일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그

양에서 매우 부족하며 또한 도시 및 단지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질적인 계획측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시 교통사고가 전체의 6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61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25.2퍼센트나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 장애인이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본인과 가족의 자가용 37.0퍼센트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게 됐으며, 택시 또한 32.4퍼센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6퍼센트 일뿐 일반버스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관리공단, 2002).

3) 문화환경영향평가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20여개의 산과 도시, 바다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에 국립공원의 지정취지를 두고, 공원자원의 보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안 자원의 보호, 육성과 생태계 유지회복에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립공원의 파괴가 국민들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런 경우가 지리산국립공원의 성삼재 관통도로, 덕유산국립공원의 무주리조트와 한전의 양수발전소, 속리산국립공원의 청소년 수련원 등을 꼽을 수 있고, 가야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이미 골프장사업을 허가해준 상태이다. 덕유산국립공원의 경우는 국가가 앞장 서 국립공원의 지정취지와 이념을 어기고 자연자원을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1984년부터 추진되어온 무주리조트는 콘도 등 집단시설지구가 65만평, 스키장이 131만평, 골프장이 27만평으로 총 222만평이 개발 허가가 났고, 현재까지도 자연파괴가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콘도나 스키장, 골프장들은 허가할 수 없으며, 특히 (주)쌍방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14.3퍼센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안의 국공유지를 민간기업에 매각. 임대해 주면서까지 리조트개발을 허가하고 있다. 국가가 덕유산국립공원 안 25.1퍼센트나 되는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주)쌍방울에 대한 특혜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 그리

고 정부는 1986년 덕유산국립공원지역 내 자연보존의 핵심지역인 자연보존지구이자 사적 146호로 지정된 적상산성안에 국영기업체인 (주)한전에게 양수발전소건설을 허가하여 약 20만평의 천연림을 벌채하게 했고, 고산 분지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고도 국립공원의 이념과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고 훼손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4) 문화재 향유권

문화재는 원형이 파괴될 경우 그 파괴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많은 문화유산들이 개발논리나 군사상의 목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많은 문화유산들이 군사상의 편의를 위해 훼손되고 있는 데,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월릉산성은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138번지에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이다. 이 산성은 3세기~5세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근초고왕, 아신왕)와 고구려(광개토대왕)가 대치하고 있을 때부터 사용 되었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 되어 있는 백제의 전형적인 테피식 산성이다. 월릉산성의 남쪽 성벽면은 채석장으로 사용되면서 성곽을 깎아 원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켜 놓았으며, 2000년도에는 파주시에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하면서 내부의 유구도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킨 상태이다. 이외에도 성내부의 군사도로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로 유적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특히 성벽을 따라서 군사시설인 참호가 설치되어 있어 유구의 훼손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이곳에 추가로 군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백제시대의 산성인 월릉산성의 파괴가 더욱 가속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경기도 박물관의 월릉산 주변 조사에서 백제시대의 유물산포지가 9군데나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에 백제시대의 주거지와 연결시켜 볼 수 도 있으며 백제 초기의 마을 구성과 사회의 구조, 기능을 밝혀 낼 중요한 유적지로 추측이 된다.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지식묘 4개군과 암석군 그리고 무문토기 산포지 2개 지역도 발견 되어 임진강 하류 지역의 문화유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군부대에서는 파주LCD산업단지 내에 있던 군사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월릉산성에 또 다른 군사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현상변경신청(2004)을 한 상태이며 미군헬기장과 한국군 헬기장이 동시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월릉산성의 주변 지역의 유적들은 세트로 존재하는 유적일 가능성이 많아 어느 한곳이 파괴가 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군부대 시설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실시한 2002년 조사에서 월릉산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920m 떨어져 있는 곳에 또한 개의 백제시대 산성을 발견했다. 기관봉 산성은 월릉산성의 보조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이 지역 역시 주봉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어 문화유산의 파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전읍리(구읍리) 148번지 중성산(해발 147.7m)위치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당시 적성을 부르던 명칭이 이산성의 이름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성이 치소 역할을 했거나, 고구려나 신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임진강을 따라 축조한 여러 관방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전투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현재에는 군부대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심하게 파괴되어 있으며, 군사도로를 내면서 문지가 훼손 되었고, 참호를 만들면서 산성의 성벽돌들을 이용하여 심하게 파괴 되어있다. 또한 현재에도 성벽돌 일부가 교통호의 벽면돌로 이용되고 있어 산성의 훼손을 가중 시키고 있다. 봉서산성은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214m의 봉서산에 있다. 봉서산성에 대한 기록은 “신승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문화유적총람” 등에서도 조사보고 되었다. 성은 산정 둘레를 타원형으로 두른 테피식산성으로 둘레는 약 500~550m 이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는 월룡산성과 기관산성이 보이며 북쪽전체를 관망할 수 있어 북방 방어외 개념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의 주둔지가 되어 그 중요성을 입증한 곳이다.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대승을 거두나 적의 전면적인 대공세나 장기전에는 취약하다는 인식 아래 이곳 봉서산성(당시 파주산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성의 내부에는 군사시설 및 미군부대 헬기장이 들어서면서 훼손하여 건물지등을 확인 할 수 없다. 이곳 또한 다른 산성과 마찬가지로 군부대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성벽과 성내부의 유적들을 훼손하고 있어 보존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선 미군부대의 헬기장으로 인해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당포성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 있으며, 성지 좌측에는 조그만 시내가 임진강으로 흘러들면서 단애를 이루고 있어 성지와 단절 시켜 놓고 있다. 바로 이지점에 당계 나루터가 있으며 폭은 50m 정도 있다. 내성과 외성의 좌측은 군사시설인 교통호로 파괴가 되어 있고 일부분의 교통호는 성벽의 돌을 가지고 교통호를 구축했다. 특히 외성은 민간인의 경작과 군사도로 시설로 거의 파괴가 되었으면 안쪽에서 희미하게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성과 외성의 평지에는 전차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성벽과 내부흔적에 대한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환경권의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가 시작되면, 더 이상의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문화환경권의 경우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위험이 생겨나게 되며, 환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들과 삶의 질과 연관된 가치들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재향유권을 높이는 답사 프로그램들을 운영되고 있는 데, 한겨레 문화답사와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라사람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의 각종 답사프로그램이다 경기문화재단의 답사프로그램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답사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문화재를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문화재와의 관계맺음으로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 보호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덕숭궁터 미대사관이전을 막아낸 것처럼 많은 문화재들이 관심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환경권에 관한 문화지수의 개발로 나아가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일반화된다면 도시의 개발이나 재개발, 공간의 문제, 삶의 질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문화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인 근거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환경권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 공간의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적 권리의 보장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환경권은 현세대의 문화적 권리만이 아니라 이후 세대들의 문화적 기회의 보존과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화적 권리이다. 아울러, 문화환경권은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류 공통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4. 문화권의 국제기구 권고안 및 각국사례

4-1. 문화권의 국제기구 권고안

4-1-1. 유엔 「세계인권선언」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항

1948년에 제정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안에 명시된 문화권에 대한 조항들은 이후에 문화권에 대한 각종 협약, 권고안, 초안들의 이념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본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권리에 해당되는 주요 조항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조항들을 검토해 보면, 2장에서 정의한 문화권과 문화권의 범주를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이념들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문화적 자유권의 이념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와 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다. 문화평등권에 대해서는 제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그 기본 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문화참여권은 27조(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환경권 역시 27조(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그 이념적 기초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범주화하고 있는 문화권의 영역들의 이념적 기초는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들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유네스코의 문화권⁵⁴⁾

1) 서론

세계 인권선언(UDHR)에 의해 고무되어온 국제인권법은 다수의 기본적인 문서에서 문화적 권리조항을 포함한다. 2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제협약 15조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승인한다. 유사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종적, 종교적이나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주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그들의 종교를 답습하여 향유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국가적인 지역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의 승인을 확인하는 협정된 노력의 중요성은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에 대한 선언과 프로그램에 의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Vienna, June 1993). 부가적인 접근법(이러한 권리들의 관계성 속에서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체계와 같은)이 실험되어 질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는 국가들이 사회의 모든 면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 원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증하기를 권고한다. 세계회의에서 환기되어 보편적으로 인지되는 인권표준에 대한 준수, 보호, 장려는 모든 국제적인 공동체의 중요관심사가 되었고 현재 문화적 권리는 증가하는 주목과 고찰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법에 있는 이상과 원칙을 가지고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충분한 교육기회'와 '의사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유네스코의 법은 '성숙된 이해와 각각 서로의 삶에 대한 더욱 진실되고 완벽한 지식' 과 민주주의의 문화와 원리의, 위엄과 평등의, 정의의 존중, 법의 규칙을 위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위한 "정의, 자유, 평화"의 인간의 교육의 이상향"을 지지한다.

54) 아래의 글은 Kishore Singh, "UNESCO and Cultural right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UNESCO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문화적 권리에 관련된 표준 조정 협약 : 유네스코의 공헌

유네스코의 법적인 위임과 윤리적인 미션에 따라, 유네스코는 권한의 범의를 포함하는 많은 표준 조정 협약들을 고안해 왔다. 이것들의 몇몇은 문화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1950년에 유네스코의 첫 출판물 "자유와 문화"는 「세계인권선언」의 6가지 문화적 범위에 대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리하여 문화적 권리에 관련한 유네스코의 협약의 더 진전된 고안들을 위한 영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표준의 몇몇은 약정과 동의와 같은 "딱딱한 법"이고 다른 것들은 선언과 권고와 같은 "부드러운 법"이다. 대부분은 국가에 의해 따라지거나 취해지는 행동의 영역에서 강조 되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가 반복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융성해지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문맥을 형성해 낸다.

① 「교육의 차별에 대항하는 약정」⁵⁵⁾은 유네스코의 가장 초기 표준협약 중의 하나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한다. 그것의 목적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없애지는 것이며 교육에서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들로부터 채택 되어질 수 있는 척도를 묘사한다. 그 약정은 유네스코의 법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의 형태든지 금지하는 제2조와 제26조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권리를 장려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②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⁵⁶⁾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모든 개인과 단체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리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과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인종 차별적 편견의 구실로 이용된다. 그런 것들은 그것들이 어떤 차별적인 실행이라 해도, 법적으로나 사실로나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극단적인 인종차별적인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위한 배경으로도 제공될 수 없다.

이 선언은 또한 "기원의 정체성은 결코 인간은 다르게 살 수 있고, 살아도 된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다양성에 기초한 차이의 존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와 세계가 문명화와 문화의 가치에 경의를 표하는 데 있어 개인적이고 집

55)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유네스코가 1960년에 채택된 약정서로서 교육의 차별잔대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약정서이다.

56) The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1978년에 채택된 선언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선언문으로 유명하다.

단적인 진보와 성취의 수단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발전"을 위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③ 교육에 대한 권리는 "무엇보다 교육을 위한 충분하고 평등한 기회"의 이상을 주장하는 유네스코의 법에서 고양된다. 기구는 "인종, 성이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구별짓기와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진전시키기 위해 국가들 간 기관별 공동노력을 합의하는 데 있어 위임권을 가진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세계선언」 57)에 의해 강화되었다. 태국 줌티엠 선언은 제1항에는 "모든 사람-아이, 젊은이와 성인- 그들의 충분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교육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유네스코에 의해 발전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층위가 있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문화협력이다.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 58)은 '세계인의 교육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관계성을 통하여, 유엔 현장에서 정의된 평화와 복지의 목적'을 진보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인류평화와 행복의 원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명분으로 기여한다. 그 선언은 "각각의 문화가 존경 받고 수호되어야 하는 가치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제1조). 더 나아가 그 선언은 제2조에서 '각 사람은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정한다. 그 선언은 국제적인 문화협력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하고 모든 사람의 예술과 문학을 즐기며 세계의 모든 곳에서 과학이 이루어낸 진보를 공유하며, 그 결과물인 이익 안에서 문화적 삶의 부유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술한다.

⑤ 유네스코는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장려한다. 「문화적 삶에 대한 인민의 참여와 그들의 공헌에 대한 권고」 59)는 전문에서 다음을 말한다.

가능한 최대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다양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의 발전과 개인의 위엄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만

57)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1990년 3월 태국 줌티엠에서 열린 회의.

58)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년 11월 4일에 채택된 각국의 문화적 가치들에 대한 상호 교류와 가치존중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59) The Recommendation i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76년 11월 26일에 채택된 권고안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기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약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들에게 문화의 이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발전의 과정에 전체적인 문화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⑥ 인류의 문화적 정신적 목표들의 궁극적인 융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⁶⁰⁾은 문화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선언한다. 그 선언의 제1원칙에는 “각 개인의 전통과 표현형식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특별하고 대체불가능한 가치 체계를 대변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선언은 ‘문화다양성은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찾도록 하며, 자신들의 특성과 양립할 수 있는 외부의 공헌들을 환영하도록 하며, 자신의 창조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보고임을 말해준다. 덧붙여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동질감은 분리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전통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든 문화적 동질감의 다양성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은 상호 협력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⑦ 유네스코는 최근에는 언어적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영역들을 개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펜클럽이 조직한 언어적 권리에 대한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선언」⁶¹⁾은 모든 언어를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인정하며, 모든 언어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표현방식대로 사용되고,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⑧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네스코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자원과 유산의 보호를 위한 책임은 「군사적 갈등 시기에 문화자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⁶²⁾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이와 유사한 협약은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⁶³⁾이 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⁶⁴⁾은 유형 문화유산의 무허가 이전을 금지하

60)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1982년 세계 문화정책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으로서 각국의 문화다양성과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상호 이해 내용이 담겨있다.

61)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Linguistic Rights": 1996년 스페인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각국의 언어의 중요성과 권리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다.

6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년에 채택된 협약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3)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70년에 채택된 국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약.

고, 훌륭한 문화장소와 기념물들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상호 보호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도난 및 불법 유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⁶⁵⁾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법 통합을 위한 국제연구소”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1998 6월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외국으로 도난당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의 협약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장려되고 있다. 현재는 “수중 매장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⑨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⁶⁶⁾는 민속문화가 전세계적인 유산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 단체들 간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한 데 결집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것은 이 시대 창조물의 중요 원천을 구성하고 있다. 권고안은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그 권고안이 정의한 조치와 원칙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법적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⑩ 유네스코의 법적인 임무는 지식의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 고려 대상임에 동의한다. 「교육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재료들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서」⁶⁷⁾에서는 ‘생각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 문명화에 사용된 자기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가능한 최대로 넓게 보급하는 것’이 지적인 진보와 국제적인 이해와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회원국들은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재료들을 자유로운 순환을 증진시키거나 그러한 순환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덧붙여 「과학연구자들의 지위에 대한 권고」⁶⁸⁾는 과학적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공식출판물 교환에 대한 협약」⁶⁹⁾은 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해 지지한다. 세계 저작권 회의 (1952; 1972재조정)는 권리와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생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예술가의

64)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Nation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에 채택된 문화유산 보호 관련 협약.

65)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년에 채택된 국제 문화유산 불법 유출 금지와 보호를 위한 협약문

66)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89년에 채택된 권고안으로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됨

67) "The Agreement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1950년에 채택된 각국의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공유한 동의서.

68)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1974년에 채택된 과학과 과학자들의 지위를 위한 권고안.

69) "The Convention on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1958년에 채택된 각국의 출판물 교환에 관한 협약문

지위에 대한 권고」⁷⁰⁾ 또한 중요하다. 이밖에 문화적 권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다른 유네스코의 협정서들도 많이 있다.

2) 문화권의 발전

유네스코는 문화적 권리가 여전히 부적절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과 그 정의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99년부터 1995년 동안의 유네스코는, 특히 주체성과 언어상의 권리를 강조, 문화적 권리에 대한 연구 이러한 권리들이 고려되어지고 정교해지도록 하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지시자들의 시스템과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간의 권리와 윤리의 새로운 전망을 고려한 일 부분으로서, 중기전략(1996-2001)동안, 그러한 것들을 확장시키기로 결심, 문화적 권리를 논의하기위한 포럼의 역할로서 확실히 새로운 범위를 포괄한다.

1991년 11월 유네스코의 인간의 권리의 발전되지 않은 범주로서의 문화적 권리, 그리고 실천과 닥트린을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윤리와 인권을 위한 학제간 연구소"(Interdisciplinary Institute of Ethics And Human Rights)와 '스위스 국가위원회'의 공동협력으로 콜로키움이 구성되었다. 문화적 권리의 초안 선언의 퇴고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과 같이 하나의 연구 그룹이 만들어졌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1997년 9월 버전)이 퇴고되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과제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촉진시켜야하며 민주적 사회속에서 다른 문화와 이종 문화간의 토론이 육성되기 위한 관점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려되어 진다.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는 유네스코로 하여금 학구적인 자유 속에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게 했다. 이런 자유의 인식은 문화적 권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이 단체는 학구적 자유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규격화된 제도적 장치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유네스코는 최근에 학구적 자유의 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등 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⁷¹⁾협약서를 만들었다. 이 협약서는 "학구적인 자유와 인간의 권리의 존중"이라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협정서는 보다 높은 교육제도는 학구적인 자유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기술되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보호와 지식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70) "The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년에 채택된 예술가들의 권리신장에 대한 권고안.

71)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1997년에 채택된 권고안.

위해 세계의 모든 학구적인 단체들의 동등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그 이상의 중요성은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국제회의」⁷²⁾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서 발전을 문화정책의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고 문화적 삶으로의 접근과 참여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는데, 「세계인권선언」의 제27조에 따라 이런 권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모든 단체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조항을 만들게 되었다. 회의에서 ‘문화적 권리와 관련 있는 법적 협정의 존재의 평가에 의해서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문화적 권리를 위한 이러한 작업들 속에서 유네스코는 유럽의회와 협력하고자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는데, 「인권에 대한 유럽협약을 위한 8차 국제 콜로키엄」⁷³⁾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9월 국제적, 개인적 그리고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민주적으로 특별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몇몇의 주요한 주제들에 중점을 두는 작업들이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의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3) 문화권의 강화

게다가 규정을 형식화하는 것과 규정을 만들고, 유네스코의 공헌 그리고 다른 연맹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를 고무시키기 위한 작업들은 그것들과 관련 있는 문화적 권리와 법적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유네스코에 의해 설립된 “문화와 발전에 대한 세계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개인적 박해에서부터 ‘인종청소’까지 안전 하게 보호 하기위한 국제적인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들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박해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은 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7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1998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조직된 국제 문화정책 회의.

73) “The Eighth International Colloquy on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1994년 국제 콜로키엄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증대에 직면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깊은 관심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그러한 법적 권한의 장치 속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몇의 절차와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협약과 권고안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유네스코 이사회의 "협약과 권고안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는 문화, 통신, 과학, 교육 등과 같은 조직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권리 침해의 예들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위임받았다. 그리고 문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나 국가들의 이러한 권리 침해를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도덕적 고려와 명확한 법적 권한에 기초하여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협력, 화해와 상호 이해의 정신에 의해 행동한다. 사무총장은 인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예들의 청산과 대규모의 계획적인, 명백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유네스코의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 존중, 신뢰, 비밀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컨설팅을 시작함으로써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의 해결책에 접근한다.

특별한 지적 권리의 보호

유네스코는 저널리스트, 교육자, 예술가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계획적인 부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지식인들의 삶, 위엄,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적인 의견들을 주의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비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유네스코 출판부에 의해 널리 퍼져나갔다. 관련된 정부 간,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인권을 위한 고등위원회 사무소"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의 협력 속에서, 유네스코는 지식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기

최근에 유네스코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취약한 그룹들, 특히 교육과 문화 부분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받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의 「교육 차별에 반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은 소수자와 개인들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별 방지의 이행은 유네스코의 “교육에 대한 협약과 권고안을 위한 집행위원회”에 의해 모니터 되고 있다.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을 확인하고 근절시키는가에 대한 문외와 기회의 균등과 올바른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외는 매우 특별히 고려되어지고 있다.

유네스코의 “교육에 대한 협약과 권고안을 위한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실행을 모니터 하는 동안 유네스코 회원국들과의 협의는 국가적인 교육법, 정책과 국가적인 수준의 더 나은 차별 방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인 견해 및 전망을 제공하며 이러한 현장에서 보다 더 고려되어지고 행동 되어져할 것들을 제공한다.

유네스코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에 대해 특히 중요성을 더한다. 1998-1999 동안의 프로그램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들과 관습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여성을 계몽시키는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와 개발을 위한 세계 위원회”는 여성의 권리 침해와 이러한 침해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침해 행위, 둘째는 여성의 재산산적인 권리, 그리고 셋째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여성의 권리이다. 위원회는 문화의 권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차별에 대한 투쟁은 또한 1978년 유네스코의 「인종과 인종차별의 편견에 대한 선언」을 통해 수행되어져 왔다. UN연합은 올바른 교육자들을 양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인종차별 행위를 금할 수 있는 교육적인 행동과 교육하는 방법을 특히 교육의 주요 원리와 두 번째 수준에 목표를 맞추어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네스코를 초청했다.

유네스코는 1995년 28번째 회기에서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 보고서는 많은 나라들이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유네스코는 인종 차별, 외국문화 배격, 반유대정책 등 다른 형태의 차별과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원인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 이주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자들의 교육적 문화적 권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종, 국가 또는 인종적 기원, 종교 또는 그러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차별은 문화적 권리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이는 국제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보호하기위한 행위는 이종 문화 간의 이해와 인내 그리고 민주주의

와 다문화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4) 유네스코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권리 실현과 촉진

주요 계획과 행동 프로그램

유네스코는 인권 신장과 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들을 제시해왔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세계 행동계획」⁷⁴⁾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공포증, 성차별주의와 종교적 편협으로 인해 야기된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의 재발은 다른 이주 외국인이나 소수민족과 인종을 상대로 계획적인 여성강간, 착취, 무시, 아동착취를 포함하는 가장 참혹한 형태의 인종 청소를 낳는다.

이 계획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전은 이러한 권리들을 서로 다른 문화전통 안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유사한 관심은 「국제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의 평가와 전망」에 관한 "국제교육회의"(ICE) 44차 연례회의⁷⁵⁾에서 표현되었다.

그 회의는 유네스코의 목표, 행동, 전략을 강화하는 장으로서 아주 중요했다. 국제교육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유네스코 1995년 총회에서 승인된 이 선언은 교육제도가 문화전통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교육 정책은 독립국, 인종, 사회, 문화, 종교집단과 개인들 간의 결속과 단결, 그리고 상호 이해의 발전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교육 행동은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 선언과 행동을 따르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제적인 인간 가치와 비폭력, 관용,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네스코 교육 프로그램의 우선적으로 말아야 할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은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행동계획」⁷⁶⁾이다. 이

74) The World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1993년 3월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국가위원회'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조직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교육 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안이다.

75) 이 회의는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문건은 정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권역, 민족문화와 언어를 촉진시키고, 문화전통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그 문건은 문화와 발전 사이의 조화,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경, 다중적인 민주주의 가치들의 틀 안에서 문화적 차이들에 관용을 베풀고, 영토의 통일과 민족주권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평화를 존속시키는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국가발전 이익에 접근하는 과학적 기술적 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길 장려한다. 유네스코가 1999년에 설립을 제안한 “세계과학발전의회”(The World Conference on Science for Development)는 지식의 공유를 높일 것이다. 지식의 공유와 정보는 1998년 5월 유네스코 집행국에서 토론되고 유네스코 규칙과 정보 통신 도전에 관한 최근 문서를 상정했다.

회원국들은 미디어의 민주화의 중요성과 공공영역에서 미디어정보의 보편적 접근의 중요성과 관련한 국제 커뮤니티의 인식을 확대하는 유네스코의 지적 논쟁에 고마움을 표명했다. 유네스코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언어들의 균형은 중요하다.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의 형성

문화 정체성에 경의를 표하고, 문화들 간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다문화적 사회에서 진정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들은 보존을 위한 무형유산과 특히 소수 민족 그룹들의 언어, 전통, 대중문화를 재활성화 것과 관련된다. 구술 전통의 중요성은 특히 토착문화에 충분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문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회의”는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인간 중심의 발전의 중심이자, 문화와 발전의 새로운 지표로 제시하는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심도있게 관찰한다.

유네스코는 언어권과 문화정체성의 조망과 문화다양성 다원론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공들여 만들도록 위원회를 도와야 한다. 문화다양성과 다원주의의 틀이 발전하도록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다중적인 문화를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1996년부터 평화문화를 향한 이 계획은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다원론의 내용에 상호존재와 상호문화적 대화의 행동을 촉진한다. 그 계획은 투쟁결의와 투쟁예방을 강

76) 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1998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국제회의’에서 제출된 문건이다.

조한다. 문화적 투시는 지역갈등과 지역적 해결을 찾기 위해 중요하다. 사실상 모든 사회는 투쟁 해결과정과 각각 문화의 용어 속에 국제적 언어를 번역하는 데 관련이 있다. 문화 소통을 위한 대화는 여러 방향으로 촉진된다. 다문화적, 다인종적 사회 내에 사회 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 소통을 공유하는 계획은 시작되었다. 유네스코는 각기 다른 문화들의 교류와 대화를 위한 새 기회를 문화소통의 계획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경험의 교류를 조직하고, 다언어주의에 신선한 자극을 줌으로써 다문화적 사회 내의 문화소통의 대화와 문화다원주의를 통합하는 가치들을 촉진하도록 한다.

소수민과 토착민의 문화적 표현형식 육성

유네스코는 소수민과 토착민의 문화표현형식을 육성하고 토착민과 소수민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문화권리의 포괄적인 표를 준비하고 다른 조력자와 협동하며 작업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들을 위해 무형문화재의 보존은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린 본질적인 근원이다. 이것은 복수문화적 체계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유네스코는 대학 전산망을 이용한 다언어주의적 다양성을 연구한다. '링구아팩'(LINGUAPAX)⁷⁷⁾ 계획은 교육의 모든 수준에 언어적 다양성을 장려한다 그동안 '링구아니'(LINGUAUNI) 대학 네트워크는 대학교육에서 여러 가지 언어주의와 언어다양성을 육성하도록 발전해오고 있다. 강조는 교육에서 언어정책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설립되고 개개인의 권리로서 언어적 권리의 역할을 기술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 특히 다언어 나라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중앙아메리카를 가르치기 위해 언어를 육성한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계획은 두 영역을 포함한다: 하나는 언어를 다루는 것, 또 하나는 구전유산, 음악, 춤, 민속학, 전통수공예 기술이다. 그 기관은 무형유산 특히 소수민과 토착민의 유산을 보호하고 회복하고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위원회를 돕는다. 그것은 인간자원 체계의 촉진을 통해 전통기술의 전달과 무형유산의 가치와 특히 젊은 사람 간의 인식의 형성을 육성한다. 그 계획은 유형유산과의 연결도 물론 증강하고 부분적으로 신성한 대지와 유형유산과의 관련된 구전 전통을 보호하는 것이다.

77) LINGUAPAX Project: 세계의 언어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만든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평화교육과 국제이해를 돕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1987년 구소련 키예브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그 후에 1988년에는 스페인, 1990년에는 독일에서 열렸다. 1987년 케이브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내실있는 자료를 사용기 위한 다문화적, 다언어적 콘텐츠의 필요성, 외국어 교육과 평화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론 개발, 문화교육을 위한 외국어 교사들의 더 많은 훈련, 평화교육과 국제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의 교류와 확산, 문화접촉과 교류를 위한 문화 간 소통연구.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술,극장,춤,음악,문화,관습,구전전통과 같은 다양한 대중 문화 표현형식에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창조성 고취의 근원으로서 구전유산의 중요성. 이런 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급하는 방법은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78)

종교 간 대화와 문화적 권리

1993년 유네스코에서 시작된 종교 간 대화는 종교적 힘을 결집시켜 「평화적 문화의 장려를 위한 종교적 역할의 선언」 79)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어 어디서 발생하던 폭력, 특히 종교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폭력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는 대중적인 관심도를 환기시켰다. 이것은 문화적인 권리의 촉진에 대해 공헌했으며 마찬가지로 세계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더욱 큰 지각을 창조해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원론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는 불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다. 문화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문화는 그러한 가치들과 각각의 문화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삶의 형태를 키운다.

전 세계 수백의 사람들과 단체들은 이 평화의 메시지가 확산되는 이 선언에 동의를 표했다. 바르셀로나 선언의 후속으로 1998년 2월 모로코에서 세 개의 일신교간의 회합도 있었는데 이것은 종교 간의 대화를 더욱 더 깊게 끌고 들어가 바르셀로나 선언과 종교적 힘을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하는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의 가치에 따르는 평화의 메시지에 더욱 더 강한 힘이 부여되었다.

민주적인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실현

문화적 권리의 보존과 촉진은 본질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의 상호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예들은, 표현의 자유, 결성의 자유, 법의 역할과 민주적인 절차의 참여, 문화적인 권리와 상호 연계적이다. 유네스코는 민주정치에 대한 정보, 그것의 과정과 작용을 민주정치로 변화하는 국가에 사용 가능한 경험으로 보급하여 민주정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하우를 보조적인 서비스와 훈련 과정을 통해 전달시키고 민주주의의 건설의 과정에 공

78) 1997년 11월 유네스코 회장의 연설문.

79) Declaration o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1994년 12월 바르셀로나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문화평화를 위한 종교의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한다. 그러한 연습 세미나에서는 특히 젊은이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민주적인 가치를 신장시키고 법의 역할과 민주적인 기구들의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는 최근 들어 시민의 사회의 대변자들과 정부당국과의 대화를 지역적인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포럼의 조직은 그렇게 후원 받아왔고 다른 지역의 지역적인 단체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중요한 진전은 '데모스'(DEMOS)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핵심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분쟁의 방지라는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연안의 국가에서의 5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부 아프리카나 동부 유럽에 통치제도와 민주주의에 있어 적절한 지역적 발달과 구조와 더불어 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협의 사항인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한 고무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인간의 존엄, 품성, 표현의 자유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예시들은 공통적인 조직적인 가치들을 제공해주지만 유네스코는 민주정치의 형태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형태나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서 교육은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권리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문화권리의 보장은 1997년 '현대의 세대로부터 미래의 세대로의 책임에 대한 선언'에 제2항인 '선택의 자유'에 제시되어있다.

현재의 세대가 누리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위한 모든 노력은 중요하며 그것은 또한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보존 가능케 한다.

이 선언은 또한 인류의 문화의 계승의 보존과 미래 세대로의 전달에 대한 조항도 삽입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21세기의 직전에 있어 현대와 미래의 세대에 대한 문화 권리의 촉진하는 목적의 단체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5) 평화적인 문화의 교육을 통한 문화 권리의 활성화

평화적인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문화 권리의 현실에 대한 환경의 구성에 중요하게 기

여할 수 있다. 이 일반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 반 인종 차별, 그리고 문화적 다원론의 결과물을 달성해 냈다.

학문적인 프로젝트인 '평화의 문화로'는 인간의 권리,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민주적인 과정의 통합, 문화간 대화의 촉진, 객관적인 지원을 통한 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분쟁 후 평화구축의 조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화의 문화의 장려는 지금은 유네스코의 중대한 사업이며 UN의 모든 기관,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조직과 국제 연합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에 의해 발달된 인간의 권리 교육에 의해 제도적 조직과 연결이 발전되어 왔고 또한 문화 권리를 강화시킨다. 유네스코의 인간의 권리/민주주의/평화에 대한 강좌는 아르헨티나에서의 문화 권리에 대한 강좌를 포함하고 있다. 연계되어지는 학교 프로젝트는 147개국 이상에서 4700여 개교 이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평화의 관념과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가적인 활동인 평화 협약으로 발전시켰다. 최근의 혁신적인 접근인 독일의 두 번째 국제 연계 학교 프로젝트로 '단결의 날' 프로젝트로 인간의 권리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1998)

평화를 위한 교육,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 국제적 이해와 관용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1994년 12월 설립되었고 유네스코와 다른 교육에 관련된 UN의 기구들의 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97년 6월 조직된 세 번째 자문위원회의 개최는 평화적 문화를 위한 교육적 활동의 강화, 그리고 조직, 실행과 학교와 교육에 존재하는 연계성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본질과 내용이 평화로운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상정했다. 역사서는 불공평함에 대한 저항, 저항,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분쟁과 폭력에 대한 인간의 실체의 저항과 문맹자와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적 민주적인 발전은 상호 연계적이고 필히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교육은 각각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적절해야 하며 분쟁에 대한 비폭력적인 해결책이 문화적 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방식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문화적인 개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의 촉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혐오감, 불관용과 그외의 다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과서의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학교 교육은 인간의 권리, 단결, 문화적인 다원주의와 관용의 가치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국제사외가 채택했듯이 인간의 권리의 타당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사람의 권리는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단결의 행위의 강화시킨다. 인간의 권리는 의무와 책임감,

세금과 현존하는 몇몇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제도속에서 연계되어 있다. 다른 이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그에 대한 존중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국제위원회 산하의 기구와의 근래의 협력으로 유네스코는 '국제연맹의 인권교육에 대한 행동의 계획'에 대한 노력, 도구와 국가의 정책적 평가, 프로그램들과 전략, 국가적 관심의 집중, 현존하는 네트워크의 강화, 교육자원의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와 연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선언의 도입의 50주년을 맞아 많은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범지구적 선언의 보급에 대한 노력과 조직은 많은 언어로 보급되어야 한다.

6) 결론

인권에 대한 최근의 대규모적인 위반사례는 문화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일어난다. 이러한 폭력들은 그릇된 억제의식과 예술가, 저널리스트, 교사, 학자들과 종교적으로 소수 윤리적 그룹에 대한 박해나 훼손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인 부동의 문화적인 유산의 파괴와 박타르 혹은 유동적인 문화유산의 파괴, 발언의 제한과 문화적 표현을 제한했다. 많은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삭제행위가 있어왔다. 불관용적인 시위,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적인 폭력, 특정 문화에 대한 폭력, 광신교도들에 위한 폭력, 아이들간의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영화 안에서 폭력, 조직폭력의 증가는 가정 체제와 가치의 퇴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점이다. 그래서 평화적인 문화의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가치와 자세, 행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국제 연맹이 당면하는 도전은 문화적인 권리의 보호에 대한 위협이다. 이것은 그러한 보호에 연계된 국제법의 표준에 대한 강화와 다양한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또한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기소의 확립과 윤리적 정화를 위한 개개적인 기소, 국가간의 단결과 그의 방어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절차의 실시를 요한다. 문화적 규모와 연관된 분쟁은 유럽의 문화 강령이라는 생각의 반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 관련되어지는 모든 유럽의 문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것이다.

세계화라고 하는 오늘날의 경향은 문화 간의 교류를 더욱 가깝게 하고 그들 간의 상호행위의 증가시키지만 우리의 창조적인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론에 해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은 상호관의 존중을 강제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이는 스톡홀름 회의

에서 채택된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의 행동 방안」에 명시되어 있다. 세계화는 문화의 통합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구촌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져있고 또한 부유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막대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현재의 세계화되어진 경제여건 하에서 가혹한 현실을 맞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교육의 부분의 퇴화가 두드러진다.

4-1-3.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⁸⁰⁾

1997년에 만들어진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 초안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항을 담은 글로서,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문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정의와 문화정체성과 문화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더불어 문화유산, 문화교육, 시민들의 문화참여, 정보접근권, 문화정책 수립의 참여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문화권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선언문 초안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 (1) 인간 권리를 위한 국제 선언, 즉 유네스코 및 다른 기구와 관련된 두 개의 국제 서약을 상기하며
- (2) 인간의 권리란 국제적이면서 개인적인 것이며 문화적 권리 또한 다른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과 요구보다 못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 (3) 한편으로는 문화적 권리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인정된 모든 인간 권리의 문화적 차원에 대해 고려하며
- (4) 편협한 논쟁과 인종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오주의의 전제조건과 민주적 문화의 토대와 같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들 간의 상호 존중은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확신한다.
- (5)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방법이며 민주적 사회 속에서 문화 간 대화와 다른 문화들의 표현을 촉진하는 것임을 믿는다.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화 권리의 인정과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이 문화 권리 선언을 선포한다.

제1항. 정의

이 선언의 목적에 대하여

- a. "문화"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삶과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치, 신념, 언어, 예술과 과학, 전통, 관습과 삶의 방식들을 말한다.

80) 이 선언문은 1997년 양자결연을 위해 유네스코에 출석하게 될 전문가와 몇몇 기구의 대표자 그룹에 의해 준비된 비공식 작업 초안임.

- b. "문화적 정체성"이란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인식되길 바라는 바대로 규정하고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든 문화적 언급들에 적용된다. 문화적 정체성은 인간의 존엄성에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유를 포함하고 영구적인 과정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기억과 열망 모두를 함께 결합시킨다.
- c. "문화 공동체"란 인간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간 존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써, 그들이 보존하고 발전시키길 바라는 것과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언급들을 공유하는 인간들의 집단이다.

제2항. 기본 원리

이 선언에서 표현된 권리는 인간 권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인간 존엄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들이다.

- a. 그 누구도 인간 권리를 위한 국제 선언 및 다른 적절한 기구들 속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들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추구할 수 없다.
- b. 모든 개인, 공동체와 공공 기관을 위한 부정적인 의무와 긍정적인 의무를 함께 수반하는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이행한다.
- c. 이러한 권리의 이행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제약들에 비준을 받을 뿐이며 법과 질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의해 지켜지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제3항.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

1. 개인이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존중,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표현 방법
 - b.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인류 공통의 유산에 대해 기여하는 그와 그녀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특히 이것은 이러한 유산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알 권리를 수반한다.
 - c. 다양한 문화의 표현들과 중요한 현시인 문화적 유산에 대한 접근
2. 이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산에 대한 존중의 책임을 부여한다. 유산의 관리인들, 그리고 특히 공공 기관들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기 위한 책임을 갖는다.

제4항. 문화 공동체에 수반되는 정체성

1.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와 동일시를 하든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와 동시에 동일시를 하든, 장애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
2. 어느 누구도 그 또는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하나의 문화 공동체에 속하거나 동화 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5항. 문화적 삶에의 동참

1.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있든 모든 사람은 장애 없이, 그 또는 그녀의 선택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문화적 삶에 접속하고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2. 이 권리는 특히 다음을 수반한다.
 - a.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자유
 - b.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을 습득할 자유
3. 이것은 또한 문화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도출된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수반한다.

제6항. 교육과 훈련

1. 교육권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또는 그녀의 삶의 과정 속에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간은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이 자유롭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권리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누군가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자유
 - b.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
2. 이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며, 특히 가능한 한 유용한 자료들을 허용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 공공 기관에게 주어진다. 이 권리는 평등한 조건 속에서 실행된다.

제7항. 정보

1. 정보의 권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 내에서 모든 사람, 개인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는 그 또는 그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유를 위해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풍습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자격을 지닌다. 이 권리는 특별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정보를 검색하고, 받고, 전송할 권리
- b.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참여할 권리
- c. 문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도 수정하고 바르게 할 권리

2. 이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며, 특히 가능한 한 유용한 자료들을 허용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 공공 기관에게 주어진다. 이 권리는 평등한 조건 속에서 실행된다.

제8항. 문화 정책에 참여

1.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속해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 또는 그녀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발전을 이끌 문화 정책들의 형성과 수행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2. 이 권리는 모든 수준의 국제적 협동기구의 정책에 대한 참여를 수반한다.

제9항. 수행 : 일반적인 의무

현 선언의 수행은 다음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공공 기관의 구성원들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요구한다.

1.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장려하고 유포를 촉진할 것.
2. 문화적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려되는 것임을 확실히 할 것.
3. 적절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국내의 절차와 내부 연결자에게 소개할 것.

제10항. 수행: 국가의 의무

이것은 다음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의무로써 국가의 의무이다.

- a. 이 선언 속에서 인정된 권리는 국내의 입법과 수행에 포함시켜야 한다.
- b.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받은 것에 대해 청구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어야 하며 공판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여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 c. 관련된 정부 간 기구들 사이에서 특히 협력 기구의 증가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적인 협력기구의 자력을 강화하라.

4-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유네스코는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1999년 제 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2년 간 전문가 회의, 회원 국가 설문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각 국가의 이해와 의견을 모았다. 이 선언은 반세기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네스코가 표명하는 문화 관련 중점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UN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버금갈만한 가치와 파급 효과를 지닌 것으로 21세기 세계 각국의 문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권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

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취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 간·비정부간 기구·시민 사회·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문에 구현된 문화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을 권고하였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 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 간 단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4-1-5. 「세계문화장관회의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2003년 10월 16일에 크로아티아에서 있었던 제 6차 세계문화장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이 발표되었다. 협약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본 협약에 대한 조인 당사국은, 인권선언문 및, 시민권 및 정치적 권한에 관한,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1996년 국제 서약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법적 조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적용을 단호히 할 것을 서약하며, 사회의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선언문의 제27조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한에 관한 UN 국제 서약 제15조에 집약된 원칙에 준하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1966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문화 협력 원칙에 대한 유네스코 선언문 조항, 특히 각 문화는 위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존중 및 보존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1항을 회고하며,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선언문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국내적인 문화 개발 과정 및 문화 및 언어적 표현의 보존 및 함양 과정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의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모든 문화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의식하며, 문화 다양성이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 요소이며 또한 문명 간 대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상고하며, 법규의 자국 내 적용에 있어 최대한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며, 정체성 형성 및 사회 결집에 있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며, 고유 지식 및 전통 문화 표현과 무형 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특수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문화 간 교류 및 상호 변형의 잠재적 근원인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원칙, 특히 다중 매체론이 민주주의 및 문화 다양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문화 다양성 보존 및 진작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수행 권한을 인식 및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규정 및 원칙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것을 결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서문은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문을 준수하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공동의 지원, 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매체활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문화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공통의 권고안을 참고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본 협약문의 목표에는 이러한 이념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문

본 협약은 그 원칙 및 규정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음을 목표로 한다.

- 문화 다양성이 기회와 도전,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보존 및 고취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 문화 표현 개발과 문화 다양성 진작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 표현의 성취 및 유지와, 문화 다양성 자체를 세계화의 필수 요소로 보존 및 진작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기준틀로 작용코자 한다.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가가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하며, 자국 영토에서는 물론 전세계에 대해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 산업을 창조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한다.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 국제 무역 포럼 등 기타 국제 포럼에서 본 협약 기본 원칙을 증진코자 그 기반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활성화하려는 국제기구들의 노력들은 각국의 문화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화 관련 국제 기구에서 선언한 문화다양성은 각 국가의 문화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신장하고, 개인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화권 수립을 위한 배경에는 크게 보아 문화민주주의의 원칙, 문화다양성의 원칙이라는 두가지 기본 원칙이 있으며, 참여정부의 등장과 문화다양성을 수호하려는 국제기구들의 출현은 문화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4-1-6. 국제적 관계에서 문화권을 이해하기⁸¹⁾

1) 서론

오늘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맥락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개념이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적 관계의 진보를 이루는 정치적 이념의 담지자나 잠재적 촉매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첫째의 결과로서 '권리'라는 용어가 담론의 세계나 창작의 문맥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둘 다 '권리'라는 용어를 가정과 합의, 혹은 무의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런 애매모호함 뿐 만이 아니라 '문화적'이라는 이 단어는 허구의 합의와 이와 동등한 만큼의 허구의 불찬성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를 제공할지 모른다. 이는 '문화'라는 단어의 서로 다른 해석 때문이 아니라 '문화'라는 단어가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 속에서 '권리'를 수식하는 방식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방식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학문 분야에서 비롯되었던지 간에 인권 이론가들에게는 분명하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중이나 대중 정치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자명하지는 않다. 이해에 있어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며, 반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가가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권리들의 실현에 좀 더 기여하는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논의를 돕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2) 담론의 보편성

담화의 영역은 특정의 가정 위에 기초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잘 이해되어지나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자명하지만은 않은 지적인 논의가 펼쳐지는 맥락이다. 이론가들은 철학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부터 온 이론가들을 매우 의심하고 그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떤 기정 사실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선제 가정들은 여러 영역에 걸친 작업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데 그 이유는 참가자들의 몇몇이 자동적으로 가정한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가 나중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가 과거에

81) 아래의 글은 Lyndel Prott, "Understanding one another on cultural rights"와 Halina Niec, "Casting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right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UNESCO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펼쳐졌던 담화의 영역은 적어도 세 가지의 구별된 분야를 포함했다. : 합법적 이론의 영역, 정치 철학의 영역, 그리고 도덕 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인류학의 담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권리들'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합법적 이론에서 권리는 합법적 체제 안에서 시행 가능한 당연한 요구이다. 법률 제정에서 규정되거나 사법적 실행에서의 인식에 의해서, 또는 전통에 의해서 이 위치에 도달하였을지 모른다. 절차가 얼마의 합법적 규칙 내에서 상세히 설명되거나 요구들이 만들어질 때 발전(전개)되도록 기다리든 그렇지 않든, 합법적 권리의 존재는 그 권리를 어긴 데 대한 치료를 보장한다는 가정은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언어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합법적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에서 '권리'라는 단어를 위하여 쓰인다. 그러나 시행 가능한 메커니즘의 담화의 영역이라는 면에서 그 존재는 가정될 수가 없다. 점점 더 자주 '권리'라는 담화는 시행 가능한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기준들에 따라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쓰인다.

정치적 철학의 담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다지 동일하지는 않다. 윤리적 담화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반면, '권리'를 의논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이론가들은 국가의 조직을 위한 전략에 착수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은 시행 가능하지 않은 요구의 도덕적 우위성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도덕적 철학자에 더 가까울지 모르나 시행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어서는 변호사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론가들은 논의되는 권리들이 국가의 지지를 얻는 개선책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서 국가에 관여할 수 있게 모색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맥의 몇몇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가정들을 보여준다. '평화에서의 권리', 또는 '발전으로의 권리'의 존재를 주장한 1986년 이안 브라운라이(Ian Brownlie)가 언급한 코멘트를 생각해보자. 이것들은 윤리적인 수준에서, 심지어 정치적 이론의 수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제안들이다. 브라운라이는 혼란의 위험들을 지적하고 있다.

- '정치적 목표로서, 도덕의 기준으로서, 인권의 소위 새로운 세대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과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러한 좋은 결과들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로서 우려되는 것은 생각의 심각한 혼란의 우발적인 도입이다.

내가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의 발명의 새로운 유형은 초기의 선구적인 것을- 설

득과 외교의 과정-제거하는 것과 새로운 확정이 만들어졌다는 선부른 공표를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런 가능한 혼란들의 관련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언어적 권리를 위한 윤리적 논의와 우리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영역에서의 모든 언어들 속에서 정부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게끔 요구할 정치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지 모른다. 몇몇 국가에서는 언어의 큰 다양성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난하고 작은 것들의 몇몇은 언어적 다양성의 풍부함을 가진다. 그러한 권리들이 법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개정이 너무도 자명하게 유효하지 않은 권리들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것들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법적 체제의 비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권리의 언어는 많은 문화권에서 대중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인류학자들은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사회적 관습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그 언어의 쓰임새와 맥락을 관찰한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관찰들은 이미 언급된 담화의 모든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할 지도 모른다. 변호사로서, 정치적인 이론가나 도덕가로서 그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그들은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지 시간에 걸쳐 이런 다른 학문 영역들에서의 담화의 기초를 바꿀지도 모르는 시행들을 보고할 뿐이다.

3) 역사적 가정들

‘권리’대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발전의 상이한 요소들을 통합해왔다. 영국의 관습법은 특정한 개정들(habeas corpus의 고문서와 같은)의 사법적인 발전을 통하여 수백 년에 걸쳐 ‘시민’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를 전개하였다. 유럽적 전통은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권리의 광범위한 언급으로 시작했으며 이어서 합법적 체제로의 동일한 용어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또는 ‘인권’은 같은 종류의 요구들인 중대한 영역들을 다루면서 ‘인간 권리’의 일반적인 표제 하에 훗날의 논의들로 동화되어 왔으나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그들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브라운라이가 말한 회의론은 적절한 개선책들의 원조를 받지 않을 지도 모르는 권리의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주의 깊은 현실적인 변호사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은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권리들을 창조하고 법적

인 체제 하에서 고용된 권리들을 갖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피트 슈미트(Pete Schmidt)는 문화적 유산의 권리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 권리의 과정 지향적인 시각은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사이의 이분법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에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

몇몇 인간의 권리 표명은 시행 절차 없이는 힘이 없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인간 권리 요구가 이용 가능한 어떤 무대에서든지 경쟁 될 수 있는 정치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그러한 기대치들이 인간 권리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정치적 문화에서 나온 유효한 권리들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이다. 요구되어지지 않은 권리들은 법적으로 유효화 되지도, 정의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은 권리들이다.

윤리학의 성명으로부터, 아니면 정치적 전략으로서 그러한 절차는 보통의 것일지도 모른다. 법의 창제 마냥 은밀한 용어로서 불찬성을 야기할 것이다.

이 예는 심지어 변호사들이라도 동일한 이슈를 맥락화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인간 권리의 소수 집단의 약속 하에 국제법으로의 움직임은 심지어 더 중요하게, 세계인권선언과 협약을 통하여 중요한 위치로의 법적 담화의 또 다른 영역을 가져왔는데 국제법의 그것이다. 국제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시행은 그 학문의 지배적 문제여 왔다. 범법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인권의 가장 악독한 위반에 관한 국제 사법권은 누렌버그 전쟁 범죄 재판으로 확립되었고 그보다 더 최근에는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특별한 두개의 재판으로 확립되었다. 영구적인 사법권에 대한 법규는 몇몇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합의되었다. 정치적 전략의 양상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인간 권리 논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이 되어왔음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인 전통적인 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인간의 권리의 개념을 넓히려는 시도는 모두가 알듯이 또 다른 전통으로부터 왔다. 오랫동안 서부 유럽권에서는 그들의 체제 속에서 이미 확립된 것과는 너무도 다른 '권리들'의 승인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한 내키지 않음은 이 책에서 임마누엘 드코(Emmanuel Decaux)에 의해 기술된다, 그러나 헬리나 니엑(Halina Niec)이 지적한 대로, 다음의 수십년은 권리들은 전통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로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 법적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국제적 성명들로 가득했다. "인권에 대한 비엔나 세계회의 선언문"(199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며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국제적 사회는 공평한 방법으로 동일한 근거 위에서 동등하게 강조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취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물론, 계속되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법적 권리로서 여겨지는 권리를 합법적 권리로 바꿀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종류의 권리들이다.: 그 권리들은 그들이 국제법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들이 달성한 수 세기의 발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는 국제적 법률 문서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한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학자들이 그러한 문서들이 암묵적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단어가 그들이 국제적 또는 국내적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시민의 그리고 정치적 권리들이 이 때문에 사라져간다고 논의하며 그들이 국제법에서의 시행에 있어서 새로운 권리들 만큼이나 적게 확보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발전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본다면 문화적 권리의 자만심이 지나친 주장에 대한 몇몇 경고는 권할 만하다.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발전을 위한 선언문"에서 주장된 것처럼 몇몇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베엔나 선언에서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근원적인 인권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다시 주장되었다. 그러나 1998년도의 그 성명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왔던 '유지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어느 언급도 부재함을 알게 될 것이며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지금은 "문화발전 10년계획"과 1995년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의 이슈에서 절정에 이른 "문화와 개발 세계위원회" 이후로 잘 이해되어지는 '문화적 발전' 그 자체의 전체 맥락에 대한 언급의 부재 또한 만나게 된다. 이것은 권리의 새로운 개념의 채택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도움이 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더 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수정과 확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성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문화'와 '문화적인 것'

권리에 대한 토론에서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들은 경고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 경고는 문화적인 권리 -지금까지 인간의 권리들 중 가장 발전이 적은 영역, 최근에 그것을 좀더 명료하게 밝히고자 하는 가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담론이 법적인

도구가 기초되고 마련되기 전의 얼마동안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문제는 “문화”에 대한 정의이다. “문화”의 의미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두 가지만 언급하면 : 한 그룹의 가장 지적이고 예술적인 성과로서의 “문화”(대문자 C로 나타내는 문화). 그리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공유되는 기술, 믿음, 전통으로서의 문화(소문자 c로 나타내는 문화)의 정의가 있다. 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몇몇의 담론들은 “최고의 성과물”을 지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다른 담론들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흥미롭고 서로 다른 반응을 단순히 재현하는 일상적인 대상이나 관습들에 기울어져 있다. 어느 쪽의 의미이건, 그 개념은 역동적이다. : 문화들은 항상 변하고 있다. 어느 한 시대에서 가치가 높은 문화(대문자)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 같은 사회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서는 최고의 성과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행동양식 역시 변한다. 빠른 수송과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의 의미를 좀 더 완벽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된 행동양식과 기술”은 실로 문화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내용은 계속해서 변한다.

로돌포 스타벤하겐(Rodolfo Stavenhagen)은 그의 논문에서 “문화”의 다른 의미들을 찾아내고, 인간의 권리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문화)의 사용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이 존재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인 발전”의 의미 또한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문화적인 발전을 요구할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된다.(예를 들어, 「아프리카현장」).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TV 채널 수의 증가? 더 나은 “전 세계(universal)의 문화”로의 접근인가? 스타벤하겐이 언급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다른 것들로 보충될 수 있다. 어떤 나라들은 오래된, 어쩌면 소멸해 가는, 문화적인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것에서 문화적인 발전을 찾기도 한다. : 뉴질랜드에서 젊은 마오리 조각가들을 장려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어떤 나라들은 재주나 기술이 번창하는 것을 관광 사업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세계적인 문화유산 명소 주위에서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은 지역 시장에서 매우 싸게 보급 될 수 있는 수입품들의 위협을 받는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예술 형태를 매수(subsidize)하는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발전”의 의미로 가능한 3가지를 제시하면 : 쇠퇴를 예방하는 것, 공예(craftwork) 시장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시장의 힘에 대항하는 지역적인 표현의 양식을 장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권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문화적”이란 것의 의미이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에 관한 권리”는 “창조성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인가? 그것은 저

작권과 특허권, 예술의 자유, 교육 그리고 종교와 언어의 지적 자유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와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문화적인 권리”는 “문화에 대한 권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문화를 지키고, 시행하거나 혹은 문화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주장에 관계된다. 문화적인, 지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소유권에 대한 배상의 권리와 같은, 권리에 대한 좀더 새로운 주장들은 여기에 아주 적합할 듯 하다.

“문화적”이란 것의 좀 더 넓은 의미는 문화의 생존을 강화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집회의 자유, 개인의 자유,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초기 전통적인 인간의 권리의 상당수가 소수의 문화의 생존에는 비판적이었다.

한 가지 또는 다른 의미에서 “문화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주장은 1986년에 만들어 졌는데 그것은 11가지 “문화적”인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 5가지는 이미 현존하는 국제적인 법적 문서에서 보장되었고 6가지는 헌장이나 다른 비법률적인 문서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들 중 두개는, 이제 효력을 발생한 ‘아프리카헌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법적인 지위로 넘어갔다). 좀더 최근의 “토착민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초안”은 “문화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몇 가지 “권리들”을 덧붙이고 있다. (예술, 8-정체성의 차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 9-토착사회에 속할 권리; 12-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준수하고 부흥시킬 권리; 16-그들의 문화를 모든 형태의 교육과 정보에 적절하게 반영시킬 권리; 17-그들 자신의 미디어를 설립할 권리).

소수의 권리와 그 지역 고유의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언급은 종종 이미 법적인 문서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고치게 하기도 한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에 관련된 것과는 다른 권리라기보다는 고쳐 말하는 것은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만 큰 효과적이지 않은 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 관계된 권리의 특별한 중요성에 의해서 요구되는 부가적인 요소들을 포함 할 수도 있다. : 종교에 대한 권리는 타고난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 언급된 몇몇의 권리들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권리들 중 하나는 타고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어떤 특별함을 가진다.

토착민들은 땅에 관해 그들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권리를 가진다. ……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유지해야 할 권리 또한 가진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이번 장의 나중에 논의된 호주 토착민들의 태도에 관한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땅에 관한 태도에 대한 폴라린 실론(Folarin Shyllon)의 논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된 권리는 어떤 법적인 시스템에서 이미 깊숙이 박힌 다른 권리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 오기도 했다. : 예를 들어, 재산에 관한 권리. 이런 종류의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권리에 기반한 그러한 주장들은 법적 인정(허가)에 대한 모든 새로운 요구에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법적 인정은 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심각한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은 반드시 “문화적” 권리가 되고 다른 것은 “경제적”인 권리라고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 그러한 경제적 권리는 어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그러한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도난 및 불법 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협약”(1995)으로 귀결된 힘든 절충(협상)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많은 유럽의 법적인 제도에서 오랫동안 인식되었던 “권리”는 물건을 소유하려는 구매자의 권리였다. 비록 그것을 도둑맞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주인으로써 말이다.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빼앗긴 유형 문화재의 귀환을 주장해 왔다. 협상의 초반에는 그런 도덕적인 주장이 실로 용인 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재적인 위치의 나라들에 있어서 실재하고, 강제 할 수 있는, 운곽이 잘 잡힌 법적 권리의 간섭을 의미했으므로 특별한 예외가 협상되고 제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들은, 최소한 이 협약에서는, 첫째는 그 권리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적용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첫 번째의 제한이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의 법에 반하여 그 나라에서 가져간 물건에만 적용되며(도난의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의 법에 반하는 경우나 이동이 가능한 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분명 주의 깊게 계산된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밀수출의 경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환의 주장에 분명한 시간적 제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용인된 제한들과는 대조적으로, 자국의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실행의 힘든 작업이 그러한 단계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이제 이 협약의 참가국이 될 수 있도록 나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적 권리가 현존하는 것의 변화를 위한 힘든 협상을 통해 그것의 중복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서 잘 보장된 권리라는 성과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주장된 바 있는 어떤 다른 문화적 권리라는 점에서 다시 설명될 수 있다. 문화적인 발전에 대한 권리를 고려해 보라. 이 구문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라도 문

화적인 활동의 위협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것을 가능한 한 지원금의 방식으로 국가의 개입이란 실용적인 조건에서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널리 용인된 “자유 무역”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과 문화적인 사건에 국가의 비개입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의 문화 통제 정책에 대한 반작용)을 지지하는 널리 용인된 매우 강력한 정치적 공식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가 아닐지도 모르나, 국제 정치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국제 정치는 문화적 권리를 위한 강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주장이 아닌 타이트한 협상을 요구한다. 성공하기 전에(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전에?) 다음의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주장인가? 이러한 예외는 얼마나 넓어야 하는가, 또는 얼마나 좁아야 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사회를 위해 그 예외가 허락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문화적인 발전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들을 고쳐 말하는 국제적인 서류의 축적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들은 그것들의 채택에 불리한 원리들을 가장 강력하게 믿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분명히 채택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 그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질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좌절의 깊이만 가장 확실하게 커질 것이다. 그 결과는 “문화적인 권리”가 요구되어지는 추가적 보호는 내포하지 않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각성뿐만 아니라 분노와 초조감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룹 내의 다른 권리들과의 일치나 발전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주장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인간 권리의 발전에는 전통적인 것이 존재해 왔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혼합이 세계인권 선언으로 보여진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실천은 아마도 가능한 한 멀리 인간의 권리를 넓히고자 하는 칭찬할 만한 욕구에서부터 생겨난 것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다른 문화적 권리들은 그렇지 못한 반면에 어떤 “문화적 권리들”은 이미 잘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또다른 권리들은 심지어 아직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문화적 권리의 달성에 진전을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차이점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5) 개인과 집단권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화적인 권리의 한 가지 측면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공동적)인 권리로써의 설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권리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담론을 피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문화는 어떤 종류의 집합성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개념을 가장 잘 다룰 수가 있을까? 이 연구에 관한 공헌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담론이 발전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접근의 다양성이 존재했다. 로돌포 스타벤하겐은 그것들이 집단적이라고 언급한 반면, 엘리자베스 에밋(Elizabeth Evatt)은 그것들을 집단성에 관해서 발휘되는 개인적인 권리들로 보았다. 그리고 플라린 실론은 그에게는 그것들이 최고의 공동의 권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공헌자들이 나타내는 한가지 고려사항은 분명해 졌다. : 문화적인 권리는 반드시 그룹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룹이 없고서는 개인은 그 또는 그녀의 집단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단적 권리에 대한 많은 담론들에서 그룹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룹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다. 이것은 문화적인 권리의 근본으로 가는 딜레마였다. 예를 들어, 한 부족 그룹의 생존이 성과 연령의 사이의 적당한 균형을 존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법률적인 권리로써 규정되어진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 윤리와 법 외부의 제도가 그 사회의 굳어진 전통을 침해하기 전에는 거의 개방되지 않은 선택사항. 그러나 그 사회의 너무 많은 구성원들이, 또는 심지어 어떤 경제적 주요 행위자들이 그 선택사항을 실행한다면 문화적 경제적 단위로서 그 사회는 붕괴될 수도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나 상이성은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화의 보존이 노인지배 사회에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희생해서 또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을 희생하여 장려될 수 있을까? 만약 다른 사회의 패턴이 그들에게 더 유익해 보인다면 할지라도 말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방법이 있을까?

이것은 이미 여러 중요한 국가의 판례가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 판례법은 타 부족과 결혼하고, 이혼 후 자기 종족으로 되돌아간 여성들의 종족자격의 여부를 고려해야만 했다. 그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했나? 이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집단의 소속자격의 규칙을 포함하는 집단 권리에 관계된 기본적인 문제(자주 전례가 없는)와 관련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생존은 개인적인 성패가 아닌 변형된 형태인 것 같다.

전통문화는 지난 2세기가 넘는 동안 수많은 경우에서 인근문화의 사고방식들을 수용하면서 수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것을 허용하는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토착민의 이동이 그러하다. 지난 10년 넘게 그들은 그들이 제공해야만 했던 그들의 상태,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학식에 있어서 산업화 국가를 민감하게 하는 실질적인 향상을 취해왔다. 그들은 마오리족, 아마존 부족, 사미족, 이뉴잇(애스키모족), 캐나다와 미국의 원주민 그리고 호주 원주민 등인데, 그들간에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해왔다. 수만년 전 고대인들의 일부는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스타일에서 보면 대부분이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상식, 판단력, 양식을 만들 수가 없었다. 현대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터넷은 그들의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협력적인 행동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 토착 문화의 공통적인 요소로부터 영토를 관리하는 전통(traditions of custodianship), 그들의 조상과 가족에 대한 존중, 존중에 대한 자연적인 요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인류의 세계관과 연관된 토착민들의 새로운 세계문화가 출현했다. 이것들은 이 '토착문화의 문화' 를 정의하는 요소들으로써 인용된다. 이는 현대 산업화되고, 합리적이고 기능주의적 사회와 구분되는 세계관이다. 이는 사실이다.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려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우화에서 동물의 성격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대럴 포지(Darrell Posey)는 그가 인용한 소년과 크리스마스 별레란 호주 원주민 이야기를 흥미로운 예로 들고 있다. 반면에 딘 수아게(Dean Suagee)는 그의 저서 『거북이의 전쟁 파티』 Tuttle's war party"에서 침입하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하는 세 가지 다른 계몽철학자를 꿈과 늑대, 거북이를 통해 설명한다. 딘 수아게의 기고문 서론은 여전히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부족문화의 기초로 윤리 교육의 한 방법의 표본이 된다.

6) 문화적 권리와 소수의 권리

문화적 권리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논의의 영역은 소수자 권리와 관계있다. 소수자 권리는 자주 언어, 종교, 교육적 실행, 전통 등의 생존과 같이 문화적 이슈와 관련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수자들에 의해 옹호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오직 몇몇의 경우에서만 오늘날 언어적 다수는 자신의 고유한 언어의 사용으로부터 법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소수 집단에서 만큼 다수집단에서의 개인들에게도 본질적인 몇몇의 중요한 문화적 권리들(적어도 위에 논의되었던 관점 중 하나에서)이 있다. - 집회의 자유, 연설의 자유, 그리고 일치/복종에 열중한 정치체제 하에서 억눌러질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생생한 문화적 삶을 허락하는 저작권과 특허권. 그러므로 그것은 문화적 권리를 논의할 때 제한되지 않는 공식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소수의 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고유의 소수족들을 논의할 때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다. UN에 의해서 사용된 그 현재 정의는 그들과 그들의 추방해왔던 그 이주해 온 지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구별을 강조한다. 그들의 이주는 다른 이들이 역사적 차별의 지배 하에 있어왔던 반면에 많은 소수 원주민 족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회에서 인식되어지는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가지게 되어왔다. 그러나 이 특수화된 국제적인 관례는 현재 다수에 포함되어 존재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부족 집단들의 관례를 가지고 많은 그들의 문화적 실행의 밀접한 유사성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나라에서 더 나은 조건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써 원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동일한 정치적 강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폴라린 실론에 의해 제출된 땅에 대한 아프리카의 태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문화적 다수를 나타낸다. 유사한 땅에 기초한 문화와 소수, 그리고 원산인 문화들은 다른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존재한다.

7) 문화적 권리와 토착인들의 권리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논의 뒤에 있는 맹렬한 영향력(driving force) 중의 하나는 확실히 원주민들의 이주에 강한 인풋이 되어오고 있다. 그들이 언쟁해 오고 있는 그 권리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새로운 요소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의 몇몇은 전통적으로 인간 권리의 실현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강한 제한에 부딪힌 것 같다.

문화적 자산의 본국 송환에 대해 주장되어진 권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러한 것에 대한 요구는 새로 독립한 국가들에 의해서 1960년대의 독립화 과정 동안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그들의 독립 이전의 다른 측면들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제거된 옛기록과 문화적 물건들은 매우 많은 경우에서 반환되지 못했다.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강한 압력의 직면 속에서 유네스코의 총회는 1964년에 「불법 수출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문화적 자산의 수입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네스코 추천을 채택하고 그에 이어 1970년에 '불법 수출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문화적 자산의 수입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표자 회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후자는 소급되지 않았다. 몇몇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그것의 원래 소유 나라들에게 문화적 자산을 돌려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또는 불법사용의 경우에는 그것의 변상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의 위원회'가 1978년에 설립되었

다. 그것의 활동은 문화적 자산이 주로 위치한 국가들이 반환요청에 의해 쇄도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암시하지 않는다. 오직 6개의 지원서만이 위원회가 존재해온 20년 동안 위원회에 의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안된 문화적 자산 반환의 권리는 또한 딜레마를 창조할 수 있다.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 한 부족 집단의 신성한 물건은 또 다른 부족에게는 금기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 다른 부족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 그러한 물건들의 반환은 물건들이 왔던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볼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가능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지역사회로부터 이러한 물건들의 추상적 관념(보통 무력이나 절도에 의한)에 의해 행해진 해는 명확하다. : 그 부족이나 인접한 부족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한 물건을 반환하는 것에는 주의 깊은 준비가 요구된다.

그 추출된 물건이 존재해 왔거나 놓여져 있을지 모르는 사용은 또한 문화 사이의 성질을 창조한다. 신성하고 비밀의 물건들의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문관심의 한 예이다. 전시와 인류 유물에 대한 무례한 다름은 훨씬 더 충격적이다. 그러한 경우들은 지역 사회들 사이에 커다란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그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줄어들 수 없다. 반면에 박물관에서 반환된 물건들의 몇은 파괴되어졌다. '타스마니아' Tasmania라는 호주의 한 주에서 박물관에 의해서 반환된 인류 유물은 소각되었다.(비록 이것은 당 지역사회에서 전통이 아니었지만) 그 이유는 유물이 모독되는 어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졌다. 한 미국 원주민 사회에서 원래는 신성한 의식에서 사용되었지만 후에 박물관에 의해 입수되고 전시되었던 물건이 만약 그것의 해당지역사회로 반환된다면 강물에 던져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이 모독된 물건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박물관 문화'에 충격으로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반면에 그것은 수년 동안 심각한 위협 하에 있어왔던, 그리고 지금 그것의 전통 풍습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화에 적합하다.

8) 권리의 문화

논의하는 인간 권리의 문제에서 보편주의자와 상대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전자가 모든 문화를 통해 인간 권리의 보편성을 주장해왔던 반면에 후자는 특정 문화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들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은 그들 사이의 공존성의 정도를 과장해서 말한다고 간주해왔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텔레비전 회의 동안에 앨리스 테이(Alice Tay)가 제안했던 것처럼 보편성에 대한 욕망은 여러 체

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 다양성에 대해 우리가 덜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세 가지 고찰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우선, 권리사고의 구조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관계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기여하기 위한 많은 것을 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세계인권선언과의 약속,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인권 성명의 최상의 사용을 만들기를 소망한다면 권리사고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전통문화가 나타냈던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현대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요구를 만드는 방법으로써 보편적인 '권리진술'을 만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양상 모두 이 종이의 묶음 속에서 표현되어져왔다.

대럴 포지는 그의 논문에 있는 '소년과 크리스마스 딱정벌레'라는 이야기를 인용한다. 이것은 비록 호주 원주민의 관점으로부터 나왔지만 서부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들이 문화적 권리에 대한 담화에서 다루는 몇몇의 이슈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토착 지역사회에 의해서 발달되어진 우화이다.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에서 그러한 강요/불법 점유는 이상해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함유물의 바로 그 요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부터 같은 문제의 복합을 바라봄으로써 전통적인 구조 - 권리 문화 - 에 도전하는 것이다. 만약 실지로 우리가 단지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환영하고 보호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불쾌한 감정을 새로운 표현의 방법에서-우리의 마음에서-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실지로 '권리'로써 서부 유럽 논의에서 역사적으로 구상되어져왔던 많은 이러한 이슈들은 전통적인 지역 사회들 속에서 거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토착민들에 대한 유엔의 설명은 이 집단들로부터 그들의 땅에 대한 많은 애착을 만들었고 '땅 권리'는 많은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집결하는 외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들의 권리를 사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화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권리의 개념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호주의 판정 속에서 진술되어졌기 때문에 당사자인 호주 원주민 집단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향한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 조항에 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다. 유사하게, 권리 진술에 의해서 그들의 생물적인, 식물의, 그리고 신화적인 세습에 대해 전통적인 사람들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다른 것들로부터 이러한 양상중의 하나의 분리가 그들의 진실성 없는 취급인,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 한 토착 집단의 대표자 한명이 이렇게 말했다. :

나는 국제적인 협의회에 가는 것과 마치 내가 의학적이거나 식물학적인 자원들과 그것의 다름에 대해 아무것도 알도록 기대되어 질 수 없는 것처럼 '구슬과 깃털' 그룹으로 쫓아 보내는 것에 싫증이 난다.

동시에 권리의 언어가 행동주의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졌다는 것과 이러한 사고의 방법이 그 전통적인 문화에 특유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건(case)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함에 틀림없다. 이 점은 어떻게 권리 대화가 특정 현대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용되어져왔는가를 조사한 앤벨린다 프레이스(Ann-Belinda Preis)에 의해서 매우 잘 만들어졌다. 보츠와나 국가의 판례에서 유명한 변호사와 여성 행동주의자는 비록 한 보츠와나 남성은 외국인과 결혼했지만 그의 자식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결혼한 한 보츠와나 여성은 보츠와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녀의 아이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1984년 시민권 조항에 도전했다. 그녀의 주장을 떠받치던 최초 결정에 대한 반응은 보츠와나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는 것이다. 그 결정은 그 후에 법정 호소에 의해서 지지되었고 그 법률은 후에 그 결정을 따르도록 수정되었다. 프레이스는 일어난 일은 그 문화가 교섭되어지고 있고 그 조항들은 권리 청구인과 정부에 의해서 내부로부터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문화 없이 한결같이 처리되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문화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곳의 문화들처럼 그것은 동적이다. '불일치와 불화가 문화이고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경우에서 인간 권리의 문화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권리'라는 용어에서 형성된 첫 번째 챕터와 '의무'라는 용어에서 형성된 두 번째 챕터를 가진 인간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선언의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한다. 후자는 가족과 사회(제27조 제1항), 국가적 공동체(제29조 제2항), 아프리카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확장(제29조 제7항) 그리고 아프리카 통일체(제28조 제8항)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의 의무를 포함한다. 서두는 다음과 같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준다. :

인간과 사람들의 권리의 개념에 대한 그들의 반영을 고무하고 특색을 나타내야 하는 그들의 역사적인 전통의 미덕과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 :

그리고 :권리와 자유의 즐거움 또한 모든 사람들의 역할에 의무의 수행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츠와나 조직과 시민권 법령처럼 이 선언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교섭과 조항의 취급에 대한 전후관계를 제공한다.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이뤄지

기 위한 경험의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많은 겹쳐지는 조항의 정확한 포함은 법률가에게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은 특히 아프리카 삶의 중요한 양상으로써 보여지고 많은 문화를 가로질러 공유되어질 것을 적응시키려는 노력이다.

9) 서로 다른 것들로부터 배우기

권리논쟁은 적합한 전통적 요소들에 섞여 사용되고 그리고 전통문화를 재발명한다. 전통문화의 운반인들은 가치있게 받아들여진 권리에 바탕을 둔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권리는 완벽하게 그들의 생각의 방법을 필수적으로 담아낼수 없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전통시각이 더해지고 다른 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데 강력한 믿음을 가진다.

몇몇의 일들을 그려보자.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먼 킴벌리 지역의 니가리닌 부족의 4명의 늙은 남자들은 그들부족의 비밀스런 전통적 가르침들을 외부세계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적 결정들로, 1071년에 고브랜드 권리 판례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법정은 처음으로 케번(때묻음, 세련됨) 과 부족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기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통적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지했다. 이 영토권리는 연방의 법률제정에 정식으로 기입되었다. 니가리닌 부족은 그들 부족의 영토를 사십년전에 떠났다.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신성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권리를 가진다.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정부의 정치적 정당이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는 이 영토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법률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니가리닌의 4명의 늙은 사람들은 유네스코에 만남을 갖고 그들이 그들의 상속의 중요성이 통과되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세계적인 바위예술가들이 그들이 참여한 그들의 전통적 축제가 법률적인 공유로 구체화 된 것을 비디오에서 봤다. 그것은 신화적 형상들의 성스러운 사진들을 포함하고 보통의 부족의 초기구성원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이런 기념의식을 실천하는 것의 의무를 설명했고 이 긴 전통은 통과되었다. 나눔의 철학은 중심적이고 그리고 모든 대륙에 걸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부족 문화의 비판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 힘있는 도덕적 가르침은, 최고의 신성한 의식들을 통해 되풀이되고, 동물의 신화적 활동의 재현으로 구체화 되었다. : 니가리닌의 경우 , 이것은 예뻐이다. 탐욕스럽고 그리고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는, 그리고 다른 새의 성격들은 이야기 안의 다른 행동들로 재현된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것이 자연에 가까워진 많은 사회속의 전통적 도덕

성의 통과 방법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우리 모두에게 대면한 화제들에 대한 양자택일의 방법이다.

말해진 메시지는 '우리는 너를 (접촉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것은 초기 오스트레일리안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고, 부족의 비밀폭로 이래로, 굉장하고 문제적인 경험이었다. 아직 초기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이것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권리의 언어는 그들 부족의 영토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다른 '다가가기(접촉하기, 설득하기)'의 예로서는 원시의 예술가들의 동의였다. 늙은 그들 부족 노인들의 동의와 함께, 그들의 디자인들을 발표하는 것이고, 신성한 사진에 토대를 두고 그리고 테마에 토대를 둔, 두개의 포트폴리오와 원시의 예술 달력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기업가는 그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판매 그리고 예술가들이 판권의 파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기술공들에서 위임하였던 용단들(신성한 이미지들에 대한 특히 부적당한 사용)에 무늬를 사용하였다. 만약 공인되지 않은 사용이 이야기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전설적인 소유자가 꿈꾸기와 그들을 벌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한 원시의 법률의 밑에 의무인 것은 위반의 책임이 있다.

만약 허가가 꿈꾸기의 그림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술가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수공예품은 나중에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또는 제 3당에 의해서 그려진다. 그것은 그 혹은 그녀가 제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던 증단을 위해 책임 있게 유지된 예술가이다. 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은 일어났다.

다시 '권리'의 생각은 그 또는 그녀의 직업으로 예술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적이었던 그들의 경우가 실업가에 대해서 개인들로서 그들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지라도 , 관계 내부 종족은 더 순진하지 않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 그리고 또한 고소할 예술가들의 권리는 훨씬 판권의 전통적인 계획으로부터 돌이켜진 믿음과 의무의 종족 제도를 묘사하였다.

또 다른 보기 그러한 뻔기 밖에 ,그리고 또 다른 문화의 민족들에게 중요한 문화적인 진실을 전하는 노력은 알래스카에서 코디액 섬으로 1000명의 토착 사람들 정도의 골격 유해들의 반환의 뒤에 일어난 고든 풀라(Gordon Pullar)에 의해서 묘사된다. 8년의 회

원이 영향을 미치는 후에 워싱턴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Museum)에서 계속되었던 유족들의 매장을 위해 이 캠페인의 성공은 저절로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플라는 논쟁이 토착 사람들 그리고 서쪽 과학자들이 시간과 가족 그리고 우주를 보는 것의 다른 방법을 매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에 근본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배당하였던 것을 설명할 충동으로 느꼈다.

토착 사람들에게, 시간은 완곡하다. 수백년 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선조들은 여전히 원의 부분이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 사람들 생활의 그룹의 일원들이다. 그것들은 또 다른 세계에 통용되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룹의 정회원들로 남아있다. .. 중년의 나이의 아메리카 인디언 여성... .표현된 시간의 개념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느끼었던 길에 있을 때... " 당신이 거처를 정하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할 수 없으시오 당신은 과거 없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없으시오 당신은 과거가 오늘 있는 것을 보는군요 그리고 과거는 내일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

10) 결론

우리는 전례없는 문화의 침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많은 시골 마을들이 외국의(신종의) 문화와의 접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수도들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이 있으며, 현대의 국제미디어의 재현들로 인해 보강되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두개의 미국대륙의 활동가들은, 심지어는 먼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과 그리고 많은 불리한 조건하에 놓인 공동체의 연설가들이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인간권리의 대화를 잡고 있다. 그러나 담론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화자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긴 인간권리의 전통이, 그것의 효력있는 교육적 가치, 그리고 이점들은 그것이 이미 윤리상의, 정치상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화 사용의 나뉘어진 흥미있는 논쟁들을 얻고 있다.

동시에, 문화권리란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문장이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로 다른 의미들 사이의 어떤 혼란의 대화가 자유롭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이것은 또한 필수적인데, 만약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의 조성을 찾고자 할때, 다른 목

소리에 귀기울이고, 다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위협에 처해진 문화의 양상들을 보호하는 데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고취하는데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권리들'의 대화는 오로지 항상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다른 유형의 향상의 문화적 차이들이 있다.

환경적 규범들은 우리에게 대지의 보호 의무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실험가능한 지구가 떠나는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계속되는 공격적인 '대지의 교훈적 권리' 주장들은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문화와 그리고 보호의 문화는 현재의 세계의 많은 부분들과 충돌하고 있다.

주의깊은 청취는 다른 것을, 너무 지나친 훌륭한 신뢰할 수 있는 문화 권리 보다 국민복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더 좋은 윤곽을 그리고 또 힘있는 인간 권리의 전통의 부분처럼 문화적 권리를 수행하는 노력으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 세기에 직면한 인간권리들에 의한 도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1-7. 국제 관계에서 문화 권리의 이행을 위한 토대 구축⁸²⁾

1) 서론

최근에 문화 권리에 쏟아진 세인들의 주목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인권家の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인권의 파장 속에서 아주 미약하게 발전하고 있다. 유네스코나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비중을 주시해 온 이들은 이러한 규정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문화 권리의 인지를 둘러싼 불확실한 태도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역사적인 기원을 달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의아함은 사라진다. 변화할 시간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50주년 기념을 하루 앞둔 지금, - 문화 권리가 인권의 범위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널리 규정하며 - 문화 권리의 중요성은 이들 권리의 법적인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이들 권리는 개인들, 집단들 둘 모두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

2) 인지의 개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들은 두 개의 분리된 조약으로 나뉘어지면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구분되게 되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CR) 모두 인권의 통일성을 지시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법적인 성격을 부정하던 사람들을 위한 승리로써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의 법적 성격을 놓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두개의 분리된 협약들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들은 각각의 권리는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권리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연방이 특별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안,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강화는 자원,

82) Halina Niec, "Casting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right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유네스코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시간 그리고 과정과 관련하여 미리 규칙을 정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그들이 논쟁하는 이 본질적인 다름은, 권리를 이행시키는 의무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권리의 영역에서 그들 내부의 법체계에 있어 사법적인 교정의 수단을 설립할 연방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의 수행은 특별히 계획된 조항의 조직들을 통한 국제적인 공동체의 행동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방의 의무에는 이러한 명확함이 없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를 긍정하는 선천적인 본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권리의 이행은 절대적으로 결과를 강요한다. 주어진 연방의 실현 속에서 이러한 권리들은 용인과 뒤이어 일어나는 인지를 넘어서 확장된다. 이러한 권리들의 이행과 강화는 명백히 정부의 정책과 계획에 의해 증명되고 이러한 행동은 수취인과 수취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계획된 권리로서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논의이다. 이들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은 이러한 권리들의 적용에 대한 관점의 국제적인 감시를 지속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극단의 관점은 많은 법학자들과 인권 활동가들, 유엔 체계의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합법적으로 지탱하는 국제적인 수많은 선언들의 수용으로 이끌린다. 예를 들어,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제1절:

인권 세계 회의는 모든 연방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기구, 그리고 국제법, 미국 헌법과의 조화를 통해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권을 주시하고 보호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릴 그들의 의무를 실현한다는 중대한 위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들과 자연권의 보편적인 본질은 불문에 부친다.

제3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첨가되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독자적이고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국제 공동체는 반드시 인권을 국제적으로, 같은 강도로, 같은 위치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문구의 완벽한 독해는 법적 권리로서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의 지식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진단에 관해 너무 장황하다. 집약하면 우리는 스테이너(Steiner)와 엘스톤(Alston)의 언급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의 목적에 관한 정형적인 협정, 경제 권리가 “실제로” 오래 전에 정착된 권리인지 아닌지의 논쟁을 넘어서”. 일련의 같은 이유로, 같은 것이 사회와 문화 권리의 주변에 논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방해물들은 앞에 인용된 작가들을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규정한다. ‘... 이행에 효과적으로 접근

하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 예를 들어,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태만한 행위 이면의 이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가 국제적인 토론의 화제가 되어 온 몇 년 동안, 문화 권리는 법적 내용과 강화에 있어 미약한 발전으로 남았다고 분류되었다. 태만은 인상적인 수의 이유, 권리의 무리들을 둘러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긴장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가 그룹의 권리와 연방의 정책과 갈등을 빚을 때 드러나는 내부의 긴장만큼이나 많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내적 갈등의 잠재적인 시나리오는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과 갈등하는 개인적인 문화 정체성 또는 인지도된 틀이나 문화적 자치권을 대신하는 그것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완벽한 실현을 요구하는 그룹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발전의 빠른 진행을 방해하는 부가적인 장애물은 문화적 권리가 문화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명백하다 ; 명백하지 않은 것은 '문화'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적인 다양한 문서를 포함한 수많은 정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은 인간 삶의 다양한 면을 포함한 문화의 세계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어떤 권리가 문화 권리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가 문화적인 권리가 아니지만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지 결정하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

아직 다른 요인들이 정확성을 얻는 어려움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화 권리의 내용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개념과 인권의 보편성 사이의 갈등이다. 한편으로는, 개인들은 집합적인 단체의 일원으로서 가다듬고 규정되어진 그들의 정체성, 단체 문화의 보호를 찾는다. 그러나 개인들의 정체성들이 그 혹은 그녀의 문화에 분명히 나타나는 때, 가령 전통적인 관습에서, 그 혹은 그녀가 습득하고 있는 인권 지식의 보편성에 해로운 것으로서 혹은 배반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 혹은 그녀를 본질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는), 그/그녀의 인권에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중 폭력적인 면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개인인가? 혹은, 문화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의 관습과 종교적인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집단인가? 누구의 권리가, 그에 알맞게, 누구의 법적인 지위가 이러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가. - 개인의, 혹은 집단의.

답은 간단하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에서 인용했듯이, "모든 인권은 보

편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다 문제를 명쾌히 하자면, 1992년 유엔 소수 인권 선언에 따르면, 소수자들에게 보편적인 인권과 세계적인 법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 속에 있는 관습을 지속시키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어쨌든,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와 그들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고 그 화제는 정치적 억압에 의한, 분명치는 않지만 열린 담론을 만들어 낼 만 하다.

4) 문화권의 항목에 대한 일반적 언급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문화적인 권리의 범주 안에서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 권리는 진행중의 과정인데, 「세계인권선언」의 시작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적당한 국가 간의 범주 내용 안에서 더 안정된 자각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2가지이다. 문화적인 권리의 인식을 창조하는 것은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권리로 보는 주에게 통지한다. 이 마지막 양상은 부분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의 공약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들러 붙기 위해서.. 그들이 책임이 있는 침해를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범을 조사할 때, 우리는 문화적인 인간의 권리가 전 세계적인 수준뿐 아니라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선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 권리들은 「세계인권선언」의 제27조에 선언되어 있다.

1.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적인 삶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술을 즐기고, 과학의 진보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모든 사람은 도덕상의 것과 과학, 문학, 예술적인 생산과 그 저자로부터 나온 이익 물질들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같은 문서 제22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동과 각 주의 자원과 조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인 권리를 그의 위엄과 그의 성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문화적인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국제협약」 제15조에서 조약의 성격을 얻는다.

1. 현재의 당면한 계약에서 주의 정당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식한다.
 - a) 문화적인 삶에 참여하기 위해
 - b) 과학적인 진보와 그 적용의 이익을 즐기기 위해
 - c) 도덕적인 보호와 과학, 문학, 예술적인 생산과 그 저자로부터 나온 이익 물질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
2. 각 주의 정당으로부터 각 단계는 성취되는데 과학과 문화의 전파와 발전, 보존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권리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함이다.
3. 주의 정당은 오늘날의 계약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과학의 조사와 창조적인 활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
4. 주의 정당은 현재의 계약은 과학과 문화 분야의 국제적인 계약과 협동의 발전과 장려에서부터 나온 이익을 인식한다.

지역의 계층에 따라, 문화적인 권리는 형식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국 선언」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Duties of Man) 제13조에 선언되어 있다, 미국의 의회의 부가적인 협정에서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지역적 인간의 권리(제14조). 그리고 미국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제17조). 이러한 조약들은 개인적인 개개의 권리들은 승인한다.

인간으로써,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의 국제적인 구성의 내부에서는 또한 문화적인 권리의 인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국제협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모두 첫 번째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상으로써 권리는....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이러한 문화적인 발전의 자유로움의 추구는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인 자기 결정권으로 인해 강화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개념은 「문화적 정책의 멕시코시티 선언문」에서 완전히 인식되어지는데, 1982년 문화정책 세계 정책에 적용되어졌다. 이 선언문은 “모든 나라와, 지역과, 사람들과 차별을 반대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경과 보존을

위해 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의 인간의 권리 지식은 문화적 발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의무의 규격화로부터 강화된다. '보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아프리카의 문화적 가치.' 따라서 개인적인 문화적 권리의 보충물에 관한 권리를 수집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법은 윤리학과 지역적인 것과 언어의 소수의 보호로 조립된다. 중요하게, 개인적인 인간의 권리 보호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27조에 반영된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은 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인 것, 또는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 소수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서는, 현재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보다 더 실제적인 권리로서 더 명백한 인식이 있다. 선언문 제1조에서 국가들은 국제적인, 또는 인종적인, 문화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소수의 정체성을 그들의 대표자의 지역,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장려하기 위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정체성의 강조는 개인적인 문화적 정체성에서 인식되어진다. 그 정체성은 반사회적인 개인의 개별적 그룹에서부터 인식되어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으로부터 언급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위한 위원회는 제27조의 서약에서 나온다. '비록 보호되는 권리가 개인적인 것이 라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유지되는 소수 그룹의 능력으로 의존된다.'

현재의 두 가지 접근은 이 권리를 보증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특별한 상담의 상을 경제와 사회의 조언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토착민의 조직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다른 비정부적인 기관, 독립된 변호사와 학자들. 이러한 대표자들은 토착민들이 자기 결정권과, 집단의, 조상의 땅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천연 자원의 영구한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그들이 국제적인 독특한 그들의 문화의 상속 재산과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노력은 연방 국가의 토착민 권리의 선언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의 미국의 토론에서 인디언 부족의 정부와의 관계가 나온다. 딘 수아게(Dean Suagee)는 토착민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승인한다. (오직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를 반대하기 위해) 국가의 당연한 내키지 않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들은 선언문 초고에 있다. 가장 문제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여전히 자기 결정권의 권리의 폭에 있는데, 토착민의 국제적인 법의 정황에까지 범위를 넓힌다.

두 번째 이러한 인식 그룹이 시도하는 접근은 기본적인 권리 보호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반드시 첫 번째의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권리가 그들의 권리를 모으는 것으로부터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그것에 의해서 소개되는데, '계급'의 권리, 국제적인 인권법에 의해 소개된다.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개인적인 권리는 분할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고, 권리 그룹의 인식은 그들을 대신하는데,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의 범위에서 인식한다. 무조건적인 할당의 개인적인 권리는 상위의 것이다.

5) 문화권의 항목을 발전시키기

반면에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15조가 비록 단지 권리에 대한 네 개의 일반적인 목록들을 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목록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붙인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문화적 권리의 목록들을 위한 구조물로 인식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 의미로 그러한 목록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이다. 이것은 어느 다른 인간의 권리의 영역보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위한 골격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며 자라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로운 방법으로 입증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예외적,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이루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골격 구조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살점들이 뼈대에 붙어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일은 이점이 되는 동시에 험겨운 일이 된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들은 몇몇 합법적 장치들의 방법들에 의해 번역되고 명시되어 왔는데, 그 중 「교육의 차별에 반대하는 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1960)과 「예술가들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 the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Artists(1980)을 포함하는 유네스코에 의해 선택되어진 특별한 몇몇은 그렇게 선발되었다.

이것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같은 서로 다른 국제적인 기구들의 역할에 의해 보충되어진다. 그 결과, 여전히 그것의 정확성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권리들의 목록의 발전이 있었다.

목록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안내하는 원리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원리들은 특히 세계성과 모든 인간 권리들의 분할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구상되어져 있으며,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법의 기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모든 대부분의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신성성을 존경하고 보존할 의무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리는 종종 무(無)식별로 공표되는 공평성이나 공평한 기회 조항들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들을 문화적 권리들의 가장 핵심의 요소로 이끄는데, 이러한 요소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화적 삶에 대한 접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문화적 삶에 참여하기'에 관한 권리인데, 1976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삶에서의 인민의 참여와 그들의 공헌에 대한 권고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적인 문화적 권리들의 특별하게 참여적인 요소를 모든 인간 권리의 가장 필수요소로서, 그들 개인 각자가, 소수 멤버들로서, 타고난 사람들로서, 혹은 상처받은 인구집단으로서 주장하고 특히 강조하는 규모는 「발전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에서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문화적 삶과, 문화적 삶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참여할 권리에 대한 접근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표준 장치의 이익이 결합된 원리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들이 이러한 권리의 요소들을 인식함으로써 목록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개념적인 골격구조의 형성의 한 예로서, 문화적 삶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들의 목록을 동일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전문가 집단인 유럽의회에서 발표한 「문화적 통합 리포트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n Cultural Rights Synthesis Report)은 고려해 볼 만하다.

- 다양한 문화들을 선택하고 그 문화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문화 접근의 권리.
- 문화의 이점을 즐기고 그러한 이점들을 보호할 것을 포함하는 권리
- 문화 발전에 공헌할 권리
- 문화의 민주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회를 평등화하고 차이를 없애는 권리
- 확장의 방법에서의 접근의 권리
- 국제적인 문화 협력의 권리
- 정보를 알 권리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중 몇몇은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택할 권리와 하나 혹은 여러 문화로 속하는 권리는 문화적 권리인데, 다른 요소들은 아마도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시민권처럼 보인다. 이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 19조에 올라 있으며 「인권에 대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제10조에도 있다.

정보를 알 권리가 잘 명시되어야만 하고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권리라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보를 알 권리는 시민권으로서 예외적이라고 간주될 수는 없는데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는 정보를 알 권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권리가 문화적 권리의 목록에 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극대화되고 수많은 해석들이 최근들어 존재한다.

목록의 크기와 내용은 때때로 분류의 목적에 의지한다. 예를들면 문화적 권리들의 이해가능한 목록들을 창조하기 위한 시도에서 버지타 리엔더(Birgitta Leander)라는 조사관은 50개의 다른 문화적 권리들을 11개의 목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목록화했다. 그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문화적 생존 권리, ②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하는 권리, ③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④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⑤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⑥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⑧ 문화 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⑨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⑩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⑪ 사람들 스스로의 신체적 문화적인 환경에 관한 권리.⁸³⁾

반면에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윤리적 권리 및 인권 연구를 위한 학제 간 연구소」 (The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Ethical and Human Rights Studies)는 인권 보호와 문화적 권리의 근본적이 인식의 자유를 위한 유럽 협약의 예비 초안을 만들어냈다. 초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모든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권리를 가졌는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신성성과, 권리와, 자유의 근본에 대한 요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경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권리들이 포함하는 것은;

a) 문화적 활동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혹은 더욱 특별하게 어떤 이의 선택을 위한

83) B. Leander, "Preliminary List of Cultural Rights", Paper prepared for Unesco, 1996.(Unpublished)

언어를 말하기 위한 것이든 그것이 보장될 자유.

- b) 어떤 이의 선택에 의한 문화적 지역사회와 함께 동일시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권리; 이것은 그러한 선택을 바꿀 자유 혹은 어떤 문화 지역 사회와 동일시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음을 내포한다.
- c) 평범한 인간성의 유산을 함께 구성하는 모든 문화적 영역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 d) 인간의 권리를 알고 문화적 정부를 인간 권리에 의해 건립하는 데 참여할 권리

제2조.

1. 모든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발전을 최대한 허용하고 방해받지 않을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유와 어떠한 기관이 국가법에 따르는 그러한 목적에 필요하다더라도 실행되어야 할 자유가 있음을 포함한다.
3. 그것은 공공의 조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필요성과 자원들의 비율에 따라,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내포한다.

또 다른 예로 199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문화적 권리 선언에 대한 예비초안」(the Preliminary Draft Declaration of Cultural Rights)가 만들어졌다. 이 모임의 주요한 목적은 아마도 보다 앞선 예시들보다 실용적인 것을 도출해 내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 선언문은 두 가지의 심적인 개념들로부터 준비되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최근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작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에 대한 태만의 결과로부터 문화적 권리의 '저개발'이 이론적인 단계에서나 표준적인 단계 모두에서 초래 된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로, 작자들은 하나의 이해가능한 서류에 동의했는데 그 서류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화적 권리와 전체적인 인간 권리의 문화적 차원'이 주제를 산산조각내는 수많은 서류들을 대체함에 있어 결정적이라고 상술하고 있다. 예비 초안에 상정된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루던 간에 이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그 내용이 길어진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경, 유산에로의 접근 동질화하기, 조사의 보호, 창조적인 활동과 지적인 적절성, 문화적 장치들에 대한 참여(이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홀로 혹은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로 해석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6) 문화권: 항목에서 국가의 의무로

컨텐츠와 문화적 권리 목록의 법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져왔다. 그리고 그것이 저개발과 무시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런 권리는 국가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실행과정의 효능을 다루기 위해 비교가 필요하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그들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즉각적 단계를 급진적으로, 계약 안에서 권리를 실감하기 위해 강요한다. 이것은 국가s의 의무가 대부분 결과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불행히 급진적 성취의 요소는 자체를 국가 의무에 무제한 의미를 준다. 즉, 국가의 급진적인 전통적 의무에 대한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불가능 하게 만든다. 이런 의무의 법적 특성은 자연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림버그 회의’(Limburg Conference)⁸⁴에 전문가들이 참석할 때 강화된다. 모임의 참석자들은 설득력있게 국가의 법적의무를 ‘림버그 회의’에서 정의한 것이 확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는 모든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서 (법, 행정, 사법, 경제, 사회, 교육 수단 포함) 그들의 경제 발전 수준의 부주의한, 권리 목록을 인지 성취를 위해 즉시 단계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무는 꽤 훌륭한 식별의 금지와 같은 즉각적이고 충분한 실행을 요구한다.

84) 1986년 6월 네덜란드 마스스트리치에서 열린 회의.

4-2. 문화권의 각국 사례

4-2-1. 문화권 각국 사례-아프리카⁸⁵⁾

1) 부정에서 승인으로

흑인에 대한 오랜 견해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했다. 그 견해들은 아프리카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여 사실상 세계의 문명화가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썼고, 아프리카의 모든 것에 대해 비난했다.

식민 권력에 의해 아프리카가 분할되고 난 후 수년 동안, 아프리카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표현들은 유치하고, 그로테스크하다는 견해에서부터 야만적이고 잔인하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기술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생활을 한 유럽의 관료들의 반응 안에는 아프리카의 예술은 거칠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조야하고, 그들의 음악은 불협화음이고, 그들의 춤은 외설적이라고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국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이러한 평가는 외국에서 전시 중인 조각품과 예술작품들을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아프리카 문화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며, 그들의 생생한 예술적인 힘은 비-아프리카 문화에 대단히 활력있게 기여했다. 아프리카의 생생하고 창조적인 삶의 상실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해야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적인 창조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목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문화의 주요한 양상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본질적인데, 따라서 이 대륙에 걸맞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들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체와 토지 사이의 관계, 예술적인 유산에 있어 공동의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관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는 믿음 사이의 관들이 있다. 아프리카 문화의 이러한 주요한 핵심들은 서양문화와 구별되는 지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문화는 개인적이고, 현재가 지배하고, 세속화된 상업적인 예술이 문화의 규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5) 아래의 글은 Folarin Shyllon, "The Right to a cultural past: African viewpoint",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유네스코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2) 토지권에 대한 아프리카적 개념

캐나다 대법원은 그것을 알 지 못하고 나이지리아의 대법원에 동의했다. 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진술했다.

어업권은 전통적인 자산권리가 아니고, 집단에 의해 소유되는 권리이고 그 단체의 문화 와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권리이다. 그래서 법원은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독자적인 본성을 이해할 때 자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영국인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협정이 그들의 문화적인 자산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독립적인 권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두 번째 글에 나온 1840년 와이탕기(Waitangi) 협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마오리족들이 서명했던 통가라는 마오리 언어 버전으로 모든 그들의 자산 중에서도 특히 '완전하고 평정한 점령' 으로 보장되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경우와는 달랐다. 아프리카 조약 중에서 그러한 조항은 영국 시스템을 보유한 서아프리카 인들의 유일한 급소가 되었다.

나는 워커와 오스트로브의 결론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법학적인 분석과 관습법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스페로가 나온 지 1년 전, 오스트렐리아의 대법원은 마보와 다른 이들 퀸즐랜드 주에서 토착민의 이름을 공인했다.

이 경우에, 오스트렐리아의 대법원이 여태껏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써 논평자에 의해 묘사되었다. 또한 오스트렐리아의 관습법이 구별되지 않았던 경우에 그들의 특별한 법과 관습에 따라서 토착민들의 땅의 권리를 그들의 전통적인 땅에 반영하는 토착민의 표제를 인식한다고 여겨졌다. 이는 특별한 주권계약의 효과를 가정하게 두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법이나 관습에 따라서 머레이 섬사람들의 땅 표제가 퀸즐랜드의 법 아래 토속민의 표제로써 지켜진다고 여겨졌다.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아프리카 가치에 의해서, 땅은 생활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에 종사하기 시작한다. 육지와 관련이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아프리카 문화의 많은 점들을 취급한다. 키쿠유 족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1938년 요모

케네타(Jomo Kenyatta)의 논평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계속되는 땅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마우마우단의 반란의 관점에서 부가된 중요성을 강조한다.

농업종사자들로서, 키쿠유족들은 전적으로 땅에 의존한다. 땅은 그들에게 숭고하고 정신적인 만족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물질욕구를 채워준다. 조상의 영혼과의 영적 교섭은 부족의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토양과의 접촉을 통해서 영속되어진다. 키쿠유족들은 지구를 부족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아이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 토양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그것은 다시 저승을 향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돌보아주는 토양이 된다.

그래서 땅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케냐타는 키쿠유족들 중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인들 중에서 '토양은 특히 예우를 받았고 끝없는 서약은 지구에 의해서 맹세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덧붙였다. 요루바족들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판단은 우리가 계약했던 지구에 속해 있다."

사람이 영국의 법에서의 자유 소유권이나 무조건 토지 상속권에서처럼 특별한 상속인에 대한 땅의 절대적인 상속이나 제한 또는 제약을 가질 수 있는 서부의 법적인 체계에 대한 철학적인 권리들은 전적으로 아프리카의 관습적인 땅 소유권에 조화되지 않는다. 땅은 법인으로서 소유되고 일반적으로 양도 될 수 없다. 종교의식으로써의 공동체는 영역의 제한 내에서 땅을 통치한다. 그러나, 땅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이 단체나 개개인이 땅의 일부분과 땅의 사용, 그리고 생산품을 유임하는 명확한 권리의 집단을 분해시킨다.

(1) 관습적 대상과 법정 상속 동산의 법인 소유권

푸리는 마보(Mabo)에서의 결정은 땅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아마 종교적인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깨달음을 따르도록 넓혀져 있다고 제안했다. 아프리카의 관습법에서 법인 소유권은 늘 신성한 대상, 조상의 재단, 성소, 신성한 작은 숲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문화적 유산 혹은 문화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다른 세속적인 문화에 속해있다. 많은 문화적인 대상과 지구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신성한 작은 숲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땅위에 존재한다. 그 점에 있어서 숭배나 의식에서의 성소들이나 대상들은 땅 위에 존재한다. 베닌에서는 고귀한 재단들이 반원형의 지구의 교단이다. 각각의 재단에는 많은 낮쇠빛의 화폐들과 조각된 아이보리 엄니가 있다. 고귀한 조상 재단들은 베인의 우기에 에르하 오바(Ugie Erha Oba)라는 신성한 왕권에서의 두개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를 위한 장소이다. 이는 오바가 그의 아버지의 영혼

을 숭배하고 고귀한 조상과 그들이 문헌 지구에 대한 희생을 수행할 때 이다.

땅의 지배는 또한 유산의 지배를 의미한다. 에리카 에르네 다에스(Erica-Irene Daes)는 토착민들의 유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 쓴 그녀의 보고서에서 토착민들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비평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학술연구, 관광사업, 그리고 개발을 위한 그들의 영역에 대한 접근을 지배하기 위해서 토착민들의 공동체에서의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의 예술은 종교적인 의식이고 공허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좋은 관습적 대상들은 명확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지고 이러한 사실은 종교적인 목적을 개개인의 소유권배후로 놓여진다. 헤르스코비츠(Herskovits)가 언급한대로, 땅의 일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위임되고 신의 성소에서 작은 조상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다가오는 관례를 위한 구실을 필요로 하는 비밀스런 사회에 의해 지불된다. 또한 늦쇠 빛이나 청동 빛의 도형들이 위임되고 조상의 재단 장소에 있는 고위급들에 의해 지불된다. 예술가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의 떠나지 않고 만들었던 것을 생산한다. 그것들은 부족이나 단체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삶이다. 땅에 대한 아프리카의 개념은 이러한 이런 부분까지 확장되었다. 단지 땅이 신성하고 또한 종교적인 중요성 때문에 관습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혼적인 유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인으로서 소유되는 땅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1897년 다른 대상들 사이에서 베닌까지의 가혹한 원정에 의해 버려진 160개의 늦쇠 빛이 나는 화폐 들을 가져라. 그 화폐들은 연대기의 기록과 동등한 베닌이다. 각각의 화폐가 오바를 나타내고, 20세기로 돌아가는 권력자 무리를 기록했다.

오바가 죽었을 때, 외형의 화폐는 그의 기억에서 세워진 재단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써 청동 빛으로 된 특색이 있었다.

프로베니우스(Frobenius)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중요성을 지닌 관습적 대상들이 맹렬하게 법인 자산으로써 소유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를 제공했다. 비록 개개인의 소유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1910년 남서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이바단에 있었다.

그는 '인간은 아주 명백하게 다른 이들에게 신성하지만 오직 그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팔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조롱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장소에서 그는 '신전에 있는 영혼이 아닌 멋진 많은 의식적인 가구들이 팔 궁리를 하고 있다.'고 적어놓았다.

그는 또한 불쌍한 사람은 '좋은 골동품을 파는데 동의할 때마다 그리고 그의 유복한 친척들이 그것을 알 때마다 그들 중 더욱 잘 사는 사람이 그에게 가족의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프로베니우스는 사회의 애처로운 부랑자들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그의 소장품을 위해 대상을 선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늘 가족자산과 그들의 공통자산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책임한 소유자를 개선할 기회를 깨달아야만 했다.

프로베니우스는 아프리카의 법적인 범주에서 '소유권'과 '소유'의 개념의 정확한 분석에 대한 불충분한 식별을 했다. 관습적 대상이 법인으로서 소유되었고, 소유되기 때문에, '소유자'로써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었다. 사실 그들은 순전히 소유만 하고 있고 소유권은 단체에게 속해있다. 물론 프로베니우스는 권리에 대한 서부의 견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가 유럽중심의 렌즈를 통해서 본 것을 해석하지 않고 기록할 때마다, 그는 표기를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많은 장소에서 위장 또는 재판관의 권리에 의한 소유자들 즉 "노인들"의 자산이라고 선언된 그들의 소유에 의해 부여된 이익과 같은 것들이 그들의 고유의 중요성과 공식적인 특권의 덕분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 의해서 구인된 사람은 비록 그가 최초로 위임했을지도 모르고 문화적 대상을 지불 했더라도 단지 소유자에 불과하고, 소유자들의 단체로부터 구별되지도 모른다. 프로베니우스와의 주장과는 반대로, '가정의 수호신인 페나테스에 의한 판매의 금지는 단순히 유로바족이고 일반적으로 반아프리카인들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사람들 중에서 발견된 비슷한 규칙이다. 그래서 현재 가나 사람들에 대한 쓰고 있는 히포드(Hyford)는 '관습법에서의 가정은 소유권의 목적을 위한 단위이다'라고 진술했다. 이것은 '관습법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소유권의 자취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의 대표는 다음 세대의 그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의지에서 그가 수탁자였던 일반적인 조상의 자산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1897년에 버려진 고귀한 재단에서의 160 개의 베닌의 녹쇠빛 화폐들은 우수성에 따라서 가정의 수호신과 페나테스이다.

식민지 보호아래 몰수된 이러한 보물들에 매여있는 나라의 권리들은 그 사실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대상이 유래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영혼적, 관습적, 감정적, 그리고 심미적인 가치를 소유한다'는 쇼의 발언으로써 간주하지 않는다. 그 권리들은 국민의 삶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감수성이 이 토론에서 보여진다. '관습적 민족주의' 와 '보유하는 힘이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의 논쟁은 법적인 범주에서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논쟁이 서부의 법적인 개념 자체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와 먼 옛날의 관습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이익을 가지기 위한 서부 인들이 아닌 국민들의 인권에 매우 무례한 것일 수도 있다. 사실상 이것은 마타투아 선언에 대한 불평이다. 관습적 대상의 소유권에 대한 아프리카의 관습법의 개념을 앞서 분석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초기의 작가들에 의해 선언된 많은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관습적인 대항은 공허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관습적 대상이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습적 대상은 영혼세계와 조사의 지식 그리고 미래와 관계가 있다. 관습적 대상은 박물관인 다른 기관 또는 개개인에게 소유될 수 없는 영혼세계로부터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의식,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보존을 위해 우리에게 제공되어 왔다.

다에스는 또한 그녀의 보고서에서 토착민들 사이에서의 유산은 대개 공동체의 권리이고 가정, 씨족, 부족 혹은 친척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매우 적절하게 비평했다. 토착민들에게 있어 '유산은 경제적 권리보다는 관계의 무리이다. 전체로써의 유일한 단체는 유산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동의는 포함된 유산의 본성에 의지해서 달라질지도 모르는 명백한 결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 어떤 방법에서든 동의가 주어지면, 그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유산은 조건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양도되지도 않으며 팔리지도 않는다. 다에스는 토착민들이 그들의 작업, 예술, 생각에 대한 진실한 집단의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토착민들이 소유한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 따라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유산에 대한 어떠한 양도도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법에 의해 인식되지 않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개인적 자유와 문화적인 보존에 대한 토착민들의 권리를 위한 대목을 주장했다. 전세계에 걸쳐 토착부족민들의 체계와 아프리카의 입장에서의 평행상태는 매우 분명하다.

그래서 최초의 국민과 아프리카인들 중에서 일치된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일치된 의견은 서부의 법적인 체계에 의해 인식되지 못했던 문화적 유산에서의 권리와 이익은 국가의 예절에서의 허용될 수 없는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충분한 수락을 얻기 위해서 최초의 국민과 아프리카인들의 견해를 위한 충분히 너그러운 법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적 교차의 민감도들을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

작점은 상환의 문제 혹은 문화적 보물들의 반환이 인간 권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겔라(Gella)에 따르면, 문화재가 도난, 강탈, 파괴, 불법거래가 될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진실한 삶과 정신, 영혼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다행히, 영국 법정들의 몇몇 최근의 결정들은 민감도가 이 문제에 틀림없이 보여 진다는 인식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금석은 국제 예양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각 국가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손상이 없는 한, 각각의 국가가 모든 다른 국가들의 법과 관습들을 존중함으로써의 정중하고 친근한 합의이다.

예양은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소유물에 대한 명칭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법들의 인식과 시행 모두에 따름으로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국가적 유물을 존중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상호관계에 대한 기대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공공 정책의 부가적인 근거이다.

비록 마오리 족의 조각품들이 불법적으로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된다는 스타우혼 (Staughon J)의 결론은 그 국가에 되돌려줄 것을 호소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항소 법원과 상원 둘 다 그의 관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법관과 다르기는 하지만, 로드 데닝(Lord Denning)은 말했다. "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그의 가장 가치있는 기여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로드 브라이트만(Lord Brightman) 상원은 '항소인의 청구와 함께 모든 공감'을 표했다. 마오리 족의 사회는 '예술적 유산에서 가치의 품목을 빼앗겼다.' 로드 데닝의 여분의 의견으로는, 그가 각자의 국가가 필요 법령에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에, 문화적 재산에 대한 불법수출입과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고 막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 유네스코회의의 존재에 관한 놀랄만한 결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국은 1970년 회의나 1995년 불법적으로 수출되거나 도난당하는 문화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법통일 국제연구소'(UNIDROIT) 협약⁸⁶⁾ 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2) 종교적인 것과 신성한 것

토지와 근접한 연결 때문에 아프리카의 문화재는 그것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되어질 수 없다. 문화재의 소유권의 개념은 아프리카 관습상의 법에 토지 보유를 또한 반영한다. 권리 혹은 소유권 둘다 일반적이다. 문화재에 대한 합법적 권리는 일반적인 법이나 내정의 법 원리에 단독으로 결정되어질 수 없다. 합법적 권리를 설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도덕적 권리가 있다.

86) 1995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불법, 도난, 반출 문화재 반환에 대한 협약

문화적 권리와 다른 기본적인 인간 권리 사이의 상호연결은 문화적 과거에 대한 권리가 인간 권리라고 주장한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피상적인 규정을 넘어선 알제 선언에 의해 주어지고 반줄 현장에 의해 인식되어진 선도는 현대 사회의 등용에 대한 문화적 과거의 보호를 묶는 새로운 남아프리카의 권리선언에서 현실화되었다. 식민지시대동안 잡아 채였거나 그 기간 혹은 그 후에 속임으로 채가게 되었던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요구는 문화적 국가주의나 보유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경 안에 구체적인 기간에 그들의 물질적 과거에 대한 적절한 대표를 가질 권리에 대한 단언이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는 베를린, 런던, 뉴욕 그리고 옥스퍼드를 찾아 베닌의 작품을 가진 소수가 있었다. 변함없이 종교적인 제식의 중요성과 함께 그들의 선조의 창조물을 소유하려는 민족들의 권리는 그들의 인간성의 인식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물품이 위치해 있는 국가들에는 저러한 사람들이 있다 - 그리고 그들 자신의 법에 의해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 그들의 문화적 국가주의를 감추고 있고 문화적 파시즘을 이용하고 있다.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을 모으는 실행은 서구세계가 유일무이하다. - 아마도 제국주의의 자취, 그것은 대부분의 원천의 국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무관계하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 서양 예술은 좀처럼 그들의 박물관에 있지 않다. ;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며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하게도 그들의 박물관은 그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찬양이 있다. - 우리의 간절한 공적 사적 보물로서의 전 세계의 예술품의 방대한 창고가 아닌.

1983년에 아브랑세(Abranches)는 검은 아프리카 전체에 아시아 예술품의 단독 박물관, 현대 인상파주의의 좋은 화랑, 그리스 조각품의 수집물, 아즈텍의 도기류, 슬라브인의 은식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의 가치가 서구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 저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필연적인 다원화된 세계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문화재 약탈은 아프리카의 문화적 과거와 그 인간성에 대한 습격이다. 물품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배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합법적 증서이다.

독립에 이은 1960년대의 아프리카인들의 각성은 박물관에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격려되었다. 진열되어 있는 물품에 동일함의 감정이 있었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웠다. 헤르스코비츠는 Abidjan, Accra, Kumasi, Lagos, Ife, Benin, Douala, Kampala, Leopoldville, Nairobi, Livingstone 등지에서 아프리카인들은 한결같은 흐름으로 왔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진열되어 있는 조각들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조각물의 장점이나 다른 것들과 비교한 금속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관심은 모든 계층에서 명백했다.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아프리카인들이 다스리던 나이지리아 정부는 런던의 경매장에서 나왔던 나이지리아인의 탁월한 조각품들을 사서 가져오는데 영국화폐 7만 파운드를 썼다. 대중적 관심은 1960년 10월에 나이지리아 독립에 대한 찬양기간동안 절정에 달했는데, 그 때 라고스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방문자는 매일 15,000~30,000명에 이르렀다. 1980년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런던에 있는 소더비 경매소의 5개의 나이지리아 예술작품을 국가적 명예와 관심으로서 영국화폐로 총 80만 파운드로 사들였다.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문화재는 이용, 개발되어질 수 있는 광물이나 다른 자원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만들어준 삶의 본질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인간성의 표현이다. 문화에 대한 그리핀의 결론들은 문화재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인지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한 인간의 장소를 정의 하는데 도와주고 정체성의 생각을 부여한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명백한 문화적 한계들 안에 각 인간들을 에워싸므로써 어느 정도의 심리학적 안심을 준다. 이 관점에서 문화적 보물을 유지하거나 다시 얻으려는 충동은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화적 보물들이 '문화에 대한 상품적 관점을 취하는', '과거'로 배분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마치 그린필드가 "우리 위로 심오하고 최면성의 매혹을 작용시킨다... 물품의 카리스마는 이것에 대한 입증하는 것이다. 문화적 보물은 우리의 꿈과 기억과 영적인 전망의 한 부분이다.

근접한 연결이 있는 토지와 같이, 아프리카의 문화적 보물은 많은 이들이 죽고, 살아 있는 이는 거의 없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끊임없는 이들의 한 거대한 가족에 속해 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신성한 상을 가진다.

4-2-2. 문화권 각국 사례-미국⁸⁷⁾

이 세계의 원주민들(indigenous peoples)은 「세계인권선언」이 적용된 이후로부터 50년 간 자신들의 인권, 특히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영토 내에서의 자치적인 공동체(self-governing communities)에서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국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해왔다. 또 한편으로, 산업화된 국가에 기반을 둔 과학적 공동체들에는 종의 멸종위기, 특히 경제적 '성장'과 '개발' 추구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활동들로 인한 위기에 정부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국제적 움직임, 즉 원주민들의 인권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움직임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self-interest)라는 측면과 원칙이라는 두 방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전통적 영토에 관한 지식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원칙적인 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개별적인 문화로서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원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방향은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고유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 수 있다면, 비원주민 정부(non-indigenous governments)와 비정부간 기구들은 장차 수세대 이후동안 공동의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데 원주민들과의 공동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는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의 상황이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 권리에 실질적인 효력을 줄 수 있는 국내법에 의존해 왔다.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선언 내에 명시된 권리들을 원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원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 선언 초안」(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제8조를 통해서도 정당들이 국내법의 틀 내에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보존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관련 국내법을 살펴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87) 아래의 글은 Dean B. Suagee, "Cultural rights, biodiversity and the indigenous heritage of Indian tribes in the United States",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유네스코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미국은 원주민 문제에 관해서 일면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원주민 부족이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동체(self-governing culturally distinct communities)라는 인식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으나, 실제 정책은 상당히 일관되지 못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두 번의 시기에 미국은 부족 정부를 없애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던 바 있으며, 부족의 문화를 훼손시키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려는 시도들 북서태평양에 수력발전소를 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부족 문화가 수천 년 간 의지해 온 야생 연어의 이동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미국 원주민 부족들의 문화는 수천 년의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고유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쌓아놓고 있다.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 이전에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농경, 수렵, 의술 등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들의 이러한 지식은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부족 문화의 중심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에 있는 많은 장소들이 부족인들에게 종교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일종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곳들은 원주민들 간에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화로 인한 훼손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곳에 있는 독수리, 늑대, 연어, 까마귀, 코요테, 물소, 삼나무, 샬비어, 감초 등은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부족 종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 이는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그곳의 영토와 생물학적 공동체의 보호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미의 원주민 문화, 달리 말해서, 전통적인 원주민의 세계관은 다음의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들은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땅은 인간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다. 후손을 포함한 인간들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로 까지 확장해 상호호혜성 균형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운동이 지향하는 바들은, 문화적 권리에 대해 초점을 둔 채 원주민들의 인권을 인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생태적 지식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부족의 자치가 문화적 생존에 전제조건임을 드러내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두 번째 전제 역시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반한 것으로, 그러한 인식은 개별적인 문화로서 생존을 보장하는 데나 아니면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태적 지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족 정부들은 고유영토의 작은

부분에만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들은 동시에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는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관심을 갖고 있다. 연방법(Federal Law)은 이 부족들이 다른 정부 단위들(연방, 주, 지역)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 (Endangered Species Act)'와 '국가 역사 보존 조례(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이다.

1부에서는 미국의 연방 원주민 법(federal Indian law)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관해 간략히 논의하고, 원주민과 관련된 연방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문화로서 부족들의 생존이라는 측면이나, 부족 문화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미국 내의 원주민 부족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권리 분석이 유용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2부에서는 원주민의 인권을 한정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로서 원주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3부에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조항 8과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조항의 권고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현장'과 '국가 역사 보존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미국 내의 원주민 부족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지구 상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유사하며,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타국의 사례에 대한 자국의 태도 역시 위기에 처하리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1) 미국 내에서의 부족 자치 정부 (Tribal Self-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연방법은 미국 내의 원주민 부족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200여년에 걸쳐 개선되어온 것으로, 각종 정책과 조약, 판례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원주민 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놀라우리 만치 지속되었으나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A. 설립 원칙

연방 원주민 법에서 네 가지 독트린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유한 부족 주권, 보존된 부족의 권리, 연방의 신탁 책임, 의회의 절대적 권한이다.

첫째, 고유한 부족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의 통치권의 원천은 그 안으로부터 나오며, 그것의 존재는 미국의 설립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유럽의 국가들이 원주민들과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들의 주권을 인정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들의 세 가지 원칙으로는,

- ① 원주민 부족은 어느 주권 국가의 권력과 동일한 권력을 갖는다.
- ② 정복이란 부족을 미국의 법적 권한 하에 두는 것으로, 그 부족의 외적 주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인 주권까지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 ③ 부족들의 권한은 조약과 의회의 특별 법안에 의해 한정되나, 또한 이 법안에 따라, 내적 주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주민 부족과 정부 조직에 부여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법원은 이 중 세 번째 원칙을 내재적인 부족의 주권의 어떤 측면을 없앨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특별 법안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함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이 독트린은 연방 원주민 법의 한 축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지정보류된 부족의 권리 독트린은 과거 인디언이 자신들의 광활한 영토를 포기하면서 연방정부와 맺은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부족들이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도록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지정보류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많은 경우, 원주민들은 이 지역 바깥에서 어로나 추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신탁 책임 독트린은 부족의 영토 포기과 그들이 지정보류받은 영토 안에서의 권한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은 데 근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럽인들이 처음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영토에 대해 법적인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 받았으나,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남겨둔 전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주권체가 획득한 것은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였다. 이 신탁 독트린에 따라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원주민의 영토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부족에 대한 신탁 책임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자치 공동체로서 독립적인 존재, 즉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권은 '안정적이고 개별적인 영토적 기반', '부족 경제', '자치', '문화적 영속성'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의회의 절대적 권한. 헌법 하에서는 연방 정부가 원주민 부족과의 관계에 대한 권한을 얻고 있으며, 이 권한은 배타적으로 다른 주들과 공유되지 않는다. 의회의 이 권한은 주정부가 부족의 자치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B. 연방 정책의 동요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관한 연방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형성기로 미국 설립에서 1871년까지. 둘째는 분배기로 1928년까지이다. 그리고 1942년까지가 원주민 재조직기이고, 1961년까지는 철폐기, 마지막으로 현재 연방 정책에 해당하는 자기결정기가 있다. 각 시기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형성기 - 원주민 문화와 미국 인구의 확대 간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제로 지정보류지를 설치. 일부는 고유의 영토 중 적은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정보류지로 강제이주되었다.
- ② 분배기 - 연방정부가 원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더 큰 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던 시기. 영토를 빼앗아 일부는 개인으로서의 원주민에게 그리고 일부는 비원주민에게 분배하였음. 영향을 받은 것은 원주민 영토의 3분의 2.
- ③ 재조직기 - 1934년 재조직화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의회가 분배 정책을 거부하고 분리주의로 돌아감. 이 조례는 부족들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원주민국(Bureau of Indian Affairs)에 의해 촉진된 기준 헌법이 부족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부서에 엄청난 권한을 주었다. 1940년까지 부족들 중 3분의 2가 조례에 따라 조직화되었는데, 이중 일부는 이 관할 부서의 강제에 따른 것이었다. 일부 부족은 독립적인 헌법이나 부족법에 종속된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원주민국의 보장되지 않은 권한을 의미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변화를 기했다.
- ④ 철폐기 - 1953년 의회는 공식적으로 원주민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철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원주민들에게 더 큰 사회로 편입되도록 강제했다. 큰 지정보류지 하나를 포함한 크고 작은 보류지들 100개 이상의 지위를 폐지하였다. 이 기간동안 의회는 몇몇 주에서 주정부들이 지정보류지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주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강제소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원주민 동화를 위한 강제적 노력에 동원되었다.
- ⑤ 자결기 - 1950년대 말부터 철폐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회의 태도는 다시 강제적 동화정책에서 예전의 분리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에는 원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요구가 좀 더 강력해졌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의회는 부족 정부들이 좀더 효율적인 근대적 정부가 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령인 「원주민 자결과 교육 보조를 위한 법령」(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of 1975 : Self-Determination Act) 등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많은 지정 보류지에서 부족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원주민국과 원주민 보건국과 같은 부서는 축소되었다. 초반에는 대법원의 판결 역시 부족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부족 정부가 통치권한을 요구함에 따라 주와 지역 정부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역시 초기 설립원칙보다는 비원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법해석에 기초하게 되었다.

II. 원주민의 인권을 정의하기 위한 최근 시도들

A. 유엔 헌장 초안

「원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헌장 초안」은 사 반 세기에 걸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였다. 인권위원회는 1995년 산하에 업무 그룹을 설치하고 이곳의 회의에 원주민 기구들과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E.I. Daes 박사는 1994년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산하 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in 1994)에 대한 유엔 헌장 초안 발표에서 헌장의 세가지 주요 요소를 '법적인 개별성(legal personality), 영토적 안전(territorial security), 국제적인 책임' 세 가지로 들은 바 있다. 법적인 개별성은 원주민들은 각자가 집단적인 법적 속성을 갖는 '민족들'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영토적 안전은 각각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유의 영토 내에서의 안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 책임이란 원주민들이 독립국가를 열망하지 않는 반면에, 완전히 기존 국가에 편입되지도 않는 독자적인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초안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시 참가국들은 그 헌장의 용어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근본적인 속성 까지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B. 집단적 권리와 자주적 결정

1. 미국의 반대

1995년 미국은 '국제적인 수단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적이지 않은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의 자결에 관한 권리, 즉 수많은 국제적 문건들 속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집단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시도되는 이러한 무시의 방법 중 하나는 초안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는 단어에서 '들(-s)'을 빼는 것이다. 물론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이것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주장 중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장된 권리들이 개인들의 그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들이나 집단들이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더 큰 선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이 탄압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방

지한다.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종 그럴 것이다. ... 그러나 권리를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적인 것으로 두는 것은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각각의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때에 가장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반적인 관점'은 그 나라의 2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모순적인 것이다. 초기 연방헌법은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로서 원주민 부족의 집단적인 권리를 인정해왔었다. 비록 미국이 개별적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강화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또한, 원주민 부족의 집단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오랜 전통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부족 자신들이 존재를 포기한다면, 개인들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갖고 있던 권리들 역시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1996년에는 선언 내에서 '자결'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많은 국가들이 선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천명했다.

2. 자주적 결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많은 정부들이 자결권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결권은 그러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기결정에는 본질적인 측면과 교정적인 두 측면을 담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자결의 독립적인 측면을 문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국제적 공동체에 의해 제시된 처방은 독립국가가 되는 권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원주민 민족은 독립적인 국가체제 이외에 다양한 정치체제를 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의 자주적 결정에 대한 핵심은 문화적 생존에 있다.

3. 개인의 권리의 훼손

한편, 미국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 집단적 정체 속에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집단적 정체 내의 개별 구성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 초안 조항 33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제도적 구조와 독자적인 문화, 전통, 절차와 행동 등을 향상, 개발,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C. 문화적 보전에 관한 인권 규범

모든 집단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명제는 '문화적 보전'이라는 규범과 관

런된다.

1. 유엔 헌장 초안에서 본 문화적 유산

헌장 내 제12, 제13, 제14항에서 문화적 보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그것들과 자연간의 연관성이라는 맥락을 제외한 다른 측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데는 이해가 적다.

2.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

1997년 미국은 문화적 유산을 다루는 조항들 중 일부의 수정을 주장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집단적이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조항 12에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풍습을 행하고 재생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주민 개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제12, 제13, 제14조 등에 걸친 논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해 미국은 '원주민의 역사 언어, 전통 등의 본존이라는 목적이 개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하고 타자들(부족들, 결사체, 집단 등과 같은)과의 공동체 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 질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인데, 제12, 제13, 제14조가 필요한 이유는 원주민 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부족의 종교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나 향유하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어떤 면에서 문화적 보전은 선택의 자유에 걸린 문제라기 보다는 책임의 문제이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 문화와 종교의 유지라는 책임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자유마저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는 조항 29에 대한 미국의 논평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은 원주민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은 한정된 시간에 발생한 개인의 창의적인행동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원주민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은 공동체의 지식으로 이는 수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것이다. 다시 말해, 지적 재산권의 범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집단적 인권에 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극복하지 않는 한, 유엔 헌장에 대한 자국의 지지 의사는 모순적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III.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미국은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와 '국가 역사 보존 조례'를 마련하고 있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를 갖고 있다.

A.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

미국 내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논쟁은 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비판은 이 조례가 특정 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데 가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은 다른 종류의 생물들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생태계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원주민들의 부족 문화를 위해, 특히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 종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북서태평양, 에 있는 야생 연어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

1. 야생 연어 논쟁

북서태평양에 있는 부족들은 지정보류 이후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을 보장받았다. 이 지역은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어는 생계나 종교적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생물이었다. 하지만, 콜럼비아 강 유역에 수력발전댐이 건설되면서, 연어의 회귀는 멸종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 중 몇 종의 연어는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의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이 조례의 발효에 따라, 연방 정부는 '국가해양수산물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에 조언을 구해야 했다. 1994년, 수력발전시스템의 운영이 종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고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발표된 이후, 해양수산물국은 첫 번째의 위험한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콜럼비아 강 유역에 있는 네 부족의 어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연어 멸종의 주원인인 -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수력댐에 대한 규제에 실패하자, 대신에 부족들의 어로활동을 규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정부는 협상을 제안했다.

2.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족의 행동

1996년 부족 대표자들에 의해 '위험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워크숍이 열렸고, 이들은 여기서 몇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 조례가 '원주민 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래서 안된다'는 것,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부응해 자신들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원주민들의 개발로 야기된 환경의 지속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부당한 책임을 부족들이 져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결론에 따라 '내무와 상무 장관단 연석 모임 (joining Secretarial Order by the Secretaries of the interior and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러한 방식은 연방-부족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정부 대 정부라는 기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장관단은 조례와 연방 원주민 법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조례의 부족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입장도 중립적이었다. 오히려, 장관단은 영토에 대한 부족의 주권을 강조하고, 지역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부족과 협력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다. 장관단의 역할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위협에 처한 종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수행한 역할은 향후 이 문제에 관해 산적한 다른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 국가 역사 보존 조례

역사적 보존을 위한 미국의 법제적 틀에 따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국립 공원국'과 '역사 보존 자문 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or Advisory Council))'의 두 군데로 되어 있으며, 다른 여타 부서에도 역사적 자산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국립 공원국은 '사적 등록소(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를 설치했고, 여기서는 사적으로서의 적절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의 제106조에 따르면 각각의 연방 부서들은 이곳에 등록된 것들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 전통 문화 자산

하지만, 원주민들의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사안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약간 차이점을 갖고 있다. 부족들은 어떠한 장소를 '성스러운 영역'이나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등록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 중요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원국 측에서는 이 장소들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전통 문화 자산'이라는 용어이다. 이는 현재는 관련 부처와 담당관들에게는 통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전통 문화 자산들은 인간의 행위에 침해받지 않은 곳이다. 그런 장소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부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생물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이들은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승되는 대상도 무척 한정되어 있고, 집단별 특성으로 인해 지식의 희소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전통 문화 자산의 보호를 위해 그것의 비밀 유지는 필수적일 수 있으며, 행정부처는 이를 위해 위협에 처한 종이나 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 부족과 논의해야 한다.

2. 1992년 국가 역사 보존 조례의 수정안

원주민 부족과 관련해 이 수정안의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부족들이 '부족의 영토' 법령에서는 이 용어를 원주민 지정 보류지와 모든 종속적 원주민 공동체의 외부적 경계 내에 있는 영토로 정하고 있다. 둘째는 문화 유산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상관없이(지정보류지 밖에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업무가 역사적 자산(등록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그럴만한 곳)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부족들은 연방 담당 부처와 면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단 영토와 관련된 첫 번째 수정은 국가 역사 보존 조례가 부족의 주권과 부족과 미국 간의 정부대 정부 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정안은 그 장소들에 부족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문화적 중요성이 더 이상 지역 사법권의 관할 내에 있지 않으며, 그것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연방의 활동들은 부족들의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족들은 등록국의 사적 평가에 관련해 사전에 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연방의 결정에 부족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C. 조경의 보전

이 논의는 사적이나 생물이라는 특정한 범주 이상으로 전체적인 조경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점차 전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국가 역사 보존 조례가 어떤 종류의 '개발'이 허용되지 못하는 지역을 정하는 방식을 수행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족들의 문화적 종교적 관심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도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종의 보호라는 요구에 수렴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인권과 문화적 유산, 생물학적 다양성과 역사적 보존 간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언뜻 보기에 이들 간의 연관성은 불분명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 사회, 그중에서도 원주민들에게 생물학적 다양성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수리가 멸종되더라도 원주민 개인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의 종교 행위 중 독수리의 깃털이 없다면 부족 문화의 핵심적인 측면은 사라질 것이다. 북서태평양부족들에게는 야생 연어가 살아나야만 한다. 그것도 단순히 멸종에서 겨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처럼 그들 삶의 중심이 될 만큼 회복되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라 본다. 첫째, 지배적인 사회 내에, 부족의 자치 원칙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문화적 생존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 둘째, 연방 정부의 권력이 부족에 미치는 것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며, 그 제한은 부족의 자결과 문화적 보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부족 정부의 주권이 그 개별 구성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그 제한은 미국의 국내법 보다는 국제적인 인권 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 출신의 담당관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는 미국의 원주민이 획득한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원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상황이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유엔 선언 초안을 약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중지하는 것이다.

4-2-3. 문화권 각국 사례-인도⁸⁸⁾

1) 서론

문화는 인간 문명의 진화(발전)를 지배한다. 사람은 외부세상을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고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문화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지하고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다. 칼 맑스가 사회 내의 모든 관계들 중에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를 바라보는 반면,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경제현상 자체가 문화, 특히 종교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세상에 학습되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문화가 구체화한다는 말일 것이다. 의식의 기반과 한계, 조직, 사회,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범위와 함께 문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한 문화 안에서 사회화된 개개인의 관점으로부터 해석되어진다. 문화의 깊이 느끼고 넓게 공유된 가치는 사회의 관례적 약속의 본질적인 질을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필요성으로서 보여진다. 사회의 문화적인 범위는 정치적인 것과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공동체가 사람들의 행동, 태도 그리고 제도의 진화와 성장 안에서 명확한 규칙을 행하는 특별한 문화적 환경 안에서 손질되어지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들만의 구별되는 정체성을 설립하는데 그것(특별한 문화적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더 크게 중요시되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가치와 실행은 특히 다민족, 다종교적인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주장과, 총체적인 투사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인다. 문화적인 권리의 문제는 분할되고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생존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들만의 관습적인 행동과 태도가 올바른 것이라고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열성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한다. 문화라는 것이 그 사회 사람들의 행동, 믿음, 태도를 둘러싸버린 이후 공동체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제재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인 제재 또한 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공동체와 그것의 구성원들은 국가로부터 문화적인 권리를 추구한다.

혼합 문화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과 보편적인 과정의 섬세한 균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혼합적인 사회의 종종 특징적인 형태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는 서로 서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소수를 위한 법적인 보호를 차례로 소리친다. 이것들은 소수자들의 특징이나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한 규칙의 역할을 하는 총체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집단의 구

88) 아래의 글은 Vrajendra Raj Mehta, "Linguistic rights in India",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유네스코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성원들에 의해 그들의 존재자체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진다. 개개의 권리라는 것들이 나라에 대항하거나 서로서로에 대항하는 개인들의 주장인 반면 총체적인 권리는 인간 삶의 사회적인 범위와 관계한다. 어떤 한 집단이 선호할 것 같은 우선하는 정책은 다른 집단들의 이성 안에 이해심을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집단의 주장 권리들은 그러한 차별에 대한 도덕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참말로 나라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다수 문화는 문화적인 지배의 위치를 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문화들은 소외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환경에서 집단 정체성의 보호가 없는 개인 권리들의 보호는 소외, 혹은 착취의 과정에 대항할 충분한 방벽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인도사회에서 좋은 집단 정체성의 방식과 개인의 권리가 번영하기 위해 보호되는 방식을 조사해 볼 것이다.

2) 인도 : 문화적 모자이크

문화적인 권리들의 문제는 최근 경향(한편에서는 통합의 방향,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성의 방향)의 맥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inter-state과 '국가 내'intra-state라는 뚜렷한 두 개의 반대적인 성향의 패턴을 보인다, 한편 주권국가들은 유럽연합, 아세안, 사라크(SAARC)⁸⁹⁾와 같은 더 큰 지역적인 그룹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영토 경계선 안에서 종교, 언어 혹은 민족에 기초하는 더 작은 집단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권리들에 대한 의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더 큰 지역적인 조직들이 협력적인 구조로서 발전하는 반면 소수의 주장, 서로 다른 민족적인 집단, 혹은 하위의(귀속된) 민족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는 지금까지 숨겨져 왔고 억압되어 왔거나 무시되어 왔던 분쟁의 범위(크기)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내'intra-states와 '종족 간'inter-ethnic의 분쟁들은 최근 동중부 유럽의 민족국가의 전체적인 구성조직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각각의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그리고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대통령 Titodml의 카리스마적인 개성이 협력하는 다른 국가주의 민족의 구성요소들, 이런 것이 서로 함께 융합되는 민족국가의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마주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상황들을 구조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의 노력은 실행할 수 있는 타협들이 그렇게 쉽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의해 깨어진다. 어려운 분쟁 해소는 더 이상 민족의 언어와 종교가 다양한 남아시아 지역이 아니다. 혼합적인 것은 독특한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다양한 집단들이 멀어지게 된다고 소외된다고 느끼지 않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89) SAARC: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7년에 창립.

역사주의적인 발화에서 인도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보편적인 인도문화 그 안에서 발전시켰던 인 서로 다른 문화들의 공존의 고전적인 예를 제공했다. 인도는 하나의 영토적인 통치 안에서 대륙연방정책을 구성했다. 인도의 여러개의 연방들의 특징은 사실상 그들의 총체적인 삶(사회적인 체계가 되고, 경제적 형태가 되고 문화적 패턴을 이루는): 또는, 언어적 방언의 집단, 종교적 공동체, 카스트의 상부계급과 하위 계급, 그리고 각 분과들: 또는, 흔히 신화로 대변되는 지역적인 다양성: 또는, 영광과 비극(영웅과 악당)의 순간들에 의해 강조되어지는 역사의 차이점들,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에서 명백하게 보여진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 안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지속되고 있는 광범위한 차이점의 총체들은 '대륙연방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에서 존재와 생존에 공헌한다. 현재 인도 연방은 25개의 주, 그리고 439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7개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화의 관점에서, 세계의 약 100개의 주권국가?(통치국가?)들보다 영토 면에서 더 크고 인도의 거의 절반의 state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면에서도 더 많은 반면에도 다양성과 범위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기억할만한 교훈이다. 남아시아4개, 서아시아4개를 포함하는 거대한 8개의 지역적인 시스템들이 인도에서는 공존한다. 이것들과 함께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족 인구의 하나가 된다. 인도인구의 7.8%인 약 5200만명의 사람들이 1981년에 구성되었다. 약 1650개의 방언들이 나라 전체에서 쓰여진다. 인도의 구성은 18개의 큰 언어 적인 그룹으로 인지한다. 다음은 1981년의 이러한 언어적 그룹들이다. Assamese(900만), Bengali(51.5m), Gujarati(1.9m), Hindi(264.1m), Kannada(26.8m), kashmiri(3.1m), Malyalam(25.9m), Marathi(49.6m), Oriya(22.8m), Punjabi(18.5m), Sanskrit(2,949), Sindhi(1.9m), Tamil(44.7m) Telgu(54.2m) and Urdu(35.3m). 정말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관계의 실험장소이다.

종교와 카스트 제도에 기초한 인도의 언어와 방언 문화적 패턴과 지역적 정체성들과 같은 이러한 차이들은 그것들이 독특한 만큼 그것들의 물리적인 분포와 범위에서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인도 연방주의의 모자이크는 'segment'들 사이에서 많은 분할과 층, 상호작용, 혼합, 조절과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도역사의 진행에 따른 층들은 부유함과 강함의 원천이 되었다. 믿을만하고 고전적인 다원화 사회의 실재적 증명이 된다.

3) 언어권

인도에서는 언어권이라는 논점이 정치 조직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언어는 깊은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문화의 전달 수단으로써 남아있다. 다른 그룹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언어 정체성에 따라 그들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는 그룹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인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도의 정치적 발전의 주요한 사실 중 한 가지는 인도의 지역적 언어의 성장이었다. 이 기간 동안 지역적 언어들은 그들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감을 창조하고, 무엇보다도 독특한 문화 그룹들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부유하고 강한 표현의 매개체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언어들이 뚜렷한 지역에서 말하여진다는 관점에서, 종종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분리된 국가들을 형성하는 이러한 지역들의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독립 이후 힘을 모았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즉각적인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취했다. 지방들을 재편성하자는 요구는 종종 언어주의 형성에 대한 요구와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영령인도 지역의 재분배를 위한 운동은 상당할 정도로 19세기 지역 언어들의 거대한 발전의 직접적인 성과이기 때문이고 이는 다른 언어 그룹들을 감정적인 통합을 이끌었고 독특한 문화 단위의 의식 사이에서 발전을 이끌었다.

따라서 인도에서 진보적인 대중 의견이 행정 단위의 합리화에 찬성하여 구체화되었을 때, 목표는 언어적인 동일 단위에 관하여 고안되고 찾아졌다. 지방 경계를 결정하는 언어 원리의 엄격하고도 한결같은 적용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여 중요한 논쟁들을 촉진시킨다. 그들에 따르면, 인도 같은 연합국은 단위는 단지 행정상의 편의 창조물에 불과 하는 것들 이상의 것들이라고 미리 추정한다. 연합 공화국의 지방들은 최소한의 감정적인 반응을 확실히 하게 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만 하고, 이 감정적인 반응은 민주주의 제도의 작용에 필수적인 것이다.

인도 연맹 지방들은 만약 그들이 통일 언어의 기초 위에 구성만 된다면 내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와 감정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인 언어는 사람들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동질성은 지방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그것은 국가의 뚜렷한 지역에서 살아있는 획득의 사회와 문화적 양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 시대 동안, 영토의 변화는 주로 대영 제국의 이익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사람들의 문화 권리 보호나 그들 문화의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가장 눈에 띄는 행정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 종속된 언어 원리의 예는 벵갈의 분배 제안이었다. 사실상, 벵갈의 분배는 언어 애호에 대한 극악한 폭력을 포함했다. 1912년 식민지는 언어 원리에 대한 약간의 존경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벵갈의 이슬람교도와 벵갈의 힌두교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Montague-Chelmsford Report의 작가는 존재하는 지역 내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실험을 위해 적당한 단위를 제공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선, 언어의 인종적 기초 위에 피지배 지방의 형성을 위한 제안을 조사했다.

인도 의회는 간접적인 지지를 언어 원리에 주었다. 그것이 벵갈의 1년 분배에 대한 요구를 후원했던 1905년이었는데, 그 벵갈의 1년 분배는 방글라데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 개의 단위로 나누는 결과를 낳았다. 의회가 지역의 언어적 재분배를 분명한 정치적 목표로써 받아들인 때는 나그푸르(Nagpur)에서 1920년 입회 때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그 원리는 자신의 체제의 목적으로써 채택했다. 인도의 법령 위원회의 임명 후인 1927년에 의회는 “언어적 기초 위에 지역의 재분배를 할 시간이 왔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지하는 결의안은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 권리에 관하여 말하였다.

지역들의 재분배 문제는 또한 1928년 ‘각정파회의’의 네루 의원에 의해 검토되었다. 그 의원은 언어 원리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언어적 기초 위에 지역들을 재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함을 표현하였는데 규칙적으로서의 언어는 전통과 문학에서 문화의 특별한 다양성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의원은 언어적 범위 안에서 모든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진보를 도울 것이라고 느꼈다. 네루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지역들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할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사람들의 바람이어야 하며 관계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적 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 의회는 1945-1946년 선거 선언서에서 행정상의 단위들은 가능한 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기초 위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복하여 말했다. 의회는 언어적인 동질성이 행정상의 효율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의 보호와 보존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상황이 급진적으로 바뀔에 따라 의회는 그들의 언어 원리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했다. 분배의 결과로 국가는 분열적이고 분리주의자의 폭력의 위협을 맞게 됐다. 그래서 근본적인 관심은 안전, 조합 그리고 인도의 경제적인 번영이었다. 그때 언어가 힘을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언어주를 지닌 오래된 의회 정책은 심각한 행정상의 혼란이나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호 갈등의 발생 없이 주의 깊은 생각이 각각의 분리된 경우에 주어진 이후에 적용될 수 있었다.

언어 주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문화적 재건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것은 다른 그룹들의 정치적 경제적 공정성을 위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더 넓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여러 말을 쓰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리더쉽과 행정상의 권위는 지배적인 언어 그룹의 독점을 남기고, 언어의 소수들은 변함없이 그들 국가의 통치에서 효과적인 발언을 거절당한다. 비슷하게, 이러한 국가에서 발전 계획 복지 활동도 불공평하게 분배받을 지도 모르고 지배 언어 그룹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자주 다른 지역의 지출만큼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단일 언어를 쓰는 나라를 위한 요구는 사회적 문화적 범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분야 안에서도 소수들을 위한 공정한 대우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축소를 사회의 공정성과 함께 긴장 상태로 결합하는 기회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언어주의 형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너처럼 그들의 논쟁을 전진시켰고 국가 재구성 과정은 산드라 발라바하이 파텔의 유능한 리더쉽 하에서 언어 원리의 기초 위에 시작했다.

설명적인 특징, 그룹의 관심,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의 기초 위에 있는 그룹 일치를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모든 인도 법령 위원회는 행동한다.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 적당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의 단일과 통합,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직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회, 분리와, 그리고 지역적 이익의 상호 작용은 때때로 인도 지역의 정직한 노력을 위협하게 했다. 처음 인도의 독립 왜곡, 20년이 나라에서 언어적, 지역적, 종교적 그룹 갈등의 결과로 폭발했다는 것이 역설적인 사실이다.

물론, 지역적 문화 또는 하위 문화라 불리워질 지도 모르는 것들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발전보장의 바람직함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이상적인 인도 문화는 주요 중심 흐름에 스스로 등장하는 동안에 다양한 문화 흐름의 합류에 의해 크기와 내용 면에서 높여졌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흐름은 그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보존한다. 문화적 고립 또는 문화적 갈등은 이 나라의 전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의 집단적인 권리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현재의 정체성과 과거 역사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도 원시적인 충성을 고무시킬지도 모른다. 비평가들은 그룹일치에 너무 많은 강조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일치를 약화시키면서 다른 경향을 자극시킬 것이라 한다.

인도의 역사는 교체된 상호 작용과 조정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동화의 과정이다. 때때로 탈선도 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에 다른 모든 그리고 가장 심오한 것들과 함께 모든 정체성들은 상호작용을 했다. 어떤 모양이 미래에 이 상호 작용을 취할지는 일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요구되는지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알려진 정치적 논쟁거리이다.

인도 연방 정책에는 크고, 확연한 한계를 가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이분법이 다양한 지역의 존재, 다양한 언어의 정체성이 수평적으로, 각 지방에서 언어, 카스트제도 그리고 소득계층에 의해 수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분화를 극복해 더 나은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제정자들은 또한 개개인의 요구인 '집단의 권리'를 법으로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들은 언어 상태를 인정하면서 집단의 권리를 수용했다. 그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수여함으로써 그 이상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했다. 그들은 기초적 권리와 국가 정책의 지배 원칙을 다루고 있는 헌법의 제 3장과 4장의 법률을 만들어낸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헌법에 영양을 미친 인간의 이익과 권리의 고유 가치를 각각 수용했다. 인도 연방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이들 두 장 모두 국가의 양심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두 장은 총체적이고도 개인적인 권리는 사회정의의 조항을 어기지 않고서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법령의 제 3장은 개인의 자유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국력의 한계의 주체를 구성하는 자유를 구별 짓고 이를 보장한다. 이들 권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법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헌법의 이 부분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제정자들은 국가의 힘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권리에 대한 관습 조정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도 최하층민의 관례를 무력화시킨 17번 조항과 인간과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이지 않는 노동의 매매를 규정한 23번 조항은 도시사회의 악과 맞서는 도시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조항이다. 이 장에서 인도의 소수 인종의 문화적 인권의 보호를 위한 알맞은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다양한 헌법상의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통합체가 이들 대다수를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헌법제정자들이 소수인종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권리를 제정했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나 신도 집단이 비종교적인 국가의 이상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만들어지기를 추구해왔다. 이는 국가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보호하며 어떤 종교도 국가의 종교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는 특정 종교를 국가종교로 만드는 어떤 조항도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특정종교를 국가종교로 규정한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등의 인도 이웃국가와 다른 것임에는 틀림없다.

권리는 개인들의 마땅히 다른 사람들 또는 국가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주장이라는 인

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을 지 모른다. 인도에서의 국가에 의한 비종교적인 특성의 시도는 타 그룹에 대해서 다른 그룹에게 동일한 보호를 용이하게 만들어왔다. 헌법에는 평등과 정의의 개념은 종교, 인종 또는 태어난 지역의 배경 때문에 특정 계층의 사람에 대한 적대 혹은 어떤 차별을 폐지하도록 담겨있다. 헌법은 종교, 인종 태어난 장소에 기초해 공동체 대표 또는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조건이 되는 어떤 조항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상위 원칙의 논리적 적용에서 인도 헌법제창자들이 대표성을 적게 띄고 숫자상의 적은 그룹에 대한 향상을 위한 어떤 특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을 생략해 왔다면, 인도 헌법제창자들의 일부분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겪을 지도 모른다. 헌법은 문화적, 언어적, 공동체의 시각이 아닌 다수의 시점에서 보자면 숫자상의 다수에 의해 압력의 엔진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부터 민주주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들어왔던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의 유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몇몇의 영속적인 안정망을 제공해왔다.

비록 모든 개인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한 법률이 소수자를 위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는 할 없지만, 법률은 종교적 소수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 차이는 아마 이들 법률과 이전 파키스탄 이슬람헌법 사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헌법은 어떤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이해를 할 만하게 어떤 종교를 조장하기 위한 어떤 법률도 담고 있지 않다. 둘째로는 다른 언어, 문자 또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 시민의 어떤 그룹도 그 것들을 보호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만약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 문화적 소수그룹이 있다면 국가는 법률로써 다수 또는 지역적으로 속한 다른 어떤 문화로써 그 문화를 기만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누군가의 문자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가진다는 것의 중요한 결론은 시민들은 그 들 언어의 보호를 위해 정치적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어나 의무 초등교육의 도입으로서의 힌디어의 장려는 제29조와 제30조에 의해 보호받은 소수입단의 언어를 감소시키는 장치로써 이용될 수 없다. 제30조에 나오는 소수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게 명기되어 왔다는 것이 여기에 더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적으로 소수의 권리가 반드시 주 법령에 명기되어야 한다고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집단 전체가 수 적으로 특정 주 인구의 50%보다 적은 집단에 적용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인도 헌법 제3장 제29조 이하에서는 그 어떤 시민도 교육시설의 설립이 종교, 인종, 카스트 계급 언어 또는 다른 어떤 원인을 바탕으로 한 국가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원조 받는 것에 대해 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특정 배경에 대해서 어떤 시민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든다. 이것은 종교적인 소수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 언어적 소수를 위한 매우 광범위한 법령이다.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분으로써의 헌법에 포함되어 온, 사람들의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인 권리는 그들의 문화 언어 등을 증진하는 충분한 기회를 소수 그룹들에게 제공한다. 어떤 종교 또는 언어를 배경으로 하든지 모든 소수자들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조달되는 원조 면에서 국가는 어떤 교육기관도 그것이 어떤 종교 또는 언어를 가진 소수 그룹에 의해 운영되든 지간에 차별하지 못한다.

헌법은 언어적인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 언어의 존중할 뿐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방에서 쓰이고 있는 다른 언어에 관해서 도 특정한 특별한 지시를 하고 있다. 공식 언어를 보호로써 이런 지시는 물론 인도의 혼합된 문화의 모든 요소를 위한 표현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공직자 또는 연방 또는 주의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불평도 제거하기 위해 국가 발언의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원자는 연방 또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어떤 언어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런 권리의 결정적인 특징은 소수자들이 그들 자신의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조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소수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주와 국가 내부의 다른 지역적 권력자들은 언어 소수 그룹에 포함된 어린이에게 초급단계의 모국어 가르칠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가 이 같은 편의의 안전을 위한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방향을 공표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종교적 소수자들은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헌법은 더 나아가 언어 소수자들을 위해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이들 문제점을 보고할 수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 관리를 언어적인 소수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모든 이 같은 보고를 의회에 야기 시키고 관련 주 정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권리보다도 공동체의 적극적인 발전이 강조된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어떠한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든지 그들 자신들이 모이는 것은 자유롭다.

인도 대법원은 때때로 이 판단이 소수자들에게 질문과 이들 공동체의 문화적인 권리가 소수자들에게 옹아가는 동안에 특정 주장을 발전시켜 왔다. 그들 제안 중 몇몇은

여기 언급할 가치가 있다.

- (a) 모든 소수 공동체는 그들의 교육적인 기관을 설립할 권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독점적인 교육기관을 가지지 못한다.
- (b) 비록 힌두어가 인도의 국어이고 제351조에 주에 내린 특별한 지시로 힌디어를 장려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소수언어의 문화적, 교육적 권리는 보장 받는다.
- (c) 의무 초등교육을 하기 위해선, 주는 이 같은 교육은 언어적인 소수에 속한 사람이 다른 어떤 학교에서 배척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증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가 소유하고, 지원하고, 고려함으로써 반드시 학교에서만 일어나야한다고 강요하지 말아야한다.
- (d) 비록 주의 원조를 받을 근본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가가 교육기관에 원조를 사실상 하기만 하면, 제30조에 의거하여 종교적 또는 언어에 의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사실상 빼앗는 원조를 강제할 수 없다. 주국가가 합리적인 경우에도 강제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소수 그룹에게서 제 30조에 의해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과 같은 경우를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의 포기는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을 관리하는 공동체의 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원조의 가치처럼 엄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 (e) 모든 기관에서 인식의 확장의 문제와 유사하게도, 주국가는 어떤 경우라도 이 같은 소수인들의 기관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는 범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 (f) 30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수자들의 기관은 어쨌든 그릇된 처리를 예방하고 교육의 알맞은 표준을 정하기 위한 주의 교육적인 권한을 제한을 받는다. ~

인도헌법의 전문은 나라의 통일과 보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보호는 정의, 사상의 자유, 표현, 믿음, 신앙, 숭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소

수 사회의 교육적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 왔다. 정부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룹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인도헌법의 세속적인(비종교적인) 본성은 1976년에 42번째 개정 법령에 의해서 헌법 전문에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욱 더 두드러졌다. 종교적이고 언어적인 소수의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권리를 제쳐 두고라도 인도정부는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핸디캡에 종속 당해온, 진보가 느린 사회의 권리에 대해 꽤 민감하다. 헌법은 불가촉 천민과 족속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특별한 조항을 만들었다.

제46조에는, 국가는 사회의 더 약한 계급과 특히 불가촉 천민의 교육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사회적인 권리침해와 모든 유형의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지시가 있다. 또한 국가는 이들 사회의 고유문화, 언어 등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정직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독립 후, 인도에는 헌법이 시작되고 15년 안에 공식어로서 영어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인도 언어의 말살의 상징이 되는데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변화 직전에 감정이, 다가오는 인도의 주입에 반대하여 마드라스에서 가장 고조되었다. 타밀사람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해관계가 국제 혼성어로서 인도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느껴왔다.

하나의 지역 언어를 유일한 공식어로 만드는 것은 인도의 통일과 통합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유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종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종종 논의되어 왔다. 영어는 공식언어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에 BJP(Bharatiya Janata Party)연합은 타밀어를 국가의 언어로 포함시켜 주라는 AIADMK(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 경제침체, 높은 실업, 공공서비스의 감소는 더 심한 참을 수 없음을 조장할 것 같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적인 권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모든 세력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배타주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 그룹 경쟁의 맥락에서 국가는 또한 다른 그룹에 반대하는 하나의 그룹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위협을 겪는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과거의 충성에 기반한 그룹들 사이에서 다른 점을 조장해서는 안되고, 고전적인 법 규칙의 개념에 기반한 순수한 다원적인 사회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간에 인도는 다양성을 자존심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권리 두 개 모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화된 협정을 창조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자의식의 성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를 부유하게 하고 오늘날 국제사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반성과 문화적 대화를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언어 정책의 맥락에서 볼 때 인도가 처한 복잡한 상황의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3개 언어를 공식언어로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모국어 뿐만 아니라 인도어와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소수가 참여한 (Attended) 제도는 인도이나 다른 언어들을 제공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그들 고유의 헌법과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 고유의 사회에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지지했다.

인도의 경험은 소수의 문화를 보존하는데,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도 독점을 할 수 없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견해와, 소수 공동체의 종교적인 관습에 방해받지 않는 세속적인 국가. 어린 시절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수 공동체의 권리는 소수민족의 학교의 자금이나 인정을 위해 강요되는 조건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계속 되고 번창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공동체가 노력해야하는 모든 문화적 권리들 중에서, 이것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2-4. 문화권 각국사례-중국⁹⁰⁾

1) 서론

중국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증가된 시민과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 그리고 전시대의 인간 권리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차별은 중국의 가장 논쟁적인 인간권리에서 주장되어져 왔다. 그것은 또한 다른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서 채택되어졌다. 중국은 물론, 중국의 서구 비평가들도 이 차별에 관한 그들의 근거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의 인식이 해답을 향한 공공연한 시도가 있음에 따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서구는 중국의 인간권리의 기록과 실패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다. 이 권리의 두 가지 분류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서구의 보다 근접하고 미묘한 고려가 있어왔다. 그래서 두 캠프(분류)는 그 스스로를 지킬 필요성에 의해서 지적으로 풍부해졌다. 그와 동시에, 중국에 관한 국제 무역의 이해와, 중국의 국제 무역에 관한 이해는 경제 성장을 계속했으며, 이는 중국 지방의 대다수 사람들의 전통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사람들은 국내와 국외에서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문화적인 시설의 증가가 있으며, 예술, 특히나 영화 제작에서의 문화적인 성과의 인정과 국제사회에서의 승인에 자신감을 얻은 스포츠는 중국의 지도자들의 사회적, 정치적인 인지의 구별에 대한 태도의 조절과 민감성에 공헌을 하고 있다.

2) 중국의 인권에 대한 담론

중화 인민 공화국(PRC)에서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제한적인 토론은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이 일어난 1978/79년에 시작되었다. 그 연구는 1989년 6월에 일어난 천안문 대학살의 중국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으로 말미암아 심화되고, 계속적으로 체계화되고 제도화 되었다.

이론적인 인지,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실천과 사실성은 다른 논리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

90) 아래의 글은 Alice Erh-Soon Tay, "Perceptions of cultural right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ultural Rights and Wrongs, Edited by Halina Niec, 유네스코 PUBLISHING, 1998년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중국은 인권에 관한 이론적인 관심이 인권문제에 관한 실천과 시살에 대한 비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론화가 중요하고 공식적인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 종종 선구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했듯이 반응을 떠 보는 것, 중국의 이론적인 인지의 이해는 공식적인 인권 문제에 관한 실천을 바꾸는 단서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인권 문제에) 관련된 기사나 책들의 대부분은 인권문제의 일반적인 이론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다른 주제를 다룰때만 언급된다. '문화적 권리'는 정치의 틈에서 발견 될 것이고 시민과 정치적 권리의 토론에서 반영될 것이고, '사회주의자의 영적인 문명화'에서 발견될 것이다.

3) 문화적 권리에 관한 중국의 현재 태도

중국의 문화 권리에 관한 토론의 시작점은 서구의 인식과 이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 문화적인 권리는 인권이다(International Covenant f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인권은 시민과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권리는 '생존과 발전할 권리'이다; 시민, 정치적 권리는 '부정적인' 권리로 인식되며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는 '긍정적인' 자원 집중적인, 무료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중국 창시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그것은 국민의 문화적인 권리를 위한 토대이다.

과학 연구, 문학 그리고 예술적인 창작의 참여에 관한 자유는 문화적인 권리를 즐기는 국민들의 중요한 표현이다.... 지적재산의 보호는 문화적인 권리를 즐기는 국민의 중요한 법적인 보증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론화와 일반화에 약한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입장의 동의를 가정하고 요구하는 그리고 오직 작고, 이윤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유교전통의 타고난 약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창시자들은 보다 자세한 문화 권리의 특징을 기술하지 않았고, 내적인 분석의 구분과 제의에 몰두했다.

시민, 정치적 vs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구분은 중국 학자들의 의해서 채택되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은 인권 문제의 분석과 옹호에 가장 선구자적인 중국의 학자인 리부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시민, 정치적인 권리의 특징들은 그것들은 국가의 비 개입 또는 기권에 의해서 보증을 얻는다; 반면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는 국가의 긍정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필요한 조건들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의 실현을 보증 받는다.

관련된 중국의 문학에서 경제적인 권리는 생존과 발전의 권리로 알려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학자인 첸지상은 실천에서의 구분을 역사적이고 맑스주의적인 정치적인 배경에서 찾는다.

실천은 증명했다, 오직 혁명적인 승리의 쟁취와 국가의 지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는 획득하는 것만으로 중국인민은 더 진보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의 필요한 조건과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 실천은 또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의 실현은 정치적인 권리의 실현과 달리 오직 정치적인 시스템의 변화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국가의 힘에 의한 경제 체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실현은 보다 큰 수준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달려있다. 옛 중국 매우 비생산적인 세력하에서는 하루 밤 사이에 12억 인구의 식량, 의복문제, 생존, 발전과 유희 요구의 충족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몇 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의 힘겨운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는 생산적인 세력의 발전을 계획의 첫 번째 순위에 올려야 하며, 경제와 문화 건설을 발전된 사회의 추진의 한가운데에 놓아야 한다. 인권은, 국민들에게 이미 주어진 정치적인 자유의 권리의 보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생존과 발전의 권리에 관한 실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수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공급과 보장은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들은 더더욱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확고히 하며, 증진시키며 넓힐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계속적으로 보충될 것이다. 그리하여 막시즘의 보호에 있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민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 이 권리의 발전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완벽히 개발되어야 할 권리, 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의 눈에는 시민/정치적인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권리가 [실천적인]우위를 전자에 비해서 찾아야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의 더 큰 발전은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확고히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발전은 문화, 경제문제 만큼이나 정치적인 문제이다.

중국의 토론의 경향은 두 종류의 권리의 구분(시민/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관련의 연속성을 찾는다. 리부연 교수는 그의 구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찾으며, 인권의 다른 느슨한 카테고리를 부합하는 역사 시기에 주입한다. 첫째로 시민/정치적인 권리는 사회주의 시기에 이미 실현되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시민, 정치적인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

인권의 내용은 아무 넓다. 그것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존엄성 권리, 정치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이다. 인권의 사회주의 이론에서 이 모든 권리들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인간 발전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 권리들을 통합적으로 누려야 한다. 역사적인 발전에서, 전 자본주의 시기,에서 사람들이 주장한 권리는 주로 개인적이고 인간 존엄성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보장, 개인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혁명의 시기에 정치적인 권리와 자유는 자본가 계급이 주로 주장하던 권리였다. 이 권리는 투표와 선거출마, 표현, 출판, 모임, 결사의 자유 등등을 포함하는 권리였다.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하에 있던 노동자 계급이 주장하던 권리는 주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였다. 이 혁명은 이미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화'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자유화'를 요구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진부한 개인 소유권을 상대적으로 최선의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 소유권을 제거하려고 했으며, 정치적인 평등을 경제적인 평등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으며, 인류에게 가장 넓은 범위의 인간 권리를 조건을 제공하려고 했다. 이러한 인간 권리의 발전은 인간 권리 발전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진행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경향(사조)를 대표한다, 하지만 유하오청의 이론과 같은 다른 것도 있다.

‘부정적인’과 ‘긍정적인’의 구분에서 출발한, ‘권리’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정치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표현의 권리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도 그 또는 그녀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권리’는 ‘개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의 측면을 포함한다 : 누구도 다른 이가 어떤 이유이건 간에 학교를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 갈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그/그녀가 교육비를 제공할 수 없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의 주장은 ‘권리’의 근본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의 권리는 복지 주장의 본성을 관련하는 말이다.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 권리의 개념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갖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유하오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여기로부터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권리는 복지에 우선하며, 혹은 정치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만약 누군가 그것이 권리라고 부르기를 주장한다면)에 선행한다. 우리가 정부를 평가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정부가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예를 들면 부정적인 자유 혹은 정치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후에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복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정부라는 것은 생산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파워(힘)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그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사회적인 권리는 기관의 특정한 긍정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실행되고 설립되는 수령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의 내용과 구체화는 확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주창되는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사실상 이상주의에 포장된 규범적인 권리이다. 반면에 정치적인 권리는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한 즉시 실현가능한 경험적인[행동 가능한] 권리이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분명하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문화 권리의 잠재적인 차이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Yu교수의 관점은 인간 권리의 문제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공식적인 정치적인 문화적 혹은 인간 권리의 배역과의 긴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종류의 글은 중국 자체보다는 서구의 글 모음에서 더욱 자주 나타난다.

문화적 권리와 사회주의적 문명

중국에서 현 정치적 인식 속에,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문화적 권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론적 용어으로써 그들은 후자로부터 분리되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 체계로 통합되어져서, 정치적 문맥을 지닌다. 이 정치적 문맥은 문화적 권리와 사회윤리와 문화발전과의 관계에 반영된다. 사회적 윤리와 문화적 발전과 사회물질문명은 중국공산당로부터 옹호되어진 사회주의의 완전한 부분이며 "중화적 특성"을 갖는다. 등소평은 사회윤리와 문화발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우리는 고도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기준을 가지고 사회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인간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고취하고 있어야하며, 일반적 교육과 자기 훈련을 통해 도덕적 완전의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주의와 애국심 모두 이 범위에 속한다.--

중국에서 문화권리는 사회윤리와 문화진보에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이 연관은 중국의 인간권리의 특성에 관계되어진다. 슈무지는 이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원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예로써 물질문명의 발전반면에, 사회윤리와 문화적 진보의 발전을 매우 강화한다. 이 사회윤리와 문화적 진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과학, 교육, 민주주의적 양심과 합법적 시스템의 레벨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긍정적이며 건강하며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공공질서와 환경의 일반적 기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권리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사회윤리와 문화진보는 특히 사회도덕의 발전을 강조한다. 사회도덕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인간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존경, 인간에 대한 관심, 가난한사람을 돕기, 남녀평등, 노인 존경, 어린이 사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회윤리와 문화진보의 목적은 교육과 자기훈련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에 조화되도록 인간을 가꾸는 것이다. 이 진보에서, 국가는 인간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그러나 이 발전은 권리와 요구보다는 의무와 기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확실히 증진시킨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현시대의 중국 학자들은, 인권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하며, 이런 통일은 인권연구에서 방법론의 기본 원칙이 이라고 만장일치로 강조한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삶과 안전 자유와 생각의 자유와 인간위엄에 대한 권리를 즐기고 감사하며 요구하면서, 이

런 권리(인권의 가장 기본)는 지형과 문화아래에서 확장되는 보편성을 반영한다. 인권의 특수성은 다른 시대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인권의 특이하고 다양한 표명을 이해한다.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다른 정치체제는 인권의 보편성을 기술한다.

인권의 특이성은 특이적 입장을 반영하거나 역사와 문화적 차이의 인식에 바탕을 둔 인권에 접근한다; 이런 인식은 존경과 다른 국가의 통치의 보호를 표현한다.

인권 보편성의 기초, 리 교수가 주장하길, 는 모든 인간은 일상 생각과 도덕심뿐만 아니라 성격과 흥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갖는다. 인권 특수성의 기초는 다른 국가의 사람의 도덕심과 흥미, 역사, 국적,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각국의 그들의 다양한 배경에 충돌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인권체제와 실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는 것과 두 가지 측면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정치를 만드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한다. 리부연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인권보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종류의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다른 단계를 가진다. 예를들어 주와 식에 대한 규정이 풀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적 억압과 개혁에 고통받았다. 그드른 다른 질문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몇몇 선진국은 인권의 보편성에 더 많은 집중을 하며, 더 많은 강조를 부여한다. 반면, 몇몇 선진국은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이쪽만 강요하고 다른 쪽은 무시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리 교수가 지적한다. 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특정 상황을 인지하고 합당한 태도로 특정한 대안과 인권체제와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의해 채택된 접근방식을 존중하기를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경제적 문화적 발달에 과도한 강조를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인권에 대한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만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권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공정하고 실행적이며 실제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서로간의 인권에 대한 반박과 논쟁이 줄어들 것이며, 나라간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상황에 대한 협력과 대화는 늘어날 것이다.

인권의 정치적 본성과 초정치적 본성

인간 권리의 정치적 그리고 정치 이상의 본질은 인간 권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

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또 다른 의문점이다. 리 교수는 인간 권리를 두 범주로 구분한다. 하나는 정치적 본질의 것 즉, 특별한 정치 시스템 또는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이상의 본질의 것 즉, 보편적이고 정치적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다. 국내적인 영역에서는, 투표할 권리, 보도,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몇몇의 권리들은 정치 또는 정치 이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삶 또는 개인 자신의 인격에 대한 권리 또는 장애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의 권리와 같은 몇몇의 권리들은 정치세력의 주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영역에서는, 주권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이 정치적 본질의 것이다; 인간성과 평화, 안전에 관련된 몇 가지는 정치 이상의 본질의 것이다. 리 교수에 근거하면 명백하게 두 본질을 나누는 것, 적절한 시각 (perspective)으로 그들을 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권리를 비정치화 또는 비이념화 할 수 있게 한다. 리 교수는 중국 내 인간 권리의 상황에 대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공격 범위 안에서 민주주의 운동에서 인간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요구가 발생하는 쟁점 같은 실제 사실로부터 중국에서 인간 권리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또는 '이념적' 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상적인 이분법은 폭넓은 정치적 또는 이념적 원칙의 수많은 주장보다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되는 권리의 '본질'에 기초한다.

인권의 보통의 본질과 계급

맑시즘은 중국에서 맑시즘의 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현행의 토론에서는 인간 권리들이 (모든 사회와 함께) 사회일반의(보통의) 본질 또는 계급 본질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채지샹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리고 대조되는 이해관계를 갖게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이해와 인간 권리에 대한 다른 요구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인간 권리의 성취는 계급 본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사회의 다른, 정반대로 반대되는 계급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몇몇의 타협과 조정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사회 일반적인 실행에 참여하기 위한) 개발을 위해 편리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권리들의 보통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토대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 권리의 본질과 형태 사이처럼 인간 권리 본질의 이 두 측면 사이의 경계를 안다. 즉, 계급사회에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형태로 있는 인간 권리는 계급 이상의 것이고 일반적이며 모든 사람에 의해 누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 권리의 실현은 그것의 본질적 측면, 지배 위치에 있는 계급을 위해 계급 사회 안에서 제한된다. 자본주의 인간 권리와 비교에서 사회주의 인간 권리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르크스 계급 분석을 사용하는 채지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재산, 안전 등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형태는 부르주아의 특권을 보호하는 본질로 그럴 듯하게 꾸며진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권리는 타고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권리들의 위선이 뿌리내린 이유이다. 모든 사회 소유와 노동에 근거한 생산물의 분배의 경제적 기초에서 인간 권리의 정의와 성취에 근거하는, 계급을 없애는 것에 의해서만, 인간 권리의 형태와 본질 사이의 모순에 존재하는 인간 권리의 두 본질은 해결 될 수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그것들은 평등하게 누려질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인간 권리가 자본주의 인간 권리에 대해 완벽하게 우월하다는 점이다.

이 논쟁의 결점은 많은 철학 학파들에 의해서 거부된 형태와 본질(essence)사이의 의문시 되는 구분과 경제 결정론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 중국 지식 집단의 인간 권리 이론의 주류로 유지되고 있다.

인권의 기원들

인간 권리 논의에서 연대적으로 초기 주제로 돌아가서, 본래의 인간 권리들, 중국 사회 과학 대학 철학 학교의 자오팅량은 주장한다. '인간 권리는 문명의 산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보다 문화에 의해 부여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고 문화적 요구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은 도덕과 문명의 기준에 일치하여 권리를 즐겨야 한다고 주장된다. 다음에 따르는 것은 자오팅량이 인간 권리의 보편성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권리는 특별한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권리처럼 주장된다. 그러므로, 몇몇의 인간 권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거나 노예 소유 사회에서 다시 설명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인간권리의 몇 부분들은 서구 사회의 요구를 표현하는 연방 국가에 의해서만 주장된다.

이 매우 복잡하지 않거나 (인간 권리의 자연적 이론의 재생, 인간 권리의 보편적이고 특별한 사인의 구분, 도덕적 인간권리의 최소한도 등의) 논쟁을 통한 생각들은 그들의 표상하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흥미롭게 한다. 그들은 계급 본질과 문화 상대론에 기초한 진부한 마르크스 사회주의 위치에 대항하여 인간 권리의 더 큰 인식의 정당화에 대한 논쟁을 요구한다.

4) 문화 다원론, 관습, 그리고 관습법

중국에서 문화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노력은 중국인들의 관습과 관습법, 합법적이고 문화적인 다원론과 중국인들의 주체성에 대한 태도를 살피는 것을 피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법, 관습, 그리고 중국 내에서 다른 종족간의 윤리적 풍습과 그 풍습이 현재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는 전통적 자세에 대한 믿음에 따른다.

한족의 정체성

중국인, 혹은 지난 2000년간 그들 스스로를 칭하는 말인 한족은 그들이 인종상이나 윤리, 언어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을 공통된 출생이나 혈족으로 묶곤 한다. 한족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명화되어, 독특한 분류와 이 모든 것을 강화하는 교육과 관리 체계에 의거하여, 그들 족의 특성으로 만들어낸 관습, 도덕적 가치와 정치적 개념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때문에 한족 사회 내에서는 중국 전통의 문화와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다원주의의 형식과 중요 개념은 없다. 중국인들은 그들과 경계한 사방의 이민족을 각각 동이, 남만, 서융, 북적이라 불렀다.

AD300년 경에 쓰여진 한왕조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

그 야만인들은 매우 탐욕스럽게 약탈한다. 인면수심으로, 옷이나 음식, 언어에 있어서도 야만인들은 중원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먼 북쪽의 추운 황무지에서 산다. 그들은 그들의 양떼를 위해 방목할 목초지를 찾으러 떠돌며,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사냥게임이다. 산과 계곡, 그리고 거대한 사막이 그들을 우리로부터 갈라놓는다. 하늘과 땅이 이 경계를 만들어냈으며, 이 경계는 우리와 '내부' 사이에 놓여 있다. 때문에 슬기로운 통치자들은 그 이민족들을 짐승으로 고려하여 그들과 접촉을 하려거나 그들을 예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 노력은 우리의 군대를 헛된 노력으로 돌릴 것이며, 만약 침범이 그 노력에 대항해 일어난다면 그 적들과 싸워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땅은 경작이 불가능하며, 그들을 피정복자로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문명인이 아닌 미개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치와 교화는 그들 민족에게 절대 닿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제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들이 침범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퇴각할 때 그들에 대항해 우리것을 지켜라. 그들이 우리의 공정함에 감탄하는 표시로 공납을 제안할 때 그들을 받아들여라. 계속 그들을

억누르고 모든 책임이 그들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납득시켜라. 이것은 야만인에 대한 현명한 통치자들이 지니는 올바른 정책이다.

한나라의 교육적 전통은 매우 오래 영속되었고, 천 년 전에 획득된 지식이 계속 사용되었고, 인도주의나 현대적인 것에 영향 받지 않았다. 1500년이 지난 후에야, 1793년에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보낸 매카트니 대사가 만난 건륭제가 공식적으로 썼다. : ‘만약 너희가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의식과 너희가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전을 얻고자, 너희의 우리의 고대 중국 왕조에 대한 존경을 너희 안에 채웠다고 주장한다면, 너희의 사절이 우리의 문명에 대한 기초라도 얻고자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이민족의 땅에 우리의 예법과 관습을 옮겨 낼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모든 왕조가 정복한 소수 민족의 지배에 있어서 그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용했다. 두 가지가 일반적이었다. 한쪽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무를 돌보고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조절하도록 보내지거나, 소수민족의 민족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전폭적인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다. 모 방식 모두 소수민족의 민족적인 관습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는 데 관습을 이용할 뿐이었다. 관습 적용의 범위는 넓고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 수소민족의 민족적인 대표자 선출과 족장 선출 방식, 범죄와 시민법, 가족, 결혼, 상속법, 논쟁 시의 규칙, 파벌과 마을의 내부 항쟁에서의 조직 등이다.

국민당 아래에서

이 기간 동안, 관찰되고 지속된 소수민족의 민족적인 관습뿐만이 아니라, 한족의 마을과 사회에서 관습들도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체계가 시작되어도, 넓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생활에 응용되었다. 이것은 특히 중국국민당(KMT)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서 두드러졌거나 혹은 정부와 밀접하게 결탁한 때문에 지역 실무권을 획득한 지역 정부 휘하의 지역에서 그러했다. 그 씨족의 수장 체제가 위계 사회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역이나, 범죄나 다른 불법적 행동에 대해 강제력과, 상해나 손실등에 대한 사회적 배상 규칙, 논쟁의 조정과 화해, 전투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가족에 대한 지원책 등으로 응용되고 유효했다.

이러한 중국국민당 아래에서의 소수민족의 관습의 인식은 실용적이지, 이데올로기적이지 아니었다. 국민당의 힘은 특히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발견된 변경 지역등, 모든 곳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국민당은 그들이 살아남아 도움을 얻으려는 듯 소수민족의 관습법

을 존경하고 그들의 실무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역 무장 세력에 의존해야 했다. 중국 국민당의 법관과 관리들은 소수민족의 방해와 자신 앞에 논쟁을 가져오는 검찰관에 의한 시도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그들 스스로, 가장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를 족장이 해결하도록 남겨 둔 것이다. 소수민족의 자치 정부의 확실한 결과는 티벳, 몽골, 신장과 만주, 백족(白族), 묘족, 특히 종교적 관습을 지닌 다른 지역에 관한 자비로운 무시라고 알려진 법령을 통해 중국국민당에 의해 공급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비밀 단체와 미신적 학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종교의 주장과 그들의 규칙은 중국국민당의 법보다 훨씬 더 가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관습법에서는 관심의 일부도 되지 않았고,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RC의 출현과 관습법

(1) 1950년대

관습법은 역시 일반적으로 자비로운 무시의 기간을 거쳤으며, 1950년대는 어떤 방향으로든 구애나 존경의 방식이었다. '완전한 법적 체제'의 부재와 재건을 위한 조건 하에, 중국국민당처럼 중국공산당의 규칙은 모든 곳에 미치지 못했고, 소수민족 지역에서 소수민족 관습은 법과 규제 상태로 공급되었다. 주된 정책은 역시 소수민족의 관습을 허용하는 범위였으며, 공산당은 이것들을 어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다룰 때 관용을 보이도록 당원에게 지시하였다.

(2) 1953년부터 1954년.

이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다듬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수민족의 관습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사회주의자 사회에 이익을 줄 것과, 영향력이 없는 것, 해로운 것이었다. 이득이 되는 관습적인 법은 다른 윤리적 영역에서 다른 관습에 혜택을 줄 수 있거나 혹은 다민족 지역의 지역 정부를 보조할 수 있는 정부 법을 공급할 수 있었다. 때문에 1950년 발간된 PRC 결혼법의 36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대표회의 혹은 소수 민족 지역의 중앙 위원회는 이 법에 기초한 민족의 결혼과 가족 구성 상황에 따른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조항을 규정한다.' 결혼 가능한 연령, 결혼 절차, 양육 책임과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지원, 계승 권리, 지역 축제와 종교적 행사권에 관한 이 법은 만약 정부의 초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정부 법의 일부분으로 수정되거나 선포될 수 있었다. 유산 상속이나 기타 다른 법의 중앙 정부 법은 비슷한 규제를 포함한다.

중화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관습법은 명시된 용어로 다루어지지 않으나, 만약 그것들이 주정부와 대치되지 않는다면 대치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들은 받아들여지고 주정부의 보조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인과 비이슬람 종교인 간의 결혼에 관한 이슬람 종교법의 금지나, 사촌간의 결혼, 특별한 의상과 장신구의 착용, 의식과 사회적 예법 등은 인정된다. 최근 들어서는 몇 주정부 법이나 정책, 예를 들어 아이 하나 낳기 정책(인구 정책)같은 것은 소수민족에 적용될 때는 어느 정도 수정된다. 달리말하자면, 주정부는 납치에 의한 결혼은 금지하지만, 의식이고 상징적으로 납치한 것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사회주의 사회에 해로운 관습과 관습법은, 예를 들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은 관습이 상황 상 해로울 때에는 역시 금지된다. 때문에 묘족이 소릴 죽이고 그것을 장례식에 가져오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장례 실무는, 13000명의 묘족 인구 마을에서는 매 해 장례 목적으로 300마리의 소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즐장의 특권 역시, 또한 결혼의 자유, 남성에게 계속하기 위한 여성 권리의 박탈, 혹은 여성의 어떠한 권리도 무시하는 행위 등 역시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PRC의 정책과 실무는 비교적 개방적이다. 특히 한족이 인식하는 소수민족의 민감한 감정의 인식은 한족 간부와 인구와 소수자들 간의 비교적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력하였다.

(3) 1960년대와 1970년대

1960년대 초반부터, 극좌파가 우세를 떨치며, '일반화된 혼란 상태'가 문화 혁명기에 최고점에 이르러, 소수민족의 관습과 관습법에 잔인한 수정을 유발했다. 중국공산당(CCP)은 "모든 민족의 혼합"과 "지역 민족화에 대항한" 정책을 채택했고, 이것들은 모든 민족성의 특징을 거부하고, 민족 동화 정책을 선택했다. 민족적 관습과 관습법은 버릴 곳이 없었다. 조상에 대해 기념하는 의식과 종교적 의례는 모두 금지되었다. 티벳, 위구르족, 신장 지구의 루스족과 우즈베크족과 같은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항거하였다. PRC는 무장을 갖추고 핍박을 선택했다.

(4)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반대로 움직였다. 개방 정책의 수행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라, 민족주의자들의 문제는 다급하고 위급하게 여겨졌다. 티벳과 신장지구의 민족주의자들과 몽골은 그들 스스로 독립 요구 운동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직접 자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민족적 완화' 위치를 채택하고는, 민족간의 이질화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민족적 동등성과 민족적 통합과 민족주의자들과 그들의 관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그들은 '소수 민족주의자들의 관습을 침해한 자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새로이 하였으며, 소수 민족주의자들의 경제 발전과 교육을 위한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였다. 1982년 인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한족의 맹목적 애국주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장의 계보는 다시 구성되고 인정받았다. 족장은 권위적인 위치로 뽑히거나, 그들의 권위를 다시 복귀하였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족 역시 포함되었다. 병방 지역의 한족 수장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권위를 재설립하려 하였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타일랜드와 미국 내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과 어울리고 이전의 기간 동안 올바르게 지내지 못한 제사나, 사당(祠堂)의 의식등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귀환하였다.

(5) 오늘날의 관습법 규칙

오늘날, 중국 공화국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현재 56개가 있다)이 동등하며 민족주의가 금지되려는 압박이나 대항하려는 의식을 지닌, 다민족 일원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이나 정부 규정에서 셀 수 없는 조항이 비한족을 소수자로 대우하며, 문화적 자치권을 주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는 것과 한족 수준으로 그들의 삶을 끌어올리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득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한 몽골인은 1960년대에 말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 밥그릇을 주고는 밥을 구걸하게 만들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아래의 중국은 그 민족과 전세계적인 시각 양쪽에서 법적인 다원주의를 거부하려는 세가지 주된 이유를 지니고 있다.

1. 계급을 지배하는 도구로써 막시즘 주의가 강하게 단정적이고 기계적으로 법의 정의를 보조적 투쟁 수단이나 그 자체의 것은 아닌, 관습과 관습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막시스트-사회주의의 봉건제도와 봉건적 역사에 대한 비판이 법적 다원주의를 사회주의에 이르는 역사 단계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3. 전통적인 중국의 한제국에의 맹목적인 애국주의는 소수민족의 권리와 전통의 다

원주의를 거부하게 만들고, 모든 소수의 것을 봉건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으로 간주하는 막시스트적 경향을 강화시킨다.

다른 이유도 포함된다. :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휘하에 있지 않은 PRC에서 정부 권력의 집중화는 정부 조직에서 가장 최상위에 중앙화된 정부가 지니는 입법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곧, 1949년 이후로 이어진 법적 체계와 모든 법의 철폐, 사회주의 통치가 적용된 이후로 반포된 법과 규제를 의미하고 해석하는 기구인 NPC와 그 중앙 위원회는 관습법이 소수민족들에게 자치를 요구하는 분쟁의 지지 이유로 이용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설명으로는, 티벳과 신장 지구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관습법과 관습을 여기는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결혼, 장례 풍습, 유산 상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정부의 일반적인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습법의 규칙 하에 행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일족의 존경으로 획득한 족장들은 종종 족별 내에서 문제를 처리한다. 관습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이 소수 민족주의자들과 관련한 정책과 민족의 정책을 융합시키는 한, 법원은 장님이 된 듯 주의를 그에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진지한 범죄나 불법적인 일을 포함하거나 정책에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경우를 관습이나 관습법을 고려하지 않고 다루려 할 것이다.

헌법상 소수민족의 위치

1982년 헌법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의 위치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신설했다. 헌법 전문에 이르길, :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적 통일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속에, 우리는 즉 대한주의와 지역주의 모두를 아우르는 대 민족주의를 지켜야 한다. 아래 조항 4에서는 :

중국 공화국의 국민들의 모든 민족주의는 동등하다.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 민족주의자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평등의 관계와 통일, 그리고 모든 민족주의자 사이에서 상호 관계를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주의자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은 금지된다. 민족주의자들의 민족 통일이나 혹은 분리를 선동하는 어떠한 행동 역시 금지된다. ...모든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말하고 언어로 쓰는 것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보호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에서 서술하기를 :

이것은 그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민족통합과 나라의 통합을 방어하기 위한 PRC의 시민의 의무이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을 약속하고 소수자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의 내부에는 오해와 차이점, 다의적 표현과 모순의 씨앗이 놓여 있다. 국가의 분열, 민족 통일과 통합이라는 의미와 일반적인 헌법과 이러한 규정 안에서 양측 모두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은 소수민족 민족주의자들이나 최소한 그들 중 일부는 할 수 있지만 몹시 논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조항 15번에서는 자치권을 지닌 지역 정부의 영역은 정부 평회회의 결정 아래에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치 지역의 일반 의회는 그 지역의 민족에 따른 정책, 경제, 문화에 특징에 따른 세부 조항을 공포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조항들은 NPC의 중앙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더 나아가, 지역 자치 지역의 세부 조항들은 자치 지역의 인민 위원회 승인을 거치고, NPC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자치 지역의 조직은 정부의 법과 정책을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칠 권한을 가진다. 자치 지역의 조직은 때문에, 법이 법의 정신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제한을 법제화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법의 원리, 결혼법과 유산 상속법은 모두 자치 지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지니는 유사한 조항을 지니고 있다.

자치 지역의 인민 법정에서 행정법상 다루는 의무로 거론되는 52번 조항은 행정 소성법의 수행에 부여된 경우이다. 자치 지역의 1/3 정도가 보조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법에서, 범죄법 147번 조항에서 서술하기를 : '누자유나 올바른 종교적 믿음, 심각한 상황 하에서 소수 민족의 관습에 침범을 저지른 불법 행위의 국가적 기능 수행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윤리법 소개에 따르면, 1979년 이전에는 이런 침범이나 박탈이 많은 경우로 있었고, 전체 나라의 그 누구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다.

관습법 정의의 어려움

관습과 관습법이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억압기 동안, 악독한 관리들은 관습과 관습법은 후세에서 쓰이는 사실에 의해 구별될 것이라 다투었다. 관습의 주체는 관습

은 항상 법이며, 이는 곳 쓰여지지 않은 관습법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하였다. 두가지 접근은 관습과 관습법의 발생 이유나 혹은 그것을 정의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에도 시도되지 않은 것이며 부적합한 것이다. 관습과 관습법이 정부의 법과 대치될 때, 정부는 간단하게 관습과 관습법의 인식이나 원력 부여를 거부할 수 있고, 최선의 것은 관습법이 관습의 상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상태일 때 주어지는 것이다.

관습과 관습법, 종교법 사이의 차이는 역시 선악을 구분하거나 포교 방식의 차이에 있다. 소수 민족에게의 종교의 영향과 사회적인 지위는 한족의 것보다 훨씬 강하다. 소수민족의 몇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티벳처럼, 한 가지 종교를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종교의 관습과 법이 일반적으로 그 민족의 관습이고 법이었으며, 때문에 정책과 종교는 섞여 있었다. PRC의 다양한 종교는 '애국적이고, 국가적인 교회'의 형태를 요구받았고, 예배 장소를 승인받아야 했으며, 기부 받거나 소비한 돈을 기록하고, 그들 자신의(교회) 비품을 그 종교 관리 위원회와 사무국을 통해 주정부의 허가 하에 승인받아야 했다. 조직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본체를 인식할 수 없게 지하 교회화 되었고, 집회나 행동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금융에 대한 권리조차 없었다.

신도들은 종종 결혼식이나 장례식등의 경우에 종교적인 의식을 선호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주의 예비사항과 대치되지 않을 때, 실무자들은 못 본 체 했고 실용주의 정책으로 응대해, '정책과 종교의 조화'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초기 정책에 거스르는 것이었다.

관습, 관습법과 관습의 근원으로서의 종교에의 억압이나 관용의 이러한 이야기나, 관찰자 그룹 사이의 행동 강령 등은 물론 불완전하다. '문화적 권리' 개념이나 그들의 후원은 미개발된 채로 남았고, 동시대의 중국 이론과 더 나은 개발을 위해 익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려에 대한 종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 전면에서 평등한 인간 권리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신호는 있다. 때문에, 희망적으로, 문화적 권리 역시 그러하다. 그러는 동안, 문화와 문화 권리에 대한 중국 학자들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고, 거의 미신적이고 학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개념은 전투보다 어렵다.

4-2-5. 문화권 각국사례 - 호주

1) 토착 문화 권리에 대한 주장 : 호주의 사례 연구

토착 문화 권리가 사적 권리의 보호에 기반을 둔, 뚜렷하게 토착 문화의 가치들에 반하는 법적 시스템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가? 토착 문화 권리는 그 목적을 위해 개발된 일련의 방침들 아래에서 다루어지는 통합된 전체로 보여질 수 있겠는가, 또는 저작권법과 같은 서구 법률 체제들 속에서 승인된 개별적인 보호 부문들이 고유의 이해와 관심사를 고려하도록 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은 이 점들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착 문화 권리의 요구와 승인과 관련해 발생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겪은 바에 의하면, 법적 체제가 원주민들의 토지재산 소유권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의 몇몇 요소들을 혼합해올 수 있었던 반면에, 지적 재산권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들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도 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의 인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부재는 토착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문화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었다.

2) 토착 문화 권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원주민들은 쉽게 규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토착 집단들은 그런 규정을 공식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어떠한 정의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동일시의 개념이다.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 선언서 초안」은 그들 스스로가 토착적이라고 동일시하고 또 그렇게 인정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토착 문화'와 '토착 문화 권리'를 규정하는 일은 역시 어렵다. '문화'의 개념이 개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예술 작품이나 음악과 같은 문화의 특별한 표현이나 현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그 자체로 문화의 한 양상이다. 법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거나 저작권과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 방식으로 문화를 보호한다. 원주민들이 추구하는 보호를 위한 문화적 권리의 범위는 참으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확립된 보호의 범주들 속에 꼭 들어맞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데이즈(Daes) 교수는 '토착 유산'이라는 용어를 원주민들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자산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용어-'토착 유산'과 '토착 문화적 지적 자산'-를 원주민들이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의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토착 문화 권리'는 원

주민들의 문화적 지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슈들

땅에 관한 권리, 성지와 성물,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활동, 문화적이고 지적인 자산, 종교와 영적인 것의 보호를 위해 원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들은 개인에 의해 제기되는 단독의 고립된 요구들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는 요구들이다. 그러한 요구들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그 주(국가)의 정치체 속에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위하고 전통적인 토지 속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의 한 가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지적 자산의 보호는 지방의 권리와 원주민들의 자기-결정의 실현과 연결된다.'

토착 문화 유산은 서구적인 상식에서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요인들이 땅과 사물과 아이디어를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매매가 가능한 상품들로 간주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도록 만든다.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하는 문제도 있다.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집단 혹은 더 넓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거스르는 특별한 공동체나 집단의 집단적인 문화 권리의 주장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들은 선택의 자유와 문화적 향유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권리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가? 서구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리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기본적인 것인가?

4)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적인 접근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점령은 원주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것은 몇몇 집단들을 위한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과 원주민들의 소유권의 확립과 함께 원주민들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새롭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원주민 소유권의 인정에서부터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 경계표(landmark)의 명칭으로 '에이어의 바위(Ayer's Rock)' 대신에 '울우루(Uluru)'를 재인

식하기까지 법과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1) 토지권(Land Rights)

1970년대에 이전의 동화(assimilation) 정책에서 토지 소유권과 자기-결정에 대한 원주민들의 요구의 증가로 변화가 일어났다. 1971년에 최초로 보고된 법적 청원은 원주민이 그들의 전통적인 부족의 땅을 위해 제기한 것이었다. 비록 그 청원은 기각되었지만,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요구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밀리팸(Milirrpum) 판결 몇 년 후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Aboriginal Land Rights)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에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법 (Aboriginal Land Rights Act)을 제정하였다.

(2) 관습법과 문화를 인정하기(Recognizing Customary Law and Culture)

오스트레일리아 법 개정 위원회(ALRC: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원주민들의 관습법과 문화를 재인식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 ALRC는 「시민과 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계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중에서 27번 조항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주(국가)에서, 그런 소수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그들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믿고 행하며, 또한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관점은 개별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관습법과 전통의 실천이 집단 문화의 견지에서 간주되어야 하며, 관습법에 대한 인식은 27번 조항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7번 조항이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특별한 권리들보다 상위에서 개인에 대한 관습법의 법적 강요를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계약과 관련해서 규정된 그들 자신의 인권의 문제에서 집단의 개개 구성원들에게는 반드시 소수적 풍습과 문화, 그리고 관습법의 보호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어야만 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권리가 보존됨과 동시에 문화의 보호와 공동체가 바라는 바들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해서 관습법과 전통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법적 체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3) 관습법(Common Law) 속에서 원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원주민의 관습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발전은 이전의 권위를 전복시키는 판결에서 나왔다. 199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은 마보(Mabo) 판례에서는 '이 나라의 관습법은 원주민 소유권의 형식을 인정한다. 원주민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은

곳에서 그것은 그들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반영한다.'고 판결했다.

(4) 원주민 소유권 법령(Native Title Act)이 문화를 주장하다

1993 원주민 소유권 법령은 원주민의 소유권에 대한 입법적인 인정을 해줌과 함께 보호를 해주었고 원주민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거래들이 규범을 제시해 주었으며, 원주민 소유권에 대한 청원들을 판결할 법정을 세웠다. 원주민 소유권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견해는 그것이 토지에 관한 관습법에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5) 관습법에 대한 다른 인정

오스트레일리아의 법 체제는 많은 분야에서 토착적인 관습법을 인정하거나 승인해 왔다. 예를 들어, 형사상의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서는 때때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원주민이 그의 공동체로부터 전통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를 참작해왔다.

(6) 토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전통적인 권리

지난 20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지 소유권과 원주민 소유권, 그리고 토착 문화, 전통과 관습법의 인정을 위해서 생긴 변화들은 국제적인 기준들, 특히 CERD와 ICCPR의 기준들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마보(Mabo) 판결은 주요한 UN 인권 기구인 ICCPR과 CERD의 기준들, 특히 평등과 무차별과 관련된 규정의 견지에 근거해서 도출되었다.

5) 문화유산,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기

토지와와의 관계 대한 주요한 의의는 토착문화에 널리 스며들어있다. 땅, 이야기들, 유물들과 문화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다. 문화, 역사,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장소에 얽여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은 유적지와 유물들을 보호하는 법률에서 토착 전통을 인정하고 통합해왔다.

1960년대 이래로 주(국가)/준주(Territory: 아직 국가의 자격을 얻지 못한 지역)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법률은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역이나 장소 그리고 사물들에 대한 보호 등급을 규정해왔다. 예를 들어, 1976년 원주민 토지소유권 법령은 원주민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성지에 대해서 그러한 장소들이 원주민 소유권 아래에서 소유되어 있는 토지에 있든 또는 그런 식으로 요청될 수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요한 토착 유적지는 국가의 재산의 부분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아왔다. 세계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문화적 중요성에 근거해서 일부는 세계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은 이제 문화 유산에 관해서 원주민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중요한 장소나 사물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 조항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논쟁은 원주민들의 전통적 가치와 그것을 위협하는 개발 과정들 사이의 마찰을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물음들 너머로 옮겨갔다. 몇몇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통지와 협상을 위한 조항은 많은 판례들에서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내 왔다.

(1) 문화적 물건들과 문화유물들의 반환과 보존

「선언 초안」(Draft Declaration)은 인류 유산의 본국송환을 위해 사전 동의와 자유 없이 탈취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문화재나 중요한 사물들은 일반적으로 성지나 중요한 장소를 보호하는 법률과 동일한 법에 의해 보호된다. 자치주 법령(Commonwealth Act)은 장관에게 신성모독, 즉 원주민들의 전통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물건들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들의 소유와 관리로부터 벗어나있는 많은 문화 유산들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다. 이 물건들의 대다수가 개인의 손이나 공공 박물관에 있고 또 많은 것들이 해외에 있다. 이런 물건들의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소유권자들의 관리를 위해 그들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문화적 정보의 비밀

토착 문화의 중요한 양상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구되어온 보호가 정신적 혹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특별한 전통적 지식에 대해서는 비밀스럽다는 점이다.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이 지식에 대한 접근은 그것의 보존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개인들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의 발표는 특별히 전수받은 사람들에게 만으로 제한될 것이고, 다른 개인들은 그 정보의 다른 부분들을 알게 될 것이다. 비밀이나 신성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나 확립된 규칙들 외부로 폭로하는 것은 해로운 일로 생각되며 그런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회적 고립을 수반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문화적 정보의 유지와 보급에 대한 관습적 제한을 유지하고자하는 원주민들의 바람은 때때로 비원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논쟁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유적지를 보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체제는 토지 소유권이나 원주민 소유권, 또는 그 장소의 보존에 대한 요청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장소의 의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비밀스런 정보가 누설되어야만 한다면 그 장소나 사

물의 중요성을 파괴하거나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문화 유산으로서 그것의 가치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주민 사회의 관계들과 관습법의 위신을 손상시킬 것이다.

자치주 유산 보호 법령은 법정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은밀한 정보에 대한 제한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소와 사물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6) 토착 문화와 지적 재산권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UN 선언 초안」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적 지적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지배력과 보호권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 법률의 기준과는 현저히 다르게,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집단적인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권리 사이의 마찰은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만의 근본이 된다. 법적 체계가 양도가능성과 배타적 소유권의 원칙에 기초한 것임에 반해서 원주민들의 문화적 지적 재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소유되거나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공동체에 해당되는 집단적 권리이다. 각각의 원주민 공동체는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재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 특별한 임무를 지고 있는 중요한 개인들은 그 사람들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집단 정체성의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의 밖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위원회(Australi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는 개정을 위해서 옵션들에 대해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연구는 '토착 문화와 지적 재산'이라는 용어를 원주민들의 그들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유산은 사물들과 장소들 그리고 지식과 전해져왔거나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들의 사용 혹은 본성 모두를 포함하며, 그것은 특별한 원주민 집단이나 그들의 영토에 관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저작권

저작권 보호는—복제물에 권한을 부여받거나 복제하기 위한 배타적인 권리—보통 문학적 예술적, 극적 그리고 음악적인 작품들, 음향 녹음이나 영화의 창작자나 작가들

에게 부여된다. 저작권의 소유자는 작품의 복사나 복제처럼 보호받는 물건의 공인되지 않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다.

저작권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예술작품 원작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토착예술작품의 창조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누가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관습법을 필요로 한다. 그 법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작품을 이용할 권리보다는 오히려 이런 관습법의 본래 모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목적 때문에 쓸모가 없다.

저작권은 오로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작가, 개인이나 회사에게만 귀속된다. 그것은 공공의 권리가 아니다. 만약 한 예술가에 의한 작품의 창조가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전통적인 관리인들이나 원로들에 의해서 공인받아야만 한다면 개별 예술가들은 전통적 관리인들이 아니라 마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법 아래에서 인정될 것이다. 그들은 작품의 공인되지 않은 사용을 막아야한다거나 그 작품의 사용이나 전시를 위해 강경한 요구를 주장한다거나 또는 작가가 그들의 허락 없이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하는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지 않는다. 작가의 개별적인 권리는 전통적인 원주민법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시되는 전통적인 권리들과 마찰을 빚기 쉽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의 보호는 단지 개별 작품들 속의 아이디어의 표현에만 적용될 뿐, 아이디어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개 작품들에서 사용된 예술적인 양식과 기술들도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통적인 원주민 예술에서 사용되는 아크릴 물방울 양식은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위반 없이 비원주민인 예술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나 테마도 보호되지 않는다.

위에 더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작가의 생애 더하기 50년이다.

(2) 디자인

디자인법은 유사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새롭거나 고유한 디자인들은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된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는 기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그것은 짧은 기간의 독점권을 예술가에게 준다.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는 실제로 공공의 소유가 가능할 것이다.

(3) 특허권

유사한 문제가 특허권의 사례에도 발생한다. 특허권은 소유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보통 15년에서 20년 동안 발명품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준다. 특허권은 원주민의 지식과 문화적 유산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합법적 장치를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몇몇의 중대한 한계를 지닌다. 한 명의 '발명가'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이 요구되는 반면에 지식 공유의 관습이 많은 원주민들에게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특허의 주체가 다른 어떤 원주민 집단이나 개인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 온 원주민들의 풍습 속의 지식에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발명'을 입증해야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나의 발명품에 특허를 주는 데에는 고액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5.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지금까지 문화권의 각각 범주들에 해당되는 세부 영역들을 법률현황, 정부정책현황, 피해 및 구제사례, 국제사례 등을 통해서 검토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해서 문화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개선안이 마련되어야하는지를 영역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정책개선과제는 각각의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기술하지 않고, 네가지 범주별로 주요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전략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5-1. 문화자유권

5-1-1. 표현의 자유

1)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

(1) 현황

문화활동이나 창작활동에 있어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작품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의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죄(이적표현물 등의 제작·반포죄 제7조 제5항)가 정치적, 이념적 소신을 가진 문화활동이나 창작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었고 9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80년대처럼 이념서적들이나 문화예술창작품들이 강력하게 검열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보적인 서적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문학작품을 포함해서 미술작품이나 연극작품 등에 진보적 통일관이나 강력한 노동운동의 이념을 담은 표현물들을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인권선언」(1948)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서면 또는 인쇄·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

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토착민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문 초안」(1993) 1부 1항에는 “토착민은 유엔헌장에서 인정된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현행법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과 6월에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동의한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않았다. 대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하는 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인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⁹¹⁾

헌법재판소는 또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 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찍히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 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더 클 것”이고,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의 완전폐기를 반대하고 ‘한정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4) 정부 시행 정책 및 계획

국민의 정부 이후로 정치적·이념적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제7조)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91)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113 판결 : 헌법재판소 1990년 6월 25일. 선고 90헌가 11 판결.

(5) 기존 제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오래동안 검열해왔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6) 전체 평가 및 실천 계획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폭 넓게 허용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분단과 냉전의 유산으로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한 사회가 다양한 정치적 이념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함과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단과 냉전의 논리를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표현의 자유

(1) 현황

성표현에 대한 정부 정책은 청소년보호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성표현물이나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의 일반적인 방식은 심의를 통한 등급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등급제를 통해 해외 영상물과 음반은 수입 추천제를 통해서 사전에 규제되며, 국내의 경우 영화 「둘 하나 섹스」의 등급부류에 대한 위헌 판결(2001년 8월) 이후 제한상영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안적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표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2) 국제 권고 및 외국사례

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27조나 문화다양성을 위한 세계장관회의 협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 제15조 제1항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국제권고안들은 성적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기 보다는 성적 표현의 자유가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성적 학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1989년에 제출된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는 유해한 노동(32조), 마약(33조), 성적 학대(34조), 인신매매(35조), 무력분쟁(38조) 등으로

부터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6년 8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제 1회 '어린이 성학대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126 개국 대표들과 50개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은 어린이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채택된 87쪽의 선언문은 각국 정부에 대해 어린이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밀매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입법조치 및 처벌을 가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권리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또 각국이 2000년까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 성착취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완성할 것도 권고하는 한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협약(제 34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아동들의 성적 학대에 대한 보호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성적표현의 자유 자체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사이의 대립과 논쟁에 대한 외국의 사례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청소년보호론인데 미국의 음반규제는 청소년들이 듣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판단이 있을 경우 앨범 표지에 "부모들의 경고(Parental Advisory)"이라는 표시를 한다. 영화등급제도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아도 좋은 G,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보기에 부적당한 PG-12, 부모의 동반과 선별적 관람을 유도하는 PG,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금지되는 NC-17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등급제도에 개입하는 반면, 업계의 자율결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68년부터 관람등급제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업계의 자율결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과도한 성묘사나 폭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3) 현행법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2조에 규정된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란 규정에 의하여 규제받는다. 한편,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한 도서·잡지 등을 제조·판매·수출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

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법적 제한으로는 영상물에 대한 심의 등급(‘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음반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 해외공연의 경우에는 ‘공연법’과 공연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각종 매체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인쇄, 출판물에 대한 청소년판매 ‘가’와 ‘불가’를 심의하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성표현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2002년 6월 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모든 멀티미디어게임장(PC방)에서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다.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PC게임장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PC에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성표현물에 대한 완전 허용보다는 제도적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성표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다 2000년 들어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조항이 위헌 판결을 맞게 되면서 새로 신설된 제한상영가등급 신설로 인해 성표현물을 합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현재 제한상영관은 국내에 없다.

(5) 기존제안

문화적 자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헌장의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보호법’의 매체심의 분야 삭제 및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 대체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영화진흥법’의 영화등급제의 기준이 완화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심의도 완화되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등급들은 18세 관람가로 낮추고, 제한상영등급은 아직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 표현물로 가야한다. 또한 수입추천제의 경우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과 각 방송사들의 심의의 경우 보편성과 여러 모순적인 규정의 없어져야 할 것이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성적표현은 대체로 음란

성을 그 판단의 기준에 두고 있다. 문화영역에서의 성을 매개로한 창작과 표현의 부분들도 이런 음란성을 가지도 판단하는 것은 문화영역의 창작과 표현을 침해하고 사전에 검열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영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작과 표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기본법과 문화현장의 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매체심의 분야의 삭제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 대체입법화하는 방향과 '영화진흥법'의 영화등급제 기준완화 및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심의완화와 수입추천제 폐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또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1) 현황

정보통신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법이나 관례가 따라가지 못 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퇴학생들의 정보공유 사이트 '아이노우스쿨'의 강제차단 명령이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강제 폐쇄조치와 대표적인 국제동성애 인권단체인 국제동성애자협회 사이트가 청소년불건전 사이트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하여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패러디나 토론방의 경우 현행법상 선거법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행위로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 미국의회는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린이는 인터넷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린이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요한 배경이 기성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정보격차 즉 세대간 문화 격차에 따른 기술 공포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세대간의 격차의 해소가 정보통신의 제한이나 검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 성명문」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자유롭게 정보 매체에 접근할 권리의 보장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정보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해매체물 표시의 문제 제 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보호법’ 개정안으로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신설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제도는 검사장의 협조하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경우 법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포함해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표시방식(pics)이 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활동과 패러디활동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5) 기존제안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자식 표시 의무화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며,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이 삭제되거나 감청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어 무단수집이나 무단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사전검열의 성격이 강한 인터넷 실명제의 실행이 유보되어야 하며, 인터넷 패러디나 정치토론평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의 제한이 한정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격차와 소외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검열과 통제의 논리를 벗어나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격차에 대한 지역·세대간 격차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개개

인들의 정치적·문화적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민주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들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개선의 방법으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전자식 표시 의무화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통신비밀 보호법'의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의 삭제나 무분별한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주의식의 정보집적화 산업의 추진을 재고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사전검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인터넷 패러디 활동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1-2. 학술사상의 자유

1)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1) 현황

진보적 학술사상의 표현이 국가보안법 등의 실정법 위반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들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강력하게 살아있던 시절이어서 진보적 학술사상을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0년대 이후 탈이념화, 탈냉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도한 학술 사상의 주장에 대한 검열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학술적 주장이 봉쇄되고 있다. 학술 사상의 자유의 제한은 현행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냉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언론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진보적 학술서적들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불필요한 사상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천부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와 제2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정치적인 혹은 여타 다른 견해, 국가적 혹은 사회적 출신 성분,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상황 등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천부의 이성과 양심에 따른 진보적 학술사상이나 다른 견해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03년에 제출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중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3) 현행법

대법원은 표현내용에서 이적성이 발견되면, 미필적 인식으로 이적성을 추정해 유죄를 인정하는 ‘해악의 경향(bad tendency)’ 원칙을 대체로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1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범죄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며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⁹²⁾ 대법원은 “개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전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구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나 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에서 학술사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없다. 80년대에 비해 학술사상의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학술적인 연구와 주장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추세이다. 오히려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하여 정부 각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학술사상에 대한 사찰 및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기존제안

학술저서나 초등·중·고등 학교나 대학교과서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술사상의 자유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준하는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일상적으로 학술지식인들의 학술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학술사상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볼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분단과 냉전, 독재정치에 의해 이런 기본적인 인권마저 처벌이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분단·냉전·독재의 유산들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학술사상이 자유를 보장하여 무엇이 더 가치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술사상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술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92)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백서』 제1집. 2004년. 263쪽. 재인용.

2) 학술사상의 출판의 자유

(1) 현황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나 이진경의 『한국사회구성체방법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의 『나는 야 통일 1세대』 등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적표현물 분류의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베이루트 협약」에 의하면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과 서명 의정서 베이루트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의 정부들은 유네스코의 목적에 따라, 교육·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언어와 표상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소통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상호 이해가 촉진될 것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은 학문의 자유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죄 등(제7조)에 따라 진보적 학술사상이 실정법위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하여 정부 각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학술사상에 대한 사찰 및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기존제안

학술적인 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저작한 출판물에 대해 저술활동의 자유와 그 출판 보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는 민주화에 따라 많은 부분들에서 그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인의 신념의 표현의 학술사상출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현행법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3) 학술사상 교육의 자유

(1) 현황

현재 개인의 소신에 따라 특정한 학술적인 사상을 교육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많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교육교재와 학습방법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성대학교 대학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학술사상의 교육은 국가보안법 등의 실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좌익 이념서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교양교재 중 일부를 지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등의 문제 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놓고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베이루트 협약」에 의하면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과 서명 의정서 베이루트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의 정부들은 유네스코의 목적에 따라, 교육·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언어와 표상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소통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상호 이해가 촉진될 것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죄 등(제7조)에 따라 진보적 학술사상이 실정법위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학술적 사상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자의 자율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바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진보적인 북한문제, 통일문제, 급진적인 좌익사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출판하거나 교육할 경우에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하여 정부 각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학술사상에 대한 사찰 및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기존제안

학술 사상을 교육할 때 개인의 양심적 자유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강의방식에 있어 그 내용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학술사상 교육의 자유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권의 보장의 측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의 현행법과 정부와 각 기관들의 일상적인 사찰 및 판단 행위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 및 정부와 각 기관들은 일상적인 사찰 및 판단 행위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4) 학술사상 단체 활동의 자유

(1) 현황

현재는 특정한 학술단체에 대한 국가의 규제나 검열이 완화되고 있다. 1991년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물표현물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진보적인 사회시민단체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에 대해 사상검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0년대에는 진보적인 학술운동 그룹인 '학술단체협의회'에 대한 국가 기관의 상시적인 간섭과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학술단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 모든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연구그룹들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협약서를 만들었다. 이 협약서는 “학구적인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중중”이라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협정서는 보다 높은 교육제도는 학구적인 자유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기술되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보호와 지식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학구적인 단체들의 동등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베이루트 협약」에 의하면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과 서명 의정서 베이루트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의 정부들은 유네스코의 목적에 따라, 교육·과학 및 문화적 성질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언어와 표상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소통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상호 이해가 촉진될 것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은 학문의 자유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죄 등(제7조)에 따라 진보적 학술사상이 실정범위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현재 정부에서 학술단체의 자유를 구체적이고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사례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하여 정부 각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학술사상에 대한 검열 및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학술진흥재단을 통하여 진보적인 학술사상이나 단체들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술운동이나 진보적인 학술단체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5) 기존제안

학술사상의 증진과 교류를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할 경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주장한다해도 기본적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특정한 학술사상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되는 사상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학술사상을 토론하는 단체들이 많으면 많은 수록 그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장을 구체화하는 학술단체들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간접적인 학술지원도 필요하다.

5-1-3. 종교 활동의 자유

1) 종교적 표현의 자유

(1) 현황

특정 종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특정 종교의 학습을 강요하며, 타종교나 무신론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며, 여러가지 불이익과 주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나 유엔에서 각국 소수민족들의 종교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며, 「알제리 선언」, 「아프리카 선언」 등의 협약을 통해서 종교적인 결정권으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조문을 첨가 하였으며, 보스니아·수단·스리랑카·코소보·터키 등 종교분쟁 지역에 대한 종교의 차별금지를 밝히고 있으며,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질서·공중보건·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으며, 동조항에서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종교와 관련된 문화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 없도록 종교별 문화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기존제안

특정 종교에 운영되는 학교들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활동의 권한을 인정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특정 종교의 의식·행사 등의 참여 강요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에서 특정 종교 의식·행사 등이 포교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 때, 종교의 자유와 종교 포교의 자유가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들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합리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종교적 문화활동의 자유

(1) 현황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문화활동의 경우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인권 선언」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종교적 문화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작가 샬먼 루시디의 소설 『악의 꽃』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부터 문화창작 활동이 제한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또한 종교 음악·문학·미술·공연행위 등의 표현행위에 대해 자유의 인정을 적극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으로 종교와 관련된 각종 주장, 집회, 문화행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문화활동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종교별 문화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종교적 활동에 있어 개인의 피해가 대단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종교적 문화활동을 가장한 불법적인 선교나 포교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기존제안

종교와 관련된 각종 문화활동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신고, 장소사용, 시설사용 등에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종교적 문화활동은 종교활동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종교의 포교논리로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고 종교적 문화활동과 봉사행위가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로 확대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한 사사로운 포교행위를 넘어서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1) 현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004년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700명 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적 병역거부 지원단체인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04년 2월 현재 5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0년 683명, 2001년 804명, 2002년 734명, 2003년 705명 등 해마다 700명 내외의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⁹³⁾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전세계적(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5개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 활동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원제청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⁹⁴⁾ 현재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썰기를 박았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기존제안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양심적 징집 거부자를 군부대 내에 배치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군대내에서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양심적 징집 거부자를 군대 바깥에서 시민적 통제 하에 놓고 비군사적 일을 시키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93) 동아일보(2004년 3월 31일)

94) 헌법재판소 2002헌가1 사건 결정문

본다”고 밝히고 있으며,⁹⁵⁾ 대체복무의 양태와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가 인정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수감된 종교인들에 대한 교도소 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의 인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전쟁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분단과 남북한 대치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전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작이 1·2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통한 화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세계적인 인권이 보편적인 흐름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체입법을 통한 해결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5)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백서』 제 1집. 2004년. 295쪽. 재인용.

5-1-4. 언론 표현의 자유

1) 언론 취재의 자유

(1) 현황

현재 헌법, 언론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언론은 취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70년대 유신정권 시대나 80년대 5공 시대에 언론은 취재의 자유를 상당부분 박탈당하고 있었다. 90년대 들어서 군사정권이 끝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많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언론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 권력이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바 언론자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자본에 의한 언론 소유, 언론 사주를 통한 자본의 영향력 미치기 등 새로운 형태로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편집과 편성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 등이 강구될 필요가 생겼다. 언론 취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국경없는 기자회(RWB),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제발행인협회(WAN)는 언론이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언론 취재에 대한 검열이나 간섭을 받을 경우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체들도 이익단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그들의 국제 권고 등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발행인협회(WAN)에서는 한국의 언론개혁을 두고 언론침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한국의 언론사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제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성격에 맞추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3) 현행법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도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언론이 민, '형법'의 규정에 위반하면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음란성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취재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취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무단침입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이뤄질 경우 언론은 '민형사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의 사전검열 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 헌재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으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양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 언론 브리핑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여 우회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5) 기존제안

언론이 객관적 사실에 준하여 작성한 기사의 표현의 자유가 국가나 사적이익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화 및 강화가 필요하며, 언론의 취재 허용을 제한하는 예외조항들을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의 전제조건, 언론취재의 접근금지 구역 및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언론의 취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항이며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 인권의 주요한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요소와 적극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구성원리하는 부분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합법적인 언론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언론의 취재원 보호

(1) 현황

취재원 보호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직업윤리다. 언론이 취재원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정상적 언론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재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언론이 이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문제는 법률상 취재원을 언론이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발생할 때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은 최선을 다하되 법률적으로 취재원을 밝혀야 할 때를 직면하게 되면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취재원의 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형법' 제 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으나 이 또한 언론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법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는 없으며 언론실천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언론이 소송 등 분쟁에 관

련되었을 때느 취재원 보호가 제한되고 있다.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언론인은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청받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언론인의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상 증언 거부권자는 변호사, 의사 등에 제한될 뿐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형사 소송법’ 제 149조).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미국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마빈 패스트 실드법’을 실행하고 있지만 1972년 미 연방대법원 *Branzburg v. Hayes* 사건 판례에 따르면 기자는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의 증언거부는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이 판결의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언론에게 취재원에 대한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3) 현행법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제 51조, 제152조, 제155조)나 범정모독죄(제138조)로 다루어지고 있다. 취재원과 약속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에 속하는 공표거절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취재원 보호는 법률적 사안이라기 보다는 언론의 윤리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언론 윤리 강령, 실천요령, 제작 가이드 라인 등에 포함시켜 언론인들이 가능한 한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도록 하는 일이 요청된다. 정부는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한 언론인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언론 윤리 등을 알리고, 법률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각 언론사들은 제작 가이드 라인, 지침서를 제작하여 언론인들에 이에 대해 각별히 신중을 다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언론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및 포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들은 취재원이나 피의 사실의 공표에 있어 인권에 맞는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러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바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취재 행동들에 대한 자율조정능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보완으로 언론사 내부의 연수, 교육, 신입 언론인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언론재단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사례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2. 문화평등권

5-2-1. 양성문화평등

1) 양성표현의 자유

(1) 현황

양성문화에 대한 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문화적 표현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대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드라마, 광고 등에서 표현되는 대부분 경우 여성을 차별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며, 여성의 주체적인 행동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는 제한되어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여성민우회나 여성단체연합 등에서 미디어에서 여성이 왜곡되어 표현되는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표현되는 기회는 많지 않다.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계의 여성들의 활동도 부족한 편이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나 여성부에서 양성평등의 표현을 진흥할만한 전담부서가 없으며, 여성들의 제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양성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행정부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젠더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에 대한 의제가 설정되었으며, WomenAction2000, UN WomenWatch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여성표현의 자유를 권장하는 안을 개발하였다.

(3) 현행법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영역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사생활과 정신생활 영역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의 보장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양성평등의 원칙은 각 생활영역에 따른 개별적 평등 조항에서 구체적을 명문화되어있다. ‘헌법’ 제23조,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정치적·공정생활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

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는 여성들의 문화적 표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새예술정책에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양성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정부는 “서울여성영화제”를 지원하고 문예진흥원에서 해마다 공모지원사업 분야에 양성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성문화의 발전을 위한 확대된 사업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5) 기존제안

여성창작자들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양성표현에 대한 문화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양성표현의 자유를 위해 여성문화예술가와 작가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회제공, 양성표현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양성에 대한 평등한 표현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

2)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1) 현황

문화관광부나 여성부나 양성표현의 제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양성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행정부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UN WomenWatch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출판물과 제작물을 지원하고 있다.

(3) 현행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12월 제정, 1996년 7월 1일 시행)은 헌법과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를 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는 여성들의 문화적 표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새예술정책에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5) 기존제안

양성평등을 다루는 출판물과 영상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지원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

(6) 전체평사 및 실천계획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양성의 이해를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출판물이나 표현물들이 남성들에 비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판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노력들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보장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성문화의 차별금지

(1) 현황

문화관광부나 여성부나 양성표현의 제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양성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행정부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의 각종 여성단체들이나 UN과 UNESCO의 여성분과들에서 TV, 영화, 광고,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동대응

하고 있다.

1998-1999 동안 유네스코의 “문화와 개발을 위한 세계 위원회”는 여성의 권리 침해와 이러한 침해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침해 행위, 둘째는 여성의 재산적인 권리, 그리고 셋째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여성의 권리이다. 위원회는 문화의 권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3) 현행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교육·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남녀차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특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에서는 남녀차별에 대해 법(‘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특별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문화적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채용, 교육, 시설, 용역 분야에서 차별금지) 있지는 못 하며, 여성차별개선위원회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각종 침해사태들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문화활동과 표현의 차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않고 있다.

(5) 기존제안

방송 드라마에서의 양성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 강화하고, 문화 창작물에서 양성차별의 유형들에 대한 조사와 교육 필요하며, 양성문화의 차별조항을 구체화(‘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하며, 성차별개선위원회에서 문화적 표현물에서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활동을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양성문화의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매체들에 의해 조성될 수 있는 양성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방송 드라마나 여타의 문화 창작물에서 일어나는 양성문화에 대한 왜곡에 대한 점검과 방지대책들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며, 양성문화의 차별조항을 구체화하여 '양성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양성평등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정부 각 부처나 매체들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양성문화표현의 사회적 실현

(1) 현황

문화관광부나 여성부나 양성표현의 제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양성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행정부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여성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인간존엄에 위배되고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 따라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3) 현행법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직접적인 남녀차별 외에 간접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보는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도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분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1996년 시행된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02년 개정에서 종전에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명명하고 그 내용도 보강되어 앞으로 여성이 낮게 대표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할당제, 목표제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5) 기존제안

호주제의 폐지와 학교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교육의 실시와 양성평등관련 법률에 양성문화의 사회적 실현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양성문화표현의 사회적 실현은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문화표현의 평등을 위해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이런 정부나 사회의 높아지고 있는 관심과는 달리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문화들이 여성의 문화표현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문화표현에 대한 신장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여성의 문화표현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5-2-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1) 성적소수자 표현의 자유

(1) 현황

성적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그동안 사회적 금기와 억압으로 인해 많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에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창작물과 출판물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극히 드물게 전문지, 단행본, 번역물이 발간되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말부터 한국에 동성애문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창작물도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서 창작되고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에 동성애를 변태성욕으로 구분하였고(2004년 4월 30일 삭제), ‘청소년보호법’에 있던 동성애차별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사실 청소년보호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의 심의위원회의 내부심의 기준안에 청소년보호법과 구절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사회적 시각이 성적소수자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성적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 표현은 자기검열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출판사(미국의 엘리슨 출판사Ellison Publishers 등)가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예술제나 문화축제가 일상화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의 경우 매년 6월말이 되면 500개의 ‘무지개 깃발(무지개는 성적소수자를 상징한다)’이 마켓가를 따라 나부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퀴어축제로 거리는 국제 남·녀성적 소수자 필름 페스티벌, 퀴어예술축전이 벌어지고, ‘호주의 마디그라(성적소수자 축제)’는 대표적인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이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한국의 이슈들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을 벌였다.

(3) 현행법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은 청소년

년 유해물로 규정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결정되었으나, 온라인 상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성애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기존제안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안에서 동성애 표현 조항 검열의 철폐해야하며,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을 담고 있는 문화적 표현물의 정당한 유통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성적소수자 표현의 자유는 성적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성적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성적음란성의 기준이나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의 경우에도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자기 표현에 대해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사회의 편견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훼손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을 담은 표현물들의 정당한 유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성적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1)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으며, 성적소수자들을 다룬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출판사(미국의 엘리슨 출판사Ellison Publishers 등)가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예술제나 문화축제가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이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한국의 이슈들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을 벌였다.

(3) 현행법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은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성적소수자의 출판물과 제작물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법률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유해매체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5) 기존제안

성적소수자들의 출판물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심의의 기준이 변화하여야 하며, 평등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성적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의 경우 성적소수자들의 표현물들의 제작과 유통의 과정은 사회적 편견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검열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성애전문지 '버디'와 '버디친구닷컴' 등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서점들의 입고거부나 지역도매상들의 배본거부와 인터넷 웹호스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책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적소수자 문화활동의 자유

(1)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으며, 성적소수자들을 다룬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적소수자들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적소수자문화를 다루는 '퀴어문화축제'가 해수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필름이나 극영화, 사진전, 미술전들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적소수자들의 문화활동들은 이성애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많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샌프란시스코 게이축제의 경우 매년 6월 초가 되면 500개의 '무지개 깃발(무지개는 성적소수자를 상징한다)'이 마켓가를 따라 나부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성적소수자 축제로 거리는 국제 남·녀성적 소수자 필름 페스티벌, 퀴어예술축전이 벌어지고,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성적소수자 축제)는 대표적인 호주 시드니의 문화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3) 현행법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은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예진흥원에서는 성적소수자들의 축제를 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성적소수자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는 전무하다.

(5) 기존제안

성적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성적소수자 문화활동의 자유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의해 성적소수자들의 문화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성적소수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여

타의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비슷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창작과 문화활동을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아닌 다양성과 차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성적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1)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으며, 성적소수자들을 다룬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으며, 문화생산과 소비에 있어 규제 및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2002년 '엠네스티'에서는 대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중에 한국의 동성애문화에 대한 차별 및 과도한 규제금지를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한국의 이슈들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을 벌였다.

프랑스에서는 동성애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주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 하원은 2004년 12월 8일 동성애자에 대한 취업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⁹⁶⁾. 또한, 캐나다의 경우 2003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기존 혐오범죄법을 개정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혐오범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9년 연방차원의 혐오범죄예방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3) 현행법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은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예진흥원에서는 성적소수자들의 축제를 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

96) 자세한 내용은 2004년 12월 11일자 세계일보 참고.

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성적소수자들의 문화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법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형법에서 성적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성적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차별은 혐오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의 경우 신분의 노출이 될 경우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성적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나 협박 등의 범죄들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과 유사한 과중처벌체계와 신분노출을 방지하는 수사 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5-2-3.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1)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차별금지

(1) 현황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차별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차별금지의 법적근거 및 처벌규정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3) 현행법

노동부 예규 제285호로 제정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은 연수생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보호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수생은 연수업체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정책과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안을 마련하여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아시아열린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 제안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령들에서 노동조건만이 아닌 인권이나 문화적·인종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외국인노동자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받아들여

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될 뿐이며, 다양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성과 그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별의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령들과 관련 부처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권 확대

(1) 현황

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가족(아동) 동반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가 외국인노동자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 중 일부는 가족, 특히 아동을 동반한 경우가 있어 육아와 교육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등록가정은 아무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 역시 의료·육아·교육 등 모든 사회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지 못하여 방치되는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양육받을 권리, 가족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일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취득의 권리, 휴식, 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들을 개최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에서 연극활동이나 합창활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가 문화적 차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일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3) 현행법

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가족(아동) 동반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의 제도교육의 틀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행정지침은 내려져 있으나, 지원하고 보호하거나 차별에 대한 처벌 등에 명확한 법적 체계는 없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정책과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안을 마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아시아열린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 제안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권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한 학교진학의 문제만이 상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권의 경우 이미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지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종·문화적 차이에 의해 입학이 거부되거나 이지매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노동자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장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단순히 학교입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이지매 등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적응

(1) 현황

다음세대재단과 서울외국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나 정책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양육받을 권리, 가족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일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취득의 권리, 휴식, 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들을 개최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에서 연극활동이나 합창활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가 문화적 차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일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3) 현행법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정책과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안을 마련하여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아시아열린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 적응에 대한 노력은 전무하며, 대체로 노동현장에서의 현지적응 훈련에만 치중되고 있다

(5) 기존제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지원·개발되고 일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문화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산업연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서는 상호주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바로 서로의 문화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처의 경우 노동현장과 노동현장을 둘러싼 문제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적응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들을 낮은 형편이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처들은 노동현장에 집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4)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다양성 확대

(1) 현황

외국인노동자들의 전통문화와 일상생활의 문화들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비롯해 각국의 문화단체들은 이들의 민족문화를 수용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되었으며, 유네스코는 2003년에 북경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다.

(3) 현행법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문화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정책과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안을 마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기회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북 제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이주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아시아열린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 제안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능력과 문화다양성 실현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축약될 수 있다.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노동에 묶여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특성은 무시되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의 특성과 차이와 다양성은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2-4. 탈북자 문화평등

1)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금지

(1) 현황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3개월간의 문화적응기간과 주택지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짧은 문화적응기간과 제한된 주택지원사업은 다시 탈북자들을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문화적응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율(70~80%)이 높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보호와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현행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정착에 필요한 자격인정(학력 및 자격 인정-제13조, 제14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와 생활양식 등 문화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언어·식생활·라이프스타일·문화소비·생활에 대한 교육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기존제안

탈북자들의 남한문화적응 훈련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 문화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탈북자들의 문화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탈북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이질감은 우리 주변에서 차별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문화는 매체들을 통해 희화화되거나 무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장기간의 북한에서 체제의 경험으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의 문화차별 금지와 대책의 마련은 남북 화합의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런 이질감들의 문화적 차이로 느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며, 탈북자들이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탈북자의 자녀교육권 확대

(1) 현황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탈북자 자녀 총 416명 대부분 무학력자이거나 학교중퇴자이다.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있지만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교육권을 확대하는 안은 부족하며, 관련 관계법은 주로 북한이나 그밖의 국가에서 받은 학력만을 인정하는 정도이며, 특히 탈북자 자녀들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97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발간한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제22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현행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5조에 탈북자 자녀들의 대한민국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부적응의 해소를 위한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통일부에서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적응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2000년 2년과정으로 개설하였으며, 2001년 탈북자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하나들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5) 기존제안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증설과 지원이 필요하며,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커리큘럼 개발과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공동체 마련이 시급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탈북자의 자녀교육권 확대의 문제는 탈북자 자녀들의 남한사회에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탈북자의 자녀들의 경우 70~80%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학교생활을 포기하였을 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며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방임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한 학교교육에 편입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남한사회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1) 현황

남한사회의 부적응에 기인한 탈북자 범죄들의 발생과 가정불화·직업부적응·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탈북자 지원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관 ‘하나원’에서 기초 교육훈련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생활방식을 교육하지만 언어소통이나 일상문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그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보호와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현행법

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이 있으나,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정착금 등지급(제21조),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생계보호(제26조) 등의 지원시책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보호규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탈북자가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 발생하는 문제나 탈북자들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취약한 형편이다.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 정책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확대 분야에 탈북자들을 위한 문화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안으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5) 기존제안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이 한 마음 되는 포용 훈련을 하는 마을인 ‘하나마을’을 설립 하자는 주장(서혜경, 경희대 교수)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반세기가 넘는 철저한 단절의 흔적을 지워내고 새로운 남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받는 교육의 기간은 불과 12주인데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좀더 적극적인 탈북자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직업훈련과 기본 정착지원 교육을 넘어선 문화적 관점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의 신설되어야 하며, 탈북자들의 문화적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탈북자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탈북자문화 상담 및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의 체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극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는 탈북자들의 효율적인 적응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은 이들이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에 그 내용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응기간의 연장과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적응기간을 마치고나서도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2-5. 장애인 문화평등

1) 장애인의 문화적 차별금지

(1) 현황

영화나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비하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주제를 완전 참여로 결정하였다. '세계장애인의 해'는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훈련·치료·지도를 수행하고, 유용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그들이 사회에 완전 통합될 수 있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실제적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사업을 장려한다. 넷째, 장애인은 경제·사회·정치활동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주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은 '세계 장애인의 해'의 이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201항에 걸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3) 현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장애인들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어있지만, 다만 이러한 규정들을 담보할 규정들이 필요하며, 위반에 대한 제재 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금지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장애인의 문화적 차별금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등의 관련법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문화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이 법령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실행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지점이며, 장애인들이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편의시설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적 차별을 해소의 방향 또한 사회적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공공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2)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1) 현황

장애인 이동에 위한 시설들의 부족으로 인해 잦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경우 외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영화관·공연장·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3년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에 관한 단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3) 현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지하철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문화비전 정책에는 사회적 취약자들의 문화권을 확장하는 정책이 제안(장애인 분야)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제반 법률적 근거들을 신설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고안들을 마련되고 있다.

(5) 기존제안

문화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대규모 공공문화시설에 장애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장애인 문화센터설립,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박물관 건립,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등의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문화시설들의 설립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의 핵심은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와 공공문화시설에서의 불편함과 보행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들의 90% 넘게 외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접근권의 확충은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등의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보행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동선의 새로운 배치들이 필요하며,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눈가리기식의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과 배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1) 현황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는 노동권 침해와 함께 우리 사회이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교육권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의 편입학이 거부된 사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입학이 거부되거나,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들이 부재하여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경우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엔은 1972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권 일반에서 제시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를 갖는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넘어서 적절한 의료·교육·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권리,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 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착취·학대·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농아연맹은 1972년 8월 총회에서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등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결의된 각종 선언문을 기초로 농아인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선언이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였다. 이 선언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선언문에서는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를 받을 권리, 경제·사회계획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가 고려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인 사람의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현행법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과 불이익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것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의 2).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상 안에서 2004년 하반기 중 치료교육교사 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가 확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5년까지 180개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으로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며 장애인학부모, 장애인관련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들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5) 기존제안

장애인의 교육권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이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뛰따라야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상시운영과 '특수교육진흥법' 내 보조교사 배치규정 신설과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과 장애인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는 바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우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일선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교육 편의시설 부족이 실질적인 교육권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5-2-6. 청소년 문화평등

1) 청소년의 문화차별의 제한

(1) 현황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청소년세대는 문화세대로서 문화적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능동적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검열을 가장 많이 받는 억압적인 주체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문화적 배려와 배제 안에는 분명한 기준과 규칙이 존재한다. 최근에 각 개별지역(구단위/시군단위)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센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청소년 문화행사들을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사회의 규율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문화적 배려는 교육유연화 정책의 한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문화적 소질과 취미를 활성화시켜 개인의 직업과 연계시키려는 기회를 국가/지역단체/민간단체에서 많이 제공해주려는 기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교육/범죄와 같은 청소년 문제의 현안들을 문화적인 배려로 해결하려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의 문화적 배려는 억압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져서는 안되며,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검열이 아직도 범죄예방/도덕적인 규율의 맥락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5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⑩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3) 현행법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에는 PC방, 노래방 등 각종 여가 문화공간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이거나, 청소년 관람가가 아닌 경우에는 문화적인 불권리가 차단되는데,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심의기준들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의 변화와 감각의 변화에 비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 기관 중 '청소년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를 가급적 엄격하게 심의하고 관리하여 청소년들의 불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매체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영화 게임 및 비디오 등급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들의 불권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청소년들의 문화적 불권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발맞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문화기반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 수련관이나 수련시설들이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미지센터>, <하자센터>, <스스로넷> 등 정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센터들이 사회기관들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연구소>,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청소년동아리연맹> 등 청소년 문화활동, 연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기존의 청소년단체에서도 청소년문화활동과 사업들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청소년기관들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따라갈만한 마인드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들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을 만들고 지원할만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5) 기존 제안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화하고, 출판물, 영상물 등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 문화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입시 위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불권리가 탁발당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차별을 받지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불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안했던대로 ‘청소년보호법’의 대체입법화와 문화매체의 심의기준의 완화, 그리고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다.

2) 청소년 문화격차의 해소

(1) 현황

청소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청소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계층별로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도심청소년과 농촌청소년들의 문화소비와 문화활동 및 감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자녀, 기지촌 자녀, 탈북자 자녀와 같은 특수계층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문화격차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격차 중에서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한국 정보문화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정보격차는 성별, 학력별,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평균 정보화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남자 청소년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여 각 지수별 불평등정도를 살펴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지수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의 성별 정보격차는 일반국민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인식지수의 평균은 각각 0.56과 0.53, 접근지수는 0.45와 0.41, 이용지수는 0.40으로 동일하였으며, 역량지수도 0.50과 0.48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교급별 정보화지수를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지수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른 정보격차의 경우, 접근지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인식지수나 역량지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보기기나 가상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은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평균 1.0만점에 0.53인 반면 중·소도시 거주청소년은 0.41, 읍·면·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0.30의 수준을 보였다.

문화관광부나 교육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이들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감성적인, 정서적인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집중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약은 이를 수용한 나라로 하여금 어린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장치를 함으로써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국이 협약내용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협약 제 43조 ①),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진전된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5년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협약 제 44조 ①).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약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해 아래와 같은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 국의 법률이 통상적으로 아동을 성인의 시각에서 단순한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국제협약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즉 인권의 적극적인 향유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30조 31조에는 문화활동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3) 현행법

현재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교육관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기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⑥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⑦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⑧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⑨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⑩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⑪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현재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광역시 별로 청소년진흥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관계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 활동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5) 기존 제안

기존에 청소년 문화격차 해소는 주로 인프라 건립과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인프라나 하드웨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청소년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활동을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모형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청소년 단체들이 연대해서 공동 워크숍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과 연구에 따른 계획과 운영 과정을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지원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을 몇가지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몇가지로 범주화하자면,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문화교육활동, 청소년문화생산활동,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청소년지역문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활동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구축 방안

문화활동영역	인적인프라	정보인프라	재정인프라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 문화커뮤니티 주체,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문화활동가	인터넷과 학교, 지역단체들을 통한 문화활동 정보 취득	청소년 스스로 활동 재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참 여 방식을 유도
청소년문화교육 활동	학교 예체능교사 문화연구자 전문문화예술가	개별 교과 모임의 교육 커리큘럼, 문화예술인들 의 문화교육체험사례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동 노력과 민간부문의 지원
청소년문화생산 활동	영상제작자, 대중음악연 주자, 만화창작자 등	영상제작과정, 기존의 홈페이지 참고, 통합적 인 교육과정의 축적	민간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원 조성
청소년사회참여 활동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복 지사, 시민단체활동가, 10대 참여활동가	청소년 인권, 복지, 노 동, 정치 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자료	각종 사회단체들이 10대 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재원 운영
청소년지역문화 활동	지역시민운동가 지역문화예술인 지역청소년 문화단체	지역의 문화지료조사 청소년의 지역문화이해 지역의 문화적기여도	지방자체단체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지역기업 에 예산 지원요청

5-3. 문화참여권

5-3-1. 퍼블릭 액세스

1)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확대

(1) 현황

영상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영상매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욕구가 높으며, 지역중심의 영상미디어교육센터들의 확충과 영화제나 영상미디어 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민들의 영상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영상미디어 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영상제작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역에도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개정(제89조)을 통해 지상파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방송위원회에서는 지역 소출력 FM 라디오방송을 허가하면서 지역에 총 14개의 단체에 라디오방송 개국을 지정하였다. 이 밖에 부천시에는 지역시민들을 상대로 지역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직접 관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청자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문화행정과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는 1976년 11월 26일에 채택된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에 의한 참여와 그에 대한 공헌에 대한 권고」는 전문에서 다음을 말한다.

가능한 최대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다양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의 발전과 개인의 위엄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만약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들에게 문화의 이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발전의 과정에 전체적인 문화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5조를 보면 개인들의 문화적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1.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있든 모든 사람은 장애 없이, 그 또는

그녀의 선택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문화적 삶에 접속하고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2. 이 권리는 특히 다음을 수반한다.

- a.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자유
- b.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을 습득할 자유

3. 이것은 또한 문화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도출된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수반한다.

독일·영국 등에서의 시민들이 공공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 운동의 전개로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지역 소출력 라디오들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현행법

퍼블릭 액세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방송법', '영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등에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민들의 영상교육과 제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액트)'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공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지역의 문화축제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문화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문화센터' 설치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기존제안

'영상진흥기본법'과 신설되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시민들의 공공문화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참여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율권과 참여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며, 시혜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시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변화를 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5일제 근무를 맞이하여 늘어난 시민들이 여가시간들을 공공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존의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 등의 시설들의 이용과 관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자율적인 공간의 활용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별률조항이 필요하다.

2) 시민의 방송제작참여 기회확대

(1) 현황

각 방송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개설되고 있으며, 각 방송사들은 방송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의무편성되고 있다. 또한, 각방송사들을 시청자평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단체들이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시청자들이 방송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오래 전부터 개발되었으며, 의무편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3) 현행법

‘방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방송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하고, 방송위원회의 시행규칙에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되어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방송위원회에서는 시청자들이 방송제작과 모니터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시청자위원회의 일반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매체환경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매체 활용능력의 향상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욕구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일정 비율로 시간과 지면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제작과 일정 비율로 참여권을 획득하는 것은 일방적인 매체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참여의 기회들을 한정된 방송이나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역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허가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매체환경에 주목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제작이나 구성들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지원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3-2. 문화교육권

1) 시민의 평생교육권의 확대

(1) 현황

평생교육권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이나 각 광역시도별로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건립 운영, 각 대학별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비용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교육의 차별에 대항하는 약정」(1960)은 유네스코의 가장 초기 표준협약 중의 하나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며 교육에서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들로부터 채택 되어 질 수 있는 척도를 묘사한다. 그 약정은 유네스코의 법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두가지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의 형태든지 금지하는 2조와 26 조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권리를 장려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3) 현행법

'평생교육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자유로운 참여가 이야기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로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해 4개 대학에 교육지원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5) 기존제안

'평생교육법'에서 교육수요자의 자격권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확대하며, 평생교육 담당 공공기관과 시민자치 기관에 교육인력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제도의 확대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시민들의 평생교육권의 확대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확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권의 확대는 시민들 개개인들의 가능성의 확대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변동에 능동적인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진학위주나 취업 위주의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들의 문화와 취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확충과 대학 교육기관 위주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1) 현황

대학입시 위주의 암기 입시교육으로 인해 공교육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의 공교육 상황에서는 문화교육의 실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97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의 6조에는 문화교육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1. 교육권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또는 그녀의 삶의 과정 속에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간은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이 자유롭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권리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누군가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자유
- b.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1983년/1999년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5개년계획 실시)에서 “더 이상 예술은 교육제도의 보완물, 우선적으로 다른 교과목을 교육한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 “근본적, 기초적” 교과목에 치우쳐 도외시하는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선택 예술문화교육활동강화하여 이동 문화강좌를 1,000개의 예술아틀리에로 확대하여 실행하였으며,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의 수업참여의 점진적 증진으로 2,000개의 예술수업이 계획되었고, 2001년까지 연간 1,000여개의 합창단이 창설될 예정

이며, 실업계 고교에 3,000개의 예술수업 계획을 새롭게 창설할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3) 현행법

현재 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이 '도서관박물관법'이지만, 앞으로 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2003년 7월 공교육의 정상화와 문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9월 문화예술교육발전 종합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위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서 문화교육의 내실화는 구조적 한계가 가지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과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이의 협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학생들의 문화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강사풀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1년부터 국악강사제를 시작으로 강사풀제를 도입하여 일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현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문화관광부 2004년 3월 5일자 보도자료, "전국 4,224개 초·중·고에 문화예술 전문강사 파견") 중인 강사풀제는 올해부터 연극, 국악, 영화 분야로 확대되면서 학교 문화교육 활성화에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04년에 실시되는 강사풀제는 총 89억을 투입하여 국악(3,855개교)·연극(269개교)·영화(100개교) 등 총 4,224학교에 1,101명 강사 파견을 파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핵심 지원사업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4년 3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풀제는 "국악, 연극, 영화 등 각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기회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적인 목적'과 학교교육을 통한 예술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예술적인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표 20> 2004년도 강사풀제 실시현황

풀제영역	학교수/강사수	교육내용	예산(천원)
연극강사풀제	38개교/289명 문광부지정 17개교 교육감지정 21개교 특수학교 2개교	초중고 연극지도	2,026,186천원(국비 2,000,000천원, 자부담 26,186천원)
국악강사풀제	3,855개교/771명 초등학교 2,744개교 중학교 870개교 고등학교 241개교	초중고 음악교과 내 국악지도	6,000,000천원(국고 300,000 지방비 300,000)
영화강사풀제	100개교/100명 초등학교 43학교 중학교 34학교 고등학교 23학교	초중고 영화교육	1,510,000(국고지원 1,500,000 자부담 10,000)
계	4,224개교/1,101명		8,900,000천원

현행 강사풀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수와 강사수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올해 사업의 성공여부가 이후 강사풀제의 확대실시에 중요 열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격 실시의 원년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에 강사풀제가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이후 개선과제들에 대한 공론화된 토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기존제안

학생들의 문화교육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마련이 마련되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공교육을 연계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2004년 수능부정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 위주의 성적 지상주의 교육에 의해 정상적인 공교육의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학생들 개개인들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교과과정과 파행적인 학사행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

문화교육권의 확대는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변화를 태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대안적 문화교육권 확대

(1) 현황

대학입시위주의 공교육체계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교육그룹들이 디자인교육그룹 '새야', 여주밀머리학교, 평창 감자꽃 프로젝트 등의 문화 대안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안교육연대모임'이 결성되어 한겨레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정기강좌가 마련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럽과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선진화되어있으며, 대안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교육에서 대안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현행법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규정 대안교육교사들의 양성 및 연수과정 지원을 밝히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에서는 공교육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실체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발전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대안학교에서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5) 기존제안

'대안교육지원법'의 신설을 통해 대안학교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대한 규약의 간소화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지원체계마련하는 한편 대안적인 문화교육의 학력인정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대안적 문화교육권 확대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만드는 것이며, 획일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5-3-3. 문화공공서비스권

1)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권리

(1) 현황

문화 영역에서의 창작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구분과 문화 영역이 장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참여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에 있어서도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독일에서는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장애인·소수인종·노약자를 위해 공연 좌석의 10%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며, 프랑스에는 사용하지 않은 공공문화공간을 예술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쿼트운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3) 현행법

‘문예진흥법’에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는 시민들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을 위해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을 건립했으나 시민들의 이용율이 낮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시민이용 혹은 청년예술가들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사용 사례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5) 기존제안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문화시설의 참여 및 이용 권리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공공문화시설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역의 단위별 문화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은 사회의 불평등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계획

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신설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의 원칙들을 필요로 한다.

2)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1) 현황

학교 중심의 청소년 정책으로 인해 비학교 청소년들의 청소년 할인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며, 국립공원과 문화재관람 요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입장료가 가중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연극공연의 경우 사랑티켓제도를 도입하여 공연가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시민들을 공공문화장소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가격할인이 실행되고 있으며, 부천문화재단은 공연시즌제를 도입하여 공연가격을 대폭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독일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관람석을 좌석 10%로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학생·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의 공공문화기반시설에는 최소 50%이상의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3) 현행법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는 시민들의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가격할인을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연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고가의 공연료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5) 기존제안

'지방문화예술진흥법' 신설을 통해 공연장 가격할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공문화공연시설의 가격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과 문화재관람을 입장료의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은 시민들의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가 사회적인 부와 교육수준이 높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가격할인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권을 일정정도 보완해주는 것은 사회 전반의 문화격차의 해소와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정책은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정보 서비스권

(1) 현황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정보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접근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순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형태의 공공문화정보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97년에 마련된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 7조에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보의 권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 내에서 모든 사람, 개인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는 그 또는 그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유를 위해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풍습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자격을 지닌다. 이 권리는 특별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정보를 검색하고, 받고, 전송할 권리
- b.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참여할 권리
- c. 문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도 수정하고 바르게 할 권리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국가에서는 미술관·박물관·음악공연장 등에서 연중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회원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3) 현행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를 보면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실시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을 밝히고 있다. 먼저 문화정책과 관련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문화관광과 관련된 DB들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5) 기존제안

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정보종합사이트 구축과 공공아카이브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정보 서비스는 시민들의 문화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간략한 소개만이 아닌 시민들이 언제나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아카이브 성격의 시설들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카이브의 경우 대개가 전문가들을 위한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문화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문화정보종합사이트의 구축들은 지금까지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실행되었던 문화정보 서비스를 시민 전체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3-4.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1) 공공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1) 현황

최근 문화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공공문화행정을 감시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활동(밀빠진 독상)과 문화연대의 문화예산감시 활동(목동예술인회관 예산낭비 사례) 이나 축제모니터링 활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정감시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행정감시들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의 경우 최근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다. 우선 북사골문화센터의 시민강좌에 공연자원봉사나 모니터링을 담당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연수과정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부천시가 문화예술교육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학교와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설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 8조를 보면 시민들이 문화정책에 참여할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혼자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속해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 또는 그녀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발전을 이끌 문화 정책들의 형성과 수행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일본의 경우 지역 공민관에서 시민들의 자치행정이 확대되어 공공문화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세자 연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예산들을 절감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는 활동의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다.

(3) 현행법

현재 문화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조항이 없으며, 문화행정 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권의 법적근거(‘부패방지법’)와 보호가 미비하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민간의 문화행정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표 21> 문화관광부 문화의제별 TF팀 현황

TF 문화의제	운영시한	주요 과제들
주 5일 근무제	03. 12	주 5일 대비 정책보고서 작성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문화소외계층지원	04. 01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추진계획마련 기존의 소외계층 사회복지정책 대안모색
광주 문화중심도시	03. 12	광주문화 정심도시 추진계획안 마련 조성위원회 및 건립 추진기획단 구성
경주 역사문화도시	02. 12	경주역사문화도시 보존 종합계획 마련
행정수도 문화기획	행정수도이전시	광화문 권역문화 리모델링 방안마련 신행정수도 도시 기본 개념 구상안 마련
민족문화창달	과신설시	신설 과 업무 및 정책방향설계
지방문화분권	04. 02	지방분권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수립, 과 제도출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04. 03	신설 문화예술교육과 업무 및 정책방향 설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예술산업	과신설시	신설 과 업무 및 정책방향 설계
5개문화산업강국실현	03. 12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방향 보고 문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마련
한류확산	04. 01	한류확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스포츠여가산업	과신설시	신설 과 업무 및 정책방향 설계
청소년문화	상동	신설 과 업무 및 정책방향설계 청소년문화개념설정 및 정책개발
인력자원 관리개선	03. 12	문광부의 종합적인 인력자원관리 정책방 행추진 우수 인력자원 확보, 육성, 활용
여성문화	03. 12	여성문화 관련 부내 조직문화 개선안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도출 여성인력 자원 활용 확대방안 추진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시민들의 문화행정에 참여하는 권리들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5) 기존제안

‘부패방지법’에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호권과 보상을 명시화하고, 공공문화행정에 시민참여의 장을 확대하여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행정 감시의 상설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예산공개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공공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는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감시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시민들의 행정감시는 정책의 예산낭비와 절차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가 주를 이루지만 문화행정 감시의 경우에는 정책의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문화행정의 감시권의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문화행정의 감시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공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1) 현황

지역자치제도의 실행이 10년을 맞아 지역중심의 축제들이 한해 700~100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경우 그 타당성이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역이 이해타산이나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많은 축제들이 축제를 통한 지역화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등 유럽은 작은 형태의 시민참여형 자생적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서구의 대부분의 전통축제들은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축제가 대부분이며 축제를 기획하고 만드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지역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3) 현행법

현재 공공문화축제에 시민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축제에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

해 민간에 각종 공공문화축제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축제에 시민들의 참여는 보장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넘지 못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생적인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안의 마련과 공공재원이 지원된 축제 대한 시민들의 축제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환경영향 제도의 실시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에 시민들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문화감리제도를 상설화하여 정부가 지원한 일정 규모의 사업에는 건축에서 감리를 받듯이 평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공공문화축제의 대부분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공공문화축제의 대부분이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작된 지역의 공공문화축제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였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왜곡된 공공문화축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축제의 준비와 진행에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여 축제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축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올바른 공공문화축제의 상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3-5. 내셔널트러스트

1) 문화재보호의 민간참여확대

(1) 현황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의 관심의 증대는 2000년 한국내셔널 트러스트를 창립하였으며, 민간의 관심으로 2002년 최순우 옛집 최종매입 등의 형태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대사관 덕수궁터 이전 반대 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는 기존의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과 보호와 보존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네스코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자원과 유산의 보호를 위한 책임은 「군사적 갈등 시기에 문화자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이와 유사한 협약은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이 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은 유형 문화유산의 무허가 이전을 금지하고, 훌륭한 문화장소와 기념물들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상호 보호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도난 및 불법 유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법 통합을 위한 국제연구소”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1998 6월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외국으로 도난당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의 협약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장려되고 있다. 현재는 “수중 매장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는 민속문화가 전세계적인 유산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 단체들 간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한 데 결집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것은 이 시대 창조물의 중요 원천을 구성하고 있다. 권고안은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그 권고안이 정의한 조치와 원칙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법적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외국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자연보호의 산실로 유명하며, 세계 각국의 자연보호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다. 1895년 설립된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트의 설립취지는 “아름다운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토지와 건축물, 자연환경 또는 동식물 등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구히 국민을 위해 보존한다”는 것이다.

(3) 현행법

현재는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문화재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내셔널 트러스트에 관한 법률이 정부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내셔널트러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위해 국민신탁제도가 실시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국민신탁제도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복수 법인체제로 도입하되 장기적으로 통합 단일법인을 지향하기로 했다. 국민신탁제도란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매입해 보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편제에 맞춰 문화와 환경으로 이원화하려 한다며 단일 법인으로서의 통합을 촉구해왔다.

국민신탁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자연환경자산은 환경부 소관으로 각각 분리돼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 및 인증, 신탁재산 획득 및 관리운영은 국민신탁 법인이 맡게 된다. 당·정·청은 국민신탁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신탁재산 처분·양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5) 기존제안

‘문화재보호법’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문화하고 민간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재보호의 중요성은 문화재가 특정 국가나 민족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이며, 지금 현재만이 아닌 미래의 세대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부분에서 문화재보호의 중요성과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의 민간참여확대는 인류가 공통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문화재보호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우선 한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주도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2) 문화유산 정책의 시민참여확대

(1) 현황

시민들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덕수궁터미대사관 이전반대·청계천역사문화복원운동·삼청각 삼성매각반대·한옥살리기 운동 등의 다양한 문화재정책의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미국과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3년 10월 유럽연합은 「유럽의 문화 협력 국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각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현행법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재보호의 국가정책의 집중의 필요성으로 때문에 문화재 보호의 시민참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5) 기존제안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를 명문화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개방과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재정책의 시민참여확대의 필요성은 우리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을 통해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개발위주의 정책과 분단 상황으로 인한 군사시설물의 무분별한 건립은 문화재를 보호하

고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는 정부의 문화재정책과 모순되게 많은 문화재들이 정부의 주도 아래 파괴와 훼손·변형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교육·참여의 욕구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재정책의 시민참여확대는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문화재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5-4. 문화환경권

5-4-1. 주거문화권

1)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1) 현황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1%인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그리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를 해소하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앞으로 총량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되는 주택의 수준 향상 및 국민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을 통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운데에는 미인가 숙박소(쪽방), 지하주거,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는 심각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고, 아직 주거정책의 대상으로도 여기지도 않고 있는 홈리스 문제도 있다. 이런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의한 난개발과 도시의 소음·공해 등의 문제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무분별한 광고와 도시녹지의 부족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세계환경 선언」의 기본원칙에는 쾌적한주거환경에서 살 권리의 기본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원칙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2 각 국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브라질의 구리찌바와 필란드 비키시, 덴마크의 칼룬트버그시는 생태형 주거도시들이 모델로 도시가 건설되었다.

97) 박신영,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3년

(3) 현행법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6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도로·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준치·수선·증축·개축·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산사태·침수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화장실·탁아소·공동작업장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나타나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환경법제를 개관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 중심을 이루지고 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통해서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되었지만 도시전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5) 기존제안

현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내용을 문화적 의미를 강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생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확보해주는 문제의 경우 현재 정부정책에는 예산상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우리들의 현실에서 부동산은 일종의 교환가치를 지닌 재산의 하나로만 취급되어져 왔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되는 주거환경 또한 언제나 교환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의 논리가 되어 도시의 경우 그 쾌적함이 잃어버리고 있다. 또한,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에 내몰린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근본이며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권리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이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에 대한 새

로운 조명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표들의 개발과 개선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2)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1) 현황

주거환경을 둘러싼 일조권 침해·소음 분쟁·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의 문제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대책이나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노력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20세기초에 걸쳐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각종 생활공해 방지를 위하여 '뉴슨스(nuisance) 법리'를 활용하여 각종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심화되는 공장공해에 대처하여 행정 단속규제인 '알칼리규제법' 등 공해방지관련법과 공중위생법도 제정하였으며, 이 추세는 유럽 및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파급되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자연보호·국토보전에 관한 각종 법령·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3) 현행법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도시계획법' 상에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침해요인과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기존제안

'도시계획법' 상에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생활권의 보장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인데, 특히 타인의 재산권과의 충돌이 제기되게 되며, 주거환경보전은 헌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한 공익성이 요구되지만, 재산권침해에 대

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이나 합의 과정에 대한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주거환경 보호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부의 격차를 반영하는 주거환경 정책은 많은 시민들에게 심한 소외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빈부의 격차에 따른 주거환경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녹지보존의 권리

(1) 현황

정부의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정책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부양의 논리가 불황기에 언제나 정책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도시와 국토의 난개발의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자연녹지의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남미와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를 보존하는 다양한 규약과 권고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20세기초에 걸쳐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각종 생활공해 방지를 위하여 뉴스스(nuisance) 법리를 활용하여 각종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심화되는 공장공해에 대처하여 행정 단속규제인 알칼리규제법 등 공해방지관련법과 공중위생법도 제정하였으며, 이 추세는 유럽 및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파급되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자연보호·국토보전에 관한 각종 법령·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3) 현행법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에서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으로 보호하고 국민들이 자연화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쾌적한 주거권 확보와 자연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기존제한

도시에서 개발을 요구하는 사적이익의 추구하고 공공성을 떠는 녹지공간 확충과 보존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런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녹지공간의 보존이나 확충을 꾀하는 경우 사적이익을 일정정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녹지보존의 권리에 문제의 있어 녹지보존의 이해와 녹지개발의 이해가 언제나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발 제한을 통한 녹지보존의 방법들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녹지공간에 대한 관리와 개발제한이 뒤따라야 하며, 녹지공간의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들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통해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요소인 녹지의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주거근린공원 향유의 권리

(1) 현황

정부의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정책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부양의 논리가 불황기에 언제나 정책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도시와 국토의 난개발의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자연녹지의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거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축소되거나 주차장이나 주거지 등의 다른 용도들로 대체되고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20세기초에 걸쳐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각종 생활공해 방지를 위하여 뉴스스(nuisance) 법리를 활용하여 각종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심화되는 공장공해에 대처하여 행정 단속규제인 알칼리규제법 등 공해방지관련법과 공중위생법도 제정하였으며, 이 추세는 유럽 및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파급되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자연보호·국토보전에 관한 각종 법령·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국가별 1인당 공원면적 기준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 도시지역 6m², 사가화구역 3m²로 책정되어있지만, 미국 25~40m², 영국 30m², 독일 30~40m² 규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일

본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10㎡, 시가화구역 5㎡로 규정되어 있다.

(3) 현행법

‘도시공원법’ 제1조에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근린형 공원을 지어 주민들의 녹지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충분한 공원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5) 기존제안

주거환경에 근린공원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비율의 의무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주거근린공원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의 녹지보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주거근린공원의 경우 그 면적이 너무 작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본래 계획된 목적과 상반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요 행정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들의 지방이전을 통해 생겨난 빈공간에 개발의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의 녹지 확충을 위해 공공의 자연공원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에 급급한 개발논리보다는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주거근린공원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5-4-2. 보행권

1) 보행권

(1) 현황

국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자 기준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1%(1996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국내의 도로정책은 차량소통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편리를 위한 시설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들마저 차량이나 광보물들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영국 국가교통조사(1993-1995)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동수단 가운데 보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이고, 1마일 이내의 단거리 이동의 경우 보행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거리로 환산하면, 전체 이동거리중 보행거리는 약 3% 정도를 차지하며, 보행은 모든 이동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영국 중앙정부의 교통부는 보행위축 현상을 타개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보행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한 전략개발을 목적으로 보행활성화 그룹을 발족시켰다.

(3) 현행법

‘도로교통법’ 제3조는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보행자들의 횡단보고 통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보행자들의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기존제안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하며, 도로설계 시 건설할 때 부설되는 보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제정, 보도에 설치되는 노상시설에 대한 규정의 제정, 노상시설의 통합 설치관리사항의 명시, 보도 옆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지와 보행공간간의 관계 명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보행통행규칙의 제정, 보행자 전용도로 규정의 명시,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통행규칙과 차도설치규정의 명시, 교통영향 평가시 보행교통에 대한 사항의 강화, 재개발 등 대규모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의 명시(김경환)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보행권은 단순히 시민들의 거리를 안전하게 걸어다니거나 이동의 수단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차량위주의 교통정책과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로 인해 기본적인 보행권마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과 걸어다니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의 수정과 도시경관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 확대

(1) 현황

국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자 기준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1%(1996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국내의 도로정책은 차량소통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편리를 위한 시설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들마저 차량이나 광보물들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아동들의 보행중의 피해가 증가(2002년 기준 69.1%)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행중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약자들의 아동들과 함께 보행중의 전체 보행사고의 26.1%(2001년 기준)로 높게 나타나며, 장애인들은 보행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6%(2002년 기준)로 나타나 지극히 취약한 상황임을 알려준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스웨덴의 경우도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사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루트(Service Route)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보행가능한 교통약자에게는 저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개선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휠체어 사용자는 특별교통서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법으로 교통약자의 문제를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건강한 일반인과 평등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기본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통행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3) 현행법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보호자에 의한 유아의 보행안전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들을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전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도로에서의 보행제한과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보행권의 의미를 도로교통법 상에 준하는 영역으로 한정하고 주거생활 전체에서 보행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대하거나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기존제안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교통만이 아니라 주거생활 전체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법률안 제정의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의 의무화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개선안과 보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행 서비스 루트의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 확대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의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동선의 배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량의 소통을 제한하는 구역들을 설치할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4-3. 문화영향평가제도

1) 난개발로 인한 문화환경침해 제한의 권리

(1) 현황

청계청복구사업, 고구려유적지(아차산) 훼손, 근대건축물파괴(한옥마을) 등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개발위주의 정책에 따른 난개발로 문화환경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프랑스의 메타로프 도시의 문화환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도시들이 출현하고 있다.

(3) 현행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통해서 문화환경이 침해되는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공해, 교통, 건설, 주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미술, 축제, 문화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과 법적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5) 기존제안

문화환경권을 침해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문화 관련 법 적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개발과 건설 중심의 도시문화를 친환경적, 친생태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생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전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생태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조경, 도시계획, 주택개발계획, 녹지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환경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1) 현황

청계청복구사업, 고구려유적지(아차산) 훼손, 근대건축물파괴(한옥마을) 등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개발위주의 정책에 따른 난개발로 문화환경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공사나 건축개발 공사시에 지역의 영양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3) 현행법

현재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법 자체가 미비한 상태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5) 기존제안

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문화환경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재해영향평가제도와 같이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삶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임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문화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방향

문화의 자율성,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능의 배분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국가의 문화에 관한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과 사회집단의 문화적 활동의 자율성과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② 문화영향평가

국가나 개인 및 사회집단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장치를 만들고 문화에 우호적인 활동으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향의 문화적, 비문화적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과 평가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권력과 사회권력,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를 제정·정비함에 있어서는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법령제정과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③ 문화기준 내지 문화지표의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달성목표치로서 문화기준을 설정하고 문화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는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표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④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이용관계

국민의 문화적 향유권을 실현하고 문화적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각종의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국민이나 주민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그 한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이 문화국가의 인프라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국가 SOC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등한 이용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⑤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규정

개인적인 문화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나 문화의 왜곡, 경제적종속성, 불평등의 심화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원의 원칙, 사후적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⑥ 재원의 확보

전문가가 문화행정을 수행하고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위해 기본법에 의한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5-4-4. 문화재향유권

1) 문화재보호의 권리

(1) 현황

최근 통과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왕릉·고분묘의 경우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향평가 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이익에 급급해서 문화재 보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문화재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른 논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개발이 이윤추구가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될 것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네스코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자원과 유산의 보호를 위한 책임은 「군사적 갈등 시기에 문화자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이와 유사한 협약은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1970)이 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은 유형 문화유산의 무허가 이전을 금지(1970)하고, 훌륭한 문화장소와 기념물들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상호 보호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1995)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범 통합을 위한 국제연구소”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1998 6월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외국으로 도난당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의 협약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장려되고 있다. 현재는 「수중 매장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문화재보호 운동은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의 생가(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 소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1853년 앤 파멜라 커닝햄(Ann Pamela Cunningham)의 주도로 “Mount Vernon Ladies’ Association of the Union”이라는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점점 퇴락되어 가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운동은 5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는데, 이 운동의 결과로 문화재를 향유할 국민의 이익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문화재보호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법규범적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는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3) 현행법

‘문화재보호법’ 제74조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문화재지표조사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 관련 법은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1980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보호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해 향후 5년동안 3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을 밝히고 있다.

(5) 기존제안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제의 핵심인 문화재향유권의 범리가 먼저 연구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김수갑, 충북대 법대). 아울러,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공자부담원칙의 현실에서 문화재와 문화환경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재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재보호의 권리는 인류의 공통 유산인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한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통해 다음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문화재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가 파괴되고 훼손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향유의 권리

(1) 현황

문화재에 높아진 관심은 한겨레문화답사, 신라사람들 등의 시민들의 자율적인 답사 프로그램의 운영과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연대 등의 문화재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참여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부재한 사람이며, 많은 문화유산들이 개발논리와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의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1989)는 민속문화가 전세계적인 유산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 단체들 간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한 데 결집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것은 이 시대 창조물의 중요 원천을 구성하고 있다. 권고안은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그 권고안이 정의한 조치와 원칙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법적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을 정규수업에 실시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반시설에서는 문화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공공문화시설(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스킴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정규적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개발,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3) 현행법

문화재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문화재를 향유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며, 법원이 문화재향유권을 인정하는데 아직은 소극적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문화재청은 문화서비스 증대를 위해 관람객 서비스 현장을 발표하였으나, 시민들과 외국 관람객을 위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문화재를 국민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높이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기존제안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법적 명시(지방조례 포함)가 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향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기본권 내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 법령의 규정 및 정립된 여러 해석원칙에 의해 문화재향유권도 제한될 수 있지만, 문화재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재 향유의 권리는 시민들이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국가·특정지역·특정민족에게 제한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된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의 행사는 인류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 향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훼손과 파괴를 방지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활용의 방법으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 향유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문화재 교육의 강화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교육의 권리

(1) 현황

지금의 공교육의 체계는 대학입시교육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문화교육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화재 관람에 있어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할인혜택 연관되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의 문화재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2) 국제권고 및 외국사례

유네스코의 법적인 임무는 지식의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 고려 대상임에 동의한다. 「교육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재료들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서」(1950)에서는 '생각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 문명화에 사용된 자기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가능한 최대로 넓게 보급하는 것이 지적인 진보와 국제적인 이해와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회원국들은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재료들을 자유로운 순환을 증진시키거나 그러한 순환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덧붙여 「과학연구자들의 지위에 대한 권고」(1974)는 과학적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공식출판물 교환에 대한 협약」(1958)은 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해 지지한다. 세계 저작권 회의(1952; 1972재조정)는 권리와 어떤 문학

적인, 예술적인 생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을 정규수업에 실시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반시설에서는 문화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공공문화시설(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정규적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개발,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3) 현행법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향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4) 정부시행정책 및 계획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은 없는 실정이며 정부의 경우 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5) 기존제안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문화재교육의 의무화와 문화재교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못지 중요한 것이 시민의 문화재애호운동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전체평가 및 실천계획

문화재 교육의 권리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와 향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답사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유산들의 발굴과 우리 일상 공간들에 의미찾기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문화재 교육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계 및 자발적인 시민들의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6-1. 문화권 수립의 목적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 만들기

문화권 NAP 수립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를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권 NAP 수립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인권정책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 가치있게 살 권리를 위해 문화의 영역에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이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차별과 금지를 해소하며, 문화적인 표현과 여가 및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기획한다. 따라서 문화권의 실현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문화적인 검열과 문화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행동이 일반적이다. 해방이후 50년동안 누적되어 온 독재와 권위주의의 폐해들은 정치적,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반공주의와 유교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문화보수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중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 파시즘적인 지배이데올로기가 확대재생산되는 근간이 되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도 체계적으로 자행되어왔다. 문화예술가에 대한 정치적, 신체적 탄압이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이루어졌고,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에서 봉건적인 도덕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기준에 있어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왜색적이라는 이유로,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가사의 내용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송창식의 고래사냥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고, 황석영, 조정래, 박노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로, 마광수, 장정일은 풍기문란을 일으킨 외설주의자로 검열의 심판대에 올랐다.

반공주의와 금욕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한국의 문화보수주의는 창작과 표현의 영

역에서 뿐아니라 대중의 일상생활에서도 문화적 자유를 구속해왔다. 70년대 청년세대들의 문화적 스타일의 상징이었던 통키타, 장발, 미니스커트는 사회에 퇴폐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80년대 거리에서 집단 검문과 노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령 역시 일상공간에서 벌어진 개인생활의 침해 사례들이다. 폭력적인 통제가 줄어들어도 90년대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문화욕구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각종 법규를 들이대며 검열의 잣대를 들이치는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화보수주의는 문화를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문화지배정책을 통해 한편으로 보수주의적인 문화관료들을 양산했는데, 이들의 관료주의로 인해 문화예산의 분배와 지원이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거나 정치권에 유착된 보수 문화인사들에게 집중되게 만들고, 각종 국제/지역 문화제가 파행에 치닫는 원인을 제공했다. 일례로 국민들의 문화소비세(문예진흥기금)로 운영되는 문예진흥원의 예산 중 상당부분이 기구 운영비와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되고, 예산지원의 원칙이나 효율성면에서도 현장문화 활동가들이나 국민의 문화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번 광주비엔날레나 과천세계 연극제, 그리고 스크린쿼터 사태는 점차로 세계화되는 문화환경에 걸맞는 문화적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였다.

90년대 들어 소비문화의 급증과 대중문화 영역의 확대, 그리고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문화적 인프라가 과연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자세히 따져보면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처럼 문화영역이 외형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했으면서도 각종 문화규제법이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간섭하고, 시민의 문화적 수요와 국가의 문화정책적 배려가 서로 불일치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 신지식인 창출”이란 슬로건도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문화자본의 경쟁력을 갖춘 몇몇 문화산업가를 육성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진보적인 문화운동은 개인의 예술적 창작에 기반한 장르운동에 집중하여 이러한 문화환경의 전근대적 구조들을 혁신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들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설정하지 못했다. 여전히 문화운동은 그 주체가 대상에 있어 예술가집단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예술운동의 진보와 문화적 자유를 위한 제도적 실천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듯하다. 어떤 문화생산물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한 생산물을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는 것이 관료화된 문화보수주의를 해체시키고, 취약한 문화적 인프라를 진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우선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는 왜 필요하고, 가능한 실천전략인가? 문화운동은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실천을 구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화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다. 먼저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왜곡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시즘적인 검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문화영역에서의 봉건제적인 지배와 통제는 대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화민주주의는 먼저 문화의 자유를 오래동안 억압했던 검열장치, 지배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의 역할을 수행했던 관제문화행사들, 문화현장의 공공성의 파괴를 몰고왔던 관료적 문화행정과 같은 국가의 지배문화정책의 파시즘적인 폐해들을 극복하는 실천을 담고 있다. 이는 문화가 간섭과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 문화적 권리(소비와 생산의 권리, 문화에 대한 환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시민사회의 영역역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영역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근대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탈근대적인 민주주의의 기획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형태의 민주주의에 국한되어 있었다. 정치적 형태로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해서 소수 정치인들이 다수 대중들의 견해들을 대변하는 의회정치가 근간을 이루었고, 경제적 형태로서는 노동의 자유와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대의제는 방법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대리자와 피대리자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탈식민주의 여성 이론가인 가야트리 스피박은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일 18일>을 인용하면서 정치경제에서의 대표와 주체이론에서의 재현 사이의 구별을 시도한다. 맑스에 따르면 소작농 계급의 의식은 그 담지자를, 다른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자(나폴레옹)에게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작농 계급에 대한 묘사성(계급의식)과 그들의 대표성(계급존재의 위임) 사이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일치한다. 대표하는 사람과 묘사되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계급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일치될 수 없다. 경제적 민주주의 역시 노동의 자유와 소득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노동의 분할과 소득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정치적 대의제와 한패를 이루었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천이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 교환의 부패, 노동의 착취에 대한 철폐내지는 해소를 주장한다해도, 그것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제도가 갖는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대의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와 이익의 평등으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의 미시적 민주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요컨대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실천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단지 그 내용을 문화영역에 설정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참여보다 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를 주목한다는 데에 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주주의로 해결될 수 없는 일상의 미시적인 민주화, 주체의 감성적인 자유를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탈근대적인 새로운 형태를 제안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이렇듯 ‘문화의 민주주의’(민주주의적 문화)와 ‘민주주의의 문화’(문화적 민주주의)라는 이중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도로서의 문화(문화의 민주주의적 과정)와 생활로서의 문화(민주주의의 문화적 과정)를 동시에 민주화시킴으로써, 문화의 성격을 ‘사회화’시키는 동시에 ‘개인화’시키는 이중의 전략을 갖는다. 대중들이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문화적 장치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더 많은 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의 이중 전략이다.

6-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권 NAP 수립이 필수적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보고서 완성을 통해 기본 연구토대를 마련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로서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문화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여론화하고 관련 주제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문화권의 각 영역에 전문가들에게 문화권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문화권 수립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유틀을 만드는 것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보완하는 자리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문화권 NAP 수립에 따른 부서별 협조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통일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정부부처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문화권 NAP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문화현장을 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문화권 NAP 정책 이념이나 내용들이 문화현장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넷째,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및 입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법령 개선과제들은 관련 부처의 법개정 과정에 있어 상당히 많은 협조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권 NAP 수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부처 내에서 형성될 경우 본 연구서에서 제안한 법령개선안과 정부정책 개선안이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은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 부처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문화권의 수립정책이 해당 부처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

6-3. 문화권 NAP 수립의 활용방안

문화권 NAP 수립은 인권 선진국,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문화권 NAP 수립관련 연구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받고, 구체적인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권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주요 문화정책 사업 중에서 문화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현장제정사업, 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 문화소외계층지원, 국민의 문화복지실현 등등의 사업들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들과 연계되는 지점들이 많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의 주요 기조와 사업방향에 시민들의 문화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이념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제안이 설득력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화권 NAP 수립은 유엔을 포함한 세계 인권기구와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의 문화권 국가정책 수립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엔이나 유럽연합, 유네스코 등에서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이나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민족문화, 문화유산, 소수자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권고안들이 제출되고 있고, 유럽연합은 EU통합 이후에 각국의 문화적 발전단계와 특성을 함께 고민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 2007프로그램」(Proposal for the New Culture 2007 Programme), 「청소년, 문화, 청각영상, 시민참여를 통한 유럽의 문화다양성 활성화 작업」(Making Citizenship Work: fostering Europe culture and diversity through the programmes for Youth, Culture, Audio-Visual, Civil Participation)와 같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유럽의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을 신장하려는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최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업그레이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연구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문화권에 대한 국제 문화행동계획들에 동참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서는 국가 인권정책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인권의 다양한 영역들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실화할 수 있다. 인권정책을 다양성, 내실화를 위해서 환경권, 여성권, 노동권, 소수자권 등과 함께 문화권도 필수적인 검토사안이다. 문화권은 문화의 정의가 대단히 광범위한 만큼 인권정책의 문화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충실하게 만드는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 강내희.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1996.
- _____. 외.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1999.
- 강우현. 『문화환경의 디자인세계』. 발언. 1997.
-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00.
- 국승표 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1994.
- 국토연구원 엮음. 『세계의 도시』. 한울. 2002.
- 김규호. 『문화행사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평가회. 2000.
- 김무경 외. 『일상 속의 한국문화 : 자기성찰의 사회학』. 나남. 1998.
- 김문환. 『문화입국론』. 느티나무. 1989.
- _____. 『문화민주주의』. 조선일보사. 1998.
- 김성재 외.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1998.
-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1.
-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사회비평사. 1992.
- 김태명 외. 『소비문화와 환경오염』. 한국동서경제학회. 1998.
- 김필두.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I) : 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 _____.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또 하나의 문화.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7.
- 문화부. 『우리의 문화환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박노해. 『오늘은 다르게』. 해냄. 1999.
-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 백완기·신유근 외. 『문화와 국가경쟁력』. 박영사. 1996.
- 심광현.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 안귀덕 외. 『한국청소년문화 :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유병림.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유승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론 : 공동체, 지역 그리고 윤리』. 녹두. 2000.
- 윤수중. 『자유를 공간을 찾아서』. 문화과학사. 2002.
- 윤옥경 외. 『개인, 관계, 사회』. 양서원. 2001.
-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 이범재.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 이용권.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 이종영. 『지배양식과 주체형식』. 백의. 1994.
-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 임학순.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정근식 편.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1999.
- 정지웅 외.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정태영. 『사이버스페이스 문화읽기』. 나남. 1997.
- 제주학회.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창립 21주년 기념 제15차 전국학술대회. 1999.
- 조명래. 『도시론』. 한울. 2002.
- 조성남 외. 『하위문화와 정체성』. 집문당. 2002.
- 조한혜정 외. 『왜 지금 청소년』. 또 하나의 문화. 2002.
- 차경수. 『한국의 청소년 정책』. 양서원. 2000.
- 최원기·전경숙·김창남.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0-R 06. 2000.
- 최윤진.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2000.
-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199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화 시대 청소년문화의 실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 한국공간환경학회.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한울. 1998.
- _____.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2000.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 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1995.
- _____. 『문화지표체계 개선』. 1995.
- _____.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
- _____. 『도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97.
- _____.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 사례 조사연구』. 1997.
- _____. 『통계로 보는 우리 문화』. 1998.
- _____.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999.
- _____. 『2000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2000.
- _____.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2000.

- _____ . 『문화정책백서』 . 2001.
- _____ . 『2001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연구』 . 2001.
- _____ .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01.
- _____ .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 연구』 . 2001.
- _____ .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 2001.
- _____ .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 . 2001.
- _____ . 『2002 문화정책백서』 . 2002.
- _____ .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 2002.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전연구소.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 199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총서 제10권』 . 1998.
- _____ . 『문화환경진단』 . 1993.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정책연구소. 『주민자치 증진을 위한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9.
- _____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시민운동단체와 공공문화기관의 대응실태 연구』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3.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 한울.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문화 :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화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 _____ .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평가 및 수립에 관한 연구』 . 1997.
- _____ .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 신장방안』 . 2000a
- _____ .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연구』 . 2000b
- _____ . 『청소년학 용어사전』 . 2004.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사이버문화』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개론』 . 양서원. 2000.
- _____ . 『총론』 . 양서원. 2000.
- 한준상. 『청소년학 연구』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현실문화연구편.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실문화연구. 1993.
- 홍성태. 『사이버 사회의 문화와 정치』 . 문화과학사. 2000.

[국내문헌 - 논문]

- 강내희. 「문화공학을 제안하며」 . 『문화과학』 14호. 문화과학사. 1998.

- _____.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 17호. 문화과학사. 1999.
- 구창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上)」. 『지방행정』 557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_____.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下)」. 『지방행정』 558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김경배. 「문화적 교육환경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논문집』 7호. 1983.
- 김보덕. 「인문계 고등학교 “노는 아이들”의 정체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성일. 「대중의 새로운 구성」. 『문화과학』 31호. 문화과학사. 2002.
-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예술활동의 자유와 행정규제」. 『충북대 법학연구』. 1994.
- _____. 「한국에서의 문화국가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문화정책논총』 제6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 _____. 「영화사전심의제에 대한 위헌결정과 앞으로의 과제」. 『법학논집』 특별호. 고려대 법학연구소. 1997.
- _____.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 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8.
- _____.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3호. 2002.
- _____. 「한국에서의 문화국가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제32권 3호. 2004.
- 김일태.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 방안」. 『도시행정연구』 16집. 서울시립대학교. 2002.
- 김진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584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 김충묵·정문성. 「문화적 환경권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논문집』 24호. 1997.
- 김태중. 「憲法上の藝術의自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문영석. 「인류의 제4혁명기에 선 문화와 환경」. 『인문과학논집』 11호. 2002.
- 문태선. 「문화환경을 위한 Poster Display의 역할」. 『산업미술연구』 7호. 1991.
- 민경자. 「교실-가정-학교의 이음」. 제8차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 N세대 : 새로운 정책의 추구. 2000.
- 박성수 외. 「공공영역과 사회운동」. 『문화과학』 23호. 문화과학사. 2000.
- 방필주. 「民族文化暢達의 基本方向」. 『입법조사월보』. 1976.
- 백유진. 「도시의 문화환경을 위한 정책모델 제안」. 추계예대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2002.
- 신현직. 「教育基本權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
- 심광현. 「사회적 경제와 문화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문화과학』 15호. 문화과학사. 1998.
- 오세탁. 「文化財保護法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 원용진.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문화과학』 17호. 문화과학사. 1999.
- 유시조. 「文化國家의 概念과 法的性格」. 『법학연구』 제3집. 부산외국어대학 법학연구소. 1991.
- 윤종민. 「文化的 環境權의 法理研究」.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윤형숙. 「청소년과 대안문화의 모색」. 『사회연구』 2호. 2001.
- 이 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역운동의 참여방법」. 『도시와 빈곤』 45호. 한국도시연구소. 2000.
- _____. 「주민자치센터 시행, 그 1년의 평가」. 『도시와 빈곤』 53호. 한국도시연구소. 2002.
- 이동연. 「세대문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들」.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 이중한. 「<문화의 집> 지향과 발전 방향」. 『제1회 전국문화기반시설』. 문화관광부. 1998.
- 임상록. 「한국 청소년문화의 현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학생생활연구』 7호. 2002.
- 전광석. 「憲法과 文化」. 『공법연구』 제18집. 한국공법학회. 199
- 최원기. 「한국청소년의 유행문화에 대한 세대론적 고찰 :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공정정책연구』 9호. 2001.
- 한 별. 「文化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研究」.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덕규·조옥상. 「지역환경에 대한 주민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10호. 1995.
- 한인형. 「그람시 文化理論의 實踐的 特性에 관한 一考察」.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황기원. 「도시문화환경조성계획의 접근방법」. 『환경논총』 19호. 1986.
- 황호덕.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한다」. 『당대비평』 2003년 봄호. 2003.

[외국문헌 - 단행본]

- Adorno, T. W. Erziehung zur Mündigkeit: Vorträge und Gespräche mit Hellmut Becker 1959-1969. Surhkamp. 1975.
- Aries, P.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 Aries·Duby. 『사생활의 역사 4』 (전수연 옮김). 새물결. 2002.
- Barthes, R. 『신화론』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1995.
- Baudrillard, J. 『소비의 사회』 (이상을 옮김). 문예출판사. 1995.
- Beck, U.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 Britz, G. Kulturelle Rechte und Verfassung, Mohr Siebeck. 2000.
- Bundesminister des Innern und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Staatszielbestimmungen·Gesetzgebungsaufträge(Bericht der Sachverständigenkommission). 1983.
- Cohen, P.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Education, Labour and Cultural Studies, Macmillan. 1997.
- Coleman, J.S. The Adolescent Society. The Social Life of the Teenager and its impact on Education, New York.
- Dewdney, A. Youth, culture and photography, Hampshire: Macmillan. 1998.
- Fornaes·Johan·Bolin(eds.). Youth culture in late modernity London, Sage. 1995.
- Foster, M. 『뉴미디어의 철학』 (김성기 옮김). 민음사. 1994.
- Foucault, M. 『광기의 역사』 (김부용 옮김). 인간사랑. 1991.
- _____.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1994.
- _____. 『성의 역사 : 제1권 앎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1994.
- Freud, S. 『꿈의 해석 上』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1998.
- Giddens, A.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옮김). 을유문화사. 1998.
- _____.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권기돈 옮김). 새물결. 2001.
- _____(etc.).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 외 옮김). 한울. 1998.
- Gills, R. Youth and History: 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s 1770-Present, Academic Press. 1974.
- Green, M. Cultural Policy in Great Britain, UNESCO. 1973.
- Guy Debord. 『스펙터클의 사회』 (이경숙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6.
- Häberle, P. Kulturverfassungsrecht im Bundesstaat, Wien: Wilhelm Braumüer. 1980.
- _____. Das Grundgesetz der Literaten.Der verfassungsstaat im (Zerr-?) Spiegel der Schönen Literatur, Baden-Baden: Nomos Verrlagsgesellschaft. 1983.
- _____. Das Menschenbild im Verfassungsstaat, Berlin: Duncker·Humblot. 1988.
- _____(Hrsg.). 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 Hall, S.(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 in post-war-Britain,

- Routledge, London. 1993.
- Harvey, D. 『희망의 공간』 (최병두 외 옮김). 한울. 2001.
- _____.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옮김). 한울. 1994.
- Hebdige, D.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 (이동연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8.
- Hepp, A. Cultural Studies und Medienanalyse, Westdeutscher Verlag. 1999.
- Hofstede, G.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외 옮김). 학지사. 1995.
- Huber, E.R. Zur Problematik des Kulturstaats, J.C.B.Mohr. 1958.
- Hurrelmann, K. Lebensphase Jugend, Juventa. 1999.
- Angus·Jhally. Cultural Politics in Contemporary America, London :Routledge. 1988.
-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Bd.10,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s BRD, Bd.6, C.H.Beck. 1989.
- Jones·Wallace.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Open University Press. 1992.
- Katsiaficas, G. 『정치적 전복』 (윤수중 옮김). 이후. 2000.
- Kellner, D. 『미디어 문화』 (김수정 외 옮김). 새물결. 1997.
- Koch, H. Cultural Policy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75.
- Lash, S.(etc.) 『기호와 공간의 경제』 (박형준 외 옮김), 현대미학사. 1998.
- _____(etc.) 『현대성과 정체성』 (윤호병 외 옮김). 현대미학사. 1997.
- Lefebvre, H. 『모더니티 입문』 (이종민). 동문선. 1999.
- Livingstone, S. Young People and New Media, Sage. 2002.
- Maffejoli(etc.)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외 옮김). 한울. 1998.
- McCorquodale, R. Human Rights, Ashgate & Dartmouth. 2003.
- Negri·Hardt.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2001.
- Nobuya, S. Cultural Policy in Japan, UNESCO. 1970.
- Oppermann, T. Kulturverwaltungsrecht: Bildung - Wissenschaft - Kunst, Tübingen: J.C.B.Mohr(Paul Siebeck). 1969.
- Rifkin, J.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2001.
- Rousseau. 『에밀』 (정봉구 옮김). 범우사. 2000.
- Ruschhoff, D. 『카오스의 아이들』 (김성기·김수정 옮김). 민음사. 1997.
- Schärfers, B. Soziologie des Jugendalters, Leske + Budrich, Opladen. 1998.
- Schlaich, K., Neutralitä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inzip-Vornehmlich im Kulturverfassungs-und-Staatskirchenrecht, Tübingen: Habilitationsschrift.
- Short, J. 『인간의 도시』 (백영기 옮김). 한울. 2000.

- Skelton·Valentine(eds.) Cool places: geographies of youth cultures, London. 1998.
- Storey, J.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5.
- _____(eds)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백선기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Tepscott, D.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외 옮김). 물푸레. 1999.
- Thomson, E.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나종일 외 옮김). 창작과 비평. 2000.
-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1969.
- Veyne, P.(ed.) 『사생활의 역사 I』 (주명철·전수연 옮김). 새물결. 2002.
- Weeks, S. Politics and Society: The Regulation of Sexuality since 1800, New York, Longman. 1981.
- Willis, P. Common Culture, Open University Press. 1990.
- 椎名慎太郎·稗貫俊文. 『文化・學術法, 東京:ぎょうせい』. 1986.

[외국문헌 - 논문]

- Bethege, H. 「Mephistots Beitrag zur Erhaltung der Kunstfreiheit」. FS für Urheber, U. Heidenrecht. 1989.
- Clarke·Hall·Jefferson·Roberts. 「Subcultures, Cultures and Calss」. Hall·Jefferson(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Routledge. 1996.
- Garatt, D. 「Youth Cultures and Sub-Cultures」. Roche·Tucker(eds.), Youth in Society, Sage. 1997.
- Griffin, C. 「Representations of the Young」. Roche·Tucker(eds.), Youth in Society, Sage. 1997.
- Grimm, D.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VVDStRL 42
- Häberle, Peter. 「Das Problem des Kulturstaates im Prozes der Deutschen Einigung -Defizite, Versäumnisse, Chancen, Aufgaben」. ZöR Band 40. 1991·1992.
- _____. 「Grundrechte im Leistungsstaat」. VVDStRL 30. 1970.
- Huber, E.R. 「Zur Problematik des Kulturstaats」. P. Häberle (hrsg.), Kurturstaatlichkeit und Kurturverfassungsrecht.
- Maihofer, W. 「Kulturelle Aufgaben des modernen Staates」. Benda·Werner Maihofer·Hans-Jochen 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3.
- Mannheim, K.I. 「Das Problem der Generation」. Wissenssoziologie, K.H. Wolff(hg.), Berlin und Neuwied. 1964.
- Murdock·McCron. 「Consciousness of Class and Consciousness of Generation」. Hal

- I·Jefferson(ed.), Resistance through rituals, Routledge. 1996.
- Oppermann, T. 「Eigenart und Umriss des Kulturverwaltungsrechts」. P. Häberle(Hrsg.), 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2.
- _____. 「Ergänzung des grundgesetzes um eine Kultur(Staats) Klausel?」. Günter Püttner(Hrsg.), Festschrift für Otto Bachof zum 70. Geburtstag, C.H.Beck. 1984.
- Reuhl, G. 「Kulturstaatlichkeit im Grundgesetz」. JZ. 1981.
- Roellecke, G.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Zum ersten Beratungsgegenstand der Staatrechtlehrertagung」. DöV. 1983.
- Rogers, S. 「The Making and Moulding of Modern Youth: A short history」. Roche·Tucker(ed.), Youth in Society, Sage. 1997.
- Singer, M. 「The Concept of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3, The Macmillan Company·The Free Press. 1968.
- Steiner, Udo.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VVDStRL 42. 1984.
- Woodward, K. 「Concepts of identity and difference」. Kathryn Woodward(ed.), Identity and Difference, Sage. 1997.
- 椎名慎太郎. 「文化權の構造と特性」. 山梨學院大學 『法學論輯』 20. 1991.

[부록 1] 문화권 관련 주요 선언 및 조약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파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미주인권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1.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2003년 7월 29일)

[목차]

1. 본 각서는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 담당 실무단 의장이 작성함.
2. 국제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서문

제1장	정의, 목표 및 적용 범위
제1조 및 보충설명	정의
제2조 및 보충설명	목표
제3조 및 보충설명	적용 범위
제2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4조 및 보충설명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3장	기본 원칙
제5조 및 보충설명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
제6조 및 보충설명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조인 당사국의 권한 및 책무
제7조 및 보충설명	균형
제8조 및 보충설명	투명성
제4장	일반 의무
제9조 및 보충설명	문화 정책 수립
제10조 및 보충설명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
제11조 및 보충설명	문화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
제12조 및 보충설명	문화 다양성 목표 및 일관성 함양
제5장	당사국 간 의무
제13조 및 보충설명	당사국 간 의무

제6장	협력
제14조 및 보충설명	당사자 간 협력
제15조 및 보충설명	후속 평가 그룹
제7장	개발 협력
제16조 및 보충설명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제17조 및 보충설명	개발 기금
제8장	분쟁 조정
제18조 및 보충설명	분쟁 조정
제9장	행정 및 기타 규정
제19조 및 보충설명	당사자 총회
제20조 및 보충설명	회원 및 옵서버 자격

각서 - 문화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 의장 작성

본 문서는 INCP 틀 내에서 마련된 문화 다양성에 관한 협약 초안의 두 번째 버전이다.

본 협약 초안의 정신은 다음에 근거한다. 2000년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G8 정상 코뮤니케, 2000년 12월 유럽 의회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선언문, 2001년 4월 퀘벡 시에서의 미주 정상 선언문, 2001년 6월 국제 프랑코포니 조직 소속 문화부 장관들이 채택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코토노 선언문(2002년 10월 각국 수반이 베이루트에서 인준), 2002년 7월 미주 국가 조직의 문화 담당 장관 및 고위 관료들이 채택한 가르테그나 드 인디아스 (Cartegna de Indias)의 행동 계획 및 선언문, 아프리카 및 카리브 해, 태평양 지역 문화 및 문화 산업 발전에 관한 2003년 6월 다카르 선언문.

2002년 케이프타운 성명서를 통해 INCP 장관들이 실무단에 제공한 지침을 따르고 있는 본 협약 초안 개정판은, 조인 당사자의 권한 및 책무, 개도국의 요구 사항, 문화와 무역의 연계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추상적 의무 조항, 즉 조인 당사자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항은 무엇이며, 합의에 이른 권한과 책무는 또 무엇이고, 당사자 간 의무 조항은 무엇인지 등을 명백하고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케이프타운 성명서가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반영하였다. 이는 일관되고 투명한 법적

구조를 통해 문화부 장관들의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 개정판의 준비는 핀란드 교육 및 문화 장관이 보고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초안 작성 그룹이 수행한 작업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해 준 보고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리고자 한다.

본 초안을 마련하기 전, 핀란드 교육 및 문화장관은 문화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 초안 마련을 위한 개요서를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의 초안 작성 그룹에 제출한 바 있다. 동 개요서의 기본 방향은 2003년 3월 25일과 26일, 할리팩스에서 초안 마련 그룹과 연락 그룹 구성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토의 및 승인되었다. 이는 다시 2003년 4월 28일과 29일 런던에서 개최된 초안 마련 그룹 회의에서 더욱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2003년 5월 29과 30일 개최된 자그레브 회의와 7월 7일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실무단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문 중 선언 성격을 띠고 있는 제반 항목은 서문에 옮겨 실었으며, 협약 초안의 각 조항마다 참고 사항을 볼 수 있다. 표준 관행에 따라 본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참고 사항 부분은 협약에 대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 참고 사항은 필요한 배경 정보로서 인식, 공동의 이해를 도모 및 확립하도록 한다.

본 초안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한 편이다.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지침 원칙 4개 조항, 4개의 일반 의무 조항, 당사자 간 의무에 관한 특별 조항 1개가 있으며, 협력, 개발 협력, 분쟁 조정, 행정 관련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본 협약 초안은 강력한 소수 조항에 기반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해 조인 당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함과 더불어,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당사자의 의무 조항 또한 기술하고 있다.

- 국내 혹은 국제 정책을 고안함에 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 국내의 문화적 표현 함양과 관련해서는 균형과 투명성의 원칙을, 여타 당사자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서는 개방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는 여타 당사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조건 및 역량에 준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 개발도상국의 자원 및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

또한 본 협약은 당사자 간 협력을 도모코자 다음 분야에 대한 강력하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를 위한 기술 원조 및 역량 강화
- 다른 조인 당사자로부터 유입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 조인 당사국 영내에서의 이용 가능성 향상
- 조인 당사자 간의 문화 산업 및 전문가 그룹, 문화 기구의 교류
- 정보 수집 및 처리, 유포를 위한 구조화된 체제 개발
- 다른 국제 포럼에서 본 협약 원칙 및 목표 홍보

실질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본 협약 초안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행정 및 제도적 절차 조항 또한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본 협약의 제도적 설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임시 조항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본 문건에서 UNESCO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18조~20조) 동 기구 및 기타 어떠한 기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이 아니라, 동 조항을 실현 가능케 할 한 방편으로서 의도한 것이며 의당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UNESCO 회원국은 문화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동 기구에서 마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2003년 가을 차기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서문

본 협약에 대한 조인 당사국은, 인권선언문 및, 시민권 및 정치적 권한에 관한,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1996년 국제 서약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법적 조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적용을 단호히 할 것을 서약하며, 사회의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선언문의 27조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한에 관한 UN 국제 서약의 15조에 집약된 원칙에 준하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1966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문화 협력 원칙에 대한 UNESCO 선언문 조항, 특히 각 문화는 위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존중 및 보존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1항을 회고하며, 2001년 11월 2일 UNESCO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선언문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국내적인 문화 개발 과정 및 문화 및 언어적 표현의 보존 및 함양 과정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의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모든 문화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의식하며, 문화 다양성이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 요소이며 또한 문명 간 대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상고하며, 법

규의 자국 내 적용에 있어 최대한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며, 정체성 형성 및 사회 결집에 있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며, 고유 지식 및 전통 문화 표현과 무형 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특수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문화 간 교류 및 상호 변영의 잠재적 근원인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원칙, 특히 다중 매체론이 민주주의 및 문화 다양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문화 다양성 보존 및 진작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수행 권한을 인식 및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규정 및 원칙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것을 결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장 정의, 목표 및 적용 범위

제1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본 협약 초안문 내에서 핵심 용어 및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1조 정의

본 협약에서,

1. '문화 다양성'이라 함은 세계에 공존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유산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수성 및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2. '문화적 표현'이라 함은 문화 콘텐츠를 기존의, 혹은 새롭게 생성되는 모든 형태의 매체나 형식을 통해 창조하거나, 생산, 배포, 통신, 전시,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3. '문화 정책'이라 함은 문화 표현 및 문화 다양성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 준거하는 기준틀을 의미한다. 문화 정책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아니한다 - 국내외적으로 주창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닌 문화 산업에 의한 문화 콘텐츠 다양성에 도움이 되는 여건 조성, 문화 생활에 대한 대중의 접근 도모, 국내외적 문화 다양성 함양, 문화 유산 보존, 표현의 자유 및 다중 매체주의 수호 및 진작.
4. '문화 콘텐츠'라 함은 개별 창작인 및 문화 산업의 창조적 산물로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행위예술, 시각예술, 공예,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의 개인 창작물, 2) 영화, 비디오, 음악, 서적, 잡지, 신문,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거나 발명될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기타 다른 형태의 매체에 나타난 개인 혹은 문화 산업이 창작해 낸 소리, 영상, 문자, 3) 한 사회의 문화 유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소장품이나 전시물.

5. '문화 상품 및 서비스'라 함은 문화 콘텐츠를 담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르며, 이는 가치와 의미, 정체성을 전달한다는 특수성을 지니며, 따라서 단순한 여타 상품과는 구분된다.

6. '문화 산업'이라 함은 문화 콘텐츠를 창작, 생산, 출판, 유통, 전시, 제공, 판매하는 조직이나 기업, 개인을 이른다.

제2조 보충 설명

본 개정판의 목표는 상당 부분 원래 초안에서 설정한 목표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본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단은 한 가지 목표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2조 목표

본 협약은 그 원칙 및 규정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음을 목표로 한다.

○문화 다양성이 기회와 도전,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보존 및 고취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문화 표현 개발과 문화 다양성 진작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 표현의 성취 및 유지와, 문화 다양성 자체를 세계화의 필수 요소로 보존 및 진작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기준틀로 작용코자 한다.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가가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하며, 자국 영토에서는 물론 전세계에 대해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 산업을 창조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한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국제 무역 포럼 등 기타 국제 포럼에서 본 협약 기본 원칙을 증진코자 그 기반을 제공한다.

제3조 보충 설명

‘적용 범위’라는 정의 하에서 본 협약의 제반 조항은 협약 조인 당사자의 문화 정책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문화 정책에 대한 정의는 제1조를 참조한다.

협약 적용 범위는 본 협약 당사자 간 상호 의무 규정을 기술한 제13조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조인 당사자 간 상호 의무 이행 여부 결정에 있어, 당사국의 해당 정책이 본 협약 적용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조인 당사국의 문화 정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4조 보충 설명

제4조는 일반적인 침해 불가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 주제와 관련된 후속 조약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본 협약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른 협약의 후속 협약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하며, 이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협약은 존재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지니는 일부 협약은 존재하고 있다. 문화 및 문화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 간 권리 혹은 의무 사항은 WTO 프레임워크와, 특히 GATS 및 TRIPS 조약에서 배타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다른 조약과의 관계성이 본 협약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간 지위 결정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협약의 성공적이며 신속한 채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조항에 따라, 본 협약은 어떠한 기존 협약에도 우선할 수 없으며, 조인 당사자가 기존 조약 하에서 지니는 상호 간 의무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의 동일한 논리를 따라, 조인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향후 조약 혹은, 기존 조약의 수정 및 확장 시에 본 협약에서 동의한 상호 간 의무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경우 당사자가 조인했던 국제 조약과 본 협약 간의 관계를 적절히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화 규범은 일정 수준의 특정 의무를 지니는 특수 속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동시에 이 규범을 기존 법규 내에서 적절히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합의 형식은 향후 도출되는 협약을 상업과 관련된 기존 국제 조약 내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전문가 사이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협약과, 무역법 등의 기존 법을 적절히 규명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토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1) 본 협약이 기존의 여타 국제 협약 하에서 조인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대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권리 및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기본 원칙

제5조 보충 설명

본 원칙은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 기술에 의한 변화에 직면하여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민족과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 및 재창조하는 문화 콘텐츠의 역할이 부가된 개념이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는 흔히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거래되며, 따라서 예견 가능한, 특히 상업적 관점에서 예견 가능한 교역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 무역 규정 및 원칙은 특정 부문이나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러할 의도 또한 없다. 그러나 본 협약은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

치를 입안 혹은 이행함에 있어 그러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5조는 조인 당사자에게 그러한 특수성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본 협약 적용 대상의 특성 상, 그러한 특수성을 어떻게 최대한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조인 당사자가 자체 상황에 기반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현 조항은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의 제 151조 (4)항과 같은 맥락으로 여타 정책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모색코자 하는 문화 정책 사안이다. 다만 여타 정책의 입안 혹은 이행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의 보존이나 함양에, 혹은 조인 당사자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정책을 개발 혹은 이행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

(1) 국내외적 정책 혹은 조치를 입안할 시, 조인 당사자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6조 보충 설명

제6조는 문화 표현 개발 및 문화 다양성의 진작 및 함양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유지 혹은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에 보장한다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조인 당사국이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할 의무를 지니며 그 목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주권을 지닐 때, 어떠한 특정 조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본 조항은 재정 및 회계, 법규, 지원 조치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진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6조에서는 각 국의 정책에 대한 주권을 언급함으로써 때로 다른 정책 간의 모호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니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국의 융통성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여 특정 조약에 가입 혹은 불가입하는 것은 항상 각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의무 조항을 만들거나 한 분야에서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이 다른 분야에서의 의무 조항 설정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의무 조항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9조에서의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진작을 위한 문화 정책 개발 의무와 함께, 6조의 첫번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 정책 조치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할 수 있는 프레임 설정하고 있다. 세계적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진작과 관련하여서는, 본 조항의 후반부에서 조인 당사자가 그렇게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공헌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본 협약은 조인 당사자가 정책 변화에 대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강제하고 있다.

제6조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조인 당사국의 권한 및 책무

(1) 조인 당사국은 UN 헌장 및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함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권을 지니며, 본 협약 조항에 따라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존 및 함양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7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 기술에 의한 변화에 직면하여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균형 원칙은 규정에 기반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본 협약의 핵심 규정으로, 본 협약 목표와 상반되는 보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 효과의 생성을 방지하고자 한다.

균형 원칙은 조인 당사자가 국내 정책 및 조치를 고안 혹은 실행함에 있어 외국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타 당사자로부터 유입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자국 내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균형 원칙은 조인 당사자가 국내 정책 및 조치 입안 시 참고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동시에 국제 문화 다양성 함양을 위한 주 요소이기도 하다.

제13조에서는 자국 문화 정책이 여타 조인 당사자와 그 문화 산업, 혹은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7조 균형

(1) 조인 당사자는 자국 내 문화 표현을 보존 혹은 함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러한 조치가 여타 당사자로부터 유입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방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충 설명

본 협약은 보호주의적 조치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라도 각국이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백지 위임장 효과를 방지하고자 한다. 제7조의 균형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는 문화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 자국 내 문화 표현 보존 및 함양과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 간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직 각 당사자가 자국 문화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다.

본 협약 초안은 또한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정보 및 모범 사례(제14조)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당사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각 당사자로부터 위임권을 부여 받은 후속 평가 그룹(제15조)은 그러한 협력을 모색하도록 한다. 협력 증진과 후속 평가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문화 정책 투명성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협약 초안에 제시된 일반 원칙은 모두 문화 정책의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8조 투명성

(1) 조인 당사자는 문화 정책 고안 및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의무 조항

제9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6 조에서는 조인 당사자가 본 협약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문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일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전격적인 문화 정책 개발 및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조인 당사자가 9조에서 언급된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원칙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본 조항은 당사자의 문화 정책 개발 지침으로서 다양한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본 협약의 구조에 있어서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문화 정책 수립

(1) 각 당사자는 각각의 특수 조건 및 역량에 준하여,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을 위한 문화 정책의 틀을 본 협약의 원칙 및 목적에 맞추어 개발하기로 한다.

제10조 보충 설명

제10조는 국제 협력 및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와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그러한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조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

(1) 각 당사자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가 본 협약의 원칙 및 목적에 준하여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함양하는 데 있어 자원 및 역량을 개발,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제11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 보장 목적은 물론, 본 협약을 준거 틀로 삼고자 하는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다.

제11조는 국가 간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각 당사자가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간 문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진작하고자 하는 동 조항은, 국내 문화 표현에 대한 지원 조치와 타국으로부터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7조 및 13조에 대한 보조 조항이다.

제14조에서는 협력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1조 문화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

(1)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 내에서 타 문화로부터 유입된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 및 사례를 규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제12조 보충 설명

본 조항에서는 조인 당사자가 본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여타 국제 포럼에서 증진함은 물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서로 간에 상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조항으로 인해 본 협약은 역동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동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조인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 다양성 상황을 숙고한 후, 본 협약의 원칙 및 목표 그리고/혹은 그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타 국제 포럼에서 그 발전 상황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법적 구속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부문

에 특정한 문화 정책은 그러한 다자간 정책과 비교하여 월등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협약에 견해의 교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2) 단락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정책 간의 일관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제12조는 문화 정책에 있어 다자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자국 문화 정책을 보완한다.

다른 국제 포럼에서의 본 협약 기본 원칙 및 목적 증진 의무를, 기존의 여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 조항은 다른 정책들의 적용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대에 다른 정책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본 조항은 명백하지 못한 부분(즉 둘 혹은 그 이상의 정책이 각각의, 혹은 모순되는 접근 방식을 취하며 특정 부문에 대해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조인 당사자가 일관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할 경우, 단락 (3)에 도입된 최대한의 노력 조항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다른 조약이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권한 및 의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합의된 바에 따라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제 공약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관성 획득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 다양성 목표 및 일관성 함양

(1) 조인 당사자는 서로 상의하여 본 협약의 원칙 및 목표를 여타 국제 포럼에서 함양하도록 한다.

(2) 상기에 따라 상의할 시, 당사자는 본 협약 하의,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타 협약 하의 각 권한 및 의무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조인 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조약을 해석 및 적용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5장 당사국 간 의무

제13조 보충 설명

제13조는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제13조는 보다 일반적인 7조에 대한 보조 조항으로, 타국으로부터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자국 내 이용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진작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에 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 문화 정책이 활용될 수 없도록 한다.

본 조항은 본 협약 하에서의 당사자 상호 간 의무 조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제13조는 규정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규적 구조를 지닌다.

무역 및 투자 등의 수많은 기타 정책 범위가 확장되거나 혹은 이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정에 기반한 문화 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협약, 특히 본 조항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문화 정책면에 있어서의 대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세계화 물결 속에서 문화 정책이 다른 주요 정책과 적절한 관계성 및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각 당사자가 본 협약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다른 의무 조항으로는, 타 당사자 혹은 그 문화 산업이나 콘텐츠에 대해 조인 당사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타 당사자에 대한 공격 권한은 없다. 다시 말해, 타 당사자가 당사자와 관련하여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정책이나 조치의 적절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예를 들어, 9조에 준하여 적절한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당사자가 개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여, 갑 당사자가 을 당사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

제13조 당사국 간 의무

(1) 여타 당사자 혹은 그 문화 산업이나 상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조치를 취하는 해당 당사자는 그 조치가 본 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조치가 요구 조건 (1)을 충족하며 18조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는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조치가 본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가?

(b) 해당 조치가 본 협약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가(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

성 등)?

- (c) 실제 시장 상황과 경쟁 조건을 고려할 경우, 해당 조치가 균형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가?
- (d) 해당 조치가 타당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제6장 협력

제14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 보장 목적은 물론, 본 협약을 준거 틀로 삼고자 하는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다.

(1) 항에서는 가능한 협력 증대 방안으로서의 다양한 문화 협력 조약에 대해 특히 언급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정부 주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협력 조약 및 프레임워크 증진에 있다. 제14조는 다양한 당사자의 문화 및 시청각 부문의 현실성, 특히 타 당사자로부터 유입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화 다양성은 협력과 긍정적 정책을 통해서만 증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14조 (1)(b) 항은 각 당사자가 9조에 준한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및 15조에 준한 후속 조치 이행 목적 상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도록 문화 정책 기구(예. 감시 기구)의 창설 및 기구 간 연계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UNESCO 프레임워크 같은 다른 다자간 통계 기반 프레임워크와 부합하여야 한다.

(2) 항은 본 협약이 당사자 간 협력을 위한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총회(제19조 참조)가 기타 문제에 있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4조 당사자 간 협력

(1) 각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혹은 다자간 문화 협력 조약 체결을 포함,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a) 각자의 문화 산업, 예술 및 문화 분야 전문가, 그리고 문화 기구 간의 협력 및 교류
- (b) 문화 다양성 지수 개발을 포함,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과 관련한 정보, 통계 및 모범 사례를 취합, 처리, 유포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의 개발

(2) 당사자 총회는 이러한 목표의 진흥이나 본 협약 이행에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사안에 협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5조 보충 설명

본 조항에서는 당사자가 후속 평가 그룹을 조직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후속 평가 그룹은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그 이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역 정책 조약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만 집중할 뿐, 동 정책이 문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확연한 결함이 있다. 본 협약은 그 원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 후속 평가 그룹

(1) 각 당사자는 후속 평가 그룹을 조직하여 본 협약이 문화 다양성의 보존 및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제7장 개발 협력

제16조 보충 설명

본 조항은 국제 협력 및 결속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통합, 그리고 정책 수립 및 이행, 기획 개발 및 문화 경영에 있어 문화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 필요로 하는 우선 협력 분야라는 점을 주지하도록 한다. 2(c)에 언급된 역량 강화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 국내외 문화 분야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항은 설정 필요성이 있는 특정 절차를 규명하고, 협력에 있어 우선 분야를 명시하며, 협력 유형에 대한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제10조를 보완하고 있다.

본 조항의 주안점은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과, 그들의 문화 산업 역량 강화에 있으며, 이는 그러한 국가가 문화적 창조성의 토대를 구축하며 그로 인

하여 국내외적 문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공적일 경우, 해당 국가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유통을 증대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함양이라는 전체적 목표에 공헌하게 된다.

제16조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1) 당사자 총회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상기에서 언급한 조치 이행 시, 각 당사자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다음 필요성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a) 문화 정책 개발 및 이행

(b) 문화적 표현 보존 및 함양

(c) 문화 산업, 예술 및 문화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 기구의 역량 강화

(3) 선진국은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와의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로부터의 자국내 문화 콘텐츠 유입 또한 도모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와, 그 문화 산업, 예술 및 문화 분야 전문가 그리고 문화 기구에 대하여,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우대 조치를 통해 도모하도록 한다.

제17조 보충 설명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항에 따라 개발 기금을 설립한다.

제17조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대부분이 기타 행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총회에서 결정된다. 개발 기금의 목적은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실제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치에 할당될 기금의 비율을 극대화할 구조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금 생성 가능성은 선진국 회원이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

동 기금은 각 당사자에게 재정을 주로 의존하게 되나, 비조인국 및 기타 다자간 포럼 같은 투자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도모하도록 한다.

동 개발 기금의 행정 본부로서 UNESCO를 제안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

다.

제17조 개발 기금

- (1) 본 협약 하의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도록 한다.
- (2) 동 기금의 재정 마련은 각 당사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당사자로부터의 의무적, 자발적 기부를 통해 동 기금을 설립, 운용할 수 있다.
- (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조인국이나 기타 투자자로부터의 기부 또한 당사자 총회가 수립하게 될 규정 및 원칙에 준하여 수용할 수 있다.
- (4) 당사자 총회는 기금 운용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 [(5) 동 기금의 행정 업무는 UNESCO 사무총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8장 분쟁 조정

제18조 보충 설명

당사자 간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절차는 협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 초안 13조 같은 당사자 간 의무 조항이 있는 협약에 한해서만 분쟁 조정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무 조항이 없는데도 분쟁 조정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협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 (3)항에서는 일반적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4)항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 조정 결과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8조 분쟁 조정

- (1) 당사자 간 의무 조항 관련 분쟁 시, 분쟁 당사자는 상호 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상기 협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각 당사자는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총회는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제3자 중재, 문화 전문가 패널 설정 과정으로 구성된 3단계 분쟁 조정 세부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4) 분쟁 당사자는 분쟁 조정 결과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제9장 행정 및 기타 규정

제19조 보충 설명

19조에 따라 당사자 총회를 설립한다. 당사자 총회는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따라서 당사자 총회 자체 및 그 기능은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초안에서는 수많은 주요 사안 처리를 동 회의에 일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실용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본 협약의 준비 및 채택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본 단계에서는 세부 행정 규정까지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작업은 당사자 자신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과 형평성 면에서 더 적절하다.

각 당사자를 대표하는 당사자 총회에서는 본 협약에 대한 후속 평가 그룹을 결성하도록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될 수도 있으므로, (5)항에서는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하부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도출하는 데 있어 UNESCO의 현재 역할을 고려하여 (7)항에서는 동 기구를 본 협약의 행정 본부로 제시하고 있다(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제19조 당사자 총회

(1) 당사자 총회를 수립하도록 한다. 본 협약 조인 당사자 모두 총회의 회원이 된다.

(2) 당사자 총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무 및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a) 타 당사자로부터 유입된 문화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 절차 및 양식 수립(제11조)
- (b) 기타 국제 포럼에서 본 협약의 원칙 및 목표를 진작하기 위한(제12조) 협의 절차 및 양식 수립
- (c) 협력 증진 절차 및 방안 설정(제13조)
- (d)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절차와 양식 수립(제16조)
- (e) 적절한 협력 조약 체결 도모(제14조)
- (f) 본 협약에 대한 후속 평가 그룹 조직

(3) 당사자 총회는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책무 및 의무를 질 수도 있다.

(4) 당사자 총회는 자체 절차 규정을 수립하도록 한다.

(5) 당사자 총회는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하부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6) 당사자 총회는 본 협약 규정의 개정 규정 및 절차 또한 수립하도록 한다.

[(7) UNESCO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0조 보충 설명

제20조는 본 협약의 회원 및 옵서버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UNESCO 회원국은 물론, 유럽 연합 등의 지역 경제 통합 기구 또한 본 협약에 조인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이 다자간 맥락에서 여러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 협약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본 협약 조인 당사자가 될 경우, 정책 간 일관성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다.

옵서버 지위는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과 관련된 정부 간 기구 혹은 국가에 대한 (2) 항에 나타나 있다.

제20조 회원 및 옵서버 자격

(1) 본 협약은 UNESCO 회원국은 물론 지역 경제 통합체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당사자 총회는 문화 다양성 보존 및 함양에 관심을 갖는 어떠한 국가나 정부 간 기구에 대해서도 옵서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옵서버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

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당사국 수 143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부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

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4부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 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부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당사국 수 156 /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본 협약의 체결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던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는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재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

의 차별금지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에 포용된 제반 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시일 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 (a)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 (b)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 (c) 각 체약국은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 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 (d)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 (e) 각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지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2.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체약국은 특히 인종분리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그들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관행을 방지, 금지 및 근절시킬 의무를 진다.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
죄로 인정한다.

-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
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
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 (a)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b)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 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
리
- (c)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
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 (d) 기타의 민권 특히
 - (i)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i)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 (iii) 국적 취득권
 - (iv)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 (v)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 (vi) 상속권
 - (vi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vi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x)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
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 (ii)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 (iii) 주거에 대한 권리
 -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 (v)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 (vi)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체약국은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부

제8조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체약국이 자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 덕망이 높고 공평성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집무하며, 이들의 선정에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 형태를 대표하도록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체약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단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체약국은 자국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3. 제1차 선출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실시된다. 최소한 선출일 3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체약국에 서한을 송부, 체약국들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후보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체약국명을 명기, 피지명된 전후보자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동 명부를 체약국에게 제시한다.
4. 동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체약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체약국의 2/3가 정족수를 이루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 대표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후보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5. (a) 이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제1차 선출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만에 만료된다. 이 위원 9명의 성명은 제1차 위원 선출 직후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으로 선택한다.

(b) 부정기적인 공석의 충원에 있어서 자국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당해 체약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국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6. 체약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의 비용을 책임진다.

제9조

1. 체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후 매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 위원회는 체약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며, 체약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는 체약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총회에 보고된다.

제10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마련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11조

1. 체약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타 체약국이 있다고 간주할 때는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실을 당해 체약국에 전달한다. 3개월 이내에 당해 체약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된 해명서 또는 성명서와 더불어 동 국이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만약 이 문제를 당해 국가에서 1차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쌍무 교섭이나 또는 양자에게 가능한 다른 절차 중 어느 한 수단에 의하여 양측에 동등히 납득되도록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 중 어느 일방은 위원회와 상대방 국가에 통고함으로써 위원회에 재차 이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가 취하여져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본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데 대한 규칙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자신에게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해 체약국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언급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문제가 심의되는 동안 대표를 파견하여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의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1. (a) 위원회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후에 위원장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정위원단(이후 "위원단"이라 함)을 임명한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일 수도 있으며 또 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분쟁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위원단의 주선은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b)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단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지 못한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2/3 다수표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2. 위원단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집무한다. 이들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 협약의 비체약국 국민이 되어서도 안된다.

3. 위원단은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위원단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단이 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5. 이 협약 제10조 3항에 따라 마련된 사무국은 체약국간 분쟁으로 인하여 위원단이 구성될 때 동 위원단의 사무국으로 이용된다.
6.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계에 따라 위원단 구성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단 구성원의 경비를 본조 6항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쟁에 대한 체약국이 지급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8. 위원회가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정보는 위원단에서 이용 가능하며 위원단은 당해 체약국에게 기타 관련정보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1. 위원단은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였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간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모든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와 분쟁의 호의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내포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단의 보고서는 분쟁에 관련된 각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이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단의 보고서에 내포된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3. 본조 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단의 의장은 위원회의 보고서와 당해 체약국의 선언을 이 협약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

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 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다.

3. 본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선언은 어느 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등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 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개인이나 또는 개인 집단의 신원이 자신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청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보고서 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계약 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결국 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제15조

1. 1960년 12월 14일자 총회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의 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타 국제기관이나 또는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이 민족들에게 허용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a) 이 협약 제8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국제연합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청원의 사본을 접수하고 또한 동 기관에 이러한 청원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과 권한을 제출한다. 여기의 국제연합 소속기관은 자신 앞에 회부되어 있고 이 협약에 포괄된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및 비자치영역과 모든 기타 영역의 주민들로부터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취급한다.

(b) 위원회는 본항(a)에 언급된 영역 내에서 행정권에 의해 적용되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

3. 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보고서 속에 국제연합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청원과 보고서의 개요를 포함시키고 또한 동 청원과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명시적인 의견과 권고를 포함시킨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협약의 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본조 2항(a)에 언급된 영역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요청한다.

제16조

분쟁이나 이외의 해결에 관한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조직 범구속이나 또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협약 속에 규정된 차별에 관련된 분쟁이나 또는 이의를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침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또한 체결국이 자기들 사이에 유효한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채택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3부

제1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를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1. 이 협약은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이나 또는 가입시 당사국이 행한 유보를 접수하여 이 협약의 기존 체약국이나 또는 체약국이 되는 모든 국가에 회람한다. 이러한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동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2. 이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용납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효력을 가진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협약의 체약국 중 2/3가 유보를 반대할 경우 동 유보는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철회는 그 뜻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제22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또는 적용에 대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 분쟁이 교섭이나 또는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이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토록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체약국이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이러한 개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특히 다음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7조 및 제18조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9조하의 이 협정 발효일
- (c) 제14조, 20조 및 23조하의 접수된 통보 및 선언
- (d) 제21조하의 폐기

제25조

1.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 / 당사국 수 147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을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하였으며(조약 제1042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하였음(조약 제1122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

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

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에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

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 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5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

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6.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73. 11. 30 / 발효일 1976. 7. 18 / 당사국 수 101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류는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적 출신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총회가 자유화의 진행에는 대항할 수도 역행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진보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식민주의 및 그와 결합된 분리와 차별의 모든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언명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이 특히 인종분리와 아파르트헤이트를 규탄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이러한 성격의 모든 관행을 예방, 금지, 근절하기로 약속하였음에 유의하며,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 아파르트헤이트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에 유의하며,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죄로 간주됨에 유의하며, 국제연합 총회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관행을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규탄한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여 왔음에 유의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와 이의 지속적인 강화 및 확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위협한다고 강조하여 왔음에 유의하며,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약 당사국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인도에 반하는 죄이며,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관행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종 분리 및 차별에 관한 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의 원칙, 특히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범하는 조직, 기관 및 개인들이 범죄자라고

선언한다.

제2조

이 협약상 아파트헤이트 범죄라 함은 남아프리카에서 행하여졌던 것과 유사한 인종 분리 및 차별에 관한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 (a) 아래의 방법을 통한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부인.
 - (i) 인종집단 구성원의 살해.
 - (ii) 인종집단 구성원의 자유 또는 존엄을 침해하거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의 부과.
 - (iii)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불법 구금.
- (b)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육체의 파괴를 초래할 목적에서 인종집단에게 고의로 의도된 생활조건의 부과.
- (c) 인종집단이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도된 입법 및 기타의 조치, 그리고 근로권, 공인된 노동조합 결성권, 교육권, 자국을 출입국할 권리, 국적에 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부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종집단의 완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의 고의적 조성.
- (d) 인종집단 구성원을 위한 격리된 보호구역과 강제거주지구의 창설, 다른 인종집단 구성원간의 혼인 금지, 인종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속한 토지의 수용을 통하여 인종별로 주민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입법조치를 포함한 여하한 조치.
- (e) 특히 강제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노동 착취.
- (f) 아파트헤이트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직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박탈함을 통한 박해.

제3조

다음의 행위를 한 개인, 조직과 기관 구성원 및 국가대표에 대하여는 아래의 행위를 범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지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형사책임이 적용된다.

- (a) 이 협약 제2조에 언급된 행위의 수행, 가담, 직접적인 교사 또는 공모.

(b) 아파트헤이트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교사, 조장 또는 협력.

제4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 (a) 아파트헤이트 범죄 및 이와 유사한 분리정책의 조장 또는 표명의 예방은 물론 진압과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 (b) 그 행위가 행하여진 국가 내의 거주 여부나 자국민인지 또는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거나 고발된 자를 관할권에 따라 기소, 재판 회부, 처벌하기 위한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조치를 채택한다.

제5조

이 협약 제2조상의 행위로 고소된 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어떠한 협약 당사국의 재판소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여 당사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6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아파트헤이트 범죄를 방지,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다른 담당기관이 채택한 결정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이 채택하여 협약규정을 이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보고서 사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아파트헤이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제8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담당기관에 대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아파트헤이트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인권위원회 의장은 제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협약 당사국의 대표인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3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만약 인권위원회 위원 중 이 협약 당사국의 대표가 없거나 3인 미만일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모든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이 협약 당사국 대표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 인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당사국 대표를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명한다.

3.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회기 개시 전후에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회합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위원회에 다음 권한을 부여한다.

- (a)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에 따라 청원서의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협약 제2조에 열거된 행위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국제연합 기관에 요청한다.
- (b) 국제연합의 담당기관의 보고서와 협약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에 근거하여, 협약 제2조에 열거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조직, 기관 및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 (c) 1960년 12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지역 및 비자치 지역과 모든 기타 영역의 행정 당국이 자신의 영토적, 행정적 관할권하에 있다고 여겨지며 협약 제2조에 따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에 관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제연합 담당기관에 요청한다.

2. 총회 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다른 국제협약이나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이 협약 제2조에 열거된 행위들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 당사국은 그러한 경우 시행 중인 법률과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교섭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쟁 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3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협약의 발효 이전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

1.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5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에 대한 20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그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a)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서명, 비준, 가입.
- (b) 제15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c) 제16조에 따른 폐기.

(d) 제17조에 따른 통고.

제19조

1.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7.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채택일 1960. 12. 14 / 발효일 1962. 5. 22 / 당사국 수 87(1999년 12월 기준) / 대한민국
미가입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1차 회기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비차별의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고, 교육상의 차별이 그 선언에 천명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고,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존중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을 조직할 목적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며,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상 차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제안들이 회기 의제 17.1.4항으로 상정받았고, 제10차 회기에서 이 문제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1960년 12월 14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 (c)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 또는 사람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 (d)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2. 이 협약의 목적상, “교육”이라 함은 모든 유형과 단계의 교육을 가리키며,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 여건을 포함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은 상황은 그 국가 내에서 허용된다면 협약 제1조의 의미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학생의 성별에 따라 분리된 교육 제도 또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진을 제공하며, 같은 수준의 교육시설과 장비, 그리고 같거나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종교상 또는 언어상의 이유에 따라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희망과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그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에 의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교육이 특히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위하여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사립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그 기관의 목적이 특정 집단의 배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에 추가되는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제공되는 교육이 특히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위하여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차별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a)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
- (b)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학생이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차별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
- (c) 학비, 장학금, 기타 다른 형태의 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유학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나 편의제공에 있어서 능력이나 필요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 의한 국민들간의 어떠한 다른 처우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 (d) 공공당국이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한 제한이나 특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e) 자국 내 외국인 거주자에게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

협약 당사국은 상황과 국가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처

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 발전,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을 약속한다.

- (a)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은 개인 능력에 기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법률에 규정된 학교출석 의무를 모두가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b) 같은 단계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수준이 동등하도록 보장하며,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여건들 또한 동등하도록 보장한다.
- (c)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초등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개인 능력에 따른 그들의 계속교육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장려하고 강화한다.
- (d) 교직에 대한 훈련을 차별 없이 제공한다.

제5조

1. 이 협약 당사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 (a) 교육은 인간성의 원숙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켜야 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b) 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의 다음과 같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공공당국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을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선택할 자유. 단 이는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본적 교육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그 국가 내에서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따르는 절차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 및 도덕 교육을 확보할 자유.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집단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c) 소수민족의 구성원에게 학교의 운영과 함께 각국의 교육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i) 이 권리는 소수민족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ii) 교육의 기준이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일반적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iii) 그러한 학교에 참가하는 것은 선택에 의하여야 한다.

2. 협약 당사국들은 이 조 제1항에 선언된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상의 차별을 억제하고 교육상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는 향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모든 권고에 최대한 유의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정하는 날짜와 방법에 따라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 및 행정 규정과 제4조에 규정된 국가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각국이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채택한 기타의 조치는 물론 달성된 성과와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간에 발생하여 협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다른 분쟁해결수단이 실패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된다.

제9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향유하는 권리는 그것이 이 협약의 조문이나 정신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그러한 권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협약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 네 개 언어본은 동등한 정보이다.

제12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 각 회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

락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기구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4조

이 협약은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단 이는 이 날짜 이전에 관련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5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이 본토뿐 아니라 모든 비자치지역, 신탁통치지역, 기타 당사국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는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 이전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할 것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그 통보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본토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기타 지역에 대하여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서면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서의 수리 후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

서, 가입서의 기탁과 제15조 및 제1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와 폐기에 관한 각각의 사항을 기구 회원국과 제13조에 언급된 기구 비회원국 그리고 국제연합에 알려야 한다.

제18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은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이 협약을 전면 또는 부분 개정하는 협약을 채택할 경우 새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위한 개방을 중단한다.

제19조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60년 12월 15일 파리에서 작성되어, 제11차 총회 의장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서명한 두 개의 정본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이 제12조와 제1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이상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0년 12월 15일 폐회가 선언된 제11차 회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1960년 12월 15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당사국 수 166 / 대한민국 적용일 1985. 1. 26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 중 (c), (d), (f), (g)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16조 제1항 중 (c), (d), (f)를 1991년 3월15일 유보철회하였고, 동 협약 제9조를 1999년 8월 24일 유보철회하였음.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도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 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 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준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

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a)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c)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d)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e)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 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g)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부

제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서의 피선거권
- (b)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 (c)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8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부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

건물 및 장비의 수혜

-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 (b)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4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

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c)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d)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e)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f)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 (g)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h)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4부

제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동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부

제17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 선거 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 후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 중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a)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b)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

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19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21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 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6부

제23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령 또는

(b) 동 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24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
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6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
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
일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

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들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9.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3. 3. 31 / 발효일 1954. 7. 7 / 당사국 수 115 / 대한민국 적용일 1959. 9. 21

체약국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것을 희망하며, 모든 인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국가의 공직을 평등하게 담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정치적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제2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담임하고 또한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제4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국제연합 총회가 초청장을 발송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서명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5조

1.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는 후 90일 후에 실시된다.
2. 여섯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는 후에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는 후 90일 만에 이 협약이 실시된다.

제7조

어떤 국가가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장차 가입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유보문을 통고한다. 이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날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유보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협약은 유보하는 국가와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8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당사국 수를 6개국 이하로 하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이 협약 당사국간에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또한 다른 해결방법에 의할 것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이 협약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4조에 의하여 접수한 서명 및 비준서
- (b) 제5조에 의하여 접수한 가입서
- (c) 제6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실시되는 일자
- (d) 제7조에 의하여 접수한 통고 및 통보
- (e)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폐기의 통고
- (f) 제8조 제2항에 의한 이 협약의 효력상실

제11조

1. 이 협약의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은 동등하게 유권적이며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 협약에 1953년 3월 31일 서명하였다.

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당사국 수 191 /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a)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 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

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

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

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1.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일 2000. 5. 25 / 미발효 / 당사국 수 1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그 조문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을 더 한층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유해하거나 침해가 될 것 같거나 아동의 건강 내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해가 될 것 같은 어떠한 작업의 수행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그리고 점증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아동이 이에 특히 취약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데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특별취약 집단이 더욱 큰 성적 착취의 위험에 처하여 있으며, 성적으로 착취되는 자들 중 여자아동이 지나치게 많음을 인식하고,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이용가능성의 증대에 대하여 우려하며,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와의 전투를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급, 수출, 전송, 수입, 의도적 보유 및 광고의 전세계적인 범죄화를 촉구한 당시의 결론을 상기하며, 정부 및 인터넷 산업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거는 저개발,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비정상적인 가족, 교육의 결핍,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성차별, 성인의 무책임한 성적 행태, 유해한 전통적 관행, 무력분쟁 및 아동의 거래를 포함하는 그 발생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관계자간의 전세계적인 유대관계의 강화 및 각 국가 차원에서의 법집행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아동의 보호 및 국가간 입양의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관하여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그리고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를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하고,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

피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및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의제,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의 그에 대한 결정 및 권고들을 이행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보호 및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 (a) 아동매매란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하여 아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모든 행위 내지 거래를 의미한다.
- (b) 아동매춘이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 (c) 아동포르노그래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은 그 행위지의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실행인가를 불문하고 형법상 완전히 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 (i)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다음의 목적을 위한 아동의 제공, 배달 또는 인수.
 - a. 아동의 성적 착취.
 - b. 영리를 위한 아동 장기의 이전.
 - c. 아동의 강제노동에의 종사.
 - (ii) 입양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위반하며 중개자로서 아동입양을 위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함.
- (b)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춘을 위한 아동의 제공, 획득, 조달 내지 공급.
- (c) 제2조에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또는 참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국법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법원리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일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자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준수하여 행동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가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범하여졌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자일 때;
 - (b)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
3.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토 내에 있고 당해 범죄가 자국 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졌음을 이유로 그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형사 관할권을 배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은 당사국간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인도가능범죄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국간에 추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이들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도가능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 당해 국가는 이 의정서를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범죄인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의 한도 내에서 이들 당사국간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인도가능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위와 같은 범죄는 발생한 장소에서 뿐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을 확립시킬 것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범하여진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었으나, 피요청당사국이 범인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당해 국가는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기관으로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상호간에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조사 또는 형사상 내지 범죄인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한 보유 증거의 수집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사법공조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 경우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국은 국내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a) 적절한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이 의정서상의 범죄를 범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구, 자산 및 기타 도구와 같은 제품;

(ii)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

(b)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a) (i)에서 규정된 제품 또는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라

- 는 요청을 실행하여야 한다;
- (c) 이러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된 건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한다.

- (a)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 (b)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 역할과 그 범위, 절차의 개시시간, 진행 및 그 사건의 처분을 통지한다.
- (c)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받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의 견해, 필요 및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한다.
- (d) 법절차 전반을 통하여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e)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 따라 취한다.
- (f)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및 이들을 위한 증인에 대한 위협 및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 (g) 사건의 처리 및 아동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확실하지 않다 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비롯한 형사조사의 개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을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룰 때 아동의 최선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상 금지된 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 및 심리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예방 및/또는 보호와 재화에 관여하는 자 및/또는 조직의 안전과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 및 그 악영향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국은 국제적 차원의 것을 포함하여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계획에 대한 공동체, 특히 아동 및 아동 피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사회로의 완전한 재통합 및 완전한 육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있는 자들로부터 차별없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 홍보물의 제작 및 유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과 관련된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예방,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간, 지역적 및 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당국, 국내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국제적 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사회로의 재통합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대한 아동의 취약

성에 기여하는 빈곤과 저개발과 같은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강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지역적,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기술적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12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 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4조

- 1.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

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모든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7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1. 7. 28 / 발효일 1954. 4. 22 / 당사국 수 136 / 대한민국 적용일 1993. 3. 3
유보 : 대한민국은 협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이 협약 제42조에 따라 선언한다. 선언 : 대한민국은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채약국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 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 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적용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2)

(a)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b)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중지된다.

(1)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어 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

주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중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 (무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3년 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 이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제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한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 내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제11조 (난민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기적으로 근무 중인 난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법적 지위

제1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않았을 경우일지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 등의 공업소유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거소를 가지는 체약국 이외의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상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3장 유급직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또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그 체약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못한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노동자 모집계획 또는 이주민계획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9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이외에 자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가지는 영역 내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4장 복지

제20조 (배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1조 (주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3조 (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시간외 노동, 유급휴가, 가내노동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것.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i)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ii)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 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핍한 자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또한 동종의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 외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국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제29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또는 과해질 조세 기타 공과금(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이외의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는 금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그 영역 내로 반입한 자산을 정주하기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 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 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 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협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4조 (귀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6장 실시 및 경과 규정

제35조 (국내 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a) 난민의 상태
- (b) 이 협약의 실시상황
-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36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37조 (중전의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및 1935년 7월 30일의 협약,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 10월 15일의 협약을 대신한다.

제7장 최종 조항

제38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 중 어느 일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 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1951년 7월 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적용지역 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 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후 또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의 양자 중 늦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관계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1조 (연방 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협

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제42조 (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16조(1),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6조 규정 외에는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발효)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4조 (폐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개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

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조 B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c)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d)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 (e)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본인 영어, 불란서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 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부속서

제1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 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의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제2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성인 난민의 여행증명서를 병기할 수 있다.

제3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한다.

제5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6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적으로 타국의 영역 내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7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8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국에 이를 반송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제13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대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게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3개월을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14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체재, 정주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자유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명의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1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4. 9. 28 / 발효일 1960. 6. 6 / 당사국 수 52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11. 20

모든 체약국들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이들 무국적자가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피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들만이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당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국적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제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 규칙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국제연합 난민구제 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 있어서
 - (ii) 그들이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당국에 의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 (iii) 그들에 관하여 하기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 (a) 그들이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제문서에 정의된 바의 그러한 범죄를 범한 사실
 - (b) 그들이 그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당해국 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실
 - (c) 그들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사실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공공질서의 유

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도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적자에 적용한다.

제4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신앙의 자유 및 자녀의 종교, 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그 국민에게 허여하는 바와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제5조 (본 협약과는 별도로 부여된 권리) 본 협약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본 협약과는 별도로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본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특정의 개인이 만약 그가 무국적자가 아니라면 문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제 요구조건(체류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이 무국적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무국적자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의 면제)

1.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2. 모든 무국적자는 3년 간의 거주 후에 체약국 영토 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무국적자들이 부여받은 바 이상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국적자에게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말한 권리와 이익 및 본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권리와 이익에 공히 적용된다.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외국인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문제된 외국의 국적을 전에 가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자국의 법률로 인하여 본조에 표현된 일반원칙의 적용이 금지되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국적자를 위하여 면제를 허용한다.

제9조 (잠정적 조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어떤 특정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또한 그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잠정적 조치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 국가안전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잠정적 조치를 체약국이 취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로 추방되고, 체약국 영토로 이전되어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그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체약국 영토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고 본 협약의 발효일자 이전에 거주의 목적으로 당해국에 귀환한 경우에 그러한 강제추방 전후의 거주기간은, 연속적 거주가 요구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의 연속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무국적 선원)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무국적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그들의 정착 특히 타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서 또는 임시 입국허가서의 발급에 관하여 동정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장 법적 지위

제12조 (신분)

1. 무국적자의 신분은 그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신분에 종속하는 무국적자의 기득 권리 특히 결혼에 부속되는 권리는 필요하다면 체약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정식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단, 문제의 권리는 만일 그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았다면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권리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계약국은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이에 관한 기타의 권리 및 동산과 부동산의 차용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바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허용한다.

제14조 (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 발명, 의상이나 설계, 상표 및 상호와 같은 공업소유권 및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에 관하여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다른 계약국 영토에 있어서 그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단체의 권리) 비정치적이며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계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용한다.

제16조 (제소권)

1. 무국적자는 모든 계약국 영토에 있어서 법원에 자유로이 제소할 수 있다.
2.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계약국 내에서 법률상의 원조와 소송비용보증금 (Cautio Judicatum solvi)의 면제를 포함하여 제소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의 평소의 거주지 국가의 국민에게 허용되는 대우를 허용받는다.

제3장 유급 고용

제17조 (유임직업)

1. 계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 내에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유임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2. 체약국은 유임직업에 관하여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 특히 노동보충계획이나 이민계획에 의거하여 그 영토에 들어온 무국적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가영업) 체약국은 자신을 위하여 농업, 공업, 수예업 및 상업에 종사하며 또한 상업 및 공업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9조 (자유직업)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며 그 국가의 관할 당국이 인정하는 면허장을 소지하고 또한 자유직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4장 복지

제20조 (배급) 주민 전반에 적용되며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전반적 분배를 규제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받는다.

제21조 (주택) 체약국은 주택에 관하여 그 문제가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공공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22조 (학교교육)

1. 체약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허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2. 체약국은 초등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에 관하여 특히 연구의 편의, 외국학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의 인정, 학비면제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한다.

제23조 (공공구호) 체약국은 자국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용한다.

제24조 (노동법률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용한다.

(a) 그러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행정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보상(보상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 작업시간, 초과근무, 유급공휴일, 가내작업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부인노동과 유년노동 및 단체교섭 이익의 향유

(b) 사회보장(취업중의 부상, 취업과 관련된 질병, 산모, 와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가족의 책임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계획의 보호를 받는 기타의 불의의 사고 등), 단 아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i) 취득한 권리와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ii) 거주지국의 국내 법령은 공공기금에서 전적으로 지불하는 급부나 또는 급부의 부분에 관하여 또한 통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된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취업 중의 상해나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기인되는 무국적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체약국 영토 외부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 또는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또는 장차에 체결될 협정의 이익을 무국적자에게 부여한다. 단, 다만 문제의 협정에 대한 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체약국은 어느 때에라도 전기의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시행될 유사한 협정의 이익을 가능한 한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무국적자의 권리행사가 그가 의뢰할 수 없는 외국당국의 원조를 통상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영토에 그가 거주하는 체약국은 그 자체의 당국이 그러한 원조를 그에게 부여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한 당국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발급되도록 한다.
3. 전기와 같이 교부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정식문서에 대신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갖는다.
4. 궁핍한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조건으로 하여 본 규정에서 말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는 적절한 금액이며 또한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과하는 그것과 동액이어야 한다.
5. 본 조의 제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를 해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신원증명서) 체약국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한 본 협정 부속서의 제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9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유사한 사정하에 국민에게 부과하는 또는 장차에 부과할 것 이외의 또는 그보다 고율의 관세, 수수료 또는 조세 등 여하한 명목의 것이라도 이를 무국적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어떠한 규정도 신원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적 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데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무국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제30조 (재산의 이전)

1.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영토 내에 반입한 재산을 정착의 목적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위치 여하를 불문하며 또한 그들의 입국이 허가된 타국에 있어서 그들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데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31조 (추방)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에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이유 이외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2. 이러한 무국적자의 추방은 타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상당한 국가안전상의 이유가 다른 조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국적자는 자신을 소명할 증거를 제시하며 또한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상소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세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무국적자가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허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 (귀화) 체약국은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체약국은 귀화절차를 신속화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의 수수료 및 비용은 가능한 한 인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6장 최종 조항

제33조 (국내 법령의 통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약국이 본 협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할 법령을 통고한다.

제34조 (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 중 일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제35조 (서명, 비준, 가입)

1.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본부에 1955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하기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a) 국제연합 회원국가
 - (b)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및
 -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초청을 발송한 국가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본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열거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지역적 적용 조항)

1. 어느 국가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상 당해 국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때에 발효한다.
2. 그 후에는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며 또한 이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통고 접수일의 90일 후 또는 관계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의 양자 중 늦은 쪽을 취한다.
3. 본 협약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적용되지 않는 영토에 관하여는 관계 각 국가는 헌법상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토국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리

한 영토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37조 (연방 조항) 연방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a) 연방 입법당국의 입법권에 속하는 본 협약 조문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그 정도까지 연방국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b) 연방의 헌법제도상 입법행위를 취할 채무가 없는 하방(下邦)주 또는 현의 입법권 내에 속하는 본 협약의 제조항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그러한 조항을 국가의 관계당국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통고한다.
- (c) 본 협약의 연방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발송된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하여 동 규정이 입법 또는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 범위를 표시하는 연방국의 법률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8조 (유보)

-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과 제33조 내지 제42조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행할 수 있다.
-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유보의 철회에 관한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 (효력의 발생)

- 1. 본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2.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폐기)

-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2. 이러한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관계 체약

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36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체약국은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이 동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일자의 1년 후에 모든 영토에 적용함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41조 (개정)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전기의 요청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권고한다.

제42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35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36조에 의거한 선언 및 통고
- (c) 제38조에 의거한 유보 및 철회
- (d) 제39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 (e) 제40조에 의거한 폐기 및 통고
- (f) 제41조에 의거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각자의 정부를 위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그의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 등본은 모든 국제연합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된 비가맹국에 교부한다.

부속서

제1항

1. 본 협약 제28조에 규정한 여행증명서는 1954년 9월 28일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소지자가 무국적자임을 표시한다.

2. 동 증명서는 적어도 2개 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영어나 불어이어야 한다.

3. 체약국은 본 부속서에 첨부된 여행증명서 양식의 채택이 요망됨을 고려한다.

제2항

교부국의 통용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은 부모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성인의 여행증명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3항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과하는 수수료는 내국민의 여권에 대한 최저수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특별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최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작성한다.

제5항

증명서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도록 한다.

제6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소지자가 다른 영토에 합법적인 거주를 정하지 않고 증명서 교부당국이 있는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 전기한 교부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신 증명서의 교부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구 증명서를 교부한 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2.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은 자국의 정부가 교부한 여행증명서의 효력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니며 그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효력의 갱신 또는 연장 또는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7항

체약국은 본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8항

무국적자가 가려고 원하는 국가의 관할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가한 경우 및 사증을 요하는 경우에 동 무국적자가 그 소지자인 증명서에 사증을 첨부한다.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행선지 영토까지의 사증을 취득한 무국적자에게 통과사증을 교부할 것을 약속한다.
2. 전기 사증의 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인 여권사증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항

무국적자가 다른 체약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책임은 제28조의 규정과 조건에 의거하여 무국적자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영토의 관할당국에 있다.

제12항

신 증명서를 교부하는 당국은 구 증명서를 회수하여 동 증명서를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국에 이를 반환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증명서를 회수 파기한다.

제13항

1. 본 협약 제28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여행증명서는 반대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교부국 영토 내에 재입국할 권리를 소지자에게 하여준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지자가 증명서를 교부하는 국가에 귀환하는 기간은 무국적자가 여행할 것을 신청한 국가가 재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전기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은 증명서 소지자에게 그 영토로부터의 출국 또는 영토에의 귀환에 관하여 규정될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항

오직 제1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부속서의 제 규정은 체약국 영토에의 입국, 통과, 거주 및 정주와 동 영토로부터의 출국에 대한 조건을 규제하는 법령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항

증명서의 교부 또는 이의 기재는 소지자의 신분(특히 국적에 관하여)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제16항

증명서의 교부는 소지자에게 교부국의 외교 또는 영사당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전기의 당국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사실상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14.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90. 12. 18 / 미발효 / 당사국 수 15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외국인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 내포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의 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위준칙, 노예제도에 관한 각종 협약을 상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보호인 점을 상기하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의 각종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의 국제기구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달성한 업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내지 양자간 단위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협정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각국의 태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수립을 회구하고, 무엇보다도 출신국에 없다는 점과 취업국에 체재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종종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려하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특히 가족 이산으로 인하여 이주는 외국인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고려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하의 외국인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근로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에 현혹되어 그 같은 노동력을 찾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의지하기가 단념될 것이며, 나아가 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일정한 권리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가 당사국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촉진될 것임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협약에서 기본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달성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적용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이주의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1. “외국인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2. (a) “월경노동자”란 그 상거소를 인접국에 두고 통상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b) “계절노동자”란 그의 작업이 성질상 계절조건에 의존하며, 일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수행되는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c) “선원”이란 어부를 포함하여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

- (d) “해상시설노동자”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 (e) “순회노동자”란 어느 한 나라에 상거소를 갖고 직업의 성격상 단기간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 (f) “특정사업노동자”란 고용주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수행되는 특정 사업에만 근무하도록 취업국에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 (g) “특별취업노동자”란 다음과 같은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 (i)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주에 의하여 취업국에 파견된 자.
 - (ii) 전문적, 상업적, 기술적 또는 기타 고도의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
 - (iii) 취업국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하여 한정된 일정 기간동안 임시적 또는 단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특수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그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취업국을 출국하여야 할 자.
- (h) “자영노동자”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활동에 종사하며, 통상 혼자 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얻는 외국인노동자 및 취업국의 법률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자영취업을 인정받은 여타의 외국인노동자.

제3조

이 협약은 다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국제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자국 영토 외로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일반 국제법 또는 특정한 국제협정이나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
- (b) 개발계획 및 기타 협력계획에 참가하도록 국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그 영역 외에서 고용되거나 파견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취업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협정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자.
- (c) 출신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가로 거주하는 자.
- (d)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 당사국의 해당 국내법 또는 발효 중인 국제협약에 의하여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 학생 및 연수생.
- (f) 취업국에 주거를 정하여 유급활동에 종사할 것을 허가받지 못한 선원 및 해상시설노동자.

제4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족”은 외국인노동자와 혼인한 자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피부양 자녀 및 해당 법률 또는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가족으로 인정되는 여타의 피부양자를 말한다.

제5조

이 협약의 적용상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 (a) 취업국의 법률 및 그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그 국가로의 입국, 체류, 유급활동에의 종사가 허용되면,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b) 이 조 (a)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이 협약의 적용상;

- (a) “출신국”이란 해당자의 국적국을 의미한다.
- (b) “취업국”이란 외국인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국가 중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 “통과국”이란 해당자가 취업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출신국이나 상거소국으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2부 권리의 비차별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3부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제8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 제3부에서 인정되는 기타의 다른 권리와 양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조

어떠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1. 어떠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란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이 조 제3항에 지적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로 석방되어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b)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c) 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로서 그 나라의 시민에게도 부과되는 것.

제12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
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 종교 또는 신념
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로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
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
한받을 수 있다.
4. 이 협약의 당사국은 적어도 일방이 외국인노동자인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
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다.

제13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에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
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관계국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c) 전쟁선전의 금지
 - (d)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제14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정, 주거, 서신 또는 기타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

다.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할 경우, 이들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개인, 사인집단 또는 기관 등 그 누구에 의한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하여도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당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시에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히 통고받는다.
6.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외국인노동자나 그 가족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시설에 수용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 억류되어 있을 때,

- (a)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 또는 억류 사실과 그 이유가 출신국 또는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에 지체없이 통고되어야 한다.
- (b) 해당자는 위의 당국자와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당국자에 대한 해당자의 통신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그도 위의 당국자로부터의 통신을 지체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 (c) 해당자는 이상의 권리와 관련국가간에 적용 가능한 해당 조약에서 비롯되는 위의 당국자와 연락하고, 면회하고, 법률적 변호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권리 등을 지체없이 고지받아야 한다.

8.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이 그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이 절차에 참가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하다면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9. 위법하게 체포되거나 억류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2. 기소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이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국 또는 취업국에서 억류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능한 한 기결수 또는 재판계류 중인 피억류자와는 분리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4. 법원이 과한 형벌로서 구금이 집행 중일 때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대우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교정 및 사회복귀에 두어야 한다. 소년범은 성인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 연령과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5. 억류 또는 구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족의 면회에 관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6. 외국인노동자가 자유를 박탈당할 때마다 해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가족, 특히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게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취업국 또는 통과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상황의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8.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이주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억류된 경우 그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 또는 소송상의 권리, 의무의 결정시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인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질과 이유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방어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받을 것이며,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한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무료로 제공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심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겐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단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떠한 외국인노동자나 그 가족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재차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하며,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위, 특히 체류와 취업의 권리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제20조

1. 어떠한 외국인노동자나 그 가족도 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외국인노동자나 그 가족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체류허가 또는 취업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퇴거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의무 이행이 체류허가나 취업자격의 요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신분증명서, 입국, 체류, 거주 또는 정착을 허가하는 서류 또는 취업허가증을 압수, 파괴 또는 파괴하려 함은 위법이다. 그 같은 서류의 합법적 압수시에는 상세한 수령증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나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 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의무적인 아닌 경우라도 만약 요구를 하면 결정은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이유가 진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결정 이전 또는 늦어도 결정시에는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4.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이 발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자기가 추방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사건이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 국가안보상의 긴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 기간 중 당사자는 추방결정의 집행정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이미 집행된 추방결정이 나중에 무효로 되었을 때, 당사자는 법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전의 결정은 그가 당해 국가로 재입국하는 것에 방해사유가 될 수 없다.
6. 추방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출국 전 또는 후에 임금청구권, 그에게 귀속될 다른 권리 또는 현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추방 결정의 집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결정의 대상인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

족은 출신국 이외의 국가로의 입국을 모색할 수 있다.

8.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되는 경우 추방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는 자신의 여행경비의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다.

9. 취업국으로부터의 추방 그 자체로는 임금수령권과 그에게 귀속될 다른 권리를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획득한 어떠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23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출신국 또는 그 나라의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의 경우 당사자는 이 권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고지받으며, 추방국 당국은 이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외국인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 (a)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
 - (b)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
 - (c)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추구할 권리.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27조

1. 사회보장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당국은 이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법률이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기초로 하여 그 급부와 관련된 해당자의 출연금액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

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1.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이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체류가 종료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과 저축을 이전시키고, 관련국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재 및 소지품을 이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 (b) 입국 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그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사항.

2. 당사국은 위의 정보의 보급 또는 고용주, 노동조합 및 기타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요구하면 그러한 적절한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통과국과 취업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나 그 국가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을 정규화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상황을 정규화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하며, 이 협약의 제6부에 규정된 건전하고 공평한 국제적 이주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하지도 아니한다.

제4부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의 권리

제36조

취업국에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 제3부에 규정된 권리에 추가하여 제4부에 규정된 권리도 향유한다.

제37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그들의 입국과 특히 체류와 그가 종사할 유급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물론 취업국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접촉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취업국은 사정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체류나 취업허가에 대한 영향이 없이 일시출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때 취업국은 특히 출신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와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일시출국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국에서 단체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1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나라의 선거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법률에 따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1. 당사국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쪽에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 희망 및 의무가 이를 통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절차 또는 기관의 수립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기관에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취업국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43조

1. 외국인노동자는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b) 직업안내 및 취업소개의 이용.

(c)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d) 주택의 이용. 이에는 사회주택계획과 임차료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e)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f) 협동조합 및 자주관리사업에의 참여, 단 이것이 그들의 이주상의 지위 변경을 의미

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g)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에 의하여 허용된 체류조건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신장시켜야 한다.

3. 취업국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주가 그들을 위하여 주택이나 사회, 문화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협약 제70조의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에 그 설비에 관하여 해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제44조

1. 당사국은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가 그의 배우자나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 및 미혼의 피부양 미성년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외국인노동자의 다른 가족에 대하여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

1.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은 취업국에서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b)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c) 각각의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d)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언어

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은 물론 관련 국제협정 및 관세동맹에의 참여로 인한 의무를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이 인정한 유급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개인 소지품 및 가재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출입국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 (a)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부터의 출국시.
- (b) 취업국으로의 최초 입국시.
- (c) 취업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시.
- (d)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최종 귀국시.

제47조

1. 외국인노동자는 그의 수입과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취업국으로부터 출신국 또는 기타 국가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송금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 관계국은 송금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1.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련 이중과세협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국에서의 수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우된다.

- (a)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 이상으로 고액이거나 부담이 되는 조세, 관세 또는 어떠한 명칭의 부과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 (b)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여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명칭의 조세감면이나 조세공제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입 및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9조

1. 국내법에 따라 체류와 취업에 별개의 허가를 요하는 취업국은 외국인노동자의 유급활동 중사 허가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의 체류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 외국인노동자는 취업허가 또는 유사한 허가의 기간 만료 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체류허가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노동자에게 다른 유급활동을 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적어도 그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체류허가가 철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1.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혼인의 해소시 취업국은 가족의 재결합에 근거하여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부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취업국은 그들이 그 국가에 이미 체류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가족에게는 출국 전에 취업국에서의 용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취업국의 입법 또는 그 국가에 적용되는 양자 및 다자조약에 의하여 그러한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 및 취업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취업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외국인노동자는 취업허가서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을 전제로 하여, 남은 취업허가기간 동안 대체취업, 공공근로계획에의 참여 및 재훈련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1. 외국인노동자는 취업국에서 다음의 제한과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어떠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도;
 - (a)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국내법으로 규정된 경우 제한적 범주의 취업, 직능, 역무, 활동으로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 (b) 그 국가 외에서 취득한 직업상의 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활동의 자유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러한 자격증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취업허가가 기한부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취업국은 또한;
 - (a) 2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유급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 (b) 자국민 또는 국내법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이 목적상 자국민으로 취급되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활동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5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유급활동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취업국은 취업을 위하여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노동자의 자영업 종사가 허가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노동자가 취업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3조

1. 무기한 또는 자동연장이 가능한 체류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얻은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은 이 협약 제52조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국은 유급활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에 대하여 유급활동 종사 허가의 취득에 있어서 취업국 입국을 신청하는 다른 노동자보다는 유급활동 종사 허가취득에 있어 우선권의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4조

1.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의 조건과 이 협약 제25조와 제27조에 규정된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외국인노동자는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향유한다.

- (a) 해고로부터의 보호.
- (b) 실업수당.
- (c)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계획에의 참가.
- (d) 이 협약 제52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실업 또는 다른 유급활동 종료시 대체취업의 기회.

2.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취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5조

유급활동에 종사를 허가받은 외국인노동자는 그 허가에 부가된 조건하에서는 그 유급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6조

1. 협약 제4부에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협약 제3부에 규정된 보호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방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추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인도적 고려사항과 그가 취업국에서 이미 체재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부 특별한 유형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57조

협약 제5부에 규정된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특별한 유형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제3부에 규정된 권리와 아래에서 수정된 경우를 제외한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향

유한다.

제58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a)에 정의된 월경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월경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 권리의 부여는 그의 월경노동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9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b)에 정의된 계절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서 연중 일부만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그의 취업국 영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절노동자라는 그 국가에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상당 기간 자국 영역 내에서 취업하였던 계절노동자가 관련 양자 및 다자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할 가능성과 그 국가로 입국신청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우선권을 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60조

이 협약 제2조 제2항 (e)에 정의된 순회노동자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국가에서 순회노동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1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f)에 정의된 특정사업노동자와 그 가족은 제43조 제1항 (b) 및 (c), 제43조 제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45조 제1항 (b) 및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권리를 제외한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정사업노동자가 그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당해 고용주에 대하여 관할권

을 갖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시행 중인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적절하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 점에서 권리의 부정이나 지급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협약 제47조의 규정 및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해하지 아니하며, 관련 당사국은 특정사업노동자의 임금을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에서 지불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2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g)에 정의된 특별취업노동자는 협약 제43조 제1항 (b) 및 (c), 제43조 제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52조, 제54조 제1항 (d)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별취업노동자의 가족은 제5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h)에 정의된 자영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 제52조와 제5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영노동자의 경제활동 종료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그 자체로 그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국에서의 체재 또는 유급활동의 종사에 대한 허가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며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제6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79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인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그 점에 관하여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그 관련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는 물론 관련 공동체에 대한 이주의 영향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65조

1.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구를 유지한다. 그 기능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그 같은 이주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 (b) 그 같은 이주와 관련된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
- (c) 특히 고용주, 노동자 및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률, 규정과 이주에 관한 타국과의 협정,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 (d)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출발, 이동, 도착, 체류, 유급활동, 일시출국과 재입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절차,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관세, 통화, 세금,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적절한 지원.

2.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영사업무 및 다른 용역의 제공을 적절히 촉진하여야 한다.

제66조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취업할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권리는 아래의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 (a)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 (b) 관계국간의 협정에 근거한 취업국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 (c)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2. 관련 당사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설립되어 당사국의 공공당국에 의한 허가, 승인, 감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리상, 예정 고용주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도 그러한 업무수행이 허용될 수 있다.

제67조

1. 관련 당사국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체류 또는 취업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비정규적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질서

있는 귀환에 관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하여 출신국에서의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그들의 항구적인 사회적, 문화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

1.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 (b)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 (c)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비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근절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취업에 따라 고용주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9조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당사국이 관련 국내법 및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정규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들의 입국 관련 사정, 취업국에서의 체류기간, 특히 그의 가족상황에 관한 것 등 기타 관련사항에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70조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이 적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

1.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망한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체가 출신국으로 용이하게 송환되도록 한다.
2.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이 협약규정과 합치되는 관련 국내법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7부 협약의 적용

제72조

1. (a) 이 협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설치한다.
(b)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시에는 10명, 그리고 41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이후에는 14명의 고매한 인격을 가지며, 공정하고,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2. (a)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명단으로부터 당사국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출신국과 취업국을 포함하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으로는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b)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3.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선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적어도 각 선거일 4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그 지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을 적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피지명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늦어도 각 선거일 1개월 전에 피지명자의 경력을 첨부하여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선출된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를 근무한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당사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b) 위원회의 4인의 추가위원의 선거는 협약이 41개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때 선출된 추가위원 중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고, 이들 위원의 명단은 당사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c) 위원회 위원은 재지명되면 재선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전문가를 추천한 당사국은 잔여 임기 동안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신규임명은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액수와 조건의 보수를 받는다.
9.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73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및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이 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관련된 이주의 흐름상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적용될 추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그 보고서를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74조

1.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논평을 해당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논평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각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적절한 시기에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과 보고서의 검토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권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가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심사에 있어 사무소가 제공하는 논평과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와의 협의 후, 다른 전문기구나 정부간 국제기구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보고서 일부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 기관의 활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국제노동사무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자문역으로 참가할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표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특히 보고서의 심사와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에 근거한 그 자신의 고려 사항과 권고를 포함하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이 협약의 당사국, 경제사회이사회 및 국

제연합 인권위원회,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75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3.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합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76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타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하여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 검토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이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한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당사국은 위원회에도 이를 통지한다.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국에 전달하며, 이에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여졌는가, 현재 진행 중이든가 또는 이용 가능한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 (b) 접수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양당사국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당사국에 대한 통보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로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회부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구제절차의 적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 항 (c)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e)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 (f) 위원회는 이 항 (b)에 따라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지적된 관계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이 항 (b)에 지적된 관계당사국은 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동안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위원회는 이 항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이 항 (d)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d)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에 관한 관련사실을 진술한다.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과 구두진술의 기록은 이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관계 당사국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모든 경우 보고서는 관계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에 의한 선언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그는 선언문의 사본을 타당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도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77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개인적 권리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심리적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검토하지 아

니한다.

- (a)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된 바 있었거나,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단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개인에게 실효적인 구제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선언을 하였고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접수국은 사건과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서면의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개인 또는 그 대리인과 관계 당사국으로부터 제출된 모든 정보를 참고로 하여 이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6.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7.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과 개인에게 자신의 견해를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제1항상의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된다. 이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그는 그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선언철회의 통고가 접수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개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78조

이 협약 제76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설립문서나 이들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 또는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적용되며, 당사국들이 그들간에 시행 중인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에 호소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부 일반 조항

제7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국을 규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0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각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1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의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된 좀더 호의적인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a) 당사국의 법률 또는 관행.
- (b)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시행 중인 모든 양자 또는 다자조약.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해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2조

이 협약에 규정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그 권리 중 일부를 포기시키거나 단념시킬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여하한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계약을 통하여 이 협약상 인정된 권리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 당사국은 이 원칙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자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이나 당해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설치된 여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청구가 심사되고 결정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보장할 것.

제84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9부 최종 조항

제85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86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7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2. 협약 발효 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제88조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의 일정 부분의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제3조의 경우 이외에는 특정 범주의 외국인노동자를 적용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제89조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3. 그러한 폐기는 이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도 당사국을 이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그 검토의 계속을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당사국의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그 국가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문제의 검토도 시작할 수 없다.

제90조

1. 이 협약 발효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이 요청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바로 각 당사국에게 이 제안을 검토하고 표결할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자신에게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이 규약의 규정과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된다.

제9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시 각국이 행하는 유보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로 송부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낸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그는

이를 모든 국가로 통고한다. 이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92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두 개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으로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중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의 구성에 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중 어느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을 통하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시 이 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국도 같은 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지로서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3조

1. 이 협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한 정보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5.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제11의정서에 의한 개정 내용 반영)

서명일 1950. 11. 4 / 발효일 1953. 9. 3 / 제3의정서(1970년 9월 21일 발효), 제5의정서(1971년 12월 20일 발효), 제8의정서(1990년 1월 1일 발효), 제11의정서(1998년 11월 1일 발효)에 의한 개정 / 당사국 수 41

유럽심의회 가맹국인 서명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고, 그 선언이 그 속에 선포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유럽심의회 목적의 가맹국간의 보다 강한 결함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추구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유지와 보다 큰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준수에 의하여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을 재확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및 법의 지배에 관한 공통의 유산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정부로서, 세계인권선언 속에 규정된 일정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1절 권리와 자유

제2조 (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3조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 b. 군사적 성격의 직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직무.
 -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직무.
 -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직무.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 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불량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의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b. 자신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

- d. 자기에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제7조 (죄형법정주의)

1.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15조 (비상시의 의무 예외)

1. 전쟁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어떠한 계약국도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이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어떠한 체약국도 자신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이 언제 중지되어 협약 규정이 재차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 (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

제19조 (재판소의 설립)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함)를 설립한다. 이 재판소는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제20조 (판사의 수) 재판소는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제21조 (판사의 자격)

1. 판사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국내의 고위 판사직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이어야 한다.

2.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소에서 근무한다.

3. 판사는 임기 중 그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상임직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활동에 종

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 (판사의 선출)

1. 판사는 각 계약국별로 계약국이 지명한 3명의 후보 명부로부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2. 새로운 계약국이 가입하는 경우와 임시적 공석을 채우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3조 (임기)

1. 판사의 임기는 6년이다.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중의 2분의 1의 임기는 3년이다.
2. 최초의 임기 3년의 판사는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다.
3. 판사 절반의 임기가 가능한 한 매 3년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총회는 후속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판사의 임기를 6년이 아니라 9년 이하 3년 이상이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한 가지 이상의 임기가 해당되도록 총회가 위의 항을 적용하는 경우, 임기의 배정은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한다.
5.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판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판사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6. 판사의 정년은 70세이다.
7. 판사는 교체될 때까지 직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은 계속하여 관여한다.

제24조 (해임)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3분의 2의 다수결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서기국 및 법률비서) 재판소는 서기국을 두며, 그 기능과 조직은 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소는 법률비서의 조력을 받는다.

제26조 (전원재판부) 판사 전원회의는,

- a. 3년 임기의 재판소 소장과 한 명 또는 두 명의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 b. 지정된 임기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설치한다.
- c. 재판소 소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 d. 재판소 규칙을 채택한다.
- e. 재판소 서기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부서기를 선임한다.

제27조 (위원회, 소재판부 및 대재판부)

1.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재판부 및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재판부를 둔다. 각 소재판부는 지정된 임기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소재판부와 대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만약 해당 판사가 없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면 사건 당사국이 선택하는 자가 판사로 참여한다.

3. 대재판부는 재판소 소장, 재판소 부소장, 소재판부 각 재판장 및 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정된 기타의 판사를 포함한다. 사건이 제43조에 따라 대재판부에 회부된 경우, 판결을 내리는 소재판부의 판사는 대재판부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단 소재판부 재판장과 관련 당사국 측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위원회에 의한 각하선언) 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전원일치로써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제소를 각하하거나, 사건목록에서의 삭제 선언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29조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소재판부의 결정)

1. 제28조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소재판부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개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소재판부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심리적격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결정된다.

제30조 (대재판부에 대한 관할권의 포기) 소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소재판부에 의한 사건해결이 재판소의 선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중의 일방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소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언제라도 대재판부로 관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31조 (대재판부의 권한) 대재판부는,

- a.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사건으로 소재판부가 제30조에 따라 관할권을 이양한 사건이나 제43조에 따라 이에 제출된 사건을 판단한다.
- b.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을 심리한다.

제32조 (재판소의 관할권)

1. 재판소는 제33조, 제34조 및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된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33조 (국가간 사건)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4조 (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다음과 같은 제소는 다루지 아니한다.

- a. 익명의 제소 또는,
- b.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바 있었으나,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제소.

3. 제34조에 의한 개별적 제소로서 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소는 심리 부적격을 선언하여야 한다.

4. 재판소는 이 조에 따라 심리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제소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제36조 (제3자 소송참가)

1. 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 출신 체약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 소장은 재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국이나 원고가 아닌 개인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심리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제소의 각하)

1. 재판소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 사건목록에서 제소를 삭제할 수 있다.

- a. 원고가 그 제소를 계속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그 사안이 해결된 경우 또는,
- c.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재판소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를 사건목록에 회복시킬 수 있다.

제38조 (사건의 조사 및 우호적 해결)

1. 재판소가 제소의 적격을 인정한다고 선언하면, 재판소는,

- a. 당사자의 대표들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유효한 행동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처리에 맡긴다.

2. 제1항 b호에 따라 수행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우호적 해결의 성립)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재판소는 사안 및 그 해결에 대하여 간략한 서술만을 하는 결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사건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 (심리의 공개 및 자료 접근)

1. 재판소가 예외적인 경우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재판소 소장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기국에 보관된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1조 (정당한 구제조치)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상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소재판부의 판결)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제43조 (대재판부로 회부)

1. 예외적인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최종판결)

1. 대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2. 소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적이다.
 - a.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대재판부에 회부하도록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또는,
 - b. 대재판부의 회부 요청이 없이,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 c. 대재판부의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요청을 각하하는 경우.
3. 최종판결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45조 (판결 및 결정의 이유)

1. 제소적격 여부에 대한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46조 (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1. 계약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재판소의 최종판결은 그 집행을 감독하는 각료위원회로 송부된다.

제47조 (권고적 의견)

1.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고적 의견은 협약 제1절 및 의정서에 규정된 자유권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는 재판소나 각료위원회가 협약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절차의 결과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료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표결을 요한다.

제48조 (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이 제47조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권고적 의견의 이유)

1.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하여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권고적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의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각료위원회에 통보된다.

제50조 (재판소의 비용) 재판소의 경비는 유럽심의회가 부담한다.

제51조 (판사의 특권 및 면제) 판사는 직무수행 도중에 유럽심의회 규정 제40조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3절 일반 규정

제52조 (사무총장의 문의)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으면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협약 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3조 (기존 인권의 보장)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의 법률 또는 체약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따라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각료위원회의 권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각료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배제) 체약국은 특별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에 일방적 신청을 통하여 회부할 목적으로 체약국간에 발효 중인 조약, 협약 또는 선언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56조 (적용 영역)

1. 이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국가도 비준시 또는 이후 언제라도 유럽심의회

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접수 후 30일째부터 통고에서 지정된 영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후 언제라도 그 선언이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이 협약 제34조에 따라 개인, 비정부조직 또는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재판소가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57조 (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서 기탁시 자국 영역에서 당시 유효한 국내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일반적 성격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어떠한 유보도 관계법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 (폐기)

1. 체약국은 당사국이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서에 포함된 6개월간의 예고 후에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다른 체약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체약국이 이행하였어야 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같은 폐기가 해당 체약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유럽심의회 가맹국에서 제외된 체약국은 같은 조건하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도 제외된다.

4. 협약은 제56조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선언된 영역에 관하여도 위 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제56조 (서명 및 비준)

1.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 가맹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서의 기탁 이후 발효한다.
3. 그 이후에 비준하는 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에 발효한다.
4.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은 모든 유럽심의회 가맹국에게 협약의 발효, 비준한 체약국명 및 그 후에 행하여진 모든 비준서의 기탁을 통고한다.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본 단일본으로 작성되어, 이는 유럽심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16. 미주인권협약

채택일 1969. 11. 22 / 발효일 1978. 7. 18 / 당사국 수 25

이 협약에 서명한 미주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개인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체제를 이 지역에서 공고히 할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특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권리들은 미주국가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협약에 의한 국제적 보호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들은 미주기구 헌장, 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및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세계적 및 지역적인 여타의 국제문서에서 재확인되고 정비되었음을 고려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와 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그리고 제3차 미주간 특별회의(196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권리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미주기구 헌장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하였고, 미주간 인권협약은 이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기구의 구성, 권한 및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점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국가의 의무와 보호되는 권리

제1장 일반 의무

제1조 (권리를 존중할 의무)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러한 권리와 자유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사람”이란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제2조 (국내법적 효과) 제1조에서 지적된 권리 또는 자유의 행사가 입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아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이들 권리 또는 자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3조 (법인격에 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생명권)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임신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만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되어 그러한 형벌을 규정한 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따라 서만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형벌의 적용은 현재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3. 사형은 이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다시 도입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5. 사형은 범행시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신부에 계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사형은 그러한 청원이 담당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는 동안에는 집행될 수 없다.

제5조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형벌 또는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처우되어야 한다.

3. 형벌은 범죄인 이외의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피고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그의 지위에 적합한 별도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
5.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별법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에 알맞는 처우를 받는다.
6.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재적응을 기본목표로 한다.

제6조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나 비자발적인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하며, 이는 노예무역과 여성매매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역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제노역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형벌의 이행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강제노역이 재소자의 존엄성이나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3.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a)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선고한 형벌 또는 공식적인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소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의무. 그러한 작업 또는 의무는 공공기관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어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아니된다;
 - b)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법률이 규정한 국가적 의무;
 -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의무; 또는
 - d)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제7조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4. 구금된 자는 자신의 구금사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신속하게 고지받아야 한다.

5. 구금된 자는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타 관헌 앞에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소송절차의 계속을 침해함이 없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이 그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단하고, 체포나 구금이 불법적인 경우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러한 위협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을 가진 당사국에서, 이러한 구제조치는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러한 구제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

7. 어느 누구도 채무로 인하여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원칙은 부양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내리는 명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민사상, 노동, 재정상 또는 기타 성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전에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으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 계속 중 모든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번역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b)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의 상세한 통지;
- c) 자신의 변론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수단;
- d)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거나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자유로이 그리고 비공개로 상의할 권리;
- e)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불가양의 권리;
- f) 법원에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감정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출석시킬 방어권;
- g)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유죄인정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 h)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

3. 피고인의 유죄자백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상소할 수 없는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5. 형사소송절차는 정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조 (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은 부과될 수 없다. 범죄행위 이후의 법률이 보다 가벼운 형의 부과를 규정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혜택을 받는다.

제10조 (보상을 받을 권리) 오심에 의한 확정판결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고백하거나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위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가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나, 사후적 책임부과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b)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3. 표현의 권리는 신문용지, 무선방송 주파수 또는 정보의 보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규제남용과 같은 간접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사상과 의견의 전달과 유포를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4.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오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접근을 규율할 목적에서만 법률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4조 (반론권)

1. 법률로 규율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대중일반에게 유포된 부정확하거나 공격적인 발언 또는 생각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일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론하거나 정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이나 반론은 이미 초래된 다른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3. 명예와 신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출판사, 신문,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회사는 면제나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질 사람을 둔다.

제15조 (집회의 권리) 비무장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노동, 사회적, 문화적, 체육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에 대한 결사의 권리의 행사금지를 포함하여 합법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가정에 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내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적령기의 남녀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부양할 권리가 인정된다. 단 그 요건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비차별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의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평등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 오직 아동의 최선 이익만을 기반으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5. 법률은 서출자와 적출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18조 (성명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이름과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법률은 필요하다면 가명 사용에 의해서라도 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을 규율하여야 한다.

제19조 (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게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국적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재산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그러한 사용과 향유를 사회의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다.

2. 공공의 이용이나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정한 형식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고리대금 및 기타 형태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2조 (이전과 거주지 자유)

1. 합법적으로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안에서 이전과 거주지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3. 위의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도덕, 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인정된 권리의 행사는 공익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5.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없으며, 국적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6. 합법적으로 이 협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만 추방될 수 있다.

7.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인하여 추적받고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비호를 구하고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국가가 자신의 출신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될 수 없다.

9. 외국인의 집단추방은 금지된다.

제23조 (공무담임권)

1. 모든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향유한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공적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것;
- b) 진정으로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되는 것. 선거는 보통 및 평등선거에 의

하여,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2. 법률은 연령, 국적, 거주, 언어, 교육, 민사적 및 정신적 능력 또는 형사소송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선고를 근거로 하여서만 위 조항에서 언급된 권리와 기회의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

제24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관련국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단순하고 신속하거나 여타의 효율적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침해가 공무수행 중인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a) 그러한 구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국가의 법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담당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결정되도록 보장한다;
- b)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 c) 구제가 부여되면 담당기관이 그러한 구제를 집행할 것을 보장한다.

제3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26조 (점진적 발전) 당사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기준에 내재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 성격의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4장 보장의 정지, 해석 및 적용

제27조 (보장의 정지)

1. 당사국은 자국의 독립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공적인 위협 또는 기타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상황의 위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와 기한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가 국제법상 자국의 다른 의무와 충돌되지 아니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위 규정은 다음 조항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격에 관한 권리), 제4조(생명권), 제5조(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제6조(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제9조(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7조(가정에 대한 권리), 제18조(성명에 대한 권리), 제19조(아동의 권리), 제20조(국적에 대한 권리), 제23조(공무담임권), 또는 이들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법적 보장.

3. 정지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은 적용이 정지된 조항, 정지하는 이유 및 정지의 종료 예정일을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연방 조항)

1. 당사국이 연방국가인 경우, 그 당사국의 중앙정부는 자신이 입법 및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는 주제에 관하여 협약의 모든 규정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방국가의 소속 주가 관할권을 갖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소속 주의 담당기관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당사국들이 연방이나 다른 형태의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연방협정이나 다른 협정이 새로 조직된 국가 내에서 이 협약상의 기준을 지속시키고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 (해석에 관한 제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a) 당사국, 단체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나 행사를 억압하거나, 또는 이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함을 허용하는 것;
- b)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나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
- c) 인간성에 고유하거나 정부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나오는 기타의 권리나 보

장을 배제시키는 것; 또는

- d)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과 기타 동일한 성격의 국제문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배제시키거나 제한하는 것.

제30조 (제한의 범위)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나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일반의 이익을 이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 설정된 목적에 알맞는 경우 이외에는 협약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적용될 수 없다.

제31조 (기타 권리의 인정) 제76조와 제7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기타의 권리와 자유는 이 협약의 보호체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장 개인의 책임

제32조 (의무와 권리간의 관계)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및 인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각 개인의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모든 사람의 안전 및 일반복지의 정당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2부 보호수단

제6장 담당기관

제33조 다음의 기관들은 이 협약의 당사국들이 행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 a) 미주인권위원회는 이하 “위원회”; 그리고
- b) 미주인권재판소는 이하 “재판소”.

제7장 미주인권위원회

제1절 구성

제34조 미주인권위원회는 고매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 위원회는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대표한다.

제36조

1.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추천한 후보명부로부터 미주기구 총회에 의하여 개인 자격으로 선출된다.
2. 각 회원국 정부는 후보를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 후보들은 추천국이나 미주기구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3인이 추천된 경우 적어도 1인의 후보는 추천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제37조

1.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단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 선거 직후 총회는 추첨에 의하여 그 3인의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국가 출신의 2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

제38조 정상적인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위원회의 공석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미주기구 상임이사회에 의하여 충원된다.

제39조 위원회는 자체의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를 미주기구 총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자체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는 미주기구 사무국의 적절한 전문부서에서 제공한다. 이 부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제2절 기능

제41조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 a) 미주 인민들 사이에 인권의식을 발전시킨다;
- b)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과 헌법규정 체계 내에 인권을 위한 발전적인 조치는 물론 이들 권리의 준수를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회원국 정부에게 권고를 한다;
- c)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는 연구나 보고서를 준비한다;
- d) 회원국 정부에게 인권 분야에서 그들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한다;
- e)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문의에 대하여 미주기구 사무국을 통하여 답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국가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 f) 이 협약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에 기하여 청원과 기타 통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 g) 미주기구 총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2조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기준에 내재된 권리의 증진을 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그들이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미주 교육과학문화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각각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와 연구서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내법이 이 협약 규정의 실효적인 적용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3절 권한

제44조 어느 개인 또는 단체, 또는 1개 이상의 미주기구 회원국에서 법인으로 인정된 비정부 기관은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위반을 고발하거나 통지하는 청원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1. 모든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상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통보를 접수하고 조사할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된 통보는 위원회의 위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의

하여 제출되는 경우에만 수락되고 검토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수락하지 아니한다.

3. 권한인정에 관한 선언은 무기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4. 선언서는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되고, 사무국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46조

1. 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나 통보를 수락한다.

- a)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상의 구제가 시도되어 완료되었을 것;
- b)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원이나 통보가 제출되었을 것;
- c) 청원이나 통보의 사안이 다른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에 계류 중이 아닐 것; 그리고
- d) 제44조의 경우, 청원서는 이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업, 주소 및 서명을 포함할 것.

2. 이 조의 제1항 a)와 b)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침해받았다고 주장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이 적법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b)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국내법에 의한 구제를 거부당하였거나,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또는
- c) 위의 구제절차에 따른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있었던 경우.

제47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의하여 제출된 청원이나 통보를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a) 제46조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청원이나 통보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의 침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c) 청원이나 통보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거나 분명한 규칙위반이라는 점을 청원인 또는 국가의 진술서가 보여주고 있는 경우; 또는

- d) 청원이나 통보가 위원회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전에 검토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 경우.

제4절 절차

제48조

1. 위원회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나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a) 위원회가 청원이나 통보의 심리적격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주장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국가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또한 청원이나 통보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그 국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각 사건의 상황에 알맞게 위원회가 결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b) 정보가 접수된 다음 또는 정보가 접수되지 아니한 채로 정해진 기한이 지난 다음, 위원회는 청원이나 통보가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기록을 종료시키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한편 추후에 접수된 정보나 증거를 근거로 청원이나 통보가 심리부적격 또는 규칙위반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 d) 기록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인지하에 청원이나 통보에 진술된 사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국은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e) 위원회는 관련국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구두진술을 듣거나 서면진술을 받아야 한다.
- f)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건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심각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심리적격의 모든 형식요건을 갖춘 청원이나 통보만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국가의 사전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8조 제1항 f)에 따라서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원인과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출간을 위하여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달성된 해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건의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

제50조

1.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사실을 설명하고 자신의 결론을 진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위원도 보고서에 개별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48조 1항 e)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행한 서면 및 구두진술은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2. 보고서는 관련국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국가는 이를 자유로이 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고서를 전달할 때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1조

1. 위원회의 보고서가 관련국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관할권이 수락된 재판소로 위원회나 관련국에 의하여 사건이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들의 재적과반수 투표를 통하여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쟁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적합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검토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해당국에게 부과된 조치들을 취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설정된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위원들의 재적과반수 투표를 통하여 해당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미주인권재판소

제1절 구성

제52조

1. 재판소는 미주기구의 회원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덕망을 갖추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국의 법률 또는 그를 후보로 추천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최고의 사법적

가능행사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 중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출된 7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2. 2인의 판사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

제53조

1. 재판소의 판사는 미주기구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추천한 후보단으로부터 협약 당사국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각 당사국은 추천국이나 미주기구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 3인까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인의 후보가 추천된 경우 그중 최소한 한 명은 추천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제54조

1. 재판소의 판사는 6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3인의 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종료된다. 선거 직후 그 3인의 판사는 총회에서의 추천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판사는 전임자의 임기를 채운다.

3. 판사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그러나 판사는 자신이 심리를 시작하여 아직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임무를 계속 행하며, 이 목적에 있어서는 새로 선출된 판사에 의하여 대체되지 아니한다.

제55조

1. 판사가 재판소에 제출된 사건의 당사국 국민인 경우에도, 그는 당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보유한다.

2. 사건의 심리를 맡은 판사 중 1인이 사건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그 사건의 다른 당사국은 재판소에 근무할 자를 선임하여 특별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사건의 심리를 맡은 판사 중 사건 당사국들의 국민이 없는 경우, 각 당사국들은 특별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특별판사는 제5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협약의 다수 당사국들이 한 사건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국가들은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 5명의 판사가 재판소 업무활동의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제57조 위원회는 재판소에서의 모든 사건에서 출정하여야 한다.

제58조

1. 재판소는 미주기구 총회에서 협약당사국이 결정한 장소에 소재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과반수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면 관련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재판소는 미주기구 어느 회원국의 영역에서도 소집될 수 있다. 재판소의 소재지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로 변경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자체의 서기를 임명한다.

3. 서기는 재판소 소재지에 그의 사무소를 두며, 재판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9조 재판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재판소 서기의 지시하에 재판소의 독립성과 충돌되지 않는 한 모든 점에서 미주기구 사무국의 행정적 기준에 따라서 활동한다. 재판소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 서기와의 협의하에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60조 재판소는 자체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재판소는 자체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2절 관할권과 기능

제61조

1. 당사국과 위원회만이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는 제48조와 제50조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2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합의가 없어도 바로 재판소의 관할권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선언은 무조건적으로나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다. 이 선언은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고, 그는 기구의 다른 회원국과 재판소 서기에게 그 사본을 전달한다.

3. 재판소의 관할권은 재판소에 제기된 협약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포괄한다. 단, 사건의 당사국들이 위 조항에 의한 특별선언이나 특별합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제63조

1. 재판소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침해된 피해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재판소는 적절한 경우 그러한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나 상황의 결과가 시정되어야 하며, 피해당사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2. 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 및 사람에게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소는 심리 중인 사건에 적절하다고 보는 잠정조치를 채택한다. 재판소에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소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제64조

1. 미주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이나 미주국가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다른 조약들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 제10장에 열거된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서 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미주기구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국내법이 위에 언급된 국제문

서들과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당해국에 제시할 수 있다.

제65조 미주기구 총회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재판소는 지난해의 재판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 각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소는 국가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적절한 권고와 함께 명기한다.

제3절 절차

제66조

1. 재판소의 판결에는 판결이유가 기재된다.
2.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판사들의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어떤 판사도 자신의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소는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요청은 판결의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자신이 당사국인 사건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손해배상을 명시한 판결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의 집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에 따라서 관련국에서 집행된다.

제69조 사건 당사국은 재판소의 판결을 통고받으며, 판결은 협약 당사국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제9장 공통 규정

제70조

1. 재판소의 판사와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시부터 임기 중 국제법에 따라서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이들의 공식 임무수행 중에는 이에 필요한 외교적 특권을

누린다.

2. 재판소의 판사나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임무수행 중 제시한 결정이나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재판소의 판사나 위원회의 위원의 지위는 각각의 규정에 규정된 판사나 위원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와도 양립될 수 없다.

제72조 재판소의 판사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각의 규정에 정하여진 형식과 요건에 따라 보수와 여행경비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보수와 여행경비는 미주기구의 예산으로 책정되며, 또한 그 예산은 재판소와 사무국의 경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는 자체 예산을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미주기구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한다. 총회는 예산에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다.

제73조 총회는 각각의 규정에 규정된 조치를 정당화시킬 근거가 있는 경우, 오직 위원회나 재판소의 요청에 기하여만 위원회의 위원이나 재판소의 판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미주기구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되고, 재판소의 판사의 경우에는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제3부 일반 및 임시 규정

제10장 서명, 비준, 유보, 개정, 의정서 및 폐기

제74조

1. 이 협약은 미주기구 회원국의 서명과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1개국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협약은 발효한다. 그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사무총장은 협약의 발효를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제75조 이 협약에 대하여는 1969년 5월 23일 서명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에 따른 유보만이 허용된다.

제76조

1. 이 협약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당사국은 직접, 재판소나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총회로 제출할 수 있다.

2. 개정은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다.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은 이들 국가가 자신의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77조

1. 제31조에 따라 협약의 보호체제 내에 다른 권리와 자유를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목적으로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의정서를 당사국들에 의한 고려를 위하여 총회로 제출할 수 있다.

2. 각 의정서는 발효되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그의 당사국간에만 적용된다.

제78조 1. 당사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1년간의 사전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폐기통고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는 이를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그러한 폐기는 협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기통고의 발효일 이전에 해당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제11장 임시 규정

제1절 미주인권위원회

제79조 이 협약이 발효하면 사무총장은 미주기구의 각 회원국에게 90일 이내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추천된 후보의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차기회기 30일 이전에 이를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전달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위원은 제79조에 지적된 후보명부로부터 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최다득표를 하고 회원국 대표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투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최소득표를 한 후보가 차례로 배제된다.

제2절 미주인권재판소

제81조 이 협약이 발효하면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90일 이내에 미주인권재판소의 판사후보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추천된 후보의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차기회기 30일 이전에 이를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제82조 재판소의 판사는 제81조에 지적된 후보명부로부터 총회에서 협약당사국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최다득표를 하고 당사국 대표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재판소의 모든 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투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국들이 정한 방법에 따라 최소득표를 한 후보가 차례로 배제된다.

17.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채택일 1981. 6. 27 / 발효일 1986. 10. 21 / 당사국 수 53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으로 명명된 이 협약의 당사국인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립을 규정하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예비초안"의 준비와 관련하여 1979년 7월 17일부터 20일 라이베리아의 먼로비아에서 개최된 제16차 정기회기에서 채택된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결정 115(XVI)를 상기하며; "자유, 평등,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표임"을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을 고려하며; 아프리카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근절시키고, 아프리카 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달성하기 위한 협조와 노력을 조정 및 강화하고,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 제2조의 엄숙한 서약을 재확인하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 개념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생각을 고취하고 성격지우는 이들의 역사적 전통상의 덕목과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를 고려하며;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점이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정당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또한 인민의 권리의 현실과 존중이 필연적으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또한 모든 사람의 의무행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앞으로는 개발에 대한 권리에 특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보편성에서는 물론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인민들이 아직도 자신의 존엄성과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정책, 시온주의를 철폐시키고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와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해방을 달성할 의무를 인식하며; 아프리카단결기구, 비동맹국가운동,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선언, 협약 및 기타문서들에 포함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 및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부여되었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굳게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권리와 의무

제1장 인간과 인민의 권리

제1조 이 헌장의 당사국인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은 헌장에 규정된 권리, 의무와 자유를 승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이 헌장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2. 모든 개인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인간은 불가침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

제6조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현행의 조약, 법률, 규정 및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호소할 권리;
 - b)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c)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 의하여 변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방어권;
 - d) 공정한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에 규정이 없던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벌도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개인적인 것이며, 범죄인에 대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

제8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표명하고 자유로이 실행할 자유가 보장된다. 법과 질서를 따르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모든 개인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모든 개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제29조에 규정된 연대의무를 전제로 하여 어느 누구도 특정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필요한 제한, 특히 국가안보, 안전, 보건, 윤리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규정된 제한에만 구속된다.

제12조

1. 모든 개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출국하고,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안보, 법과 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제한에만 구속된다.
3. 모든 개인은 박해를 받는 경우 타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그 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하고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헌장의 당사국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만 그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5. 외국인의 대량추방은 금지된다. 대량추방이란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제13조

1.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자국의 공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은 법 앞에 만인의 엄격한 평등에 따라 공공재산과 역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권리는 공공의 필요성이나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1.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이다.

제18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단위이며 기초이다. 가정은 이의 신체적 건강과 도덕을 돌보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국가는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인 가정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보장하고, 국제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4. 노인과 장애인에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이들은 동등한 존중을 받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제20조

1. 모든 인민은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의심할 수 없는 불가양의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추구한다.
2. 식민상태에 있거나 억압받고 있는 인민은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어떠한 수단에 호소하여서라도 지배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인민은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해방투쟁에 있어서 이 현장 당사국들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1.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부와 천연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약탈을 당한 경우 빼앗긴 자는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3.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처분은 상호존중, 공평한 교환 및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아프리카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들의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처분권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5.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자국민이 그들의 천연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국제적 독점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외국의 착취를 제거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22조

1.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동등하게 향유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발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1. 모든 인민은 국내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확인되고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에 의하여 재확인된 연대와 우호관계의 원칙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2. 평화, 연대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이 헌장 제12조에 의하여 비호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인은 출신국이나 헌장의 다른 당사국에 대한 파괴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b) 자국의 영토가 이 헌장의 다른 당사국의 인민들에 대한 파괴나 테러활동의 기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교수, 교육 및 출판을 통하여 헌장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해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장에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임무를 담당하는 적절한 국내기구를 설립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2장 의무

제27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가정, 사회, 국가 및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공동체와 국제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 집단의 안전, 도덕과 공통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제28조 모든 개인은 차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존중과 관용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모든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가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호하고 가정의 융화와 존중을 위하여 노력한다; 항상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부양한다;
2.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한다;
3.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4. 사회적 및 국가적 연대, 특히 국가적 연대가 위협을 받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강화시킨다.
5.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법률에 따라 이를 방위하는 데 기여한다;
6.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

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7. 관용과 대화와 협의의 정신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일반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8.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어느 단계에서나 아프리카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제2부 안전 조치

제1장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제30조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단결기구 내에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1조

1. 위원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문제에 있어서 높은 도덕성, 고결성, 공정성 그리고 능력을 갖춘 가장 명망있는 아프리카인 중에서 선출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적 경험을 가진 자를 특히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근무한다.

제32조 위원회는 동일한 국가 출신을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의 위원은 이 헌장 당사국들의 후보자 명부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34조 이 헌장의 각 당사국은 2인까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는 헌장 당사국 중 어느 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 국가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그중 1인은 자국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1.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이 헌장의 당사국들에게 늦어도 선거 4개월 전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청한다.

2.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추천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늦어도 선거 1개월 전에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 통보한다.

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들 중 4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되며, 다른 3인의 임기는 4년으로 종료된다.

제37조 첫 번째 선거 직후 아프리카단결기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의장은 제36조에 지적된 위원들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한다.

제38조 위원회의 위원들은 선거 후 그들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그 자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한 위원이 일시적 부재 이외의 사유로 그의 임무수행을 중지하였다는 것이 나머지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자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3.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경우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공석이 된 위원을 교체한다.

제40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하여야 한다.

제41조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서기를 임명한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역무를 제공한다. 아프리카단결기구는 직원과 역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42조

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7인이다.
4.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5. 사무총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는 심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결권도 없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의 위원들은 임무수행시 아프리카단결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정규예산에 위원회 위원들의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위원회의 임무

제45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특히:
 - a) 인간과 인민의 권리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며, 세미나와 심포지엄 및 회의를 조직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기구들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한다;
 - b) 이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과 규칙들을 고안하고 작성한다;
 - c)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데 관련된 다른 아프리카 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2. 이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보호를 확보한다.

3. 당사국, 아프리카단결기구의 기관 또는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아프리카 기구의 요청시 이 현장의 모든 조항을 해석한다.
4.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가 부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위원회의 절차

제46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청취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의 통보

제47조 이 현장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현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통보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통보국은 통보국에게 사건을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보내야 한다. 이 서면은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절차규칙과 이미 실시된 구제 또는 이용 가능한 구제방법에 관한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 피통보국이 최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양자협상이나 다른 평화적 절차를 통하여 양 관련국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국 중 일방은 이 사건을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관련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49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현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장,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및 관련국에 통보함으로써 그 사건을 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국내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구제의 이행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위원회에 명백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이후에만 회부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

1. 위원회는 관련국들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 관련국들은 위원회에 출두하여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관련국들과 기타 출처로부터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한 후, 그리고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우호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시도한 이후, 위원회는 제48조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관계와 그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국들에게 송부되고,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도 통보된다.

제53조 보고서를 송부할 때 위원회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 유용하리라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회는 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각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통보

제55조

1. 위원회의 서기는 각 회기 전에 현장 당사국들의 통보 이외의 통보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어느 통보가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될 것인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2. 위원들이 단순다수결로 결정하면,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된다.

제56조 위원회가 접수한 제55조에 규정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되어야 한다. 통보가:

1. 작성자는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통보가 작성자를 밝히고 있는 경우;
2. 아프리카단결기구 현장 또는 이 현장과 양립될 수 있는 경우;
3. 관련국가, 그의 기관 또는 아프리카단결기구에 대하여 비하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으

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4.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정보에만 근거하지는 않은 경우;

5. 국내적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국내적 구제를 완료한 후에 송부된 경우;

6. 국내적 구제가 완료된 이후 또는 위원회가 그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리고

7. 국제연합 헌장이나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의 원칙 또는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국들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제57조 실제적인 검토 이전에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통보를 관련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

1.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보가 일련의 심각하거나 대규모적인 인간과 인민의 권리침해 사실을 보여주는 특정 사건들과 명백히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특정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이 경우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위원회에 대하여 사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와 권고를 담은 사실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적절하게 인지한 긴급사건은 위원회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는 상세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1. 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가 달리 결정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결정시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서 검토된 후 위원장에 의하여 출간된다.

제4장 적용 가능한 원칙

제60조 위원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아프리카 문서의 규정, 국제연합 헌장,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간과 인민의 권리 분야에서 국제연합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택한 기타 문서는 물론, 이 헌장의 당사국이 회원국인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내에서 채택된 다양한 문서들의 규정으로부터 착안을 얻는다.

제61조 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이 명백히 승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일반적으로 법으로서 수락된 관습,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은 물론, 판례와 학설 등을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고려한다.

제62조 각 당사국은 헌장에서 승인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이 헌장이 발효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제63조

1. 이 헌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헌장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이 헌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의 과반수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지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3부 일반 규정

제64조

1.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헌장의 발효 후 헌장의 관련조문에 따라 선출된다.
2.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설립 3개월 이내에 아프리카단결기구 본부에서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
되, 일년에 최소한 1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제65조 이 헌장의 발효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헌장은 그 국가가 비준
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66조 필요한 경우 특별 의정서나 협정이 이 헌장 규정을 보충할 수 있다.

제67조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각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당사국이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이 헌장은 개정
될 수 있다. 개정안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정식으로 통지되고, 발의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
회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만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그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은 당사국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개정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서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수락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에 발효한다.

[부록 2] 문화권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

1. 문화자유권 전문가 인터뷰

[순서]

- 강내희(중앙대학교 영문과 교수) - 표현의 자유
- 임옥상(미술가, 문화우리 대표) - 표현의 자유
- 조영각(독립영화협회) - 표현의 자유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표현의 자유
- 정태춘(음악인) - 표현의 자유
- 이지상(영화감독) - 표현의 자유
- 김인규(미술작가) - 표현의 자유
-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 표현의 자유
-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학술 사상의 자유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종교활동의 자유

강내희(중앙대학교 영문과 교수) - 표현의 자유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문화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아직도 생소하죠. 다른 권리들-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등등-은 이야기 하는데 문화적 권리라는 말은 잘 안하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자리인식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없느냐, 있죠.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어요. 세계인권선언과 관련해서 나온 국제규약이 두 개가 있는데 국제규약 중에서 사회적 경제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어요. 그 국제규약에 문화적 권리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권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권리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하고 있는 거죠. 그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것을 우리사회가 제대로 받아안거나 연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문화적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적 권리라는 것은 이것이 문화적 권리니까 이대로 하라라고 정해진 것은 아직 없어

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 사회는 나름대로 문화적 권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사회에서의 문화적 권리는 아마도 표현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표현의 자유는 그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죠. 예를 들면 한국은 대한민국역사에서 50-60년대 역사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는데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았죠.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선 사상의 자유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없이도 성립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 없는 사상의 자유는 물질적 기반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서로 다른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가진 사실은 표현한 이후라야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상의 자유는 완성되지 못해요. 마음속에만 있는 사상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사상의 자유 자체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도 많이 제약을 받아왔죠. 최근 들어와서 사상의 자유가 다르게 독자적인 가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사회가 80년대말 이후부터 90년대 들어오면서 소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영화라던가 다양한 표현의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성풍속도, 도덕적 풍속도, 사회적 풍속도들이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행동양태들이 나타났고 그런 양태들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혹은 예술가들 중심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소함이라던지 생경함 때문에 제약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그 새로움을 제약을 하려하죠. 그 때문에 새로움이라는 부분에 있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열렸지만 표현의 자유 부분은 새로운 검열의 대상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란물, 폭력물과 관련한 표현의 문제들이 그렇죠. 음란, 폭력의 표현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 문화적 권리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되었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만이 문화권의 쟁점이 아니라 문화권에는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법에 문제도 쟁점이겠죠.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법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자제들의 대중적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그 확산 보급된 기자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문화적 표현의 기대가 제한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의 권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또 달리 보면 삶의 질과도 연관되고요. 반면에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란가 제도는 따르지 못한 상황에 있죠.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 권리를 누릴 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즉 문화적 삶의 범주들을 고안해 내느냐의 문제인데요.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념정리를 하자면 자연과 대비되는 것이지요. 자연 상태와 인간적 삶의 가능성이 문화지요. 그런 점에서 문화적 삶을 달리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은 사회적 영역 속에서 충족되어야 하죠. 문화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자유), 아까 말했듯이 문화적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 계급적으로 아래에서 사회적 공공성에 의해서 문화적 표현 수단을 혹은 문화적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평등)의 보장이 필요하지요. 동시에 또다시 문화적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라던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박물관 접근 등-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은 스스로 문화주체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스로 자기 문화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 결정권은 대단히 공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를 달리 말하면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데, 즉 많은 사람이 고급문화의 혜택을 보는 것이나 문화관광부나 공무원 혹은 전문가들을 일반주민이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살게하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문화적 생산수단의 접근의 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삶의 주체로서 살게 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참여를 들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는 시민 각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삶의 주체로서 문화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죠. 또 동시에 삶의 질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문화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지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 차이가 있지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의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서울과 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그래도 영화관도 꽤 있고 이것저것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지만 산간 지방은 영화 한편 보려해도 변변한 영화관이 없어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 고작인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러한 환경의 열악함의 개선이 없이는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등등은 문화적 권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이

지요.

물론 이때 기존에 말해지는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 과 같은 말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요. 그때 문화권이라는 것도 고작해야 땅따먹기 식의 권리 개념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해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문화인데 그런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모든 것과 통하는 것이 문화인 셈이지요.
따라서 문화는 기존에 있었던 권리들과도 연관되는 셈이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문화라는 말과 사회라는 말은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는 것이 인
간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 혹은 사회는 교
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라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모습으로 보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큰 가치를 나누어보면 정치, 경제, 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체계이며 경제는 이윤을 중심으로 혹은 상품의 교환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며 문화는 규범들의 가치나 의미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분석하고 사고할 때에는 물론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야기 하면 항상 정치와 경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화권이 정치, 경제에서 말하는 권리와 중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안에서만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의 단위를 넘어서는 정부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정치와 관련된 부분(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경제와 관
련된 부분(통상관리부 등), 문화와 관련된 부분(여성, 교육, 문화관광부 등), 정보통신부, 농
림부 등등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모든 부처에 문화적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의 세 층위가 있다고 보고 그것들이 서
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성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현의 자유란 오래된 것인데요.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이나, 포르노냐, 에로물이나, 예
술이나 등등의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성행위의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것이 성표현의 자유
지요. 성표현은 성행위를 하는 파트너들의 사적인 행위들이 대부분인데 예술은 그러한 사
적인 것도 항상 표현하죠. 그런데 실제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예술적
으로 표현될 때는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성행위는 사적으로만 보존되
고 관리되어야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논의될때에는 가
족의 유지와 관련되고, 가족의 유지는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이고 또한 사회 구성체의 문
제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인간 도덕과 윤리와 정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

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중요한 인간사이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해서 공개되면 그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에 대한 판단과 가치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요. 사회적 합의는 정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지요. 즉 오늘날 우리가 성표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성표현의 자유도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물에 대한 규정이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성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 어떤 것이 음란물이나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시점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포르노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소개한 그런 음란물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성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들어있는 책이나 영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성행위의 장면을 세분해서 객관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한 에로물이 무엇인지, 포르노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등급위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풍속도를 조망할 수 있는 집단들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김민규선생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곤 하지요. 옛날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 주니까 표현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로인해 영화가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요. 표현의 자유 제한이 예술창작, 문화창작과 생산에 첨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지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때 새로운 성풍속도를, 개방된 성풍속도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방향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옥상(미술가, 문화우리 대표) - 표현의 자유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들이 일반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문화권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먹고살기 위해 확성기를 확 틀고 장

사를 하고 여기저기 크게 간판을 붙이는 것 등이 당사자에게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나 걸어다니기 힘들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다른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힘들지만, 문화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문화권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일상이나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생존하고 먹고 살만하면, 결국 충족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로 문화권이 제기된다. 바로 문화권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나 사회는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거리나 공공장소 여타의 다른 공공분야에서 문화권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 문화의 개인적인 사유화에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의 문제이다.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막혀 있다. 각종 법이나 불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으로 공공 문화에 대한 참여와 접근 등을 막아버리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이나 권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고 문화를 소수들이 사유화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문화를 삭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술 분야의 경우 신학철 선생님의 경우 작품 내용상의 문제로 한정하여 개인적인 문화권만을 생각하고 있는 데, 정원이나 공원, 거리 등 공공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 문화권은 바로 일상적인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문화권은 인권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인권의 개념으로만 묶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과거 인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인권만을 말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권이 전반적인 권리로 확장되고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하게 된 것 같다. 신체의 구속이나 자유만을 생각하는 방어적 인권개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개념으로 인권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데, 바로 인권의 개념을 문화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종래의 소극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다고 하면 문제의 해결이 단순해 질 수가 있다. 문화권의 관점에서 보고, 사고를 한다면 이런 한계들을 벗어나 지금보다 나은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이라는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눈 것은 너무 정치적인 흐름에서 나온 것 같다. 논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알겠지만,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구분은 아닌 것 같다. 문화는 공유와 나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혼자 즐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댓가를 바라면서 문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문화는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근대에는 개인이나 주체를 너무 중심에 놓고 사고를 했다. 문화를 생산자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정리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개인과 집단,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문화의 개념은 사회와 개인의 불균형, 사회가 개인을 제한하거나 개인이 사회보다 강조되는 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문화도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권의 분류에도 이런 관점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창작의 자유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기 위해 나온 것 같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80년대 신학철 선생님의 작품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만 접근을 하였다. 만약 창작의 자유라고 한다면,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만이 가능한 사회였다. 학자나 작가, 미술가 등에게도 책 속에서의 자유, 원고지 속에서의 자유, 캠퍼스 속에서의 자유만이 존재하였고, 이것도 위태위태하였다.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였다. 개인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나? 인권의 개념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창작의 자유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적 개념이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

국가보안법이나 관습법을 이야기하는 지금 사회에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리고, 걱정이 앞서서 문화와 관련하여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버리고 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없다고만 한다. 예전의 있었던 기준들만을 가지고 문화를 다루는 것은 사회적 평균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국가나 사회에게 침해받지 않았나?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련 법 자체가 장르적으로 분할 되어있고 통합적이지 못 하다. 문화 주체들이 주체가 되지 못 하는 법 체계이다. 사회적으로 통합된 상상력을 키울 수가 없다. 한 사회의 예술가들이 캠퍼스나 원고지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에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가 되는 사회이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있어야 한다. 한 예술가가 사회에서 성장하게 되기까지 사회는 많은 것은 예술가에게 주는 것인데, 그 능력에 대한 활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고민들이 없다. 단지 생계를 보장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들에 대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참여 정부의 경우 문화정책 관련된 보좌관이 없다. 다른 분야에는 전문 보좌관들이 있다. 왜 없냐고 물어보면, 문화계나 문화관광부가 소신 있게 하라고 안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분야들은 소신 있게 하지 말라는 전문 보좌관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자신에 역량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사회가 일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개개인들이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들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돈 되는 일들만 하려고 한다.

조영각(독립영화협회) - 표현의 자유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란 쉽게 얘기하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억압되어 왔

었기 때문에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했고 사업을 해야 했었죠. 즉 문화권이 라는 게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를 당하는 것 이었죠. 지금까지는 질적으로 문화가 그런 식 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저항문화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러다가 탄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 이 오히려 놀 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막상 명석 깔아놓으면 못 논다고 놀 줄 아는 분 위기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사회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되 어야 하고 순수하게 노는 것조차도 사회 맥락화에서 이야기 되어야지 정말 문화를 향유하 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권이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권리들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러브호텔의 경우 성적 자유의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 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섹스하 려면 러브호텔 가야하는 것이고. 그런데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서 구 성화 되어 있고 사창가처럼 분류되어 있지요. 물론 러브호텔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 큼 결혼과 독립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나 보장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지요.

70, 80년대 억압되어있던 문화들이 90년대 넘어오면서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라던가 창작의 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공허하게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연대나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5년전하고 10년전하고 다른 것이 예전에는 탄압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독립영화 같은 경 우에도 독립영화를 창작하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독립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사 람은 별로 없어요. 독립영화 하는 주변인들 정도나 독립영화를 보고 즐기는 정도지요. 게 다가 독립영화를 만드는 30대들도 독립영화는 재미없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겠다 하니,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화가 산업의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 되다 보니까 멀티플렉스 생기고 고급극장 생기고 그 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권리들은 넓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급관계에 따른다는 것 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내고 즐기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공 간이 생기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에는 고급문화공간들이 생기지요. 오히려 지층문화층, 즉 고등학생들이라던가 대학생들 저소득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한갓 극장밖에 없지요. 즉, 자본주의가 돼서 권리는 신장되었지만 돈을 내고 즐겨야 되는 공간들 밖에 없다는 것 이고, 격국은 공통적인 문화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의 확장이 필요하 지요. 예전에는 예술이던 문화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경영지 원, 창작지원이라던지 제작지원이라던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관객의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관객들이 형성이 될 때 문화예 술의 저변이 넓혀지고 창작풍토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창작지원과 같은 부분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창

작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권리들—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던가—의 부분에서의 제도는 아직도 미약하지요.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 대학생들이던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죠. 너무 문화적 지원이 창작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용자 중심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금기시 했던 영역들을 제도의 영역들로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한상영권이 생겼는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어쨌건 영화관이 상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물론 그것까지 지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체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지요. 즉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령 청소년 보호 논리에 의해 성인문화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활성화 이전에 논의를 활성화해서 어떤 모색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이던 성인문화이던간에 그것들이 음성적으로 이야기 되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영화의 경우를 보면 18세 관람가 영화가 별로 없는데요. 물론 이것이 상업적인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성인문화가 음성화 되어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예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업적인 환경의 형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것은 성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기들을 깨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성인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인문화에 대한 혹은 다양한 문화의 층위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화적인 조건들은 계급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으로 입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청소년들이라던지 연령에 맞는 프로젝트들이라던지 수용자 운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라던가 이런 영역들이 너무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계층별로 형성되는 문화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문화기획자들이 있고 문화생산자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 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죠. 창작의 경우 정부의 검열도 그렇지

만 자본의 검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죠. 제한 상영관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틀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이 풀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결정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한 상영관의 경우에는 제한 상영관에 걸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즉 일반상영관에서 틀 수 있는 영화 제한상영관에서 틀 수 있는 영화 혹은 틀 수 없는 영화에 대한 경계들이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극장 자체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고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이 극장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지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한상영관에서 포르노까지 갈 수 있게 포르노를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어야 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적인 영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연다거나 비주류 담론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정책의 검열도 심각하지만 자본의 검열은 더 심각하죠. 예를 들어 18세 영화가 나오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렵고 웬만하면 15세 영화 만드는 게 쉽고 또 수지타산도 맞죠. 또한 무엇보다 15세 영화를 만들면 극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코메디 영화를 성인이 같이 본다던가 성인의 성적 수위가 보장되는 성인 영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결과적으로는 성인영화도 없고 어린이 영화도 없고 오로지 표준화된 청소년 영화들만 양산되고 있죠.

○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침해 사례와 문제를 풀기위한 실천 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상영관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수용자를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가 미비하지요. 문화적 인프라는 확충되었는데 그것을 향유하는 관객층이 없다는 사실은 관객층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 입안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해결해야 할 점은 청소년보호법이라던가 영화법에 있는 음란물 대한 법적 조항들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제한상영관의 문제와 맞물려서 성인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법들이 너무 억압적이었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성인문화를 당당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권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의 가치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또한 성인문화와 더불어 어린이나 노인들과 같은 소외된 계층들의 문화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일도 중요하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제도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한에서 보장이 되어야겠죠. 제한상영관의 경우 만화 같은 영화를 틀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죠. 나아가서는 제한상영관이 폐지되어야 해요. 또한 제한상영관의 경우 지금 멀티플렉스에 제한상영관이 못 들어가요. 즉 일반상영관이 있는 자리에 제한상영관이 못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건 제한상영관이 극장으로서 인정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제한상영관의 철폐는 성인영화를 보는 관객뿐만 아니라 성인문화가 음성적으로 향유되지 않고 보다 공론의 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마련되도록 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나아가 그런 작업은 아래의 문화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는 비교적 넓혀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법이 변화하는 체제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작품, 작품생산자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걸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어떤 작품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열린 테두리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더불어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의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정보사회의 다양한 기준에서 갈수록 쟁점화 되는 것이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가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쉽게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는, 또한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품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침체화 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불법복제라는 것이 뒤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량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어떤 저작물에 접근해서 상위하는 것들, 예로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 주변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책을 빌려서 읽는 것들은 사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였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저작물에 접근한다는 자체가 복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는 것들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성, 문화에 대한 창의를 위한 권리를 제약할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저작권자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지식이나 문화가 형성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랬을 때 저작권이 저작자와 사회의

공공성, 혹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균형이 어디에 맞추어 저야 하는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겠죠. 나아가서는 그 균형 지점을 잡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도 문화나 지식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시장을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디지털 정보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타 상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지요. 사회적으로 문화나 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지나치게 저작권에 기대있다면 다른 공공적인 정책을 통해서 창작자를 지원하면서도 그 문화생산물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향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좀 더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문화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학술 연구 영역에서 저작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자신들의 저작물로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계가 보장되시니까요. 설사 저작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학술영역에서 창작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더라도 생계문제가 걸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학문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실제로 많이 상업화 되어 있는 영화나 음악과는 달리, 학술에 대한 영역에서는 비판이 적습니다. 물론 출판사는 오히려 저작권을 강조하지만요. 일반 학술연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보다 많이 읽히고 인용되고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데 강점이 있지 저작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서도 공공적으로 일부의 창작자들의 생계가 보장이 된다거나 혹은 음악을 창작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국민적인 여러 인프라를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후원금을 받는다면, 공연을 한다면-저작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이 자신이 창작한 생산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막고 있는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논의될 때 그 논의 지형을 보면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법적인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그것을 향유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구매자로서의 권리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데요. 원래 지식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일반 소유물과는 달리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지적재산권에 보호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정한 기한을 두었다는 자체가 일종의 정책인 셈인데요. 그것은 한 측면에

서는 문화창작을 활성화 하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문화에 의한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나온 것인데요.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은 한 사회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체계가 권리자의 사적인 이익과 그것을 통해서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적이익을 보호하려는 것 중심으로 현재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적인 권리와 대등한 또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개념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접근과 개념, 혹은 공공성의 개념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권이라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누구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돈을 내고든 혹은 그 외의 방식이던-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침해사례와 문제를 풀기위한 실천 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텔레비전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든 마찬가지인데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라던가 방식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영화를 규제하는 방식과 TV를 규제하는 방식이 다른 것 처럼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개념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과거에는 표현의 주체가 한정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영화창작자라던가 만화가라던가요.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창작 주체가 되고 있죠. 즉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주체는 더 광범위해졌다고 말할 수 있죠. 거꾸로 이야기할 하자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직접적인 창작자에게 가해졌다면 물론 간접적으로 수용자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일차적인 제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창작자였죠. 하지만 인터넷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를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주체이니깐요. 따라서 그만큼 인터넷에서 표현의 규제 정책은 보다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죠.

다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보자면 하나는 표현의 파급력의 측면에서, 모든 콘텐츠는 아니지만, 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큼 규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섞여있는 측면이 있죠. 방송과 신문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데 인터넷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로 사적이고 어느 정도로 공적인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인터넷은 일반 매체가 일대다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쌍방향의 토론이 가능하게 하지요. 즉,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을 보자면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처럼 채널 하나를 돌리면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규제가 가해졌다면 인터넷은 개개인들이 토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상호이해와 같은 자치적인 측면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가장 적을 수 있겠죠.

저는 후자의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은 전세계 누구나도 볼수있다 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들이 배포되고 서로 소통되는 범위는 관심있는 일련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v처럼 채널을 돌리면 관심있는 콘텐츠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클릭을 해서 관심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그 관심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적이기도 하지만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규제의 정도가 낮춰 줘야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규제되어 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부의 인터넷 규제 자체는 일반 신문이나 방송의 규제에 개념속에서 행해졌다고 생각해요. 즉 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가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이지요. pc 통신이 일반화된 90년대부터 규제가 있었죠. 네트워크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선거법등에 의해서 글의 삭제라든지 글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식이죠. 둘째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보다는 접근자체를 막는 것이죠. 저는 폭넓은 의미에서 접근권도 표현의 자유, 즉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원하는 정보에 대해 그것을 접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이트 차단 목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서 차단을 하는 거죠. 또는 차단 프로그램들이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어서 개인이나 pc방에서 구입해서 차단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죠.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콘텐츠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정보통신사업법 53조에 불온통신규제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때 불온통신은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하는 그런 표현물로서 정부가 그 항목에 따라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었죠.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사업자에게 공고를 해요. 사업자는 법적으로는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거부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력을 갖

는 거죠.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예산을 지원 받고 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기관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홈페이지 폐쇄하라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관행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99년도에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2002년도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죠. 위헌 판결이 났는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통부에서는 '불온'을 '불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요. 하나는 불온이라는 규정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고 물론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지만 어떤 국제적인 가이드가 명백하고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면 법자체의 문제를 따져보아야겠지만 불법이면 그 규제방식 자체는 합당하다고 보았어요. 여기서 불온에서 불법으로 바뀐 것은 나름대로 진전된 것이긴 하죠. 왜냐하면 법의 문제를 떠나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된 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규제 자체는 여전히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법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돼서 불법적이니까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판단주체가 여전히 정보통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사법적 판단이 정부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인터넷 사이트가 많고 그것을 하나하나 사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떠한 주위의 콘텐츠가 사법적인 판단이 났다고 하면 사실 그 판단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콘텐츠의 생산이 위축이 되겠죠. 또한 속도의 문제라면 사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개정하는 방향이 마련되어야죠. 따라서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여부를 심의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있죠.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제 인데요. 해외에도 자율등급제라고 있어요. 자율등급제는 회사나 어떤 기관이 영화등급처럼 등급기준을 만들고 어떤 등급에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그 등급을 어떤 웹 사이트에서 채택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즉 이것은 정부가 모든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 영화처럼 등급을 매기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많은 반발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철회를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예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내용등급제는 고수하고 있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불법이고 성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된 것이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

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그래픽적인면 뿐만아니라 코드를 찍고 걸러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종된 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실명제 인데요. 작년에 정보통신부가 그 계획을 밝혔다가 언론에 쫓기면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초에 선거법에 실명제를 포함시켰어요. 그 법이 통과되고 발효되는 시점이 투표 3일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은 못했어요. 어쨌든 선거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될 수 있지요. 보통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가 힘들어요. 모든 것이 서버에 기록이 남죠. 굳이 이름이 아니더라도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PC방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말이죠. 즉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명적이라는 것과는 반대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모두 실명을 쓰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CCTV로 촬영을 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실명확인인데요. 실명확인을 하는 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확인하는데 그것을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신용정보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명확인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그 신용정보를 받아하는 건데요. 즉 나의 금융거래한 정보들이 실명확인하는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보의 목적에 이용이 돼서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실명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요. 개선방향에 대해 보자면요. 정부에서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표현물들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고 보여요. TV나 방송은 편집된 것들의 표현을 보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권력자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정태춘(음악인) - 표현의 자유

- 본 인터뷰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연대가 실시한 표현의 자유 관련 서면 인터뷰를 재수록한 것입니다.

○ 오랫동안 사전 검열로 개작 지시 등을 받는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검열을 통해 내 내면을 들킨다는 것과 굳이 나쁜 관점을 내 생각들을 감시한다는 것으로 매우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 **검열 철폐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검열 철폐는 필연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가수 활동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도 계속 느꼈습니다. 두 장의 불법음반을 냈는데, 다음 음반도 불법으로 내면 역시 시중 판매가 안될 터이고, 방송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시 검열을 받아 합법음반을 내기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허수아비 같아 보였고, 내가 이 노래의 창작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요에 대한 검열은 가요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만적인 사회 이데올로기 창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안에서 주류라고 자처하며 온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조차도 사설에서 “가요심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었지요. 사회 모든 분야의 신속한 변화가 절실한데 마냥 담보하고 있는 90년대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또, 그래서 보다 많은 가요 작가들이 동참했었다면 이 싸움이 6년씩이나 힘들게 갈게 아니었습니다. 서태지조차도 검열에 항의하여 정면 승부하지 않고 음반에서 가사를 들어내는 것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단 그간의 정부 검열제로 습성화된 ‘자기 검열’이 내 안에서 사라졌고, 상상력이 한층 넓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방송 심의 등이 있고, 우리 사회 저변의 여러 억압적인 제도나 관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것이 다 풀린 상황은 아니지요.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야만성이나 근대성을 제대로 털어 내고 있질 못 합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는 식의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 상상력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기본조건”이라는 상식이 통하여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이지상(영화감독) - 표현의 자유

- 본 인터뷰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연대가 실시한 표현의 자유 관련 서면 인터뷰를 재수록한 것입니다.

○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예술라기보다는 영화감독으로서 우스웠습니다. 그 놈의 눈들 다 어디 갔나, 그 마음들은 다 어디로

○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영화진흥법 등급분류보류조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십니까?

저항이라기보다는 그저 제 일상이라할까? 뭐, 늘 제가 하는 일로, 그들, 혹은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염두에 주지 않으면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항이라면 저항이겠지요?

○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별로 없었지만, 단지 ‘국가권력이란 것이 다 그런것다. 권력은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계몽하고 그런 거다. 저들 속성인데 어찌랴. 그냥 우리는 저들 눈치보지 않고 우리 길가면 된다. 잡아넣으면 들어가고 풀어주면 어구 고맙습니다’ 하면 되고, 그러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총 들면 되고, 작품이 무기이거늘 법령들고 어찌 일일이 싸우랴.’ 뭐 그런 거 불온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국가를 원치 않는다. 권력을 원치 않고, 언제 작은 소국과 민이 올 건가. 언제 땅을 가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지 않고, 남녀가 저절로 드나들며 미추가 두등실 넘나들건가. 허나, 권력보다 권위가 더 좋을 때 있으니,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동네에 더 많을 수 있는 그 놈의 권위, 여기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나?

○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선생님의 경우 등급분류조치를 받으신 후 영화에 대한 수정이나 폐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심의를 때문일지라도 감독이 수정하면 그것도 작품이지, 지들이 뭐

○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등급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을, 혹은 마음을, 좀 더 깊게, 넓게 가지기를. <둘 하나 섹스>가 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쉬리>보다 훨씬 나은 영화라는 것. 땅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쉬리'보다는 <둘 하나 섹스>를 <돈오>를 보는 것이 더, 아주 더, 삶에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볼 줄 아는, 좀 더 싶고 넓은 분, 마음을.

○ 사건(등급분류보류 이후)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싸운다면 법령 개정이 아니죠. 법령이 아닌 '그것'을 위해 싸우는 거죠. 한걸음씩이라고? 탄파라는 그래서 안 됩니다. 단박에 그 곳, 꿈꾸는 그 곳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막으렴, 우린 그저 갈 뿐.

김인규(미술작가) - 표현의 자유

- 본 인터뷰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연대가 실시한 표현의 자유 관련 서면 인터뷰를 재수록한 것입니다.

○ 침해 및 고소고발 등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처음에 몇몇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고 나왔을 때,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삭제를 하고 잠시 이 국면을 비켜갈까'하고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삭제하려고 하니 도저히 그러 수 없었어요. 그것은 나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행위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이지요.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작업일지라도 그럴 수 없었지요. 만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해보든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버텼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찰에서 문제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내가 교사이니 교육청에서 문제삼고 나오고, 징계 운운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더군다나 긴급체포까지는요, 당황스럽더군요.

○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현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문화연대에서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해 변호하는 활동 즉,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나의 사건에 대한 위법성, 음란성 여부를 가지고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은 나라는 개인은 나의 합법성을 입증해야했고, 검찰은 나의 위법성을 입증해야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나는 판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설명해야했으며 이는 내가 "형행"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이 음란하면 안 되느냐"하는 반론을 떠나 적어도 나의 작품활동이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성욕을 즐기는 입장에서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사건 경과과정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긴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작품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교사신분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합의의 하나를 바꾸거나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에

일단 합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지리한 과정이었지만 현재로서 그런 최소한의 범부에서의 성공 가능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법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합법한 테두리에서 작품을 했는가를 애원하다시피 명쾌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즉 창작물에 대한 단순화되고 명쾌한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미술창작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작품이 지닌 예민한 부분은 사그리 증발되고 무미건조한 설명서로만 남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예술적인 행위이자 나라는 창작자를 작품 전의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점에서 아주 어려운 설명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표현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야만 하는 가였습니다. 그럴 때 법은 예술 위해 올라서게 되고 예술은 그것이 허용한 그라운드에서 이뤄지는 연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예술은 순간 아주 답답해지면 천반해집니다. 나의 작품은 자유르 갈구하고자 했던 행동이었던 같은 데 이제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애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공판이 끝나고 방청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했더니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기분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어쨌든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 개인홈페이지자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사이트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다시 시정하고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1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작푸물 삭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교육청은 직위해제하고, 거기에 또 다른 싸움은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상처지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마음 먹고 하겠습니까? 늘 눈치보고 살아야하는 상황이 되는 기분이지요. 참담합니다.

○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창작의 영역이 전혀 고려되지 못 하는 상황이 황당합니다. 우리 사회가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주 자유로이 표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현상일 뿐이지요.

이번 일을 통해 문화적인 영역은 문화적으로 해결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문화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의식하게 되지요. 혹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지금 재판중이니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만일 그와 같은 표현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법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재미없는 거지요.

○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무줄 같이 상황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 보여요. 그것이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그들의 방식대로 인터넷을 통제한다면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문화적 영역은 문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은 그건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법적 기준에 의해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일일이 그렇게 된다면 표현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 표현의 자유

- 본 인터뷰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연대가 실시한 표현의 자유 관련 서면 인터뷰를 재수록한 것입니다.

○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조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의나 등급보류를 받은 적 없다.

○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영화진흥법 내 등급보류조항)에 대

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셨습니까?

푸른영상이 저축받은 법률은 음비법의 등록과 심의에 관한 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는 주로 국보법위반과 관계하여 이루어졌으나 국보법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은 음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등록에 관한 조항은 과대한 설비를 전제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드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끝까지 거부했다(지금은 설비규정이 없어졌음). 심의받지 않은 작품은 판매, 대여, 배급, 상영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각종 교육용 비디오가 아무 문제없이 배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시대에 맞지 않는 효력 없는 법률이었다. 푸른 영상에 대한 등록이나 심의에 관한 법 적용은 사실 비전향장기수들을 다룬 몇몇 작품에 관한 표적수사였으며 정치적 탄압이었다.

독립영화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시위와 세미나를 여는 한편 4개월 동안 매주 명동성당에서 멀티비전을 이용한 거리 상영회를 개최하면서 또다른 탄압을 유도하면서 음비법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독립영화인들은 사건이 커질수록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추가구속은 없었다. 그 후로도 푸른영상은 음비법을 무시하며 작업을 계속했고, 1998년 또 한번의 구속과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다.

○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80년대 독립영화인들이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음비법이 있는지, 비디오 다큐멘터리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무지했다. 알고 난 후에도 비영리적 예술 표현에 각종 심의를 강제하고 더구나 적지 않은 액수의 심의료까지 내야 하는 법이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다. 수사관들도 모든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 심의는 불필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아직까지 경우에 따라 표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나 비디오 뿐 아니라 소설, 대중가요, 미술 등에 가해지는 탄압에 문화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력과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검열제도나 심의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변호사들이 있어야 한다.

○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달라진게 없다. 다만 푸른영상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보여 준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제작을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디오물의 90% 이상이 이미 심의 받은 영화들이다. 또한 나머지는 거의 교육, 홍보물이며 음란물들에 대해선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는 불필요하다. 최소한 영화제 등에 상영된 기록영화 등에 대해선 비디로 가게를 통한 배급이 가능하도록 심의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자신의 누드를 공개한 미술교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직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나 국가 권력기관의 예술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사실 그러한 책임은 예술가들에게도 있다. 그만큼 무난한 작품들만 하면서 대중들의 예술이해 수준을 높이지 못 한 거시다. 예술가들은 일부러라도 표현의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학술 사상의 자유

○ 학술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학문과 학술 활동에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가 배제되어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보장받는 자유이다. 이를 침해하는 당사자는 국가와 사회 양쪽에서 나온다. 국가의 경우 안보 및 반공 지상주의에서 오는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로 분단과 냉전에서 오는 법적 제약 요소가 중심이다. 사회 쪽에서는 주로 극우수구집단에서부터 나온다. 이 가운데 기독교근본주의자 등의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참전 용사회 등과 같은 국가억압기구 종사 퇴역자,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등이 주된 침해 역할을 한다.

적극적 자유는 학술활동자가 학술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는 권리를 말한다. 탈냉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급진적 학술활동,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마르크스주의 등의 급진지향의 활동은 이 학술권에서 언제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반하는 학술이나 공익과 평등을 중시하는 학술활동 역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또 학술권은 학문종사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수용자의 경우 '학문향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문종사자가 민중과 결합하지 않고 고고한 엘리트로서 그들만의 '고준담론'을 펼쳐 일상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학문신비주의가 걸림돌이다. 생활속의 학문과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술 등이 장려 및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술종사자가 스스로 학문신비주의나 학문비속주의가 아닌 학문세속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학술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국가보안법이 학술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다. 반공주의는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약요소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 북한주의의 경우는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그래도 시장이나 사회의 수준보다 앞서 있는 요소가 많다. 학술진흥재단 등은 사실 학술지원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한계를 넘어 설 경우 이곳에서도 제약요소가 여전히 많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 선생님께서 학술의 자유와 관련된 침해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2001년 만경대 필화사건입니다. 다음 1993년 역사비평에 게재된 논문 '미국과 한국전쟁' 고소사건입니다. 당시 1993년 영변핵위기를 맞아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려는 위기에 처해 지난 한국전쟁을 재조명해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부각시켜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 실천적 목적을 띤 논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자아검열로 무려 99개의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는 논문이 학술논문 형식을 지나치게 갖춤으로써 국보법의 범망을 피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고소사건을 접한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으나 저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학문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내사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다시 1996년 재감정을 한 것을 저의 재판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추측컨대 199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공안사건을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1997년 당시 고영복 교수 사건에 즈음해 지식인에 대한 사건화 첩보가 자자했고 여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TV 토론에서 조병옥을 친일파로 거명했다 한양조씨 종친회로부터 술한 협박과 내용증명 고소 위협 등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저의 연구실이나 집으로 전화나 편지로 협박하고 욕설하고 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것이니까 이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세

적으로 나오지 않고 맛 고함을 지르고 욕설로 맞 받아치기도 하고 이미 낙인이 찍혀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민간인 학살 심포지움에서는 참전전우회 회원 300여명이 학술장을 에워싸고 욕설과 삿대질 등 온갖 협박이 있기도 했고, 보혁토론 등에서도 야유나 협박, 육체적 위협 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는 과도기적 진통이겠지요. 저는 저의 글이나 논문이 언제나 감시와 감정이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공안연구소의 감정 내용이 일부 공개되어 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학진연구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평가자들의 이데올로기에 역차별을 당한 경우입니다.

○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2.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냉전 의식, 제도, 심성, 문화 등이 해체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성역허물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3. 이제까지 이념성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에 대해 소수자 보호와 같은 affirmative action 과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4. 외국유학 출신 중심으로 형성된 교수 충원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학문·학술의 다양화가 주체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종교활동의 자유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문화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병역 거부라는 것은 권리측면에서 의미가 있구요. 또 다른 측면은 시민 불복종, 즉 저항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과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국가 제도나 세계정부차원에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발성과 참여방법들을 획득해 나간다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전자로 말씀드린 권리의 측면이라는 것은 최소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가 공동체든 세계정부든지 간에 이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를 좀 더 확장시켜가다 보면 그러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러한 권리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즉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들을 공동체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그것은 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것일 텐데요. 문화라는 것이 문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병역거부라는 것도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들을 자각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문화와 병역거부 운동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우선 한국사회에서 문화권이라는 것이 전무하고 어떤 행동권에 밀려서 문화권이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측면이 오랫동안 있었죠. 이때 문화권은 생존권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생존권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문화권도 정부나 공동체차원에서 보장해주고 개인들이 문화적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 개개인이나 시민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문화를 내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적인 측면 말고도 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권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문화권에 대한 고민들이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문화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구요.

○ 종교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병역거부의 문제가 종교의 자유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대부분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 거부의 문제가 종교의 자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전쟁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병역거부라는 게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종교든 어떤 사상이던지 간에 일정하게 넘지 못할 선들이 있는데요. 병역거부라는 것도 그러한 것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동체 국민의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 으되 밖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법리적 해석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구성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역거부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거든요. 공동체가 이리이러하게 합의되는 한에서만 사상의 자유건 행동의 자유건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합의나 통해서 사회의 상이 결정되는데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사회가 발전해오는 과정속에서도 개인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도출되고 그것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지표가 되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병역거부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군대나 부당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권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종교부분에서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병역거부를 보자면 한국의 경우 병역 거부자들의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분포도로 보자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여 지는 병역거부의 양상은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박해가 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사회에서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병역거부를 하고 그랬으면 병역거부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병역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사회에서는 유독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소수종교에 대한 배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에서 소수에 대한 배경으로 볼 수도 있지요.

○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종교와 관련해서는 여호와 증인들이 합법적으로 국가에 등록된 단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차원과 시민적 차원에서도 탄압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지만요. 예전만해도 일년에 600명정도 교도소에 가시는데요. 원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도 종교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그것이 보장이 안됐었어요. 그 논리를 보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종교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사상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종교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3대종교 4대종교까지는 원래 교도소 집회가 허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소수 종교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죠. 여호와 증인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런데 지금은 교도소내의 종교집회가 허용이 되요. 그럼에도 소수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케이커교라고 있는데 거대한 종교집단이 아니더라도 그 집단이 평화종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호와 증인들 뿐만 아니라 소수 종교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배제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받을 불을 만한 기반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니깐요.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소수종교들이 차별받지 않고 종교로서 권리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즉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소수종교나 다양한 사상, 양심을 탄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병역거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에요. 병역법개정안인데요. 병역법을 어떻게 개정하나하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금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된다고 해도 병역거부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병역거부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단이 병무청 산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렇지만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은 좀 완화되겠죠. 그렇다고 그 법안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 법안의 상정을 진전으로 평가해 봅니다. 병역거부를 가지고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4년정도 되는데요. 그 법안이 지금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른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60년동안 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국가의 일방적인 고초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모든 국가정책이 그렇겠지만 당연히 향유해야될 권리로서 그 법안이 수행되고 논의되지 못하는 측면이 아쉽죠. 병역거부법이 소수자에 대한 동정으로서 법안이 이해된다거나 끼워넣기 정책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2. 문화평등권 전문가 인터뷰

[순서]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여성 문화평등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김종현(동북아평화연대 부장) -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박상영(셋넷학교 대표교사) - 탈북자 문화평등

김도현(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 장애인 문화평등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뽕' 대표) - 청소년 문화평등

지금중(문화연대 사무총장) - 지방분권과 문화평등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여성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러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정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권의 개념은 우선 헌법에서 보장된 계급, 계층, 연령, 성 등의 구별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과 향유권을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적 권리가 힘의 논리나 쟁취의 문제로 보여지게 된다면,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단순한 시설의 유치나 증가의 문제로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사회적 현실에 맞게 공공문화시설이나 기타의 문화시설들이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것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화권을 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권의 정립을 위해 서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문화지수의 개발로 문화권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아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문화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화의 공공적인 부분의 강조를 통해 문화권을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될 것이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문화와 예술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처럼 자본의 투자와 투자된 자본의 이윤이 환수되는 그런 논리로 풀어나갈 수 없으며, 단기적인 처방이나 계획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만, 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권의 정립과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권의 제기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문화시설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의 일반적인 공공 문화공간도 필요하지만, 여성, 청소년,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배려된 특별한 문화공간들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각 주체들의 특성화된 문화공간들이 프로그램이나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논리나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다. 문화권의 정립과 문제제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논의들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눈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항목과 세부영역으로 나누기 전에 문화지수의 개발이나 문화권에 대한 개념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항목과 세부영역으로 나눈 것은 별 무리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로 문화권을 재구성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항목과 세부영역 중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항목과 세부영역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하고, 살펴본 결과 항목보다는 세부영역 부분에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 아동의 문제들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노동자 부분에서도 법적인 지위가 불안한 부분만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외국인들 전반에 관한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했지만, 추가적인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여성 문화평등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개선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며, 문화관광부는 지금 문화헌장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화권 정립이나 기타의 문화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금은 투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필

요하다.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이라는 사업 때문에 문화부 예산의 거의 전부가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자금 운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나 형평성 있는 논리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권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은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 예전에는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누어져서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이나 문화권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치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에 더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두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성적소수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인권에 대해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언제나 문제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에서 접근하는 측면보다는 문화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적소수자나 이성애자 문제들에 대해 더 폭 넓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성적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나?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지만, 성적소수자들의 행사에 대한 지원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2~3년 전 만해도 성적소수자들의 인터넷 웹 호스팅의 거부나 성적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만들 때, 제본소에서 책의 제작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서점에서는 진열을 안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다. 지금의 경우 이런 일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것이 성적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야하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문화권이 인권의 개념과 합해져서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은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다. 그러나, 많이 생각을 한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 성적소수자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적소수자 문화평등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미난 것은 성적소수자를 규정하거나 보호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냥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성적소수자들의 문제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살면 사회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적소수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래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성적소수자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현실의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규정해버리는 문제들을 만들 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애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성적소수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어떤 성적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침대에서부터 자신이 정체성이 성적소수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십대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거나, 애를 2명 낳은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성적소수자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기에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고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은 그런 방법이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 정체성은 개인들에게는 평생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며,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다. 성 정체성은 우리 몸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자극에 따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험적으로 자신이 성적소수자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순간에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이 성적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본다면, 성 정체성의 문제는 고정불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의 성교육은 어떻게 섹스하는 지에 대한 문제들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적소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이다. 성교육에서 성적소수자들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잘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성과 관련되어 섹스와 관련된 편견적인 시선들을 깨뜨리고 연애나 사랑에 대해 더 잘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교육에서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조금은 이해해주는 식으로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이성애자 성적소수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에서 웬만하면 이성애자의 분류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런 식의 분류를 깨뜨리고 이성애자, 성적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와 섹스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 성적소수자 문화평등과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데, 이것은 너무 긴 계획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원이나 배려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 쪽의 일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입안과 집행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가장 크게는 사회적인 의식이 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종현(동북아평화연대 부장) -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인권의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문화권이 제기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개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화의 향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일종의 지향성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회에서 소수자이고 약자이고라는 구분이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등을 불문하고 자신의 가치를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문화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을 보호하고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은 인권이나 생존권의 보장보다는 더 확장되는 권리라는 느낌이 든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권의 보장은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의 문화의 보호나 지원을 위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다문화적이고 긍정적인 다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공동체의 공생관계로 발전해 가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이 이야기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약간은 편협한 인식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세부영역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재외동포나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역사에서 재외동포의 삶들은 14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주의 역사와 거주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특수한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나 법제가 부실하고 문화적 권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문화적 배려나 권리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관심의 증대를 위해 문화권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문화적 권리로 문화평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나 가치들을 표현하고 지켜나가고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은 단순히 돈 벌러 왔다는 생각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거나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종교, 생김새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쉽게 훼손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민족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우리 민족의 권리로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근현대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들의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재중동포나 재러동포들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면,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재중동포들이나 재러동포들의 경우 한국에서나 거주국에서 모두 문화적 차별과 편견을 느끼고 있으며, 재일동포의 경우 쪽바리나 조총련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훼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재외동포들의 경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순적인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는 소수민족이고 그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적 권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들 숨어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를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조금만 돌아다녀도 검문하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없고, 사회적인 합의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다.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없다. 일반적인 강제추방정책의 흐름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 재외동포들의 경우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가 아니며, 입국자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민족정체성 지원에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면, 극히 미흡하고 한국적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들의 현실적인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와 재외동포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 **선생님께서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노동자는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잠재적인 범죄자고 취급되고 있는 것이 침해사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제사례로는 예전에 살색이라는 색에 대해서 편견을 줄 수 있다고 살색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것을 구제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외동포들의 침해사례는 과거 정부가 일본의 재외동포들을 극단화시켰던 것을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쪽이 아니면, 조총련으로 다 몰아세우는 것이 큰 상처를 준 것 같다. 지금의 경우에는 재중동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의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중동포들의 경우 자유로운 왕래 자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인식들 때문에 막고 있다.

○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추방정책의 흐름에서 인권과 생존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외국인노동자 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들은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들과는 똑같은 취급이나 대우보다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외동포들이 처한 한민족이면서 다른 나라의 소수민족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의 특이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와 국외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에서 재외동포들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상영(셋넷학교 대표교사) - 탈북자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넷학교라는 대안 학교에서 일하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느낀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화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차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문화권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정보화와 매체, 통신, 교통이 발달된 시대를 맞아 지역적 문화적 차이들이 이제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가 바로 문화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어떻게 소통할지가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문화적 차이를 나누고 다루려고 한다. 문

화권은 이런 다양한 문화적 차이의 소통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이 잘 준비되고 정립이 된다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도 지금 우리가 정보화와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 할 것이다. 정보화 와 민주화 시대 이전에는 문화적 권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보화와 민주화 시대는 두 가지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사회의 개방성과 주체의 취사 선택의 자유이다.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들이 문화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일방적인 소통이나 선택의 독점은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내가 1993년도부터 남한의 부적응 청소년들과 지금의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대안 교육을 진행해본 결과 이런 문화적 권리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대안학교 실험을 해본 결과 기존의 학교들이 가진 일방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암기식의 언어중심의 교육의 소통의 논리는 폭력적이고, 이미 권력적인 관계를 내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부터 문화적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문제에서 권력 관계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체들의 감수성을 담은 소통의 논리들이 문화권, 문화적 권리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논의나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누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런 영역들로 나누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탈북자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북자 문화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탈북자나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당사자들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리에 따라 부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당사자들에게 별무리가 없을 것 같다. '탈북'이라는 표현

은 '탈옥' 등의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 얼굴 모양은 똑같지만 외국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사가 끝난 다음, 하나원 2개월간의 적응기간을 보내고, 지금은 3개월로 늘어났지만, 남한사회에서 남한 사람들과 평등하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적응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남한 사람을 외국에 던져 놓고, 2개월만 말만 가르치고 살아가라고 하면, 누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하나원의 2개월에서 3개월의 생활을 마친 청소년 중 70~80%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으며, 성인들의 직장에서의 이직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무책임하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벤트성의 정책들이 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사회적인 배려의 실패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오해만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언론에서는 범죄자나 불량한 사람들로만 취급되어지고, 사회적으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오게 되어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은 문화권의 평등이라는 부분은 개개인의 권리 찾아야 할 권리 이전에 배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민도 없고, 방향성도 부재한 지금의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만을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된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고려의 측면들이 나오게 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적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방향과 문화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다.

○ 탈북자 문화평등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맞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고양시에서 열린 마켓이 있었다. 여기에 가 보니, 외국인노동자 대상의 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접하기 힘든 공연 프로그램 금난새씨나 김덕수 사물놀이패, 동춘 서커스단 등의 오락물들이 함께 경쟁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라고 한다. 이런 식의 정책들은 배려나 고민이 없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A 지역은 금난새나 김덕수, 서커스단이 내려가는 데, B 지역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상이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라. 당장에 지역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식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지원정책들은 쓸모가 없다.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적인 배려나 선택들이 필요한 시점인 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탈북자 문화평등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교육과 문화기획자로서 여러 가지 작업에는 자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청소년축제 한번 하는 데,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된다. 그러나, 내가 기획해 본 경험으로 강서구 지역 청소년 축제를 할 때 예산은 300 백만원 정도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재미난 축제를 한 적이 있었다. 한번 보여주 기식의 관료적인 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적지만 직접 지원형태로 지원들을 큰 흐름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에서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며 청소년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지원의 형태들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들도 그 특수성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큰 틀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연계지점들은 반드시 찾아져야 한다.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면, 얼마의 돈을 지원하고 더 이상의 배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과거의 집성촌처럼 양촌구나 신월동, 창동 쪽으로 모아서 사고만 치지 말라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집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있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삶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의 근본은 북한이탈 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내가 어른들을 인터뷰 해 볼 결과 어른들의 대부분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내 자식들이 자유롭고 굶지 않고 살게 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을 한다. 우리들 부모님들과 똑같은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타협이지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어울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다르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이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들이 될 것이다. 한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센터의 건립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경우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사례에 대한 고민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도들을 모으고 실행할 수 있는 센터의 건립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도 앞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선은 정책적인 지원체계의 재구성, 청소년 문화접근과 향유권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성, 전반적인 청소년 교육 체계의 전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도현(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 장애인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권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문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라는 말로써 표현함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성과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작성된 문화권의 범주화나 쟁점목록은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진전이 라고 보여지지만 독자적 영역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유권이나 환경권이라는 개념과 문화자유권, 문화환경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화자유권이나 문화환경권이 구체적인 권리의 개념으로서 살아남고 일반대중들 속에서 실천적으로 담론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법률이나 정책의 흐름, 침해사례나 구제사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재적으로 장애인의 문화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접근권의 한 구체적 영역으로서 이동권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 교육기본권의 쟁취, 체육활동의 평등권의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체육활동의 소관부처 변경 및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장애인등의 교통약자가 대중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Non-Step Bus)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문제이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인계가 입법 발의한 위의 법률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어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이 법률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단지 권고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교육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교육예산의 확대가 기본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장애인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고 있고,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체 학령기 아동 중 약 23%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교육기관의 확대를 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 등 장애인교육주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체 교육예산대비 1.9%에 불과한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해야만 최소한의 장애인 교육 기본권 쟁취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의 많은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싸안고 담당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할뿐더러, 예산도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밖에 책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체육활동을 문화관광부로 이전하고, 재활의 관점을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뽕' 대표) - 청소년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권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 문화적 권리, 청소년의 권리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의 문화적 편중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청소년 축제의 예를 들어보아도 댄스, 풍물, 힙합 등의 몇 개의 장르만이 존재할 뿐이다. 개인적으로 문화권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의 보조 중심, 시혜 중심, 치료 중심 등의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는 부분적인 복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문화권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문화권이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의 향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문화권이 사회적 영양소로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도, 문화가 삶의 가치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의 문제도 복지의 개념으로 혜택과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경제·교육·가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로서의 복지적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 권리와 상상하고 교류하며 삶의 권리와 질을 향상하는 데 문화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경우 지금의 교육 정책에서 강제되는 획일화·소비적·자본주의적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자신의 표현·사회참여의 사회관계 망 형성에 문화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문화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과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예술적 관점은 장르 위주의 접근인데 반해 문화적 관점은 포괄적인 개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예술과 예술 장르적인 접근도 문화권에서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10년

넘게 대안교육을 하면 만나본 결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일과 놀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하고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문화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교류인데 기본적으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권에는 교육권, 자유권, 참여권 등의 여러 가지 권리들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사회참여 등에 깨닫게 되는 모습들을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볼 수가 있다. 평택의 평화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때, 문화권은 정책에서는 따로 분리될 수는 있으나, 접근과 개념에서는 부분 부분이 아니라,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해야 할 것 같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눈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권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은 협소한 접근이 될 걱정이 있다.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연구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문화권이라는 것이 우선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다양한 차이들을 가진 주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의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나누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권리, 활동, 표현은 문화적 격차로 거의 등급화 되어 있다. 경제적·지역적으로 문화적 권리가 활발한 곳을 나눌 수 있으며, 지방과 경제적으로 낙후한 곳에 아예 문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곳에서 문화적 권리를 말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이다. 우선은 문화적 권리를 주장할 동기 유발의 요인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지역적으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대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달라고 주장하는 층은 소수 주요 도시의 정보에 익숙한 청소년들 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청소년들이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무엇을 말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도시화되고 도시집중화 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문화적 격차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평등한 문화적 권리가 가능할 수가 없다.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화적 권리에서 장애인

들에 대한 시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경우 낯을 잡아 영화를 보여주거나 어디에 데리고 가는 등의 문화에 대한 접근들을 중심으로 한 간접 경험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한 대중교통, 영화 등의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의 경우 문화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회자체의 박탈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만든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자체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협소한 복지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회적 보조나 치료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문화권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소통, 관계가 없어진다면 결국 몰개성화가 이루어진다. 문화적 권리에서는 다양하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동기유발이 없다면, 획일적인 분류와 정책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택하고 다양한 차이들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이런 편차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권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주고, 획일적이거나 과편화 된 정책시행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의 문화적 접근은 대개가 시혜적이거나 소비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문화적 교류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딪치고,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생각, 제안 등의 동기 유발되어 나온 기본적인 욕구들을 제 3자가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에서 역전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진다면 개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만드는 통로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정책의 의제들을 모니터링 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점차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고치거나 없애기가 힘이 든다. 고쳐지기 전까지 법과 관련된 모두들이 힘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들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일종의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다.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법과 관련된 주체와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과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과 법과 정책을 줄속으로 만들어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

다 천천히 올바른 과정과 참여를 유도하여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지금중(문화연대 사무총장) - 지방분권과 문화평등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 문화적 권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문화권을 구분하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는 문화권이 있을 수 있고, 문화권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포함될 수 있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권리인 환경권의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제약도 안 받는 어딘가에 갈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도 그런 권리처럼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 지금 시기는 역사적으로 디지털 시대이고 디지털은 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큰 의미에서 교육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육권이 반드시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권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권리와 맞닿아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처음 도시가 생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위생문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가 만들어져,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질병 등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권리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공해나 환경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었다. 다시 이것을 주체들의 문제로 바라보면 시민들 개개인들 잘 살 수 있는 권리의 문제가 되었다. 권리의 문제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흐름들을 가지게 되는 데, 이 변화와 흐름들을 살펴보면 주체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생각한다. 이런 변화와 권리의 강화들의 흐름 속에서 문화적 권리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 음악, 공연, 전시 등을 즐기는 것을 권리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문화적 권리는 세계적으로 인권의 하나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 그 추세이다. 인권과 문화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인권의 넓은 의미로의 확장 and 적극적인 해석이 바로 문화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권리들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던 시기들이 있었다. 이

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문화적 불균등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초기의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노동의 착취에 대한 문제처럼,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착취나 차별의 문제처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권의 개념으로 문화적 권리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며, 한국의 경우 이런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외국의 경우 감옥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이다. 한국사회와 비교해서 외국의 경우 감옥 안에서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옹호되고 있는 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개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 때가 되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개개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제약의 강화가 아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에서 가능하다. 인권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인권이 커질수록 문화권은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사회도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공이 해야 할 것들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화권의 필요성은 이런 부분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으로 나눈 것은 층위가 잘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사회권 안에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눈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런 근거들을 잘 알지 못 한다면, 좀 어려운 것 같다. 우선은 층위가 잘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하듯이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하는 데, 문화권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문화권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문화를 즐기는 좁은 의미에서 영화, 음악, 전시 등의 감상의 경우들을 통틀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 이런 권리들에 제한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다만,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기준들과 합의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문화적 권리의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지방분권과 문화평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지방분권과 평등권으로 문화권을 이야기하면, 일단 한국사회의 집중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집중에는 물리적 집중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집중에 따른 불균등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는 데, 문화적 격차를 예로 이야기하면, 문화시설의 90%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다고 한다.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문화적 권리가 임의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평등하게 발전해가고 국가의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집중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권리와 물리적 시설이 분산되어야 하는 데, 여기서 문화적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사회적 필요성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분권과 분산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를 말 할 수 있지만, 관과 민의 분권과 분산이라는 측면도 이야기 되어야 한다. 분권과 분산의 문제에서 관과 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민의 경우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인데, 권한을 다 준 것은 아니다. 과도하게 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집중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대의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에 있는 문화시설의 경우 우선은 시설의 부족을 우선 이야기 할 수 있고, 인구측면에서 지나치게 큰 시설은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양한 문화시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형태들과 균형 있게 자리잡고, 만들어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직적 분권과 분산보다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평적 분권과 분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분권과 문화평등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을 운영할 충분한 예산이나 운영인력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요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권을 확장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공청회가 올해 여러 번 열렸고, 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관련된 위원회에서 내년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이 지역의 문화격차나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이 답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복잡한 이야기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직적 분권과 분산만을 고려한 정책과 흐름들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수직적 분권과 분산과 함께 수평적 분권과 분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집중의 문제는 또한 정책과 예산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데, 정책과 예산의 격차를 줄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이나 소외지역의 최소한의 문화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노력들로 이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3. 문화참여권 전문가 인터뷰

[순서]

김명준(미디어엑트 대표) - 퍼블릭 액세스

김정현(문화연대 공동대표) - 문화교육권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문화교육권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 문화공공서비스

김윤환(미술가, 오아시스 프로젝트) - 문화공공서비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보접근권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팀 국장) - 정보접근권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류문수(시민자치센터 실장)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내셔널트러스트

김명준(미디어엑트 대표) - 퍼블릭 액세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엑트에서 하는 일들을 문화권으로 접근해 본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디어 쪽에서 접근했던 것은 주류 미디어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얘기하려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었지만, 권리 차원에서 해석됐던 적은 별로 없었다. 주로 표현의 자유 문제('말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건드리지 마라')로 이야기 되고 있었고, 방송 쪽에서는 시청자 주권이라는 굉장히 모호하지만 공인되었던 개념이 있다.

퍼블릭 액세스 부분에서는 액세스가 넓게 해석되면 그냥 접근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의 접근권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미디어에 대한 진입권,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권 등을 묶어 액세스권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편적 서비스와 개념이 유사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앞에 굳이 퍼블릭이 붙었을 때는 위와 같이 넓은 의미로 이야기 되기도 하고, 좁게는 북미에서 케이블 tv에 일정한 채널들이 개방되어 그 개방된 채널 구조를 통해 주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작년에 유엔에서 했던 '정보 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SIS)'가 열렸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지금도 진행되

고 있는데, 놀랐던 것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의 중심 주제는 정보사회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와, 그 시대에서의 권리의 문제이다. 또한 문화 영역의 권리들도 포함 되어 있었는데 문화라고 표현되기 보다는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접근되고 있었다. 여기서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것이 전통적 표현의 자유와 부딪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인권선언에 표현된 표현의 자유가 언론기관이나 개인의 자유 차원에서만 해석이 되지, 예를 들어 표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표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연구할 때 꼭 이 선언문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시민 사회 부문에서도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선언문이 있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것 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묻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 실체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했을 때, 어떤 연극들을 그러한 계층들에 보여주는 정책을 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 자체로 문화 향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박탈감, 소외, 계급적 차별의 문제들이 그런 문화적 행사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이미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문화는 다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 문화권이라 했을 때, 어떤 문화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의미가 있다.

흔히 관료적 국가권력에 의해 문화 정책들이 상명하달 식으로 되니까 지역의 자발성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문화적 메커니즘들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 과정은 그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 해주고 상상력을 넓혀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문화가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냥 자발적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자발성이라는 것이 원래 없다가 그냥 하라고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변증법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감춰져 있고 그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좁은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지구화된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된 틀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을

깨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명하달식과 자발성(참여)의 대립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어떠한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문화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문화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화는 꼭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꼭 문화를 선악의 구도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화권이라는 범주가 과연 구성 가능한 것인가? 문화라는 것이 넓게 보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좁게 보면 특정 예술 범주를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주로 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역동적인 것을, 권리 차원에서 너무 특화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보다 필요한 측면이 있긴 하다. 워낙 전반적인 문화 기제들이 아직 잘 발달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시민 사회에서도 문화적 고려들이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권리 개념으로 늘어놓는 듯 한 것은 좀, 문화자유권 등도 보면 그냥 인권인 것 같다.

그리고 퍼블릭 액세스를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퍼블릭 액세스는 따지고 보면 권리의 개념이 아니다. 권리의 개념을 내포하는 특정한 구조를 전제하는 개념일 뿐이다. 물론 권리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런 권리 저런 권리 이렇게 권리들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분법은 굉장히 편의적인 구분이라 볼 수 있다. 다른 문화교육권 같은 것은 범주화가 논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공공서비스권 같은 것이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 퍼블릭 액세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액세스권이라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으로 많이 해석이 되며, 특히 퍼블릭이 앞에 붙을 때에는 개방된 채널 구조를 통해 새로운 것이 표현되고, 주류 미디어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전업적 제작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제작하는 활동들이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공간과 주체의 성격을 아우르는 개념인 셈이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퍼블릭 액세스라 하면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뭔가를 하는 거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공중과 방송은 방송국 내부 스텝이나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외부 스튜디오의 직원들이 제작을 하고 최종 편집권을 방송국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들이 개방이 되어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퍼블릭 액세스라 할 수 있다. 주로 케이블 TV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며 북미권에서 발생한 퍼블릭 액세스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퍼블릭 액세스라기 보다는 PEG(public education government) 액세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옳다. 공공채널, 교육채널, 정부채널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공중과 방송의 제작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KBS 열린채널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며, 케이블은 아예 개방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각국의 매체 보급상황이나 정치적 상황들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힘든 것 같다.

○ 퍼블릭 액세스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퍼블릭 액세스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영진위에서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방송위에서 퍼블릭 액세스에 관한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 운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례로 보이며, 단파 라디오 운동 사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데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방송법에 액세스관련 법이 있는데 왜 여기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김정현(문화연대 공동대표) - 문화교육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화연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문화적 권리, 주장 등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문화적 권리는 삶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생존권이나 기본 의식주 차원의 인권 차원에 대한거론이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유네스코가 인간이 주거하는 공간의 최소한의 한도를 정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 전통적 생존권의 개념을 조금은 넘어서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문화권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권리는 생존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적 가치까지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권리이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확장된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권의 핵심은 특히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문화적 기본 주권을 인정하는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이가 차별 받지 않는 문화적 다원성과 문화 공공성을 인정하는 차원으로써의 문화권의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 문화권의 기본 개념 정의 안에 문화적 차이가 주권(정체성)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의 생산(표현)/ 소비/ 소통의 차원을 고려하여 범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문화자유권이나 문화평등권의 범주와 하위항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체계적인 것 같다. 특히 평등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문화참여권과 문화환경권의 경우에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의 설정이 그렇게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몇몇 항목들이 선택되고 배제된 것처럼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범주가 설명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문화환경권의 경우 보행권이나 주거생태권은 차라리 문화공간권을 상위범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며, 문화환경권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위범주들이 꼭 차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 같이 보인다.

○ 문화교육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문화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체계적 공교육이 중요하다.

○ 문화교육권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그저 문화예술을 보다 학생들에게 많이 접하게 해야겠다는 정도에서 진행될 뿐, 체계적으로 문화적 권리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 문화교육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냐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에서 정상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침해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나 중요성 부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의 전반적분위기나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실제적이고 풍부한 강사풀제나 시간적 배려 그리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 등 다각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문화교육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라는 것이 시대를 이끄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그런 개념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서구에서 60년대 이후에 대두된 것이 문화라는 개념인데, 이는 기존의 문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를 뜻하는 인류학적 정의이다. 인간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정의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구분에 따르면 지배적 문화가 있고, 잔존하는 문화가 있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가 있다. 잔존하는 문화의 경우 주로 지배문화와 자주 결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배문화와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배문화는 근대국가 성립 이후 국민의 삶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한 문화라 볼 수 있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는 대안적인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노동자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안적 성격이 훨씬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를 꼭 노동자 문화로 보지는 않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지배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응하고,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측면들이 부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긍정적, 대안적, 창조적 측면이 문화의 적극적 의미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조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나 경제는 자신들의 분야 나름의 논리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삶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 문화권이 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시공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배문화가 정치적, 억압적 측면에서 약간 유해했다 하더라도 국민통제 방식의 정책들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독점자본들이 세계화되고 다국적을넘어서서 무국적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 사회적 측면도 영향을 받아 삶의 문화가 식민화 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적 규정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귀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권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가 자유, 평등, 참여 이런 권리의 상위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자유권, 문화적인 평등권, 문화적인 참여권, 문화적인 환경권 이런 식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화연대에서 설정한 문화권 범주에 대해 정리해본다면 이러한 도식이 나올 것 같다.

‘주체’를 기준으로 평등권의 불평등한 상황과 집단적 소수자를 고려해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권의 경우 문화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권리이다. 시공간을 기준으로 참여권은 자유권이 공공에서 획득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며, 시간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측면과 함께 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환경권의 경우에는 삶의 방식 중에 공간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문화교육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문화교육이란 것을 정의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교육이란 것이 제도,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측면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문화라기 보다는 문화교육, 즉 문화가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이 삶의 방식의 총체이고 이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게 문화라면, 그것이 교육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적 관점은 예컨대 재개발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공청회, 여론조사, 공람의 형태로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공람이라는 것은 실로 유명무실한 것이고,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되고 거의계획을 확정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일방적 공지의 형태를 가지며, 여론조사라는 것도 아이디어 몇 개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식의 형태를 띤다.

도시공간조성에서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주민들을 대상

으로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증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공간정책의 가장 큰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개발이익을 최대한도로 향유하려 한다. 예컨대 재개발은 조폭들이 접수해서 돈을 받아내는 비민주적, 폭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 이익을 더 챙겨주므로 눈감고 넘기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소위 MA(Master Architect)라고 공간계획의 기본을 정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왕십리 뉴타운 건설 시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시간과 여력이 없을뿐더러 주민들이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이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다. 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실상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적, 부정적 존재인가를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문화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거의 공청회와 같은 자리에서 말싸움만 하다 끝나버리고 만다. 따라서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역으로 주민들이 공간들을 살아내는 지혜를 전문가들이 주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방식(새롭게 만들어 낸 긍정적 삶의 방식)을 배워서, 쌍방향의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했던 문화교육적 관점이 학교에서도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공간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공간은 삶이 존재하는 무대인데 어떤 공간이 좋은 것인지를 배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교육에서도 공간교육과 같은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학교 내에서만 교육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학교 밖의 문화인프라, 즉 문화시설, 미디어센터, 박물관, 미술관, 혹은 공공이 모이는 장소(회관) 등에서 공간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교육은 교육공간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교육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교육이다.

문화의 다양한 부분 중에서 예술이야말로 가장 창조적 부분이므로, 일탈성, 무질서, 반사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교육문화 내에 해당하는, 창조성 키우는 예술교육은 학교 내에서만은 이뤄지기 힘들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교육의 경우 분화된 장르의 예술 교육이 아니라 통합적 성격의 기초예술부분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어교육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되고 있지 못하다. 말하기 교육의 경우 현재는 그나마 특화된 말하기교육이 구연동화, 응변 등으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으나, 연극과 같이 호흡법이나 강세, 발성 등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며, 읽기교육은 현재는 암기식이거나 틀에 박힌 형식적 독해 교육으로 되어 있는 데, 새로운 작품을 접해도 당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기교육의 경우 수사학을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의 쓰기교육이 문제이다. 기승전결 식의 형식적 작문법만 알려주는 형식이어서, 쓰기교육이야말로 서구 근대 문화교육에서 핵심적 부분 중 하나. 논리적, 설득적, 비판적인 글을 쓰는 법을 실습할

필요가 있다. 듣기교육: 토론문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되어야 하며, 남이 말하는 맥락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기초예술교육을 살펴보면, 그림은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다양한 상황에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연필, 물감, 포토샵 등 다양한 매체로 이미지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리는 고전작품이나 작가위주의 음악교육 보다는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조작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 한다. 몸은 자신의 몸으로 자유로운 동작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몸을 이용하여 단어를 배우는 교육이 이 전부터 실행되어왔다. 무용시간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맞는 동작들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한국의 민주화 세대라는 386세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몸치이며, 민주적인 몸짓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은 상당히 동양적 심성이며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근대 한국의 경우,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나도 어떻게 자연을 즐기는지 알지를 못하며, 여가문화가 그저 단순 소비에 그쳐버려 삶의 문화가 일천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예술교육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그리고 훗날에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교육권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경우 첫번째로 입시위주교육을 말 할 수 있다. 대학입시위주의 교육문화는 평가 방식(내신, 대입)과 고시문화 등 소수사람들을 위하며, 부와 권력을 보장하는 교육내용과 평가방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교육문화에 의해 창조적 능력이 쇠퇴하고, 틀을 벗어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장된다. 두번째로 학생, 청소년의 본분 규정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부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학생과 청소년들 역시 공부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기성인들 보다 훨씬 자신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시공간 조직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 데, 공공시간의 경우 유럽에서는 노동시간을 조절 가능하며, 시간 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노동, 여가시간을 자기 자신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데, 한국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TV 편성시간도 마찬가지로인데 한국의 경우 획일적인 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9시쯤 일찍 잠이 드는 편이라 저녁 7시, 황금시간대에 알찬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하여, 독립영화의 경우 새벽 1시나 넘어서야 볼 수 있는 한국과는 많이 차별적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에 시청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가 허락되어야 한다. 공공장소의 경구 공공의 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때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공간에 주체들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전근대적 방식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시민 쌍방의소통과 교육, 조율이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으로 인해 이러한 전근대적 방식의 조직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 문화교육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고시, 사교육 등 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공부를 못해도 기본적인 문화적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이란 것은 음미체 중심의 소수정예교육인데,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시공간을조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정 차원에서 주민-전문가의 상호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ex. 공공건축가제도) 따라서 최근의 현상공모는 긍정적 추세라 할 수 있다.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 문화공공서비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가 워낙 층위가 넓고 다른 분야들과 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개념정의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삶에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취향이나 기호에 대한 권리라고 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흔히 정책적으로 본다면 삶의 질에 대한 권리라고 본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권리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네거티브 차원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인권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운동으로써 권리들을 확장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 인권이라는 것은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싸움이였다. 그런데 문화권이 가지는 특성은 그러한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좀더 포지티브 한 권리 차원에,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문화권이 직접적으로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소리 지를 권리, 표출할 권리, 소통할 권리 등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질 보장이나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부분이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본다. 특정 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적 관점만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질과 행복할 권리 보장이 문화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기구의 예를 보면 문화권에 관련된 구별이 보통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네 가지 범주 구분은 실제적으로는 자유권과 세 가지의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위 범주 구분들의 층위의 편차가 심한 것 같다. 특히 참여권과 환경권의 경우가 그렇다. 내셔널트러스트는 너무 구체적 영역인 반면, 퍼블릭 액세스는 너무 넓어 실제적으로 참여권 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개념이다. 문화공공서비스권이라는 것도 매우 넓은 범주인 것 같다. 퍼블릭 액세스는 참여권과 거의 비슷한 층위라고 보이며, 만약 이것이 방송에 관련된 영역이라면 그것을 명시하고 같은 층위의 다른 범주들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류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문화환경권 중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주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며, 향유권에는 왜 문화재 향유권만 다루어 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내용이 확보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체계적 분류를 위해보다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공공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화권과 관련해 얘기한다면 문화권이 자기결정권(자유권)과 삶의 질 보장해주는 사회권이라 봤을 때, 문화공공서비스는 사회권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문화와 관련된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다.

○ 문화공공서비스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문화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이후 문화의 집과 같은 형태로 확대되어 왔는데 한계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제기되어 온 이슈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의 특성이라는 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주체와 그를 통한 프

로그래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영역에서는 공공문화서비스의 수준은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문화를 자율성이나 사회권과 같은 권리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시혜적인, 말 그대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서비스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분명 한계가 존재하며 크게 구체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기존의 행정시스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정도의 변화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 문화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공기반시설에서는 미디어센터사업이 대표적인 것 같다. 그 외에도 이전보다는 정형화되지 않은 센터에 대한 기획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참여 폭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권리라고 본다면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인프라로 보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침해사례로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창작 권리, 퍼블릭 액세스 등 모두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윤환(미술가, 오아시스 프로젝트) - 문화공공서비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거 생존 이외에 모든 부분을 하나의 문화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 정치 활동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들을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화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권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이며, 또한 자율이라 생각하며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문화가 가능한 것이기에, 다양성이야말로 진정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권은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습, 습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적 관계 등도 문화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포괄적 범위의 문

화권이 가능한 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화공공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설치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과 참여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적절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용에 대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캠페인 등의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써, 국고 230여 억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초된 목동예술인회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잘못 준비되고, 추진되고, 결국에는 부도가 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공기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 못해 부도가 난 사례이다. 그것의 직접적 피해자는 그것을 사용했어야 하는 예술가들과, 예술가들이 작업을 못하였기에 예술 향유권을 제한당한 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회관의 존폐문제나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투쟁하고 있다. 비교적 잘 관리된 사례로 얼핏 들은 것은 국립극장의 사례이다. 국가 예산 등의 공공자금으로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운영주체는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형태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스쿼트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진행중인 움직임들이다. 스쿼트는 문화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심의 놀고 있는 빈 공간을 공공성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한다. 비록 소유권차원에서 보면 어떤 개인이거나 기업의 재산이지만 도심에서 무책임하게 버려진 그러한 공간들을 예술가들이 점거하고 활용하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쿼트가 점유하는 공간들은 빈건물이 기본이며, 광장이나 놀고 있는 공터, 또한 죽어있는 공간들(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 소유권이 명확하고 어느 쪽도 차지하지 못하는 공간들)이며, 프랑스 파리에 이런 공간들이 약 20개가 넘게 있다.

특히 현대예술사이트인 '팔레 드 도쿄'의 경우 원래는 미술품 보관 창고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2002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프랑스 현대 예술의 리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 곳의 특징은 과거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약간 리모델링을 하여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이며, 운영프로그램이 매우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센터 내부에 사용자들을 위한 카페, 저렴한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들과 전시, 그리고 파티 등이 열리고, 또한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밤12시)까지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한국의 경우 화랑들이 보통 7시

에 마치는데 직장인들은 보통 6시 넘어서 일을 마치니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파리의 팔레 드 도쿄는 사용자 중심 관점의 현대 예술 사이트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팔레 드 도쿄의 예산은 파리시가 관리하며, 운영은 민간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두 명의 예술 디렉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공동 디렉터가 이 공간을 어떻게 재할시킬지 공모를 해서 선택된 안을 실행한 것이다. 한국의 비슷한 사례는 당인리 발전소로써, 오아시스 팀은 이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재할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실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 문화공공서비스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간에 함부로 재산권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회관의 재산권을 예총이라는 일개 단체에 함부로 넘겨준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본다. 민간이 한 번 재산권을 받으면 잘 포기를 안 하므로, 그것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 안 하려 하여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재산권은 관에서 가지고, 운영만 민간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할 텐데, 민간 주도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차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삶의 기반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권리라고 보므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파악하여 문화적 권리라는 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보접근권

○ 정보접근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접근권은 크게 두 측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정보의 접근 및 향유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프로그램, 활용기술을 몰라서 차단되는 경우가 있고, 네트워크의 접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접근의 차이는 경제적, 지리적, 성별 차이의 격차 등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인터넷 정보센터 혹은 전산원의 통계에 의해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정보 격차 외에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

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체적 요인에 의해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이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정부기관인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일상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문제는 다른 제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보격차를 낳는 것은 경제적 요인인데, 정보사회에서 노동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불가피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구조가 빈부격차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보격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처방입니다.

○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사용, 프로그램의 사용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이지만, 실제 정보인 콘텐츠의 접근 또한 문제입니다. 즉 정보의 유료화 문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보호되고 있고, 이용자의 권리인 정보접근권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애매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환경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문화 향유자는 소비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또한 문화 향유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 조항 외에, 모든 사람이 과학지식, 문화적 산물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오랜 역사의 저작권이 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저작권은 일반 사유재산과 달리 일정 기간(창작자 사후 50년) 동안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수혜자는 개별적인 창작자가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인 문화 영역의 자본입니다. 소리바다 논쟁에 그만큼 음반사들이 더 민감한 것이구요. 지적재산권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문화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유롭게 복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GPL과 같은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모든 저작물은 카피라이트가 적혀있지 않아도 그 저작권이 보호되는데,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보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정보접근권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문화향유 권리의 규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적 하드웨어(컴퓨터, 사용기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 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와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저작권 비판 활동, 그리고 정보공유 라이선스 확대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유출을 통한 재산상의 침해와 같은 특정한 침해와 달리, 정보접근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침해가 있습니다. 정보접근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 모두 그 피해의 정도를 규정하기 힘들고, 피해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운동을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인터넷 상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 홈페이지를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도 보이게 하는 것 등,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각의 개별주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주체들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해서 배포할 수도 있구요. 구체적인 구제와 침해의 사례라기보다, 장기적인 과제이자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 따지는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적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사회빈곤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물적 지원(컴퓨터, 네트워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별적 지원 말고도 공공 네트워크 센터의 건립(피시방을 통해 상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은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주체들, 개개인과 단체들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홈페이지 제작 등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팀 국장) - 정보접근권

○ 정보접근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접근권과 관련되어 문화권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은 지식정보가 점점 편중되고 상

업화 되어가면서 가치 있는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에 주목하여 시작한 운동인데, 인터넷 상의 사라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공화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자료들도 곧 역사가 될 것이기에 분명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등 채팅공간들도 상당이 의미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 자산 혹은 문화로 보호해줘야 할 텐데 어떤 법률이나 정책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콘텐츠 진흥 등에 대한 법은 있지만 그것은 상업 콘텐츠를 얼마나 잘 팔리게 할 것인가의 차원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문화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작년 정도부터 쓰여진 것으로 기억된다. 소통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으로 이해가 되다가 NEIS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개념이 정착되게 된 것이므로, 한국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맥락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 인권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사소통 권리로써 정보가 오프라인에서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존재하고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의 흐름이 끊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정보의 공유,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관련 하드웨어(특정 브랜드의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msn)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정보 인권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써 개인의 사적정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디지털 정보는 얼마만큼 복제가 되는지 당사자가 알기 힘들어서 한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다 개성이 있으며,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를 텐데, 어떤 한 가지나 두 가지 흐름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다.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생각이 든다.

○ 정보접근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는 것이다.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는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다양한 수단으로 특정 목적 장소에도달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반의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정부나 특정 조직만 문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무 다수자중심이 아니라 다

양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존재해야 될 것 같다. 한국 관료 조직들은, 넓게는 한국 사회는 너무 효율만 따지고 여타의 것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홈페이지의 여러 자료 참고하는 것을 권해주고 싶다. 특히 2003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를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인간이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행정 시민참여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는 삶의 총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문화를 중범위로 생각해왔는데, 이는 문화예술/ 교육, 학술/ 언론/ 체육/ 관광, 레저/ 종교의 범주로 나뉘게 된다. 문화가 삶의 총체라고 하는 테일러 식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권은 인간 기본권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한 인간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그리고 천부인권적 인간 차원에서 살펴봐도 문화적 권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 규정이나 제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벤트 성의 복지정책의 형식으로서만 있어왔다.

문화행정이나 정책을 문화관광부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문화행정시민참여권은 광의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권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부처, 산하기관이든 간에 공공적 업무수행하는 기관이라면 문화행정의 기능을 일부 가지고있다. 그 모두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민들이 행정 전반에 관해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에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의 경우 구체적 법률적 근거조항 없지만, 현재의 절차법만 잘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법으로 규정한 필요까지는 없고 공청회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후 정보공개나 모니터링의 방법 등으로 추궁이 가능하다. 공공문화축제의 시민 참여권의 경우도 자발적 참여가 축제의 핵심인 만큼 법률적근거 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절차법과 위원회 구성 등의 참여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문화행정 모니터링 기회 확대는 국민참정권, 국민저항권의 일부로서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재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문화행정 모니터링 기회확대에서 생각해 보면 문화관광부가 문화행정혁신위원회라는 특정단체를 구성하여 문화행정시민참여권을 국한시키는 것도 침해사례로 볼 수 있다. 모니터링이나 감시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민적 감시 역량의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입안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역량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의견 수용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공공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의 공공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의 경우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민간 위탁 시에는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내용상의 건강성 등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축제들은 이제 초창기에 불과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사회적 인프라가 불충분하므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너무 세계적 수준의 축제들에만 익숙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생적인 지역 축제들의 부흥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민관의 협동이 중요할 것이다.

공공문화행정의 모니터링 기회확대의 공공문화행정 모니터링의 경우 시민 부문에 아직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 사회적인 문화 역량의 총체적 재고를 위해 문화적인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심이나 독점, 특권의식도 가지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참여 저변확대를 위해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뿐만 아니라 그 외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의견도 문화행정가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류문수(시민자치센터 실장)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의 자율적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문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자치권(자율권)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 문화행정시민참여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권리의 문화참여권을 얘기한다면 공공 축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의 사적 문화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축제의 내용들이 시민들의 관심에 부합되어야 하며, 재원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계층에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세금이라는 형태로 얻어진 재원들이기에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계된 것인데 흔히 너무 분리되어 인식 되는 경향이 있다. 공적인 영역이 너무 가상화되고 시민들에 의해 조성된 공적 재원들이 공적 기관들에 너무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시민들의 사적 영역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민적 통제와 제어를 감당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본적인 인식 체계로서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법률은 거의 없는 편이다. 축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대한 법률은 매우 미약하지만, 시 자치 조례에는 간혹 발견된다. 상위적 법률에 축제에 대한 시민적 권리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많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는데 동시에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인 원칙 정도만 법률에서 제시해주고, 지역 차원에서 자세하게 논의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커다란 틀에서는 축제 평가의 범주에서 '특정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차원에서의 평가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든가 정도의 규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행정시민참여권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현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은 거의 없고 90% 이상이 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과 민과의관계에 있어서 관이 재정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진행은 민이 주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관과 민이 협동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국의 경우 민의 역할이 너무 작고 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관도 자신들의 정치적 행정적 도구(전시행정 등)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가 예술이라는 좁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정책적 지원을 보면 관광 일변도의 축제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일상적 영역에 보다 들어가 시민들이 일상문화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지역문화의 어떤 정체성이나 관계들을 부활하거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축제를 지향하다 보니까 도구화 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다.

축제가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적극적 지원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고 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다 보니까, 지역인력이나 인프라 자체가 축제를 통해 확장되거나 내실화 되지 못하고 횡수를 거듭해도 지역문화의 어떤 자생력이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못하다.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자원봉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심 진행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다.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실제로 참여한다 했을 때도 체계적으로 그들과 관이 소통하는 채널이 취약하다. 자원봉사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도우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와 지역의 관계 그리고 축제와 지역민으로써의 개인과의 관계 등의 사고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제와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 문화를 채득해 나가고 지역문화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기획, 진행,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사례들

자원봉사시스템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문화예술 축제들이다. 우리는 보통 축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성화, 지방특산물축제로 나뉘어진다. 이 중 문화예술축제가 예술적 마인드나 감각을 세련된 운영으로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이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 자원봉사 매뉴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행사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들이 숙지해야 할 것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들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참여하고 말면 상당히 손해인 자원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자원활동가들을 자발적으로 유인해 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사례들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사는 주로 커다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 홍보성 행사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행사가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가 표방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시민참여인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축제의 전체 맥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부분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형식화되고 제한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 방안

축제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완결성을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의 감수성에 어떻게 호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 지역 축제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 차원의 위로부터의 사고로 시민들을 대상화 시키고 일방적으로 축제행사들을 뿌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고를 넘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의 참여라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활동, 기획자문, 시민공모, 시민참여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흐름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도 또 다른 참여의 양태인데, 시민들이 자체 모니터링이라는 틀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으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제사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제들은 보통 굉장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마인드를 가진 주민들과 관이 협업의 형태로 진행해나가는 형태가 많다. 관과 민이 서로 각각에 맞는 분업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페인 토마토축제' 같은 사례는 지역민들의 자발성뿐 아니라 이 축제를 위해 외국인들이 일부러 관광을 올 정도로 지역성과 축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축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토마토가 왜 축제의 소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해 토마토가 너무 과잉 생산되어 골칫거리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던지고 놀았던 것이 재미있었기에 축제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에서 유명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핵심적이었다. 아무리 적은 재원으로 미약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역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간다면 훨씬 성장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지만, 그들의 문화역사적 맥락과 의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 부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제들의 맥락과 기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연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명한 축제라 하더라도 너무 잘 되는 측면들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제들도 역시 겪고 있는 난점들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것이 유럽과 같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굴절된 측면(식민시대에 의한 급격한 단절, 한국전쟁에 의한 피폐화)이 있으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시절 문화라는 것이 매우 통제되고 사치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관제적 성격의 축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유럽과 같이 자생력을 성급하게 바라는 것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시정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에 있어 민간적 자율성이 높여야 한다. 인력이나 인프라가 사적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함으로 아직까지는 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여러 제도적 지원이나 교육 등에 의해 전문가를 기르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업자를 불러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지역적 자생력을 가지기가 힘들다. 기본적 기제를 갖추기 위한 지속적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산이나 행정이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제와 같은 것들이 다른 부처의 예산 배분의관례대로 운영된다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을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로 인해 계속 바뀌므로 안정적으로노하우가 축적되지가 않는다. 문화공무원제 등을 도입하거나 하여 지역성과 지역민들의 맥락과 소통하며 축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내셔널트러스트

○ 내셔널트러스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주 구성에 있어서 내셔널 트러스트 항목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매우 협소한 부분으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 문화재 한 가족, 한 기업, 한 학교 전담제'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가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데다가,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조직은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장사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 내셔널트러스트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시민들의 참여권이나 일반 국민들의 향유권 자체가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향유 계층만이 전유했었다. 그리고 이는 일반 학계의 풍토와 유사했다 볼 수 있다. 고고학이나 인문학이나 미술사, 한국건축사, 불교미술사에 의해 점유되어왔고 일반인들이 향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넓어진 것을 일반적으로는 유홍준 선생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더 이전부터 존재한 민학회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재야에서 문화재학 등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회로써 젊은 시절 유홍준 선생도 민학회 활동을 했다. 이들은 답사도 많이 다니면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많이 했다. 대중적 폭발로 만든 사람은 유홍준 선생이었지만, 그 외에도 최순우 선생이나 백자항아리의 미적 측면에 대해 많이 얘기했던 김한기 화가, 암석 과 화강암의 질감 등을 그린 박수근 화가, 이중섭 화가 등이 우리가 찾지 못했던 전통적 미적측면들을 찾아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민학회를 거쳐 유홍준 선생에 의해 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엔 문화재 주변에서 난개발 이루어 질 때는 박물관 학예사나 학자들이 막았지만 요즘에는 ngo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조금씩 시작된 변화이며, 문화재 행정에 대한 모니터 요원 선발도 8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난개발을 시민들이 나서서 막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 등지에서 국민의 힘이 없으면 문화재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정도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한 가족, 회사 등이 전담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 내셔널트러스트 관련한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 자체가 일본의 문화재 법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며, 문화재라고 표기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뿐이다. 다른 나라들에선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화라는 게 골동품, 즉 돈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문화재라 하며 도자기, 그림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특정 미적 관점을 가지고 골동품으로 대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습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특히 버려진 한옥들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근대의 기록들까지도 많이 버려졌다. 얼마 전 문화재청의 이름이 문화유산청으로 바뀌었다. 유산, 즉 물려받은 것이라 하면,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의미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유산이라는 큰 범주의 틀로 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국민들이 유산을 소중히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천박한 자본주의 문화 때문인데, 문화재가 주변에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개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거나 꺼리거나 쉽게 취급했던 경향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오직 밀어붙이던 개발 형태나 김영삼 정권 때 역사적으로 부정적 기억 떠올리는 문화재를 다 없애라고 했던 지시 등은 모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실은 일제 잔재라도 다보존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밀어버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인가가 나면 개발을 하고 가꾸는데 한국은 전혀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주춧돌이 발견되어서, 탑을 복원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어김없이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라는 교조적 학계의 태도가 불거져 나온다. 게다가 일반인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채 전문영역이라며 배제해버리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문화재는 어렵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 내셔널트러스트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문화재 행정모니터를 120명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각 지역이나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아냈는데 이제껏 딱 한번 회의를 개최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최근 일어나는 운동인 한 문화재 한 가족, 한 기업 운영 운동은 한 문화재 전담해서 관리하고 하루에 한번씩 가서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활동가들을 아직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충 청소나 하고 써포트나 해주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 어떤 참여의 주체로 전혀 인정을 안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에 도슨트 위원회 있는데 이들의 권력이 상당히 센 편으로써 심지어 박물관 운영에도 관여하는 수준이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현재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범주가 오합지졸 격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보호기본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청 보다는 국가유산청이 나은 것 같다. 왜냐면 국가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록물, 박물관, 무형문화재, 자연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며 제대로 이야기 하자면 국가유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기록보존서는 50년만 지나면 문서로 잘 보존해야 한다. 근대 문화유산의 개념이 50인데 이러한 기록들이 매우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 어떤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어떤 것은 정신문화연구원 교육부로 가 있고, 국민현대미술관도 따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조선회화도 따져보면 150-200년밖에 안된 것이고, 우리 세대가 조금만 지나가면 1930-40년대

작품들이 곧 100년 된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 유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참여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아직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궁예 신탁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입법 추진하라고 명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왜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의 문화유산 관련 부처들의 명칭은 Cultural heritage of Canada 등 국가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캐나다 문화유산청의 경우 외국귀빈영접도 담당한다. 외교도 문화라는 생각에서이다. 한국에서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너무 작아 아쉽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혹은 환경권으로 설정되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개발이 금지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규제'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정책이다. 이런 보존지구들로 '규정'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한국 사람들은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 치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지구로 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두 배로 올려 주므로 반색을 한다. 규제라는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역들의 공시지가를 바꾸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보통 현금으로 보상해주려 하는 데, 이는 매우 단기적인 정책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간접화폐 차원으로 그 권역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과거에는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유공자였지만,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이므로 보전권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세제의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차원의 간접화폐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세 면제, 교통요금 지원(철도, 항공요금..), 특소세 할인, 주민세 할인, 재산세 면제 등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상 부담도 적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이 아니라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으며, 최근 본인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4. 문화환경권 전문가 인터뷰

[순서]

정기용(기용건축 대표) - 주거생태권

김인수(한국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소장) - 주거생태권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 보행권

김성한(문화유산연대회의 사무국장) - 문화재향유권

김인수(기용건축 대표) - 주거생태권

○ 문화권이란?

우선 권리란 당연히 사람들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불특정 다수의 개념보다는 흔히 얘기되는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에는 그것을 활용 또는 표출하는 주체와 이를 보장해 줄 국가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이를 근대국가, 근대국민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는 개인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고, 이를 통해 국가는 개인에게 여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계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과 국가 혹은 집단과의 관계가 권리의 핵심일 것이다.

사실 권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다. 인간의 권리, 혹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화권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화에 접근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문화란 우리가 흔히 총칭해서 표현하는 문화이다. 이는 공공시설물에 접근할 권리로서 즉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관련된 준비, 입안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배제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접근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문화예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원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문화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국가는 문화의 창작, 소비와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굴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공간이다. 창작과 소비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와 공간에 관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땅 값을 올리게 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실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빈 공간들을 이들에게 내주어 활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권의 또 다른 개념은 '거주의 권리'이다. 문화를 삶의 총체적 모습이라고 규정한다면, 결국 문화는 삶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장소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장소에서 삶을 표출해낸다. 인간 존재의 당연한 권리는 바로 '장소에 있을 권리'인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고, 나아가 양질의 주택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 문화환경권이란?

인공적인 환경, 거주, 도시풍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환경권이란 자연을 제외한, 도시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환경권이란 이 중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결국은 질 좋은 환경에 처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환경에 처할 권리로서 환경권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거주, 시설에 접근할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쾌적한 권리', '주거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도 이러한 환경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거환경 우리나라의 정책현황이나 법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법이나 제도는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본다. 부족한 것은 이런 것보다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조망권을 본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못 되어 있다고 보기 보다는 도시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도시를 관리하는 주체가 꼭 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속적이며 3차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망권이나 환경권이나 다 포함되는데 법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현되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게 된다. 따라서 도시를 지속적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제도 같은 것이 마련되어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선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획일화하고, 제단 하는 것이 아니라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집단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계획이나 입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하는 시간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국제권고나 협약, 혹은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프랑스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임대공공주택(HLM)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을 때때로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질 좋게 짓도록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는 지속적인 주택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다. 지속적인 주택정책이란 주택정책의 정의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싼 값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민주택이 열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고, 나머지는 팔기위해 짓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윤을 남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반면 외국은 공적투자를 통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주거환경, 도시저소득층(임대주택)과 관련된 현황과 정부정책 개선방향

앞서 말했듯이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질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 해소하려면 주택의 공급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는 이익의 회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해야 한다. 환경의 질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즉 공적자금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 수많은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항목이 예산에 잡혀야 한다. 또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임대주택 개선에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도시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스스로 집을 소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현재 임대주택은 딱 그 수준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은 멸시의 대상이다. 서민주택은 지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상식화된 생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국가가 임대주택을 아름답게 건설해야 한다. 평수도 다양하게 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 만큼 질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임대 즉 빌려 준다고 하면 흔히 셋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오죽하면 저렇게 살겠냐 하는 인식이 깔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아니라 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Social Housing)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결국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김인수(한국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소장) - 주거생태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생활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도시환경 자체가, 일상 생활환경 자체가 문화환경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고, 여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권리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오는 것이 모두 문화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문화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습, 건물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문화환경이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권리이다. 예를 들면 보행환경, 즉 길을 걷는데 갑자기 인도가 없어진다거나,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없애는 것 등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권이 아주 거창한 것 보다는 이렇게 일상에서 얘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문화적으로 살수 없는 환경이다. 바로 그 점에서 문화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권이 하나의 범주로 설정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환경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즉 환경보존·생태보존이라는 말이 빠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빠져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같은 것은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본으로 들어있다. 따라서 이를 프로파간다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공기가 깨끗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찾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권의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미의 문화, 즉 시설로서의 문화, 행동으로서의 문화 외에 일상으로서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로서의 문화권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문화평등권에서 소수자의 권리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자와 다수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평등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주거생태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삶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가 되는데, 녹지의 입장에서 꼭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녹지보

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질,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본다. 녹지도 녹지 나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과의 네트워크도 이루어져야 한다. 녹지가 녹지 자체의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와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권리도 되지만 권리와 함께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녹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 주거생태권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관한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 물성과 관계한다고 했을 때 자연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기준이 된다면 자연, 주변 환경 즉 물성으로 나타나는 것들 어떤 자연적인 요소라든가,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 단순히 환경이 새롭게 만드는 개발만의 문제, 즉 보존이나 개발이냐의 문제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시대와 시대,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가 된다면 의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상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지으면 녹지면적 확보하고, 일정 비율을 맞춰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인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도 가장 미니멈 기준이다.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녹지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강, 남산 등 자연공원이 많아 도시의 전체 녹지면적은 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네트워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등을 보면 좋은 곳은 좋은데, 열악한 곳은 한 없이 열악하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 건축법에도 조경규정이 있다. 퍼센트로 미니멈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춰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하고, 하는 등등의 규정이 있다. 문제는 되 있는 법자체가 잘못 악용된다는 것에 있다. 쉽게 말하면 법이라는 것이 맥시멈 상한이 아니라 미니멈 상한선이다. 따라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만 하면 넘어가는 것이니까. 더 좋게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실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다.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권리는 최대한으로 찾아내고 의무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도 주택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면적이 얼마가 되면 놀이시설 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놀이시설을 주차장에다 만들고, 남

는 곳에다 만들고 한다. 따라서 놀지 못하는 놀이시설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법적 기준이 확대될 필요는 있다. 최대치로 규정되어도 문제인데, 우리의 법이 모두 최소치로 규정되어 있으니깐. 그런데 법적 기준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결국 운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 주거생태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비해 공원면적 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밀도, 지형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엔 운영의 문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공의 투자이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 보행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행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향유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생산과정의 참여와 같은 그런 형태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권은 추상화될 우려 또한 있다. '문화'의 개념 설정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될 수 있다. 문화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얘기된다면 보행, 건축, 조경 등 모든 것이 다 문화권이 될 것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권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면 요구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한 대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다면 문화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보행권이 문화권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은 작위적일 수 있다. 문화권이라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보행 환경과 보행문화(행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행권이 문화권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 작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행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각종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횡단보도 설치, 차 없는 거리 선정, 산책로 만들기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연대의 활동을 통해 지난 97년 의원입법 형태로 서울시에서 보행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아주 만족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여는 했다고 본다. 보행조례에 의거해 5개년 기본계획이 작성되고 현재는 2차 계획이 수립 중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권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 간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유기적인 것인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문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점에서는 시민단체도 반성해야 한다.

보행권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보행권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법으로 제정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도시연대에서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운동을 할 때도 이 점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된 경우는 없어도 유럽은 1950-70년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추구되었다. 보행자 우선지구,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들이 추구되어 왔다.

김성한(문화유산연대회의 사무국장) - 문화재향유권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문화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작금 현재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권이란 아주 기초적인 보존과 관리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대규모의 사적이나 보물 아니며 금전적인 이유에서의 문화유산을 바라다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권이란 다양한 사고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문화란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삶을 현실에 되새기며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문화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인권에 포함되는 기본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는 다양하다. 현재 우리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획일적인 문화 즉 일반적으로 유행이라는 욕망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문화의 변질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 각자가 다양한 문화를 접 하므로써 이러한 획일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질적 양적인 문화에 대한 체험과 향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저희는 문화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환경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쟁점 목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범주나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에는 많은 권리에 대한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질적 양적인 체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러한 문화권에서 특히 문화유산의 향유권에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작년 장애인들과 강화도의 답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들에게 이러한 문화의 권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의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문화재향유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의 시대에서 현재 우리의 문화유산은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중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기준을 우선시 하는 과거의 교육에서 우리가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보존과 보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유산의 향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우수울수 있지만, 문화유산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문화유산, 무형의 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획일화된 교육, 특히 서양음악의 교육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의 향유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지켜보고 이것은 보존해 나가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이라고 생각된다.

○ 문화재향유권 관련한 법률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만 있을 뿐 이것에 대한 활용정책은 전문한 상태이다. 매tm컴과 미디어에선 우리의 문화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인식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문화유산은 보존하기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향유도 또한 기본적인 가치와 인식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식의 변화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문화유산의 홍보나 이에 대한 금기사항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선생님께서 문화재향유권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침해사례나 구제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유산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향유권도 있지만, 문화유산의 고유 즉 원형조차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권과 다른 사람들과 향유할 원천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군사보호시설이란 이유만으로 훼손 되고 있고, 경주나 서울에서도 잘못된 문화유산의 지식과 설명으로 단순한 가치기준으로써 즉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을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은 당시의 생활과 시대적 배경에서 가치기준과 다양한 체험들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부산의 영도다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리의 역사성에 대한 평가는 없애면서 현재의 가치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보존을 미루는 것은 현 우리의 인식기준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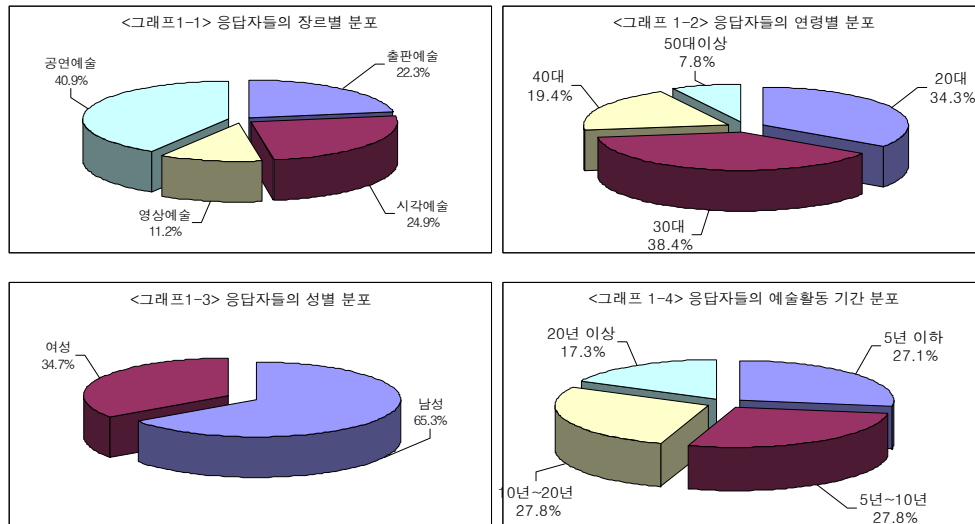
○ 문화재향유권 관련한 문제들의 실천방향이나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의 보호방식이 문제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은 실패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이 좋은 사례이다. 문화유산의 향유는 정부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정책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유산은 다른 문화와 달리 과거에 대한 문화의 생활과 시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에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인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치욕과 현 생활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문화유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화유산은 현재의 생활에서 우리의 존재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향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민속, 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발전, 발달 되어 왔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이 무엇이며, 이것이 영속성과 현재까지 존재하게 된 다양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문화유산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 나의 삶과 가까이 있고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 생각된다. 문화유산은 많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왜 이러한 규제 속에서 보호되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인 가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껴 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자체 포함)에서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필요한 이유를 공청회나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우리의 문화유산의 향유권에 대한 홍보작업을 할 때하고 생각한다.

[부록 3] 표현의 자유 관련 문화예술가 설문조사 결과⁹⁸⁾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이번 설문에 응한 예술가는 총 269명이었다. 이 중 공연예술(음악, 연극, 춤)에 속하는 예술가는 110명(40.9%), 시각예술(미술, 사진)은 67명(24.9%), 출판예술(문학, 만화)과 영상예술(영화, 애니메이션)은 각각 60명(22.3%)과 30명(11.2%)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103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0대가 92명(34.3%), 40대(19.4%), 50대 이상(7.8%) 순이었다. 남자가 173명(65.3%)로 여자보다 많았다. 예술활동 기간(창작기간)은 대체로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각각 27.8%(7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하가 27.1%, 20년 이상이 17.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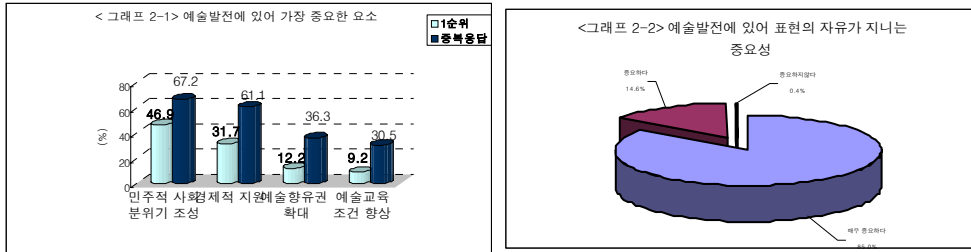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묻는 질문

예술가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순위별 표기)”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1순위 4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르별로는 출판 예술에 속하는 예술가들의 58.5%가 이 항목을 1순위로 지목해 문학인들과 만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1.9%), 40대(53.8%), 30대(44%), 20대(42%) 순으로 이 항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흥미로웠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갈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창작활동에 절

98) 본 설문조사는 문화연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서 실시한 문화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의식조사 결과를 정리한 문건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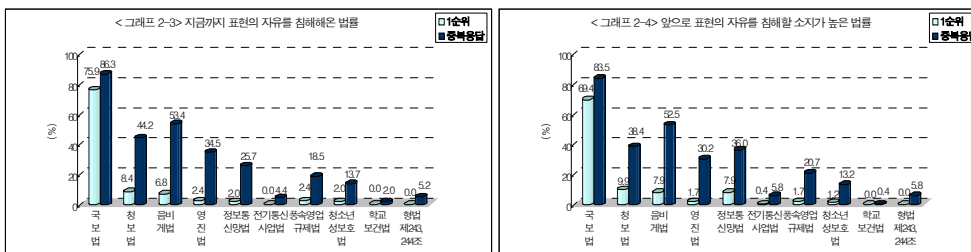
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 항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들은 그 다음으로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31.7%)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 항목은 특히 시각예술가들의 37.3%와 30대 예술가들의 37%에 의해 1위로 지목돼 시각예술 종사자들과 왕성한 예술창작 활동을 벌이는 연령대의 예술가들이 비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예술가의 33.5%가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답한 반면, 남자는 29.2%에 그쳐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작활동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예술 활동 향유 및 접근권 확대’나 ‘예술교육 환경의 조건 향상’을 1순위로 꼽은 예술가는 각각 12.2%, 9.2%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특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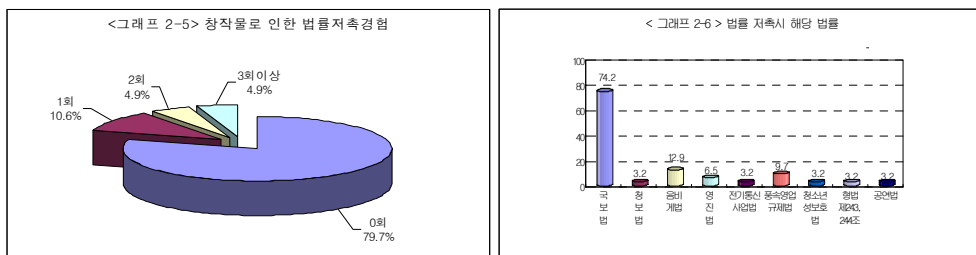
또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85%)고 답변해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술가(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의 총수는 전체 응답자 중 4명을 제외한 26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또한 우리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75.9%)이 월등히 1순위를 차지했다. 그 다

음으로 청소년보호법(8.4%),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6.8%) 순이었다. 특히 40대 이상(93.6%), 시각예술가(88.1%), 창작기간 20년 이상(95.6%)가 각각 1순위로 국가보안법을 꼽아 오랜 동안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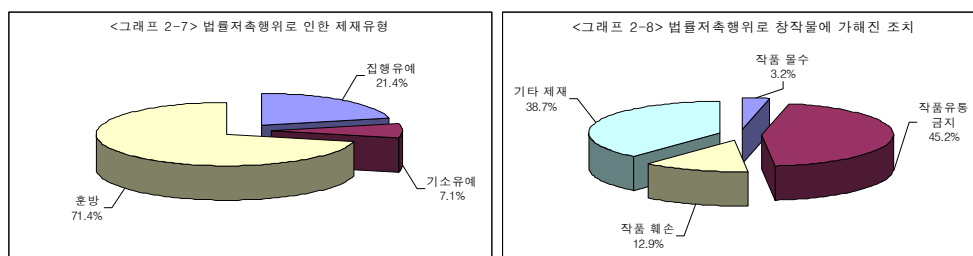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답해 달라”는 요구에서도 69.4%가 국가보안법을 1순위로 지목해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등은 각각 9.9%, 7.9%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법률들도 10%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50대 이상과 40대이상의 예술가 94.7%, 84.7%가 각각 국가보안법을 1순위로 지목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들일수록 국가보안법을 1위로 지목한 것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통계치는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광범위한 사상·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침해가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예술가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해 순위를 매기지 않고, 중복답변으로만 통계치를 낸 결과에서는 국가보안법, 음비게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영화진흥법이 각각 83.5%, 52.5%, 38.4%, 36%, 30.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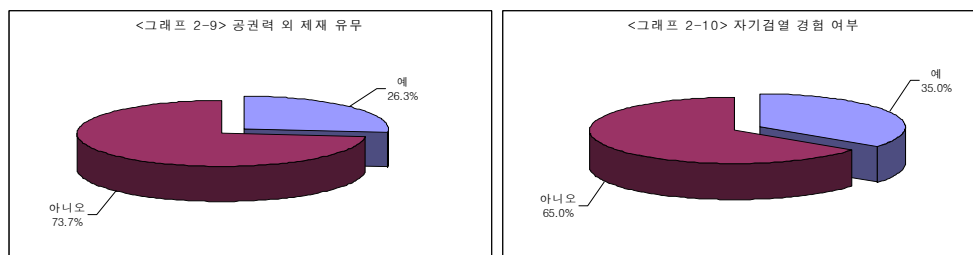
“작품창작과 유통 시 법률 저촉 여부”를 묻은 질문에서는 설문답변자의 20.3%가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중에서 2회 이상 법률에 저촉된 예술가도 9.6%나 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법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법률에 저촉됐다는 답변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찌보면 자연스럽지만, 창작 기간 및 연령대와 법률저촉 빈도를 비례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낮은 연령대의 예술가나, 창작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예술가들도 못지 않게 법률에 저촉된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응답자의 74.2%로 월등히 많았다. 이 질문에는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술가들 중 31명이 참여했는데, 음비게법(1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9.7%), 영화진흥법(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받았던 제재의 종류”로는 ‘조사 후 훈방’(71.4%)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가 기소유예(7.1%), 집행유예 등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출판예술의 경우에는 집행유예(60%)가 ‘조사 후 훈방’(20%)보다 월등히 높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출판예술 분야의 특수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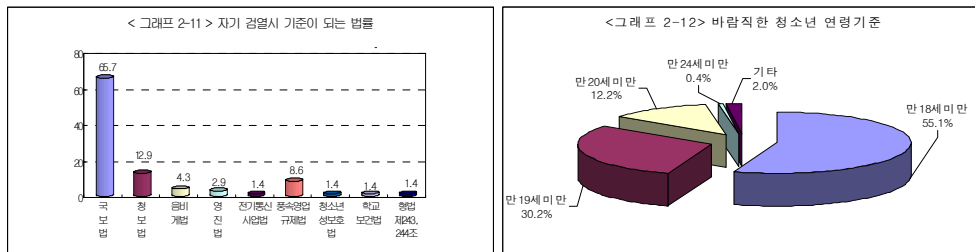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응답한 예술가의 45.2%가 ‘작품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답해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향유자와의 소통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가장 빈번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이밖에 ‘작품 몰수’(3.2%), ‘작품에 대한 훼손’(12.9%)도 적지 않았다.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훼손이 23.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해 과거 공연물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짐작케 했다.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3%의 예술가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창작기간이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총 사례수 40명) 중에서는 특정집단에 의한 협박이나 압력(특정 종교우익단체에 의한 창작활동 방해)이 22.5%(9명)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도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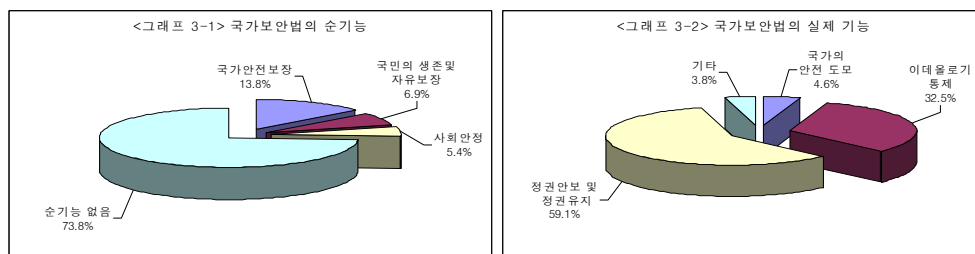
충격적인 것은 응답한 예술가의 35%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예술 분야일수록, 남자 예술가일수록 월등히 높

은 수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일수록 자기검열 비율이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었다. 이는 예술가의 예술적 영혼을 갉아먹는 법제도 때문에 예술적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창작여건에서 예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사회발전도 그만큼 담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창작 시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이 주로 무엇이나는 질문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보법(총 응답자 70명의 65.7%)이었으며, 정보법이 12.9%로 그 뒤를 이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고려한다는 예술가도 8.6%나 됐는데, 공연예술가의 17.9%가 이 법률을 고려한다고 답해 공연예술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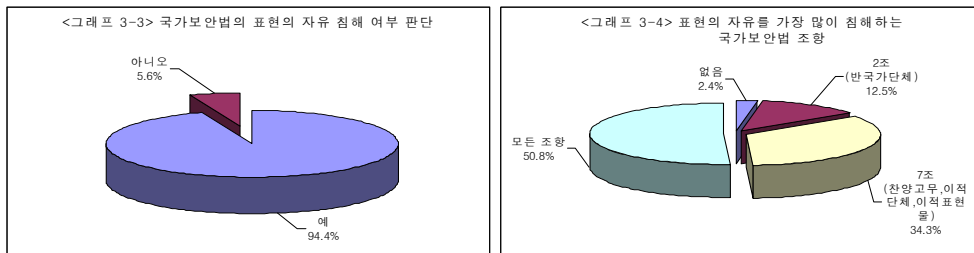
“청소년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몇 세가 타당하겠느냐”를 묻는 대목에서는 응답자의 55.1%가 ‘만18세 이하’를 지목했으며, ‘만19세 이하’와 ‘만20세 이하’는 각각 30.2%, 12.2% 정도에 머물렀다. 영상예술에 속한 예술가의 경우 75.9%가 만 18세 이하가 타당하다고 답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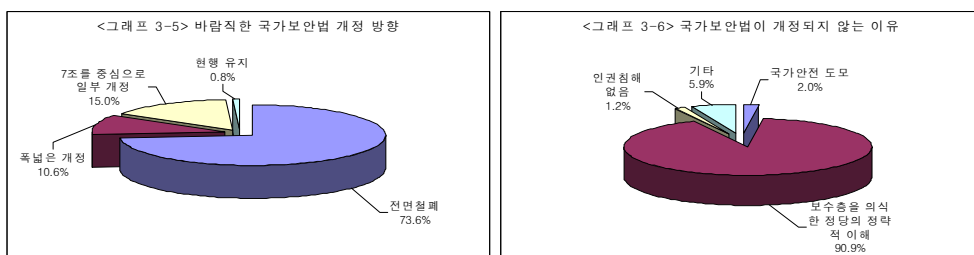


먼저,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묻는 질문에 ‘순기능 없음’을 답한 예술가가 73.8%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실증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도모’는 응답

자의 4.6%에 그쳤고,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과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가 각각 32.5%, 59.1%에 달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창작기간이 오래됐을수록 비교적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항목에 대해서도 ‘예’라는 답변이 94.4%로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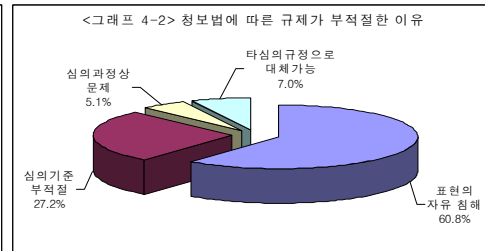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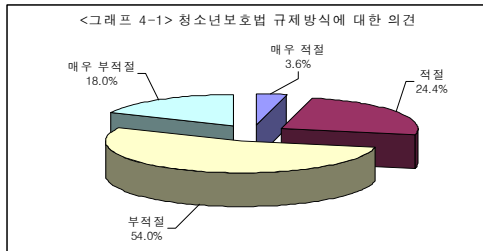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중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예술가의 답변이 50.8%나 돼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이나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가입/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지목한 예술가도 모두 합해 46% 정도에 달했다. 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특히 65.9%의 예술가는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답했다는 점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영상예술가의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최대의 조항으로 지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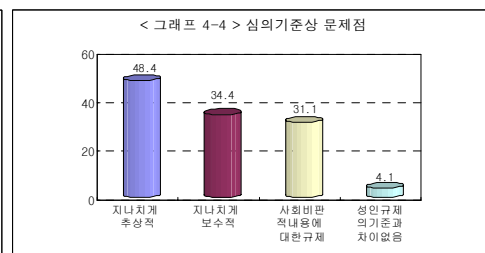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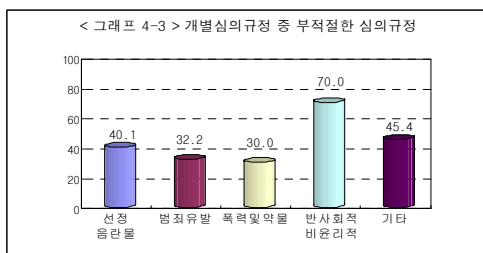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면 철폐’가 73.6%를, 부분개정 혹은 일부개정이 나머지를 차지한 반면, 현행유지는 0.8%에 불과해 폐지나 획기적 개정이 불가피함이 명백해졌다. 특히 50대 이상, 창작 경력 20년 이상의 예술가 중에서는 아무도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90.9%나 되는 많은 예술가들이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4.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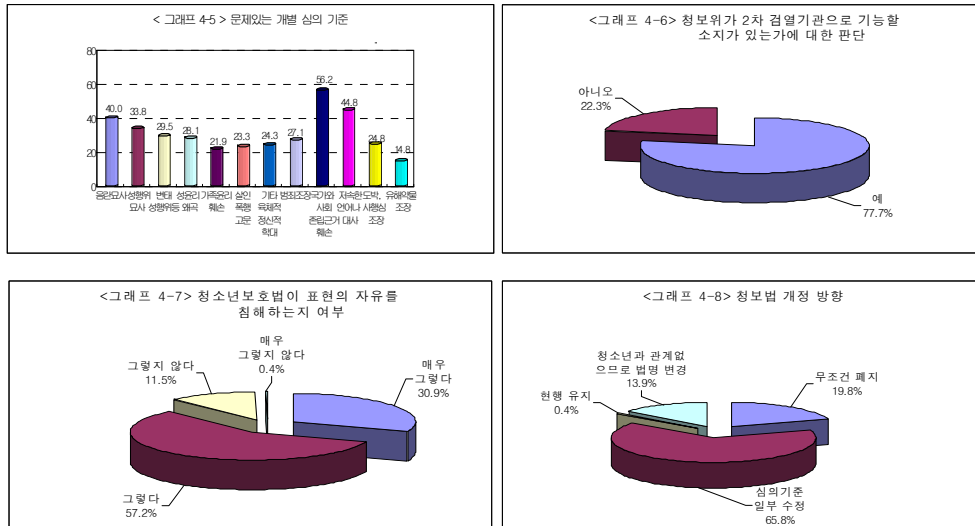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등을 통해 청소년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술가들은 ‘적절하지 못하다’(54%)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72%의 예술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영상예술 분야의 예술가일수록, 20대일수록 거부감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은 결과 많은 예술가들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60.8%)이거나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27.2%)이라고 답했다. 정보법의 경우 부정적 인식과 연령대 및 창작기간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대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영상 영역이나 재기발랄한 창의성을 작품활동에 담고 있는 20대의 경우가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기’로 제시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고르라는 요구(중복답변 가능)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선정성, 음란성, 건전한 시민의식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골랐다. 지목된 항목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 각각 40.1%와 70%를 차지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의 문제점”(중복답변 가능)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48.4%),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34.4%), ‘음란물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3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는 창작기간 20년 이상과 50대 이상의 예술가들일수록 심의

기준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 예술가들이 사회일반의 경향과는 달리 진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개별 심의기준 중 부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는 12개의 개별 심의기준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지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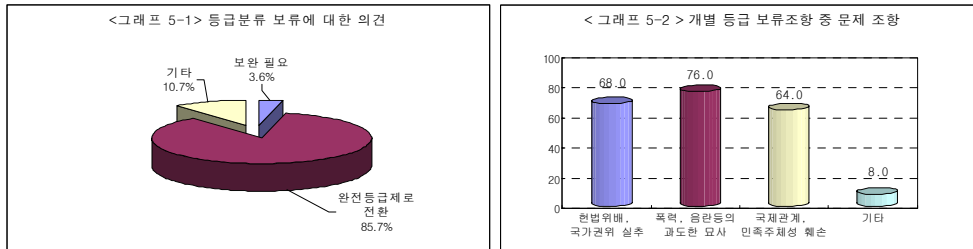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예술가들이 ‘예’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예술가가 88.1%에 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답변 결과들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유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심의기준들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5.6%에 이르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질문들 모두에서 영상예술 분야에 속한 예술가들의 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문화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영상 분야에 속한 예술가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받아 왔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 영화진흥법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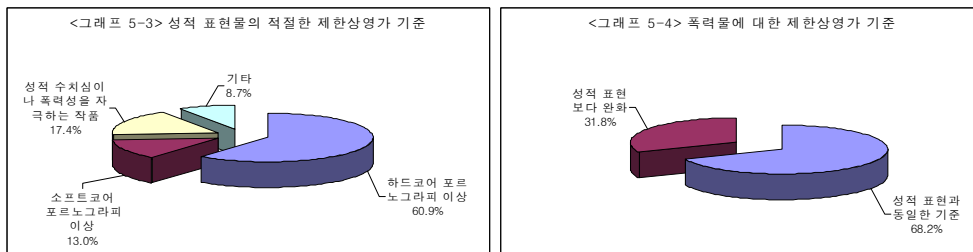
“영상예술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주십시오”라는 전제를 깔고 임한 이 조사 영역에는 총 30명의 예술가가 설문문에 참여했다(1차 설문 조사에서는 13명만이 참여해 재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려 둔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이 결정된 “등급분류 보류”를 묻는 질문(조사 진행 중에

현재의 판결이 나왔음) ‘어떠한 등급보류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등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85.7%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앞으로 문화부가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관점을 잡아야 하는지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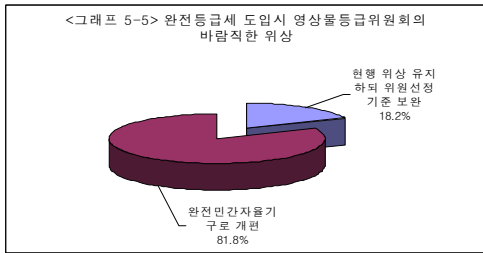
등급분류보류제도 보완 및 개정에 동의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급분류보류 기준”(중복응답 가능)을 묻는 질문에서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가 각각 68%, 76%, 64%로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완전등급제에 찬성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이 60.9%로 월등히 높았고,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이 13%,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성을 자극하는 작품’이 17.4%를 각각 차지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 표현에 대한 기준도 등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성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가 68.2%를, ‘아니다(성적 문제에 비해서 폭력은 좀 더 너그럽게 용인할 수 있다)’가 나머지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등급제 도입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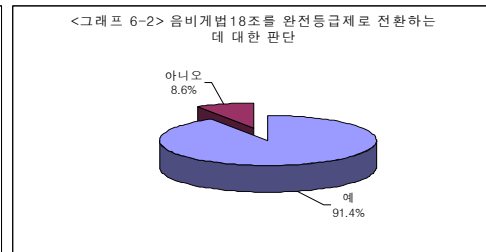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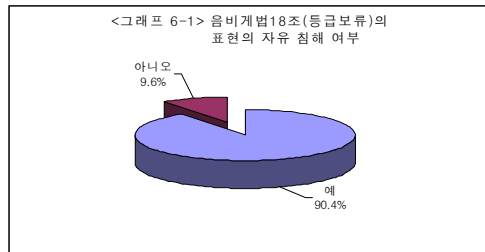


이 적절하다'는 아예 없었고, '미국의 영화분류및 등급협회(CARA)처럼 완전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 또한 문화부가 영화진흥법을 개정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진흥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각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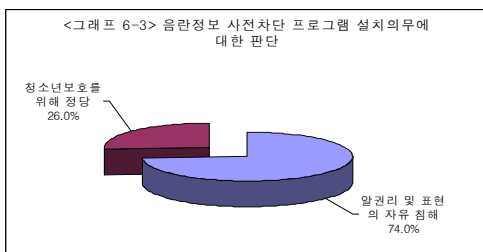
들 간 특별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6.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관한 질문



이 질문영역에서도 역시 “영상예술 및 음악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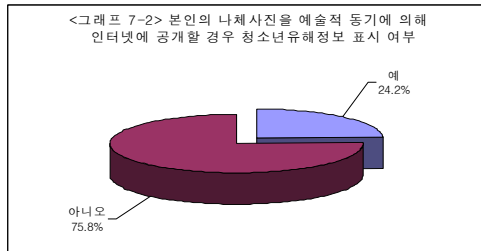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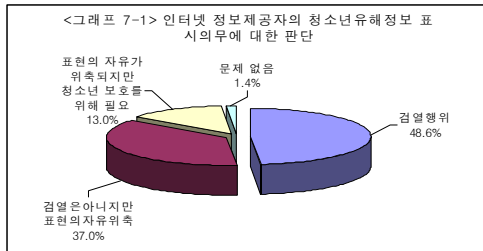
먼저 “음비게법 18조에 의한 등급분류보류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0.4%에 달하는 예술가가 ‘그렇다’고 답해 등급분류보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역시 “등급보류 제도의 완전등급제로의 전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1.4%의 예술가가 ‘동의한다’고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비게법 32조에 따른 PC방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라는 의견이 7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흥미롭게도 음비게법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

령대별로, 창작경력 기간별로 음비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례수가 한정된 한계도 작용했겠지만, 40대나 50대의 경우 아직까지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무화설치 조항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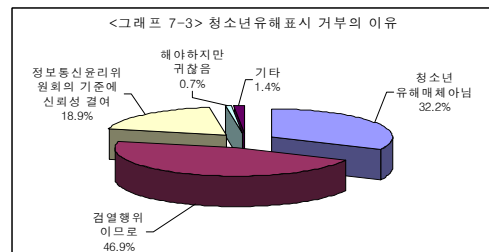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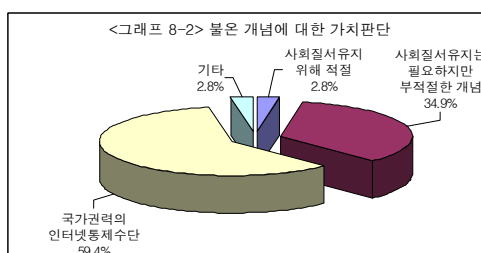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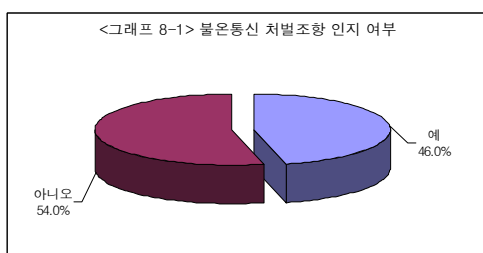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에 의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국가의 검열행위이다’(48.6%),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다’(37%)라고 답해 이 규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14.4%에 그쳤다. 이 질문의 경우에도 역시 영상예술가들의 거부감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50대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75.8%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예술가들이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이 경우에도 영상예술가들의 92.3%가 ‘아니오’에 답한 반면 50대의 40%만이 ‘아니오’를 지목한 것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뤘다.

‘아니오’에 답한 예술가들은 그 이유로 ‘국가가 검열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46.9%)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다’(32.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18.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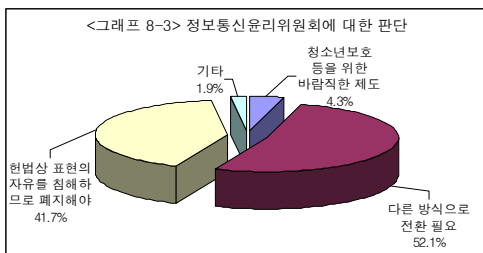


8.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도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해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여기에서는 위 법 53조 ‘불온통신 금지 처벌’ 조항을 모른다는 예술가가 54%나 돼서 우려스러웠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국가권력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답변이 59.4%로 제일 많이 나왔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개념이다’는 답변도 34.9%나 됐다. 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이다’라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서의 불온정보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인터넷내용등급제,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를

꼽은 예술가가 52.1% 정도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확한 불법행위임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가 41.7%, ‘청소년보호 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가 4.3%를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는 영상예술가일수록, 낮은 연령대의 예술가일수록 폐지나 개정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분포도가 그려졌다.

어쨌든,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며, ‘불온’조항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 조항’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감도 없지 않았다.

[부록 4] 국가문화권정책기본계획(안)

1-1. 문화자유권 : 문화적 자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의 제정, 문화현장의 제정,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증대

필요성

- 한국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문화적인 관점이 배제되어 있음
-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적 권리 신장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
- 소수의 전문 문화예술인들만의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발전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문화기본법과 문화현장 제정이 필요.

추진전략

- 새로운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 개인의 삶의 양식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의미 등에 대한 공론화
- 문화관련 각종 법의 이념과 목적을 담을 수 있는 상위법으로 기능
- 문화기본법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구성(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TF 팀을 운영 중)
- 모든 시민들이 인정하고 모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만족을 위한 법률로 제정
- 2005년에 문화현장 제정 계획

근거 및 외국사례

- 국제연합유엔헌장(1948년)에 문화적 참여권리를 명시
- 유럽연합기본권헌장(2000년)에 유럽공동체의 문화적 의미를 명시
- 유네스코헌장(1945년): 표현의 자유, 문화정책참여, 문화유산, 교육,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각종 선언문, 권고안들을 제출

재원 : 문화기본법과 문화현장 제정에 필요한 연구비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 문화자유권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

-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50년 넘게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 특히 이적표현물 등의 제작·반포죄 제7조 제5항으로 인해 체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들이 정권의 안보 차원으로 검열 및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됨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추진전략

- 현재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법 발의안 상정되었음
-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매일 집회를 실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인 지지서명과 문화제 개최

근거 및 외국사례

- 국가보안법의 7조 제5항 이적 표현물의 제작, 반포죄
-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 국가안전법, 통일독일의 헌법보호법, 단체법, 결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냉전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검열을 하지 않는 추세임

재원

관련기관 : 법무부

1-3. 문화자유권 :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인권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

필요성

-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가 주된 법으로서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 도서출판, 영화, 음반, 비디오 등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여 청소년이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청소년보호법'이 굳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음.
- 청소년 정책이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와 자율적인 활동을 정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불필요함.

추진전략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독립기구인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기로 결정하였음.
- 청소년위원회의 출범 이후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추진
- 네거티브한 보호정책 중심의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장려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 추진을 위한 공론화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청소년보호법' 10조(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명시.
- 1989년에 제정된 유엔 아동권리헌장에는 아동보호 중심에서 참여 중심의 인권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재원 : '청소년인권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비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1.4. 문화자유권 : 영화등급제의 기준 완화

필요성

- ‘영화진흥법’상 영화등급제는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관람가로 구분하고 있음.
- 영화등급에 대한 심의는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신장되고 문화적 불권리가 확장되기 위해서 등급심의에 대한 기준이 더 완화되어야 함.
- 제한상영관 등급 기준이 포르노그래피 영화를 규제하고 있어 국제 기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보수적인 영화등급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영화등급제도가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여전히 사상, 사회적 금기 등의 표현에 있어 제약이 많음.

추진전략

- 영화등급제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의 등급기준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함.
- 제한 상영관에 포르노그래피 영화를 허용하고,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등급을 심의

근거 및 외국사례

- “영화진흥법” 25조(상영등급분류)에 등급이 분류되어 있음.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인영화전용관에서 포르노그래피 영화를 상영함.

재원 : 영화등급 조정 타당성에 대한 연구비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영화진흥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1-5. 문화자유권 : 영상물 및 공연물에 대한 수입 추천제 폐지

필요성

- 외국 음반, 영화, 비디오 및 공연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로 인하여 동 표현물들이 소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국민의 불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음
- 수입추천제는 정치적, 윤리적 금기에 도전하는 표현물에 대한 사전 차단장치로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위헌 소지.

추진전략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새로 제정될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수입추천제를 2006년에 폐지할 것을 검토.
- 국회 입법을 통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수입추천제를 폐지 추진.
- 외국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수입 추천제도 역시 불권리 차원에서 폐지 추진.

근거 및 외국사례

-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35조(음반 수입 등의 추천) 등에 외국 수입음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의무화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영화, 음반, 비디어에 대한 사전 추천제도가 없음.

재원

관련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관광부

1-6. 문화자유권 :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필요성

- 방송법의 심의규정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문화예술, 연예와 관련한 표현의 심의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심의가 일반적임.
- 음악, 공연, 뮤직비디오, 연예인 복장 등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방송의 심의 규정이 가장 강한 상태.
-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간접광고(PPL)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가수들의 노래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에 준하는 심의 완화가 필요.
-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이 제작되지 못하고 있어 창작자들의 권리와 시청자들의 불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추진전략

- 방송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제도(보도교양심의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영화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심의 기준을 완화.

근거 및 외국사례

- “방송법” 33조(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해 심의 기준 완화
- 방송위원회의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완화
- BBC, NHK 등 외국의 공영방송도 방송에서의 문화적 표현물과 행위에 대한 심의기준이 한국의 심의에 비해 훨씬 개방적.

재원

관련기관 :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1-7. 문화자유권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전자식 표시의 무화 조항 삭제

필요성

- 현재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온라인 표시방식(pics)로 인하여 사전에 정보접근이 차단될 여지가 있어 정보접근권을 침해
- 전자식 표시 의무화로 인해 음란물의 성격이 아닌 내용을 담은 사이트도 임의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음.
- 현재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사이트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임.

추진전략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전자식 표시 의무화조항의 삭제 필요

근거 및 외국사례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해매체물 표시의 문제 제 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호주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온라인 규제법이 시행
- 미국의회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인정하지만, 매체 자체의 규제보다는 기성세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

재원

관련기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8. 문화자유권 :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 삭제-감청 방지

필요성

- 정보통신이 사회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면서 사회적 범죄 및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정보 감시 및 감청 활동이 만연되고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범죄 행위의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 감청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

추진전략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의 삭제나 무분별한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 성명문'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자유롭게 정보 매체에 접근할 권리의 보장을 밝히고 있다.

재원

관련기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 문화자유권 : 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필요성

-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성 글이 많아지고, 개인의 명예훼손에 준하는 폭력적 글들이 난무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제안이 추진되었음.
-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게시판문화의 부분별한 남용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참여권을 제한
- 선거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 참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게시판문화의 민주화와 윤리성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추진전략

- 현행 선거법 82조 6항(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폐지.

근거 및 외국사례

- 2004년 4월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선거관련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중
- 개별관공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규약을 두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등록 시에 실명제를 명시하는 제도를 실시 중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 인증에 대한 의무화 조항이 없음.

재원

관련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1-10. 문화자유권 : 인터넷 패러디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 인터넷에서 정치패러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가 등장
-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패러디를 제작한 네티즌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되어 패러디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
- 패러디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여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추진전략

- “선거법”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에서 인터넷 패러디에 대한 상대방 비방에 대한 포괄적 적용을 최소화
- 특정 정당원이 아닌 개인 창작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패러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보호.

근거 및 외국사례

-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패러디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재원

관련기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11. 문화자유권 : 학술 사상 출판 자유의 보장

필요성

- 탈냉전, 탈이념의 시대에 학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임
- 냉전적인 사고관으로 인해 아직도 진보적인 학술사상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안문제연구소의 좌익이념서적 분류행위 및 역사교과서에 대한 냉전적인 사고관 등 학술사상 출판에 대한 자유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학술사상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음

추진전략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학술사상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

근거 및 외국사례

- 국가보안법의 7조 제5항 이적 표현물의 제작, 반포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술과 사상 출판을 목적으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음.

재원

관련기관 :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12. 문화자유권 : 언론 취재 권리의 보장

필요성

- 헌법, 언론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언론은 취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음.
- 70년대 유신정권 시대나 80년대 5공 시대에 언론은 취재의 자유를 상당부분 박탈당했지만, 현재는 언론의 취재 권리를 억압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언론의 취재의 자유에 있어 신문사 사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화되면서 내부적으로 편집과 편성의 독립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정당한 취재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추진 전략

- 언론의 취재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자료들이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범위를 확대 실시
- 신문사 사주의 편집과 편성에 대한 직간접적 간섭을 없앨 수 있도록 소유지분 비율을 낮추는 신문간행법의 개정 추진.

근거 및 외국사례

-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되고 있음.
- 국경없는 기자회(RWB), 국제언론인협회(IFI), 국제기자연맹(IFJ), 국제발행인협회(WAN)는 언론이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언론 취재에 대한 검열이나 간섭을 받을 경우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재원

관련 기관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한국언론재단

1-13. 문화자유권 : 언론의 취재원 보호의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

- 언론의 취재원 보호가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고발성 정보 제공일 경우에는 취재원이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 내부 고발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취재원의 일방적 보호가 보도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나,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자유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추진 전략

- 취재원 보호는 법률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윤리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언론 윤리 강령, 실천요령, 제작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시켜 언론인들이 가능한 한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도록 하는 일이 요청됨
- 정부는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한 언론인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언론 윤리 등을 알리고, 법률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권장

근거 및 외국사례

- 현재 취재원의 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음.-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언론인은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청받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언론인의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음.
- 직무상 증언 거부권자는 변호사, 의사 등에 제한될 뿐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음('형사 소송법' 제 149조).
- 미국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마빈 패스트 실드법'을 시행하고 있음.

재원

관련 기관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2-1. 문화평등권 : 여성 창작자들의 창작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안 마련

필요성

- 순수예술이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여성 창작자들의 참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태
- 양성문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양성평등을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로서 여성 창작자들의 활발한 창작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진전략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을 위한 문화비전 정책에 '양성문화평등'을 위한 지원정책안이 마련되어 있음 (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 인력 확대, 여성의 문화 참여와 활동여건 강화 등)
-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 2차 계획(2003-2007)'에 여성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과제(각종 문화예술 실태 조사 시에 여성 관련 평가 요소추진, 여성참여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를 추진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 문화비전 "양성평등 문화 확립" 계획
- 여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 2003년 '유엔개발보고서' 여성권한 척도에서 한국은 63위로 최하위를 기록
- 「유엔 위민 와치」 UN WomenWatch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출판물과 제작물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여성부, 여성개발원

2-2. 문화평등권 : 여성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지원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 여성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여성문화의 창작과 여성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
- 문화부 내에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전문 인력풀이 현저하고 부족한 상태

추진전략

-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비전정책과제에서 양성평등문화를 주요 문제로 설정하여 양성평등 문화정책수립, 양성평등 추진기반 조성, 양성평등 문화예술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산 발굴, 아시아 여성문화교류 확대
- 여성문화센터나 지역별 여성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여성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강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 여성문화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화

근거 및 외국사례

- '양성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에서 양성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젠더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에 대한 의제가 설정

재원

관련기관 : 여성개발원, 문화관광부, 여성부

2.3. 문화평등권 : 양성문화의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 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문화매체에서 양성문화를 차별하는 표현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들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양성문화의 권리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창작여건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매체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줄어들어야 함.
- 문화관광부나 여성부나 양성표현의 제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며, 양성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행정부서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추진전략

-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양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
- 양성문화의 차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여론화

근거 및 외국사례

- 헌법(제11조)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
- 세계의 각종 여성단체들이나 UN과 UNESCO의 여성분과들에서 TV, 영화, 광고,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동대응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여성부, 방송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2.4. 문화평등권 : 양성문화의 표현 권리에 대한 문화교육

필요성

- 문학예술작품,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에 양성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문학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양성문화를 평등하게 표현할 권리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연극, 무용, 글쓰기 등을 통해 양성문화의 평등에 대한 표현의 권리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추진전략

- 학교 예체능 수업에서 양성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
- 양성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토론하고, 여성의 문화적 표현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화강사, 연극강사포럼에서 양성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

근거 및 외국사례

-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특별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WomenAction2000>, <UN WomenWatch>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양성표현의 자유를 권장하는 안을 개발.

재원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2-5. 문화평등권 : 성적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권리 확대

필요성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결정되었으나, 온라인 상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
-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문화적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이 강하게 나타남.

추진전략

- 성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를 공론화
- 문학예술, 영화, 비디오, 만화 등의 창작 분야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물을 청소년보호 논리로 규제
-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이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한국의 이슈들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
- 2002년 '엠네스티'에서는 대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중에 한국의 동성애문화에 대한 차별 및 과도한 규제금지를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출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6. 문화평등권 : 성적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성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관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다.
- 성적소수자들을 다룬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다.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무지개축제', '퀴어영화제'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미술, 영화, 공연물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다룬 문화적 표현물들이 제작되고 있는 추세임

추진전략

- 문예진흥원 등을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성적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 차별 금지
- 성적소수자들의 주제의식을 담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
- 창작물에 대한 청소년보호 논리의 과중한 적용을 지양
-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창작센터나 예술가 아틀리에등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외국사례

-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출판사(미국의 엘리슨 출판사Ellison Publishers 등)가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출간
- 샌프란시스코는 국제 남·녀 성적 소수자 필름 페스티벌, 퀴어예술축전과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성적소수자 축제)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인정받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2-7. 문화평등권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제공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 차별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은 장기적인 외국인노동자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임.

추진전략

-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 교육권을 위한 특별학교의 설립 추진
-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
- 학교 수업시간에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이해를 강구.

근거 및 외국사례

-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는 노동조건 이외에 교육권에 대한 명시가 없음.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차별금지의 법적근거 및 처벌규정을 제시하도록 규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재원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2-8. 문화평등권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문화적 특성에 대한 차별 금지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들의 전통문화와 일상생활의 문화들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속문화적 특성들에 대한 문화적 예외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각국의 언어, 관습, 풍습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함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발굴을 통한 다문화주의적 사회구성의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관습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근거 및 외국사례

-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그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이 없음.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 보고서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가이드 북 제작”,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등이 명시
- 유엔은 ‘토착민들의 권리를 위한 유엔 선언문 초안(1993)’이 발표하여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
- 유네스코는 ‘토착민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착민의 문화유산보호를 선언.

재원

관련기관 :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2-9. 문화평등권 : 외국인 노동자 문화센터 건립과 문화격차 해소

필요성

-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은 주로 한시적이고 복지지원 차원의 수준에서 그침.
-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한 다양한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야 함.

추진전략

-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지원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노동자종합문화센터를 건립
-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각 국의 문화지원센터를 건립

근거 및 외국사례

-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휴식, 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이 명시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 보고서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 체육활동 시설 지원, 외국인 문화센터운영,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지원, 아시아열린문화축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 유럽이 선진국들은 각 국가별로 문화센터형식의 문화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풍습, 공연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2-10. 문화평등권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녀교육권 확대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교육은 대부분이 탁아제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등·중·고등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음.
-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를 설립
-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문화적 적응과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다문화적 문화교육지원 센터가 설립

근거 및 외국사례

-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
- 독일 및 서구 선진국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들을 개최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에서 연극 활동이나 합창활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가 문화적 차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일상적으로 개설

재원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한국교육개발원

2-11. 문화평등권 : 탈북자에 대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

- 남한사회의 부적응에 기인한 탈북자 범죄들의 발생과 가정불화·직업부적응·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
- 탈북자들의 정착프로그램들에 있어 직업훈련이나 소양교육은 있지만, 언어소통이나 일상문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
- 탈북자들의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남북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빠른 정착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함.

추진전략

- 탈북자들의 적응 훈련 기간인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남한의 문화예술의 역사와 특성, 남한의 대중문화의 형성과 특성, 건축, 도시공간, 라이프스타일, 음식 등등에 대한 일상문화와 관련된 적응프로그램들을 상설화
- 탈북자들을 위한 '탈북자 문화지원센터' 등을 건립

근거 및 외국사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정착금 등지급(제21조),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생계보호(제26조) 등의 지원시책이 있지만,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현저하게 부족.

재원

관련기관 : 통일부, 문화관광부, 하나원

2-12. 문화평등권 : 탈북자 자녀들의 문화교육권 확대

필요성

-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탈북자 자녀 총 416명 대부분 무학력자이거나 학교중퇴자임.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있지만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교육권을 확대하는 지원 안은 현저하게 부족
- 탈북자 자녀들의 사회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인만큼, 이들에 대한 문화교육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전략

- 탈북자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탈북자 자녀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교육
-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험과 탐방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5조에 탈북자 자녀들의 대한민국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간이 짧고 문화적응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1997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발간한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제22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

재원

관련기관 : 통일부, 문화관광부, 하나원

2-13. 문화평등권 :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필요성

-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영화관·공연장·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
-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과 같은 장애의 성격에 맞는 공연문화공간들의 배려가 거의 없는 상태.

추진전략

- 영화관, 극장을 포함한 공연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석 배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용 지원기구 설치.
- 다양한 문화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보 매뉴얼을 제작.
-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기획 지원

근거 및 외국사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법’ 등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
-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
- 1993년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에 관한 단계적 접근을 제시

재원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2-14. 문화평등권 : 장애인을 위한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

필요성

- 장애인들의 교육권은 법적으로는 보장받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차별받고 있음.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취미활동 등을 지원할만한 전문적인 시설이나 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
-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지원프로그램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문화교육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중에서 문화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권리.

추진전략

- 장애인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문화교육지원센터를 건립 및 프로그램 지원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 일정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립추진
-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 및 외국사례

-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과 불이익에 대한 금지를 명시.
-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문화
-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센터나 교육지원센터가 전무한 상태

재원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2-15. 문화평등권 : 청소년 문화권리의 확대

필요성

- 청소년들은 입시교육 체제로 인하여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
- '청소년보호법' 등 제정으로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이 규제를 받고 있음.
- 영화, 비디오, 게임등급제 등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접근권이 제한받고 있음.
- '청소년보호 논리'와 '청소년문화권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불권리가 위축되는 상황임.
-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은 대부분 대중소비 문화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문화 안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권리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

추진전략

-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인권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하여 청소년문화권리 신장
- 출판물, 영상물 등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 문화적 차별을 해소
- 청소년 문화공연관람시에 모든 분야에 할인제도 도입
- 청소년들의 문화가 공공문화 공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인프라의 지원
- 자율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대안적인 청소년문화 센터의 운영내실화

근거 및 외국사례

- '청소년보호법' 10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불권리가 제한
- 청소년복지지원법 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4조(청소년자치권확대)
- 청소년활동진흥법 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 195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16. 문화평등권 : 청소년의 문화격차 해소

필요성

- 청소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청소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계층별로 문화격차가 심화
- 도심청소년과 농촌청소년들의 문화소비와 문화활동 및 감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자녀, 기지촌 자녀, 탈북자자녀와 같은 특수계층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문화격차를 보이고 있다.

추진전략

- 청소년의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업그레이드 프로그램지원
- 다음세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업그레이드”프로그램 같은 민간 사업을 지원
- 청소년의 문화향수의 격차만이 아니라 문화생산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 장애 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탈북자 자녀 등 소외 청소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및 외국사례

- 청소년기본법 10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청소년활동진흥법 6조(청소년활동 지원본부의 설치)
-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집중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3-1. 문화참여권 : 시민의 공공문화 참여권의 확대 -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

필요성

- 방송영상제작, 미디어생산, 정보공유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설한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
- 방송법에 근거해 지상파방송에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시청자참여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최근 단파라디오방송 채널의 신설로 지역시민들의 방송제작권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토대 마련이 필요.

추진 전략

- 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 건립의 확대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확대
- 지역의 단파라디오 방송국 개설의 확대

근거 및 외국사례

- 방송법 제3조, 89조에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조항이 명시.
- 유네스코는 1976년 11월 26일에 채택된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에 의한 참여와 그에 대한 공헌에 대한 권고」

재원

관련 기관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3-2. 문화참여권 : 시민의 방송제작 기회 확대

필요성

- 시청자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모니터링을 넘어서 시청자가 직접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시민영상제'나 '10만원 비디오페스티벌' 등 시민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통하는 기회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 다매체 환경과 DMB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방송참여에 대한 쌍방향 소통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지상파방송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시청자 참여를 확대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내실화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영상제의 활성화

근거 및 외국 사례

-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시청자들이 방송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오래 전부터 개발되었으며, 의무편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참여가 보장
- '방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방송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하고, 방송위원회의 시행규칙에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원

관련 기관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3-3. 문화참여권 :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한 지역시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 지방분권 시대를 선언했지만 지역 간 문화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
- 지역 시민들 간에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참여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음.
-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체계는 미약함.
- 현재 지역의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문화원지원법'이 있으나 대부분 시설의 설치 기준과 의무화에 대한 조항밖에는 없음.
-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함.

추진전략

- 현행 '지방문화원지원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으로 개칭하거나 '진흥법'을 신설
-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의 명시
-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자발적인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근거 및 외국사례

- 유네스코는 "1976년 11월 26일에 채택된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에게 의한 참여와 그에 대한 공헌에 대한 권고"에서 개인의 문화참여권 강조
- 1997년에 만들어진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5조에 개인의 문화적 참여 권리 보장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3.4. 문화참여권 : 시민들의 평생교육권 확대

필요성

- 평생교육권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이나 각 광역시도별로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건립 운영
- 각 대학별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비용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남.
-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연령, 계층,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교육적 권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추진전략

- <평생교육법>에서 교육수요자의 자격권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확대'
- 평생교육 담당 공공기관과 시민자치 기관에 교육인력 강화
-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제도의 확대

근거 및 외국사례

- '평생교육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
- 「교육의 차별에 반대하는 협약」(1960)은 유네스코의 가장 초기 표준협약 중의 하나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강조 교육에서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며 교육에서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들로부터 채택 되어질 수 있는 척도를 묘사

재원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센터, 한국교육개발원

3-5. 문화참여권 : 학생들의 문화교육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

필요성

- 대학입시 위주의 암기 입시교육으로 인해 공교육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은 불가능한 실정.
- 수능 중심의 입시교육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육투자에 비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식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창조적 감수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서구 선진국의 교육학습권은 창조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임.

추진전략

-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문화예술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협약체결
-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강화(예체능수업의 정상화, 강사풀제 수업의 내실화)
- 재량활동, 특기적성, 특별활동 등을 포함해 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
-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교육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근거 및 외국사례

- 교육관계법에 의해 교육관련 지원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문화교육적 학습권을 활성화하는 법률적 체계는 현저하게 미흡함.
- 현재 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의 학습권을 높일 수 있는 법적지원 체계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예정임.
- 1997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의 6조에는 문화교육적 권리들이 명시
- 프랑스는 1983년 문화부와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 협약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1999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3-6. 문화참여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

-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과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필요성이 대두
- 문화참여권의 한 형태로서 문화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문화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참여와 접근의 기회를 확대

추진전략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수립과 행정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위원회와 지방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마련
-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담당할 핵심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전문문화예술인력의 양성 체계마련
- 학교와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연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준비 중에 있음
- 1997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의 6조에는 문화교육적 권리
 - a. 누군가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자유
 - b.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지방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3-7. 문화참여권 : 대안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참여와 접근 기회를 확대

필요성

- 대학입시위주의 공교육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필요성 대두.
-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문화교육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대안교육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육 그룹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
- 영화, 미디어, 교육연극, 미술치료, 문학치료, 공연예술, 정보분야 등에서 대안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제도들을 활성화할 필요.

추진전략

- '대안교육지원법'의 신설 대안학교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대한 규약의 간소화
-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지원체계마련
- 대안적인 문화교육의 학력인정 및 제도 개선
- 대안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그룹들에 대한 지원
- '대안교육지원법'의 신설을 통해 대안학교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대한 규약의 간소화

근거 및 외국사례

- 현재 한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내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문화교육 그룹들이 활동(디자인교육그룹 '새야, 대안미술교육 '여주 밀머리학교', 대안전통문화교육 '평창 감자꽃 프로젝트')
- 유럽과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선진화되어있으며, 대안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교육에서 대안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이상을 차지.

재원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3-8. 문화참여권 : 국립공원과 사찰의 입장료 분리징수 방안

필요성

- 현재 국립공원 입장시에 지불하는 입장료에는 사찰 입장료도 함께 포함되어서 징수
- 사찰관람이 불필요한 관광객들은 입장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낳음
- 시민들의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현재 통합징수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사찰의 입장료를 분리징수.
- 분리징수의 공감대 형성과 공청회를 통한 분리징수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재보호법 39조(관람료의 징수)
-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공동으로 징수하는 국립공원은 전국의 20군데 가운데 계룡산을 비롯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변산반도 월출산 등 13개이며 이들 국립공원 안에 모두 21개의 사찰이 있다.

재원

관련기관 :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3-9. 문화참여권 :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정보종합사이트 구축

필요성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정보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접근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순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형태의 공공문화정보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상황.
- 네티즌들이 문화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정보망 구축이 필요

추진전략

- 문화정보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문화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포털 사이트 구축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 풀을 운영

근거 및 외국사례

- 1997년에 마련된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 7조에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a. 정보를 검색하고, 받고, 전송할 권리
 - b.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참여할 권리
 - c. 문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도 수정하고 바르게 할 권리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3-10. 문화참여권 : 공공재원이 지원된 축제에 대한 축제 모니터링 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는 100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대부분의 지역문화축제가 공공재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관 주도형 축제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
- 공공성을 가진 지역축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한 참여권리를 확대할 필요.

추진전략

- 지역문화축제 모니터링의 상설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의무화
- 문화환경 영향평가를 통한 축제모니터링의 법제화 및 지방조례 제정

근거 및 외국사례

- 공공문화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 문화연대에서 2001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문화축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행정자치부

3-11. 문화참여권 : 문화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문화행정 참여위원회 구성

필요성

- 문화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공공문화행정을 감시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음.
-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활동(밑빠진 독상)과 문화연대의 문화예산감시 활동(목동예술인회관 예산낭비 사례)이나 축제모니터링 활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정감시들이 확대.

추진전략

- 시민들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심의위원회처럼, 지역의 문화행정이나 중요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들을 발전 시킴
-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시민들의 문화행정 참여와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 선언문 초안” 8조는 시민들이 문화정책에 참여할 권리들을 명시.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3-12. 문화참여권 : 문화재 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 내셔널트러스트의 확대

필요성

-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 2000년 한국내셔널 트러스트가 창립하였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들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민간의 참여 폭이 부족한 상황임
- 개발주의 정책과 정부의 문화재 관리 소홀로 인해 문화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추진전략

-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환경분야의 문화재 보호와 문화유산 분야의 문화재보호를 이원화하여 국민신탁법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재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근거 및 외국사례

- 유네스코 「군사적 갈등 시기에 문화자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
- 유네스코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 (1970)
- 유네스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 (1972)
- 유네스코 「도난 및 불법 유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 (1995)

재원

관련기관 :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3-13. 문화참여권 : 문화유산 정책의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

- 외규장각 반환운동, 덕수궁터 보존, 삼청각 보존 등 시민들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심개발 계획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훼손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유산의 불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 현대 문화유산 정책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전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진 전략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문화재청이 기획하고 있는 문화유산보호 사업을 포함한 문화유산 정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덕수궁터미대사관 이전반대·청계천역사문화복원운동·삼청각 삼성매각반대·한옥살리기 운동 등의 다양한 문화재정책의 시민참여가 확대.
- 2003년 10월 유럽연합은 「유럽의 문화 협력 국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각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것을 결정.

재원

관련 기관 :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내셔널트러스트, 코리안 헤리티지

4.1. 문화환경권 : '도시계획법'에 주거환경 침해요인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상에는 주거환경 침해요인을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지구단위법>과 같은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고 있지만, 주거문화와 공공성의 차원을 상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재산권의 차원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주거환경의 정체성을 바꾸는 졸속행정을 지양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거나 장기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도시 개발 및 개량에 문화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함.
-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 도시 문화환경 분야를 전문적으 책임지는 전문 부서의 신설

근거 및 외국 사례

- 일본의 건설성은 도시경관형성 모델사업을 통해 가로사업·공원사업·하천사업 그 외(공공시설, 조경) 등에 시설보조와 용지보조를 지원함.
- 일본의 환경청은 쾌적한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창출, 사회적가치의 보전 등에 계획책정사업비를 지원함.
- 프랑스의 말로법은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지구로 보고 모든 건물의 신축 및 개량에 대해 문화적 가치로 판단을 함.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정부

4.2. 문화환경권 :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의 의무화

필요성

- 한국의 녹지는 주로 산의 형태를 이루며 산의 정상을 향해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 <도시공원법>에 1인당 공원면적을 늘이고 근린 녹지비율을 명문화할 필요
- 주차장으로 변하거나 건물의 부지로 변하는 공지를 녹지화할 필요
- 주로 상업적으로 전용되는 공공부지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녹지화하거나 건물로 변하더라도 실내 녹지를 만들 필요

추진전략

- 도시의 근린공원의 가능지역이나 근린공원 대체가능 용지의 실태 파악
- 근린공원의 설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제도가 필요함.
- 건축법상의 개별건축의 성능에 관한 규제를 명시하도록 법률의 개정 추진

근거 및 외국 사례

- 미국은 스카이라인 관리를 통해 미국의 도시들이 공원이 불리바드 시스템을 갖추게 됨.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4.2. 문화환경권 :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 중복적인 입간판들이 보행을 차단
-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가 골목길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어 보행이 위험에 노출
- 보행통로가 끊임없이 상업공간으로 전용되어 보행을 차단

추진전략

- 보행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보행과 종합적인 교통체계와의 연계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들의 대안 모색작업
- 공공시설들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보행환경의 고려와 배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개선안 마련
- 보행 장려를 위한 캠페인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근거 및 외국 사례

- 일본 건설성은 역사적지구 환경지구 사업을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 차도의 사행화, 교토규제, 안내시스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도로 등 지구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정부, 경찰청

4.4. 문화환경권 : 보행권을 위한 보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

필요성

-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보도의 너비 및 관리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
- 보행흐름이 차단되었을 경우에 대한 규제책 필요
- 보행안전과 보행속도에 대한 치밀한 규정 필요
- 사회적 약자 등의 보행인의 다양성을 고려

추진전략

- 보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실태 조사 실시
- 보행과 관련된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입법활동

근거 및 외국 사례

- 영국 국가교통조사(1993~1995년) 결과에 따르면, 보행은 이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보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활성화 그룹을 발족 운영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정부, 경찰청

4.5. 문화환경권 : 가로시설물의 통합 설치 관리

필요성

- 가로시설(street furniture)의 관리주체가 효율적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 가로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전략이 필요함.
- 가로시설의 디자인 비용(design fee)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디자인이 제작으로 대치되고 있는 병폐가 있음.

추진전략

- 가로시설물에 대한 관련부처 직속의 자문기관의 발족
- 가로시설물에 설치 및 관리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제도 도입
- 가로시설의 디자인 비용에 대한 공공미술의 관점의 지원책 마련

근거 및 외국 사례

- 미국의 디자인 심사제도는 역사적시가지이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도시계획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 미국의 도시미관 관련제도들은 일반적일 미를 복지의 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목적을 두고 도시개발과 지역지구제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정부

4.6. 문화환경권 : 건축물에서 보행공간을 확보

필요성

- 건축물 신축할 때 후퇴하면서 생겨난 공개용지가 보행인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사유화하는 문제
- 건물 앞의 건축 장식물이 관행화되어 건물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보행을 방해함

추진전략

- 건축물과 보행간의 관계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 조사 진행
- 보행에 장애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개선 및 이행의무에 관한 법률 개선안 준비작업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보행통행규칙의 제정
- 보행자 전용도로 규정의 명시
-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통행규칙과 차도설치규정의 명시
- 교통영향 평가시 보행교통에 대한 사항의 강화
- 재개발 등 대규모 면적 도시개발사업에서 보행환경을 확보규정의 명시
-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정책 개발이 필요
- 교통반이 아니라 주거생활 전체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법률안 제정의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의 의무화
- 어린이, 노인 보호를 위한 보행 서비스 루트 개발

근거 및 외국 사례

- 일본 건설성은 심볼로드정비사업을 통해 상징도로에 있어 보도의 정비 및 포켓공원을 정비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며, 사업비를 보조함.
- 미국·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미술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정부

4.7. 문화환경권 : 문화환경영향평가의 법제화

필요성

- 청계천복구사업, 고구려유적지(아차산) 훼손, 근대건축물파괴(한옥마을) 등 개발 위주의 정책에 따른 난개발로 문화환경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
-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실정
-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문화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추진전략

- 공해, 교통, 건설, 주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미술, 축제, 문화유산, 문화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
- 문화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범 사례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재해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비교 검토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재보호법' 등을 통해서 문화환경이 침해되는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 프랑스의 메타로프 도시의 문화환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도시들이 출현하고 있다.
-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공사나 건축개발 공사시에 지역의 영양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환경부

4.8. 문화환경권 : 지역의 문화지표 개발 조사

필요성

- 지역의 문화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연구가 필요
- 문화인프라, 문화자원, 문화정체성, 문화인력, 문화행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현재적 수준과 개선과제들이 도출.
- 지방분권화 시대에 각 지역의 문화지표를 조사하여 지역별 문화환경을 평가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

추진전략

- 광역시, 시군별로 단계적으로 문화지표 조사 실시의 의무화
- 지역의 문화지표 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 문화자원 활용의 적절성, 지역의 문화정체성, 문화의 공공성, 문화정책의 효과성, 문화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지표모델 개발
- 영역별 지역의 문화지표 조사를 통한 문화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근거 및 외국사례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전국의 문화 환경과 시설에 대한 문화지수 평가를 실시하나 양적인 비교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내실있는 지표조사가 필요

재원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4.9. 문화환경권 : 문화유산 보호의 권리 확대

필요성

- 2000년 들어 '도시 개발'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 많은 갈등(삼청각매각, 덕수궁터미대사관건립, 청계천 복원공사 등)이 고조되고 있어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권리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의 보호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상호 공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도시설계에 있어 중요한 철학으로 등장.
-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문화재를 파괴, 도굴, 반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추진 전략

-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시민캠페인 전개
-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보호에 대한 권리 확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 1980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보호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문화재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5년 동안 3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

근거 및 외국사례

- '문화재보호법' 제21조(문화재 수출의 금지), 제24조(주요무형문화재 보존의 육성)
- '문화재보호법' 제74조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문화재지표조사 의무 규정.
- 유네스코 「군사적 갈등 시기에 문화자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 (1954)
- 유네스코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 (1970)
- 유네스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 (1972)
- 유네스코 「도난 및 불법 유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 (1995)

재원

관련 기관 :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4-10. 문화환경권 : 문화유산 향유권의 확대

필요성

-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한겨레문화답사, 신라사람들, 겨레문화답사 등).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연대 등의 문화재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유산의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참여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많은 규제와 제한, 고가의 문화재 관람료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유산을 향유할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명시가 필요함.

추진 전략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교육 및 답사프로그램 강화
-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람 프로그램의 강화
- 문화재청은 문화서비스 증대를 위해 관람객 서비스 현장 발표

근거 및 외국 사례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음.
- 유네스코의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1989)

재원

관련 기관 :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문화권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 정리표

1. 문화자유권

문화권	분야별	주관부처	관련부처 및 기관
1 문화자유권	1-1 표현의 자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2 학술 사상의 자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경찰청(공안문제연구소) 학술진흥재단
	1-3 종교활동의 자유	문화관광부 종무실	병무청 교육인적자원부
	1-4 언론취재의 자유	문화관광부 미디어문화국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중재위원회 방송위원회

2. 문화평등권

문화권	분야별	주관부처	관련부처 및 기관
2 문화평등권	2-1 양성문화평등	여성부 문화관광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정책추진사항 미비.
	2-2 성적소수자 문화 평등	문화관광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2-3 외국인노동자 문화평등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2-4 탈북자 문화평등	문화관광부 통일부	통일부 하나원 평생학습센터
	2-5 장애인 문화평등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

3. 문화참여권

문화권	분야별	주관부처	관련부처 및 기관
3 문화 참여권	3-1 퍼블릭 액세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방송위원회 지방자치단체(광주, 강서구청)
	3-2 문화교육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청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3-3 문화공공서비스권	문화관광부	국공립 문예회관
	3-4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축제 관련)
	3-5 내셔널트러스트	환경부 문화재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문화환경권

문화권	분야별	주관부처	관련부처 및 기관
4 문화 환경권	4-1 주거생태권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관련) 건설교통부, 환경부
	4-2 보행권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4-3 문화환경영향평가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4-4 문화재향유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지역의 문화원 지방자치단체